아메리카

4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2014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4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간사

정부는 2013년 6월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터키(서비스・투자) 뿐 아니라 중국과 FTA를 타결함으로써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을 잇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사실상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아・태 지역 경제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해외 수출 애로인 비관세장벽 대응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세계 각국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을 자국 기업을 육성・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문 건수도 2013년에 1,6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2013년 9월에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중 FTA 내에 비

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였고, 기업이 해외의 비관세조치로 인한 애로사항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 전문포털(www.ntb-portal.or.kr)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년에도 외교부와 공동으로 분야별 및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와 무역장벽보고서(제1권) 등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이 세계 각국의 통상환경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목차

1. 무역장벽 보고서
2. 분야별 통상환경
3. 아시아 · 대양주
4. 아메리카
5. 유럽
6. 아프리카·중동

과테말라 **2**
니카라과 **48**
도미니카공화국 **73**
멕시코 **92**
미국 **117**
베네수엘라 **166**
볼리비아 **187**
브라질 **199**
아르헨티나 **226**
에콰도르 **251**
엘살바도르 **271**
온두라스 **284**
우루과이 **297**
자메이카 **324**
칠레 **375**
캐나다 **390**
코스타리카 **418**
콜롬비아 **449**
파나마 **484**
파라과이 **537**
페루 **558**

아메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4

과테말라

수입 및 수출 정책

관세 장벽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미공동시장(CACM, MCCA)[1]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3.2.27일부로 중미 경제 통합 사무국(SIECA)[2]의 중미 관세 제도(SAC)[3]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 관세로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국 간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 공동 관세를 적용한다.

대외 관세율은 자본재 및 역내 비생산 원자재 0%, 역내생산 원자재 및 의약품 5%, 중간재 10%, 국내 비생산 소비재 15%, 국내 생산 소비재 20%선이나 중미 각국마다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두고 있어 일부 소비재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최고 40%까지 이르고 있다.

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15%의 종가세(CIF기준)를 적용하나 흰 옥수수(1005.90.30), 설탕(17.01), 담배를 함유한 궐련(HS 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 알코올 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2012년 과테말라의 평균 수입 관세율(관세징수액/CIF수입총액)은 2.36% 수준이었다.

1_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Mercado Comun Centroamericano
2_ 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3_ 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관세평가는 통상적으로 Invoice Value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자동차 등 일부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북미시장 시판 가격 또는 기타 국제시장에서 관세평가 시 원용되는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

관세율 찾는 법

http://www.aic.sieca.int/public/Nomenclature/NomenclatureIndex.aspx?Member=sieca > 검색을 원하는 국가의 국기(과테말라) 선택 > "Inciso"란에 HS CODE# 4자리를 입력하고 "Buscar"를 클릭 >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면 해당 "HS CODE#"를 클릭 > 세부 항목(최대 8자리)이 나타나면 원하는 HS CODE#의 오른쪽에 보이는 검색 아이콘을 클릭 > 관세율

2014년 과테말라 수입관세율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15%
제2부 식물성 생산품: 0~30%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제품, 식용 지방: 0~15%
제4부 식료품, 음료 및 주류와 와인, 담배 및 조제 담배 모조품: 0~40%
제5부 광물성 생산품: 0~15%
제6부 화학 공업 생산품 및 연관 산업 생산품: 0~15%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0~15%
중략
제17부 운송 장비: 0~20%
제19부 무기, 탄약 및 부속품: 15%
제21부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5~10%

수입부과금 등

수입 시 관세이외에 부가가치세(IVA) 12%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의 해상운임이 인근 중남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수입 시 제세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 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신고 서류상의

하자나 오류 등으로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있으며, 통관이 지연 또는 보류될수록 창고료 부담도 커지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사하게 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중남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제로 상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세금,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바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하게 된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보통 하주가 지정한 통관회사 또는 운송회사가 통관을 완료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헤드 부족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하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를 검사하여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징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 있다. 신고 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되어 수취인이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에 붙여진다.

최근 한국으로부터의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금액도 재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수입신고서[4] 또는 중미공동수입 신고양식(중미 5개국에서 수입 시)
- 상업 송장[5]
- 선적 서류[6]
- 포장명세서[7]
- 도착통지서
- 기타 서류(제세 면제시의 관련 서류 등)

한편 일시 수입[8]인 경우에는 일시 수입신고서, 재수입[9]의 경우에는 재수입신고서 등 수입형태에 맞는 수입신고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

4_ Poliza de Importacion
5_ Factura Comercial
6_ Carta de Porte, Guia Area, Conocimiento de Maritimo
7_ Lista de Empaque
8_ Importacion Temporal
9_ Reimportacion

테말라 국세청(SAT)[10]은 세관 수입 신고서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과거에 비해 통관 수속 시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국제 특급 배송의 경우는 Invoice만 있으면 물건 도착 이전에 통관 수속을 미리 밟아 물건 도착 시 바로 배송할 수 있다.

수입 화물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12%)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과테말라는 CIF 기준으로 관세를 부가하므로 FOB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Invoice금액으로 과세하며 물품 검사 과정에서 Invoice상 기재되지 않은 화물이 발견될 경우 추가로 과세한다. 관세 납부 시 BancaSAT 시스템을 이용한 계좌 이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상업 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한다. 일반적으로 제출한 서류 심사를 먼저 하는데 심사 결과가 청색신호[11]인 경우에는 화물 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으나 적색신호[12]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조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중남미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세금,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바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위에

10_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11_ Semaforo Verde
12_ Semaforo Rojo

언급했듯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통상 12일까지는 기본 창고료(Invoice 금액 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상이/보통 10CBM 기준 60달러 수준)를 부과하며 통관 지연으로 그 이상 경과한 경우엔 추가 창고료를 징수한다.

통관 기준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5리터(성인)	종류 무관
담배	○500그램(성인)	종류 무관
향수	○일반 면세 기준항목 참조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500 이하 상당의 생활물품 ○여행에 타당한 수량의 의류, 보석류, 가방류, 컴퓨터, 휴대용 카메라 등 전자제품, 도서 등 ○여행자 직업에 관련된 작업도구 및 장비 ○스포츠 용품: 근육운동 용품, 보행기구, 자전거, 서핑보드, 야구방망이, 가방, 의류, 신발, 장갑, 야구 농구 축구 테니스 등 보호 장비 ○여행자가 관광객일 경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냥 또는 스포츠용 총포 및 총탄 500발, 텐트 및 야영장비	
외국환신고	○US$10,000 이상의 현찰이나 증서 혹은 이에 상당하는 주재국 화폐를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 물품 세관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출국 세관에 신고	
의약품	○여행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수준의 휴대 약품, 의학용품, 일회용 용품	
식품	○여행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식품	
반입불허품목	○일반 총포, 마약, 에어졸	
기타 유의사항	○동물과 동물 관련 약품 및 식품 반입시 특별허가서 제출 ○여행자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주재국법에 따른 제재를 받음 ○US$10,0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에는 이를 몰수하고 범죄 수사 조치하며 유죄가 발견될 경우 1~3년의 징역 처분	

운송

과테말라의 주요 항구는 태평양의 께찰 항(Puerto Quetzal), 카리브해의 바리오스 항(Puerto Barrios) 및 산또 또마스 데 까스띠야 항(Puerto Santo Tomas de Castilla)등이 있다.

아시아 및 미국 서부지역과의 교역은 께찰 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테말라시티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미국 동부 및 유럽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바리오스 항 및 산또 또마스 데 가스띠야 항에서 과테말라시티까지는 약 6시간이 걸린다.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운임은 $3,100 수준이나 월 몇 대 혹은 연간 몇 대와 같이 대량 계약 시 $3,000 이하로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대량 구매 시 CIF 거래를 원하며 소량인 경우 FOB 가격을 요구하고 운임은 자신들이 지불하기도 한다.

항공 화물은 과테말라시티의 라 아우로라(La Aurora)공항을 통해 반출입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에는 Maersk, NYK, CCNI, CSAV, Maruba, CMACGM, China Shipping, MSC 등 8개 정기 화물 라인이 보통 주 1회 운항한다. 또한 L.A.에서 과테말라로 바로 오거나 멕시코를 거치기도 하는데 20일에서 22일 정도 소요된다.

선사 및 Forwarding 업체, 시즌, 국제 유가 등에 따라 요율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부산과 과테말라시티 기준 해상 운임은 20 “컨테이너가 $3,300”, 40 “st컨테이너가 $5,800”, 40 “hq컨테이너가 $6,000”이며 섬유일 경우 운임의 10%를 추가 징수한다.

화물이 께찰 항까지만 오는 경우 선박 운임은 부산-과테말라시티보다 낮지만 D/THC[13] $120, 계선료(Muellaje) $125와 $500의 내륙운송비용

13_ Destination Terminal Handling Charge: Wharfage(부두사용료)와 Shoring Charge(화물고정 지주비용), 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 화물처리비)를 합한 비용

(In-land)이 추가되어 전체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급적 과테말라시티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중미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기를 요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 부처 내 경제통합국(Di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에서 관장한다.

우리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재 및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역내 부가가치가 생산가 기준 35% 이상)이어야 한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품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조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 HS CODE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다. 유기 화학품은 농업부와 보건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분유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량을 상회하는 경우는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수입 최저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동 기준가 이하로 통관 신청 시에는 기준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한다. 자동차 수입 최저 기준가는 미국시장 시판가격의 80%로 설정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관세는 대부분 차종에 따라 15~20%가 부과되고 있다(대부분 20%이지만, 15% 적용품목도 일부 있음). 상업송장이 없을 경우나 under value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Blue Book의 가격을 참고해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일부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Decreto 10-2012에 따라 연식규제를 2012.3월부터 시행 하였다. 그러나 이 규제를 철폐하고 2013년 6월 29일부터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에 대해 수입이 가능하다.

2013년 1~5월 기간중 전년 동기대비 중고차 수입이 38% 감소한 것이 규제 폐지를 하게 된 이유이다. 단,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을 수입할 경우, 과테말라 국세청(SAT)에서 시동에 문제가 없는 차량임을 검사받아야 한다.

- 1000cc 이하 승용차는 15년을 초과하는 모델에 대해 수입가능(예, 2014년의 경우 1999년 모델 이상 수입가능)
- 1000cc 초과 승용차는 10년을 초과하는 모델에 대해 수입가능(예, 2014년의 경우 2004년 모델 이상 수입가능)
- 상용차(버스, 미니버스 등), 수송용 차량은 연식제한 없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이 경우 중미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2014년 6월, 유럽연합과 체결한 파트너십협정[14]에 의해 과테말라 경제부[15]는 수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Software)를 채택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는 비용절감과 수입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며 거래 시스템의 개발과 현대화에

14_ Partnership Agreements
15_ Ministerio de Economía

목적으로 두고 있다.

수입허가/등록 품목

수입 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관련코드	구분	관련법규	담당부서
AA	농수산물	○ Decreto 36-98 ○ Reglamento 745-99 ○ Acuerdo Ministerial 679-99 ○ Acuerdo Ministerial 1029-99 (조류 및 그 생산물 수입위 생검역법) ○ Acuerdo Ministerial MAGA 1090-2001 (수상/수중생물자원 및 부산 물 수입 규칙)	농·축산 식품부16
AM	무기/탄약	○ Decreto 123-85 ○ Acuerdo Gubernativo 14-74 ○ Decreto 15-2009 (무기·탄약 규제 법규) ○ Decreto Gubernativo 82-2005 (무기·탄약 종류 명시 법규)	국방부17
EM	에너지/광산	○ Decreto 109-97 (탄화수소 거래법) ○ Decreto Ley 11-86 (방사성 동위 원소 전리 방사선 거래 및 규제 법규) ○ Acuerdo 55-2001 (방사성 동위 원소 및 전리 방사선 안전 및 보호 협약) ○ Decreto 48-97 (광산 채굴 규제 법규)	에너지 광산부18
LE	환경규제	○ Decreto 17-2001 ○ Convenio 271 (오존층 보호 규제 법규) ○ Decreto Ley 66-86 (환경 보호 및 향상 규제 법규) ○ Decreto Ley 110-97 (염화 물질 수입 금지 및 사용 규제 법규)	환경부19
PC	중고타이어	○ Acuerdo Gubernativo 900-83	과테말라 시청20
PF	화약류	○ Acuerdo Gubernativo 28-2004 ○ Decreto Ley 123-85 (폭발물 종류 명시 규제 법규)	노동/사회 안전부21
SA	식품류	○ Decreto 90-97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 Decreto 50-2000 (Decreto 90-97 개정 법규) ○ Decreto 50-2003 (Decreto 90-97 개정 법규)	보건부22
SM	의약품	○ Decreto 90-97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 Acuerdo Gubernativo 712-99 ○ Reglamento para el Control Sanitario de los Medicamentos y Productos Afines ○ Acuerdo Gubernativo 54-2003	보건부

품목별 장벽

주요 품목별 수입관련 규제 및 장벽은 아래와 같다.

1)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설탕 수입 시에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4) 음료, 알코올, 식초 등은 재무부의 조세검토와 농업부의 사전 검역이 필요하다.
5)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부 의약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금액은 품목당 약 US$500이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유효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시 재신청해야한다.
6)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한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7)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8) 중고 신발 및 의류 수입 시에는 수출국 보건당국의 방역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9) 자동차, 전자제품을 포함한 사치성 소비재 및 석유 제품은 별도의 세이프 가드를 허용하여 관세 조정(최고 45%)이 가능하다.

16_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Alimentación
17_ Ministerio de Defensa
18_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19_ Ministerio de Medio Ambiente
20_ Municipalidad de Guatemala
21_ Ministerio de Trabajo y Prevencion Social
22_ Ministerio de Salud

10)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건설업체 및 최종 소비자는 상공회의소가 제시하는 건축의 사전 조건을 갖춰야 하며 건물의 붕괴에 대비하여 사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특별한 검사가 없으므로 수입상이나 판매대리점의 각별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11) 건축자재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입 허가 조건이 다르다. 타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ASTM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제의 스펙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샘플을 제출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2014년 6월 과테말라 농축산식품부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위생관련 수입허가증 발급 시행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허가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되고 수입업자들은 접수대기시간과 발급승인까지 소모했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시스템으로 한 달에 약 3천 건의 위생관련 수입허가 진행업무가 이루어진다.

대한 수입 규제

한국 상품에 대한 특정한 수입 규제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약 유통 및 밀수 단속을 이유로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검색 물품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수 검사 비용 및 보세 창고료 등 전반적인 통관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어 원·부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 섬유업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입 가격 고시제

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수입 최저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동 기준가 이하로 통관 신청 시에는 기준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한다. 자동차 수입 최저 기준가는 미국시장 시판가격의 80%로 설정하고 있다.

자동차관세는 대부분 차종에 따라 5~20%가 부과되고 있다. 상업송장이 없을 경우나 under value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Blue Book의 가격을 참고해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중고차 수입 시 신차 가격에 따라 연식별로 디스카운트하여 관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감면율은 1년 된 차량에 대한 20%를 시작으로 1년당 10%씩 증가한다. 2001.9월부로 10년 이상 차량 감면율을 완전히 폐지하였고 5년 이상 차량의 감면율을 10% 축소하였다.

Decreto 10-2012에 따라 2012.3월부터 수입 중고자동차에 대한 연식 규제를 시행하였으나 2013.6.29일부로 동 규정을 철폐하였다. 이전의 10년 및 15년을 초과한 모델의 수입 금지와 같은 연식에 대한 구애는 사라졌으나 세관을 통과하고 수리가 가능한 차량으로 수입을 제한하였다.

또한 처음 등록하는 수입 트랙터에는 5%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수출세

과테말라는 커피 및 비 전통상품(일시 수출 및 자유무역지대 수출 예외) 수출 시 FOB 1%의 수출세를 부과하며 소고기는 kg당 US$0.02, 바다가재는 kg당 US$0.1을 부과한다.

모든 수출업체는 수출상품 가격의 1.5%(FOB 기준)에 해당하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커피, 면화, 설탕, 목재, 바다가재, 바다새우 등의 수출 시에는 생산가격의 65%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동법 상의 특례에는 관세 환급뿐 아니라 임시 통관,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관세 환급의 특례 적용 대상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임가공 생산업체, 조립 생산업체, 수출업체, 간접 또는 재수출업체로서 관세의 환급 신청 기한은 수입면장 접수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이 경우 중미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중미경제통합협정에 따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중미 5개국 간에는 커피, 사탕수수, 에틸알코올, 증류주, 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품 수출입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과테말라는 현재 멕시코, 미국, 대만, 콜롬비아, 파나마,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하고 단계적인 무관세 교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6.7월 발효된 대미 FTA(DR-CAFTA/중미자유무역 협정)으로 대미 수입 품목의 80% 이상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아울러 Maquila 산업(보세 가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1989년의 수출진흥법[23](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la) 및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1989년의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따라 장비 및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Maquila 산업(보세 가공 산업)법과 같이 수출 활동에 대한 특혜를 주는 규제를 금하고 있어 WTO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9-89 Maquila 산업법 개혁안을 2014년 9월 16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반덤핑, 상계관세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 간 역내산업의 보호 육성 및 장치의 하나로 1995.12.12일 중미 공동 불공정 무역 규범[24]을 정하여 시행 중이다. 동 규범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23_ 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na
24_ 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

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있다.

덤핑 및 상계관세 주무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경제통합국[25]으로 덤핑 및 보조금 지급률 2% 미만 시에는 무혐의 처리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사자와 세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사례는 없다.

WTO의 개도국 보조금 지급규범에 준하여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대중교통, 전력 등 일부 산업분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영사 인증제도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시행중으로 본국 관세 행정 지원 목적(Under Value 확인)으로 대 과테말라 수출 상품에 대해 Invoice상 적정 가격 표시 여부를 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선적 전 검사 제도는 도입시행 사례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과테말라 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검사 및 등록이 필요하고 스페인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등록번호
- 과테말라 유통 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취급상 주의사항 등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기관은 경제부 표준 규격 위원회[26]이며 표준

25_ Di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

규격 인증서를 얻기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며 소요 기간은 약 3개월이다.

중미 5개국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C)[27]에서 담당한다.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제도로 모든 수입 식료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28]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이외에 자동차 배터리의 배터리 액과 같은 화학제품은 필히 위험품목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 인증제품을 선호한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29]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이다.

환경관련 규제

공장 및 건축물 신축 시 건물의 고도와 관련하여 교통통신건설부 산하의 민간항공기관[30]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심사를 위해서 지진화산기상기관(INSIVUMEH)[31]의 승인이 필요하며 건축지 및 건축물의 역사 및 지질학적 검토를 위해서는 인류역사기관[32]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헌법 제97조에는 과테말라 내 단체나 개인에 대해 환경오염에 대한 예

26_ Comision Guatemalteca de Normas
27_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Commercial Coding,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Codificacion Comercial
28_ Certificado de Fitosanitario
29_ Certificado de Libre Venta
30_ Aeronautica Civil
31_ Instituto Nacional de Sismologia, Vulcanologia, Metereologia e Hidrologia
32_ Instituto de Antropologia e Historia

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환경자원부[33]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과테말라 내 공장설립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자원부에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지는 않고 있어 이에 따른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상·하수시설 지역, 고압선 통과지역, 고고학 발굴지역, 유적지역 등에는 건축을 제한하며 공사 도중 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 건축을 중단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과테말라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과테말라 환경자원부는 정부 법령 N° 134-2003에 의거하여 산하 기관으로 기후변화 연구기관[34](2011년 9월 설립)과 환경 정책 및 전략 이사회[35]을 설립하였다.

2009년 12월, 과테말라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정책 법령 Decreto 329-2009를 제정하였다. 이 정책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은 과테말라 각 지방 단체를 비롯하여, 시민 사회 단체와 일반 대중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에 해가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환경 보호 실천을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해결책을 제안하고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 9월 5일부터 기후 변화 법 7-2013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온실가스 완화를 위한 기본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3_ Ministerio de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34_ UCC : Unidad de Cambio Climático
35_ DGPEA : Dirección General de Políticas y Estrategias Ambientales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계약법[36]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37]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동 법 제38조에 따르면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의 구매금액이 하기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정부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중앙정부 및 분권기관: 1,000,000께찰
- 지방자치단체[38]: 1,000,000께찰(1달러=7.58께찰, 2014.10.2 현재)

입찰기관에서는 입찰기본정보,[39] 입찰세부내역,[40] 세부기술내역[41] 및 공사계획서[42](정부공사의 경우) 등의 입찰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입찰기본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
- 물품, 서비스의 일반 및 세부정보
- 공사가 시행되는 장소와 형태(정부공사의 경우)
- 입찰 참가자의 제출서류 목록
- 입찰 참가자의 이행보증서
- 지불조건
- 입찰서류 제출, 접수 및 처리 장소 및 일시 등
- 입찰참가자의 세금 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 참가 희망자는 사전자격심사등록서[43]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입

36_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57-92
37_ Municipalidad
38_ Municipalidad
39_ Bases de Licitacion
40_ Especificaciones Generales
41_ Especificaciones Tecnicas
42_ Planes de Construccion

찰기관은 10일 내에 입찰내용을 관보와 주요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련 입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찰응모서(참가자 또는 대리인 서명필)
- 세금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 사실 확인 보증서
- 사전자격심사등록서 등재 확인서
- 물품, 서비스의 인도를 위한 투자, 작업계획 및 일정 등
- 작업 예상 수량표
- 물품 및 서비스 단가, 비용분석 내역서
- 법인등록서

해당기관의 장이 주재하는 입찰위원회[44]가 접수받은 입찰서류를 상정, 심의하며 주요 심사기준은 품질, 가격, 납기, 기타 특기사항과 조건 등이 된다. 입찰위원회 결정 후 3일내에 각 입찰참가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에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국가베이스의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 내 법인 또는 특정국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체로 입찰공고기간이 짧아 실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찰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 신문이나 관보 공고내용 이외에 상세내용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입찰신청서를 구입하여야만 알 수가 있다.

43_ Registro de Pre-calificaciones
44_ Junta de Licitacion

지식재산권 보호

과테말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0.9월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보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2000년 미국의 압력으로 불법 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특허, 상표 및 지식재산권법'[45]을 제정하였으며 1998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였다(2000.11.1일 발효). 그러나 위조 상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 등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DR- CAFTA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과테말라 국회는 2005년 기존 산업재산권법[46]의 개정 법안 및 2000년 지식재산권법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일반약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특허권자는 일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제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 생산자나 밀수자에 대해서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징역 또는 1천께찰에서 최고 50만께찰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범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으로 물건압수 및 체포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실효성은 미약하다.

한편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약품 및 농업용 화학제품의 시험데이터에 대해서도 5년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47]에 따르면 과테말라 내에 미국으로부터 송신되는 케이블TV 무허가 사업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약 40년

45_ Decreto 57

46_ Ley de Propiedad Industrial

47_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전부터 LEVIS, CALVIN KLEIN 브랜드 바지, REEBOK, NIKE 신발, BOXER 양말 등등 무단 상표도용 제품과 위조상표 제품 판매가 성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USTR 보고서에 의하면 과테말라는 1999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에 속해 있었으나 2001년 일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이래 2013년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지식재산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지재권 보호는 1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과테말라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협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제기구 가입: WTO, WIPO[48]
○ 국제협정 체결
  - Paris Convention, Bern Convention, Rome Convention, Phonograms Convention, Nairobi Treaty, WIPO Copyrigh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Budapest Convention on the deposit of microogranisms,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Washington Convention), UPOV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ties of Plants

지식소유권의 등록은 경제부 소속인 지식재산청[49]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 법령 148-2014에 따라 2014년 5월 17일부터 지적 재산권 등록비용이 인상되었다. 지적 재산권 등록 절차에 따라 200께찰~8,000께찰(1달러=7.58께찰, 2014.10.2 현재) 범위 내에서 비용을 책정하도록 수정 시행하고 있다.

48_ World Inter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49_ Reg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주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

과테말라 정부는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과 베른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등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 저작권의 경우 과테말라 내에서 등록 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등록도 가능하다.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케이블 방송을 통제하는 과테말라 통신부는 해적방송을 단속하고 있으며 BSA 역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매체를 통한 해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상표권

과테말라는 독자적인 상표등록제도가 없으며 1968.6.1일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중미경제통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체결된 중미산업소유권 보호협약[50]에 의거하여 선진국제도를 답습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 협약에 의거하여 등록구비서류요건 및 보호조항 등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무는 별도의 독립기관이 아닌 과테말라 경제부 내 산업소유권 등록국[51]에서 수행한다. 상표 등록여부 확인 및 등록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서명 날인이 찍힌 신청서(각 5께찰)를 제출해야하며 등록까지는 약 8개월이 소요된다.

상표는 산업상표,[52] 상업상표[53] 및 서비스상표[54]로 구분되며 각 상표는

50_ Convenio Centroamericano para la Proteccion de la Propiedad Industrial
51_ Departamento de Registro de Propiedad Industrial
52_ Marcas Industriales
53_ Marcas de Comercio

기호, 문자, 문자의 조합 및 기타 그래픽 또는 소재 등을 포함한다. 산업 상표는 특정 산업체에서 생산 또는 개발한 상품을 타제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며, 상업상표는 생산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유통·분배하는 상품을 식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과테말라는 1992년 상업 상표에 관한 파리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위조 상품 방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상표란 상기 두 분야외의 서비스 활동을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미 역내국에서 상업, 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변호사의 조력 하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가 없는 자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의 해당법인 및 자연인도 현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상표를 출원 할 수 있다.

등록이 된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를 받으며 아울러 중미 국가 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등록하든 역내에서는 동일한 등록혜택을 받는다. 먼저 등록을 받은 국가에서 여타 상표 등록 당국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미 국가 중 G국에 등록을 했는데 C국에서 상표등록 문제로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는 G국의 등록확인서와 C국에서 발행한 등록확인서상의 등록일시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미 국가들의 행정체계 및 능력, 신속성 결여 등으로 각국의 상표등록기관에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상표임을 자진하여 고지하지 않는 한 분규의 소지는 남아 있다.

특허권

과테말라는 1985년 특허법을 2000년에 개정하였다. 개정법에 의해 특허권은 2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유기체, 화학물질, 의약품 및 농산물 등이

54_ Marcas de Servicios

특허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수학 공식, 과학이론, 경제 법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5년 초의 개정법으로 인해 일반 약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농산물 및 화학제품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약품 및 화학제품의 시험데이터도 5년간 특허로 보호된다.

특허 등록의 사전 요건으로 해당 특허가 산업과 예술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인력의 사용 없이 창조된 제품은 특허신청 자격이 없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서가 필요하며 신규특허일 경우 이전 특허 신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장벽

통신시장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불허하던 종래 방침에서 통신시장을 자유화한 이후 여타 서비스시장에서의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다. 법률가, 의사, 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도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투자 장벽

투자 정책 동향

과테말라 정부는 마낄라,[55] 임업, 광업 등 주요 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마낄라 업체가 위치한 장소는 자유무역지대로 간주되어 1년간 수입기계 및 원재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관세가 면제되며 투자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과테말라 정부는 2016년부터 보세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55_ Maquila, 보세가공업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각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과테말라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2013년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순위 10계단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자 신속등록 시스템,[56] 건축허가 원스톱 서비스[57] 도입을 통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등록 절차 및 건축허가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고용주의 사회보장세(IGSS)[58] 온라인 납부시스템도 도입하였다.

한편 과테말라는 수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화석연료 수급 불안정에 따른 전기세 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확충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59]

더불어 2012년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Cotzal, Laguna Blanca, El Cedro, La Libertad 등 7개 원유 생산지에 대한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투자 금액은 각 지역 당 4,000만달러, 총 2억8,000만달러 규모이며 유전개발과 함께 도로 건설, 교육 및 의료 부문 투자 등 기초 인프라 구축도 수반될 것으로 내다봤다. La Libertad 지역을 제외한 6개 지역의 입찰이 완료된 상태이며 유전이 개발되면 연간 원유 생산 능력이 3.9백만배럴에서 2020년에는 18.8백만배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테말라는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로 구성된 태평양 동맹[60]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태평양 가입국의 주요 사안은 이민법 개정,

---

56_ Ventanilla Agil Plus

57_ Ventanilla Unica Municipal

58_ Instituto Guatemalteco de Seguridad Social

59_ 과테말라 정부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력발전확장계획 2008-2022(El Plan de Expansion Indicativo de Generacion 2008-2022)을 수립하였다.

60_Alianza del Pacífico

인력 교류, 금융 통합, 혁신 공유, 농업 개발 기술 교류, 학술 교류, 문화 보급,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이며, 이를 기반으로 제품, 서비스, 인력 자원 이동, 동맥국 간의 경제 성장과 발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경제적 무역 통합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태평양 동맹의 가입은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작으로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출 제한 분야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 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동안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자유화가 추진되어 투자분야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현재까지도 공공시설, 보험, 광산업, 임업,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복권사업을 제외하고는 카지노에 대한 투자는 물론 카지노 영업이 금지되고 있으나 일부 호텔에서 불법으로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육로운송회사의 경우 60%, 항공운송회사의 경우 51% 이상을 과테말라 내 업체가 지분을 소유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2004.1.1일부터 지분소유제한이 철폐되었다. 국가소유인 강, 바다, 국경 인근지역의 토지 소유는 금지된다.

공장설립 시에는 과테말라 건축법[61]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담당관청은 해당 건물 신축지가 속하는 지방 시·도[62]의 도시건축실[63]이 된다. 공장

61_ Reglamento de Construccion
62_ Municipalidad

설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담당 관청을 통해 가장 손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64]나 준공허가[65] 역시 이곳에서 관할하므로 자주 접촉하여야 한다.

건축은 거주용 건물의 건축과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으로 나누어지는데 산업용 공장을 포함하여 교육연구용, 체육 및 레크레이션용 건물 등은 후자인 비주거용 건물의 신축으로 분류된다.

건축을 위해서는 사전에 담당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과테말라시티의 경우에는 도시개발통제국[66]에서 정한 101호 및 102호 서식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1호 서식은 신축건물의 기술적인 정보와 용도,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소유주와 설계사, 시공사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동 서류에는 지방세 납부영수증,[67] 건축위치도, 부동산세 최종납부영수증과 건축설계도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건축물의 고도와 관련하여 교통통신건설부 산하의 민간항공기관의 사전 승인을,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심사를 위해 지진화산기상기관의 승인, 건축지 및 건축물의 역사 및 지질학적 검토를 위해서는 인류역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신축의 환경오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환경자원부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

102호 서식은 101호 서식과 함께 제출되며 건축과 관련된 정보, 건축지에 대한 정보, 건축지에 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관련법상 상·하수시설 지역, 고압선 통과지역, 고고학 발

63_ Oficina de la Construccion U규몸
64_ Licencia de Construccion
65_ Permiso de Uso
66_ Departamento de Control del Desarrollo Urbano
67_ Boleto de Ornato

굴지역, 유적지역 등은 건축이 제한되며 공사 도중 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 건축을 중단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서류의 준비가 완료되면 이를 담당관청에 제출하며 건축법상 8일 정도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실제는 서류하자의 보완 등으로 이보다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건축허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허가 시에는 공사대금의 1%를 수수료로 내야하며 연장 시에는 이의 50%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취득 시 공사대금의 0.01%를 예치하여야 한다.

공사가 종료되면 준공허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허가 요청 시 건축물이 산업시설물에 관한 법[68]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담당 관청이 현장을 실사한 후에 승인한다. 준공허가가 나면 건축허가 시 예치했던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외국인회사가 과테말라 내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자본액은 최소 5,000께찰 이상이면 가능하다.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전 출국 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는 것이 개설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상법에 의거 회사설립은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고용, 추진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물색한다. 진출형태는 임시법인(Sociedad Tem-

68_ Reglamento de Localizacion e Instalacion Industrial

poral)설립 시와 영구법인(Sociedad Indefinida)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태에 따라 필요서류나 진출절차가 다소 상이하므로 법인등록 이전에 이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법인의 경우 최대 2년간 운영이 가능하며 상업등기소 등록 시 별도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테말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업체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동 서류는 본국 당국의 확인과 과테말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얻어야 한다.

-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
- 해당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모기업의 지점설치 의향서류
- 과테말라 내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상업등기소에 5만달러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내 법적의무 이행 서약서
- 등기비용 납부영수증 등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교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상기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Inscripcion Provisional)을 하며 관보에 1회 공고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Inscripcion Definitiva)되며 등록증(Patente)을 내준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5만달러) 예치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일례로 2009~2010년 과테말라 내 신규 등록한 국내 기업 수는 총 10,161개, 외국기업 등록 수는 30건에 그쳤다.

국산화 의무 부과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특별히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미 원산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생산가 기준으로 35% 이상이거나 또는 역내국에서 생산된 부자재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이어야 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과테말라 정부는 관세환급 제도 또는 보세통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수출산업 촉진법 등 특별법으로 보호 받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한 특례조항조치로 적용되고 있다.

수출활동진흥법(29~89)상 수혜대상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환급뿐만 아니라 임시통관,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1년간 관세유예를 받는다.(1년 후 수출을 못할 경우 관세를 부과해야 하나, 1차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과테말라의 소득계층이 상류층과 빈곤층으로 대별되며 중산층이 발달되어있지 않아 브랜드 이미지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품질이 좋고 가격이 높은 제품의 경우 시장개척이 쉽지 않다. 또한 언어의 장벽이 높을뿐만 아니라 원거리로 인해 A/S 및 부품의 적기 공급이 어렵고 회신이 지연되어 시장개척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세관의 경우 화물통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업체의 말만 믿고 있다가 지정된 기일까지 화물이 나오지 안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세관에서 자체 설정한 통관요건도 까다로워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급행료 명목으로 추가적인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험 많은 통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테말라의 치안불안은 기업 활동의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연간 타살자수는 41명으로 치안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밀수 성행 및 극심한 빈부차 등으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여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각종 범죄가 빈발하며 컨테이너 분실, 현금 도난, 공장 주요시설 절도 등의 조직적인 범죄도 자주 일어난다.

미국 상무부에 의하면 과테말라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경상비용의 25%를 안전 대책 수립에 지출하고 있다. 과테말라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경상비용의 12~15%를 치안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행정력의 후진성, 2000년대 들어 급속 인상된 임금수준 및 높은 전기료 등도 외국인 투자증대의 저해 요인이다. 특히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자체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 생산이 가능한 일부 원자재의 경우에도 규모의 생산성 문제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제반 기술수준도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 측면에는 관료주의, 행정지연, 뇌물수수 관행 등이 만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체로 거래관계에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중시하므로 평소 바이어와의 친분을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소한 이해관계로 대립하기보다는 천천히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들은 바이어와의 교신에서 신속하게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관심이 없거나 성실치 못하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으나 과테말라인은 한국인처럼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회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이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도 필요하겠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차별적 대우는 없으나 보통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대금결제 능력검증, 자본금 납부여부, 재무제표의 제출, 철수 전 의무사항 이행각서, 현지 대표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허가 기간이 내국기업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일처리 습관이나 태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관공서의 일처리 속도는 느린 것이 일반적이며 현지인들도 일처리가 늦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원서류는 약 5일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서류의 경우에는 최소 30일에서 60일까지 걸린다.

등기소에 서류를 등기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도 5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세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2일 내에 통관을 원칙으로 하지만 서류상의 하자나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된다. 서류의 공증은 약 5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된다.

경제부 산하에 투자전담 단일창구[69]를 설치하여 과거 행정상 관료주의,

복잡한 서류절차 및 구비서류 양식 등으로 외국인 투자등록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었던 투자관련 제반절차를 One-stop Service 형태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기업의 진출 형태별 절차

과테말라 상법상 구분

1) 국내기업

기업형태	투자자수	최소 자본금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상호표기
합명회사 (Sociead Colectiva)	2인 이상	없음	○모든 출자사원이 회사채권에 대해 무한 책임 및 연대 책임	Y Compania Sociedad Colectiva (약어 y Cia S.C)
유한회사 (Sociedad Responsabilidad Limitada)	최소 2인 (20인 이하)	없음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	Y Compania Limitada (약어 Ltda./Cia.Ltda)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최소 2인	Q 5,000	○주식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Sociedad Annonima (약어 S.A.)
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최소 2인	없음	○무한책임사원70: 무한 책임, 연대 책임 ○유한책임사원71: 출자액 범위내에서만 책임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약어 y Cia.S. en C.)
합자주식회사 (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최소 2인	없음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 연대책임 ○유한책임사원: 주식출자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주식회사처럼 주식 소유)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en Acciones (약어로 y Cia.,S.C.A)
개인회사 (Empresa Individual)	1인(소유주)	Q 2,000	o 소유주가 무한책임	제한 없음

69_ Ventanilla Unica de Inversion
70_ Comanditados
71_ Comanditarios

2) 외국기업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국내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을 설립하는 대신 외국기업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과테말라 상법이 정한 제반 조건(상법 215조)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Branch Office나 Agency 등의 구별이 따로 없다.

외국 기업이 대표자를 과테말라인으로 임명할 경우 최소 자본액 5,000 께찰로 과테말라 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하며 투자보증금을 50,000달러 예치해야 한다. 동 투자보증금은 투자 철수 시 회수하게 된다.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출국 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면 지사 개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 외국기업 설립 요건(상법 215조): 서류제출 및 증명

- 당해 기업(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명
- 모기업의 정관(변경사항 포함)
- 회사의 적법의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된 과테말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
- 과테말라 대리인 위임장
- 투자보증금 예치 증명서(U$50,000)
- 과테말라 내에서 행해지는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와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 당해 기업, 법적 대표자, 종업원이 과테말라인들이 누리는 권리 이외에 외국기업으로서의 예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또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 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

말라 외교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동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을 하며 관보에 1회 공고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72]되며 등록증[73]을 내준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74]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발표(상법 216조):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에 준하여 재무제표를 발표해야 함

외국기업의 청산(상법 218조):

외국기업이 철수하거나 운영을 중단코자 할 경우에는 상업등기소[75]에 (1)공인회계사가 확인한 회계장부 및 법적대표자가 철수 일자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확인서, (2)과테말라 내에서 체결한 채무 및 사업관계가 완료되거나 보증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72_ Inscripcion Definitiva
73_ Patente
74_ 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
75_ Registro Mercantil

투자 형태별

1) 현지법인: 상기 법상의 합명, 유한, 주식, 합자, 합자주식회사
2) 지사: 상기 법상의 외국기업

투자 형식별

과테말라는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차별 없이 100% 자기자본으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선호형태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U$50,000)예치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과테말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IED)[76] 유입액은 2002~2008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전년대비 20%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8억달러, 2011년 10억달러, 2012년 15억달러로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FDI 유입액 비중은 2% 수준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며 주요 외국인 투자 업종은 제조업, 상업, 농업 및 광업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 과테말라 직접투자는 2009년 연중 4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0만달러, 2011년 5만달러로 급감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35만달러로 증가하였다.

2012.12월 말 누계 기준 대 과테말라 직접투자 규모는 총 78건(투자건수), 1억1,275만달러(투자금액)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이다.

76_ Foreign Direct Investment/Inversion Extranjera Directa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투자절차에 필요한 작성양식은 경제부 산하 외국인 투자 원스톱 서비스 창구[77]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홈페이지: http://www.mineco.gob.gt/RegistrarEmpresa.aspx

1) 국내기업(법인)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상업등기			
가등기	○등기신청서 ○수수료 지급영수증 (Q275+자본금 Q1,000 당 Q6 [최대 Q25,000] +공고비용 Q15) ○회사정관(원본 및 사본)	상업등기소[78]	30~45일
관보 공고	○가등기 이후 관보[79]에 1회 공고	상업등기소	4일
법정 대리인 등록	○법정 대리인 등록 신청서 ○수수료 지급 영수증(Q75) ○법적대표자 임명장	상업등기소	3일
확정등기 및 법인 등록증[80] 발급	○관보 공고 8일 이후에 신청 ○확정등기 신청서 ○관보의 가등기 공고페이지 ○정관 원본 ○법정 대리인 등록증 *등록증 교부시 인지세 Q200 납부	상업등기소	8일
기업등록증 발급	○기업등록증 발급신청서 ○법적대표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록증 사본 ○수수료 지급영수증(Q100)	상업등기소	3일
세금납세자번호 (NIT)[81] 발급	○납세자번호 신청서 ○법적대표자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여권) ○회사 정관 ○법적대표자 증명서 ○회계장부 검인 신청서 ○Invoice 인쇄승인 신청서	국세청(SAT)[82]	1일
계좌개설		시중은행	3일

77_ Ventanilla Agil
78_ Registro Mercantil

2) 외국기업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상업등기			
가등기	○등기신청서 ○수수료 지급영수증 (Q1,275 + 자 본금 Q, 1,000당 Q6+ 공고비용Q15) ○모기업에 대한 상세설명자료 <상법 215조에서 요구하는 문서 첨부> ○당해 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 되었다는 증명 ○모기업의 정관(변경사항 포함) ○회사의 적법의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된 과테말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 ○과테말라 대리인 위임장 ○투자보증금 예치 증명서(U$50,000) ○과테말라 내에서 행해지는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와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당해기업, 법적대표자, 종업원이 과테말라 인들이 누리는 권리 이외에 외국기업 으로서의 예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사업철수 시 법적 요구조건을 준수한다는 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 모든 외국서류는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상업등기소	30~45일
관보 공고	○가등기 이후 관보에 1회 공고	상업등기소	4일
법정 대리인 등록	○법정대리인 등록 신청서 ○수수료 지급영수증(Q75) ○법적대표자 임명장	상업등기소	3일
확정등기 및 법인등록증 발급	* 관보 공고 8일 이후에 신청 ○확정등기 신청서 ○관보의 가등기 공고페이지 ○정관 원본	상업등기소	8일

79_ Diario Oficial
80_ Patente de Empresa
81_ Numero de Identificacion Tributaria
82_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법정 대리인 등록증 * 등록증 교부시 인지세 Q200납부		
기업등록증 발급	○기업등록증 발급신청서 ○법적대표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록증 사본 ○수수료 지급영수증(Q100)	상업등기소	3일
세금납세자번호(NIT) 발급	○납세자번호 신청서 ○법적대표자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여권) ○회사 정관 ○법적대표자 증명서 ○회계장부 검인 신청서 ○Invoice 인쇄승인 신청서	국세청 (SAT)	1일
계좌개설		시중은행	3일

3) 국내기업(개인기업)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상업등기 (기업등록증 발급)	○등기신청서 ○수수료 지급영수증(Q100) ○자본금 납입 확인서(Q2,000이상, 국세청등록 공인회계사 서명) ○신분증 원본 * 기업등록증 교부 시 인지세 Q50 납부	상업등기소	3일
세금납세자번호 (NIT) 발급	○납세자번호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여권) ○과테말라 체류신분 확인증(외국인인 경우) ○회계장부 검인 신청서 ○Invoice 인쇄승인 신청서	국세청 (SAT)	1일
계좌개설		시중은행	3일

4) 변호사 비용

국내기업 회사설립 비용(변호사비용 + 각종 수속비)은 주식회사 설립 시 보통 U$2,000~2,500정도이며 개인 기업 설립 시 U$700~1,000정도 소요된다.

국산화 의무 부과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특별히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미 원산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생산가 기준으로 35% 이상이거나 또는 역내국에서 생산된 부자재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이어야 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과테말라 정부는 관세 환급 제도 또는 보세통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수출활동진흥법[83] 등 특별법으로 보호 받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한 특례조항조치로 적용되고 있다.

수출활동진흥법상 수혜대상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뿐만 아니라 임시통관 시,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1년간 관세유예를 받는다. 1년 후 수출을 못할 경우 관세를 부과해야 하나 1차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부동산 취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소유인 강, 바다, 국경지역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를 불허하고 있다.

금융제도 현황 및 금융상의 제한

과테말라는 1980년대 말부터 금융부문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형적으로는 금융업이 급성장하였으나 취약한 자본구조 및 높은 대출

83_ 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a y Maquila(Decreto 29~89)

이자율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주로 현지은행 대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단기대출의 경우 기간이 180일로 제한되며 11~15%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중장기 대출은 대부분 수차례 단기대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중장기대출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989년 환율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은행 간 거래, 세금, 관세 산정 등의 목적으로 일일 고시환율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2009년 통화당국은 경기 진작을 위해 정책 금리[84]를 연초 7.0%에서 4.5%까지 인하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5.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2012.6월에 5%로 한 차례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5%를 유지하고 있다.

1993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과실송금 등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과테말라 금융통화위원회가 불법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외환거래규정[85]을 2010.10.13일 개정하여(2011.1.1일 발효)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외화 현금의 은행예치를 1개월 내 3천불 이하(또는 상당액)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3천불 이상 입금 시 1)자금출처 합법성 및 투명성 확인서류, 2)입금자(기업)가 외화현금을 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미국은행을 경유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이 경우 개설 시까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84_ Tasa Lider
85_ Reglamento de Negociacion de Divisas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상의 제한

순수익의 31% 또는 총수입의 5% 중 택일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며 아래와 같이 세율이 변화될 예정이다.

○ 순수익 방식: 31% → 28%(2013년) → 25%(2014년)
○ 총수입 방식: 5% → 6%(2013년) → 7%(2014년)

한편 2012년 조세부담률은 11%로 현 Otto Perez 정부는 2014년까지 조세부담률을 12.6%로 증가시키기 위해 세수확보대책을 수립중이다. 세수 확대 방법으로는 법인소득세 인상, 단결세 인상, 인지세 인상, 이동통신세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직범죄 및 부정부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득세 회피율이 63.7%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불법행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에 환수하는 불법재산 환수법(일명 反마피아법)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과테말라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의류봉제 수출기업으로 과테말라 수출활동진흥법(29~89)에 따라 10년간 법인 소득세를 면제받아 왔으며 2016년부터는 면세혜택이 없다. 따라서 향후 업계에서는 동 혜택의 적용연장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제도의 도입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반제품 등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이중과세 소지는 없다. 다만 법인소득세 면제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회사 설립 후 10년이 지나면 회사 신규설립 절차를 거쳐 혜택을 연장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업계에서는 인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도미니카 등과 같이 소득세 영구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상위법인 상법에 저촉되므로 영구면세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율부과 사례는 없으나 세금특혜를 받는 수출기업에 대해 일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이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류를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및 급여인상분 지급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개인에게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또한 회사 설립 이후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노동제도 현황 및 장벽

과테말라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었으나 2000.3월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6개월마다 경제상황을 검토하여 임금을 재조정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급상승하고 있다. 2012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6.8% 상승하였으며 2009년 이후 최저 임금의 연평균 상승률은 약 9.5%를 기록하고 있다. 2013.1월 기준 법정 최저 임금은 1일(8시간 근무기준) 71.4께찰(9.1달러)이며, 보세 가공업의 경우에는 65.6께찰(8.4달러)이다. 2014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 인상되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보세 가공 69.8께찰(9.2달러)이다.

한편 공식통계는 없으나 노조 결성률은 10% 정도로 추정되며 노조 설립을 위한 정부 승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공공 부문에는 비교적 노조가 많이 결성되어 있으며 최근 민간 부문에도 노조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 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경쟁정책

과테말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말라 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분야, TV방송 등이며 가솔린,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배 등은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항, 항구, 원유 및 가스탐사 분야 등이 민영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2007.7월 양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2007.10.4 발효)에 따라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단기 사증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지에서 체류기한을 연장하려면 과테말라 이민청[86]의 외국인국[87]에 가야 한다.

장기간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다시 기한 2년짜리의 임시체류[88]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서류는 출생증명서, 본국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과기록표[89]인데 전과기록표는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또는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통상 소요기간은 1달 정도이다.

5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거나 과테말라에 거주할 경우에는 영주권[90]을 신청한다. 이 경우는 과테말라 신분증(DPI)[91]을 취득하게 되며 과테말

86_ Direccion General de Immigracion
87_ Departamento de Extranjeria
88_ Residencia Temporal
89_ Antecedentes Policiacos
90_ Residencia Permanente

라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게 된다. 과테말라 내에 2년 이상 임시체류비자를 받고 거주한 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필요서류는 상기 임시체류증 신청과 동일하다. 통상 심사 후 발급까지는 5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소지 비자 기한 만료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운전면허관련 과테말라 정부는 2005.6.6일부터 외국인이 소지한 외국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는 90일 동안만 가능하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에는 과테말라 임시운전면허증(1년 유효, 연장 가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과테말라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조직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절도, 강도, 유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 운영 공장에 침입하여 귀중품을 절도하거나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빼돌리는 등의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이 취약하여 각종 소비재 및 산업용 자본재,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자본가 계층의 제조업부문 투자기피현상이 뚜렷하고 유통분야에 집중하거나 환금성, 자본회전이 빠른 소비재 생산 또는 수입, 판매업 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원자재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의 경우도 규모의 생산성문제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1994년 NAFTA 발효 이후 공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카리브국들은 미국에 대해 멕시코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NAFTA PARITY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2000.5월 중미·카리브 강화법안이 통과되어 2000.

91_ Documento Personal de Identificacion

10.1일부터 중미·카리브지역무역협력법(CBTPA)이 시행되어 섬유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06년 미국-중미 FTA(CAFTA-DR) 체결로 인해 과테말라 봉제업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으나, 동 협정의 원산지 규정, 현지 고임금 및 고가 전기료 등으로 인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산가공 여건 면에서는 공장입지, 노동력 등에서는 여타국 인근 중미 카리브국보다 유리하나, 치안상태가 불안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도 낮아 행정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노동자들의 경우는 문맹이 많고 기술습득 수준이 낮아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내를 갖고 교육과 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국토면적(130,373㎢ 한반도 3/5 크기)이 중미지역 최대이고, 인구는 610만명으로 중미에서 3번째 인구규모를 가진 국가로서, 경제규모(2013년 GDP 112억불)에서 아이티 다음으로 중남미지역내 최빈국이다. 1980년대 내란과 경제혼란의 시기를 거쳐 2012년 출범한 Daniel Ortega 3기 정부는 사회주의를 국정이념으로 포용적 민주주의(inclusive democracy)를 추진중이며 안정적 국내정세는 경제성장과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1]

니카라과는 1991년 자유시장 경제개혁(교역·환율·투자제도 자유화 포함)을 단행한 이래, 대외개방[2](WTO 가입, 다자적·양자적 FTA 체결 등)과 해외투자 유치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니카라과의 주요 산업은 농목축업으로서, 커피, 소고기, 설탕, 금 등이 니카라과 수출을 주도하고 있고(2013 전체 수출의 39%), 외국 투자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자유무역공단(Zonas Francas)의 마낄라 산업(중남미 지역의 조립가공무역)도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2013 전

1_ *Guia del Inversionista en Nicaragua 2013*, PRONicaragua, 2013

2_ 2012.10월 현재 니카라과가 체결한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
- 중미공동시장(CACM):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ALBA 무역협정(ALBA-TCP):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도미니카 등
- CAFTA-DR: 미국,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 Acuerdo de Asociacion(AdA): EU,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 양자 FTA: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나마, 멕시코, 대만

체 수출의 23%). 니카라과는 2013년 중미지역에서 높은 경제성장(2013년 4.6%)을 유지하였다.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치안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어,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Economist지가 조사한 2013 Security Risk Report 따르면,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 파나마에 이어 치안양호지수가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UNDP의 2013~2014 중남미 살인발생율 조사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인구 10만명당 8.7명에 불과하여, 중미지역에서 살인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국가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니카라과는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만성적인 무역 및 재정 적자, 과도한 공공채무(2013 GDP 대비 49.7%), 높은 대외원조 의존, 열악한 인프라,[3] 과중한 에너지비용(중남미지역내 상위 수준의 유류비 및 전기료) 등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에 주력하는 한편, 사회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SOC, 에너지, 관광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발전계획(PNDH 2012-16) 사업[4]에 따라, 니카라과 대운하 건설,[5] Tumarin 수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한국-니카라과간 교역은 꾸준히 확대 중(2013년 우리 수출 188억불, 수입 24억불)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1.5억불 내외 무역흑자를 기록 중이며,

---

3_ 예컨대, 2012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주재국의 ICT 발전지수는 113위로 중남미지역 중 최하위

4_ 동 계획에 따라, Tumarin 수력발전소(10억불), 정유 재처리 단지(60억불), 재생에너지 전력화(3.8억불), 대운하(500억불), Monkey Point 항만(5억불), 통신위성 구매(3억불) 등의 사업추진 중

5_ Ortega 대통령은 2013.6.14 니카라과 대운하법(Ley 840)을 공표함. '니카라과 대운하관리위원회'가 법적 최고 결정기구이며, 주재국 정부는 대운하 건설 사업의 설계, 개발 및 운용 관리의 전권을 중국계 HKND사에 50년 양도(50년 추가 양도 가능)함. HKND사는 2014. 12월 대운하 사업타당성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첫 착공할 계획임을 발표함.

주로 2차 상품(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고, 1차 상품(커피, 설탕 등)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운용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한-중미 FTA[6] 협상에 참가를 희망하는 등 우리나라와 교역 및 투자 확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내 25개 우리 섬유 및 의류업체가 총 1.5억불을 투자중이며, 현지인 3만5천명을 고용하고, 니카라과 섬유수출액의 약 60%(약 6억불)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니카라과는 현재 양자 투자보장협정(2001.6월 발효)을 체결하여 상대방 국가에서 활동중인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

현재 니카라과는 중남미지역내 우리의 최대 EDCF(경제개발협력기금) 지원대상국(지원 누계 총 1.5억불)이며, 2013.10월 양국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및 2014.3월 발효를 계기로, 양국간 개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니카라과 '수입관세법'(1996/217)과 '중미공동시장'(CACM) 협약(1961)에 따라, 니카라과는 역외 제조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CACM 회원국들과 공동의 역외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95%)에 대해 0~15%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CACM 회원국은 예외 품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섬유 및 의류제품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한다.[7]

6_ 2010년 한-SICA 정상회의 계기에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한-중미 FTA 공동연구를 제안한 이후, 2011.5월 동 공동연구(참가국: 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가 종료되었다.

7_ 2006.4.1일 발효한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는 니카라과에 무관세로 수입되며, 나머지 관세율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거의 모든 미국산 섬유와 의류제품이 무관세 및 수입쿼타 없이

수입부과금

니카라과는 사치성 수입품 일부(여행용품, 카페트 제품, 의류 및 가구 등)에 대해 '선별적 소비세'(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수입품의 CIF 가격에 대해 15% 이내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수입품뿐만 아니라 국내산 사치성 소비재에도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주류와 담배제품에는 소매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15%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며, 그 밖에 수입품의 무게(t)당 0.5불의 통관서비스료(TSIM)가 부과된다. 전시용 수입물품, 영업용 견본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관세 산정 기준

관세 산정 기준은 수입제품의 CIF(원가, 보험, 화물운송료)을 기준으로 종가세 부과가 원칙이다. 니카라과 관세청(Direccion General de Servicios Aduaneros), 중미경제통합 사무국(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세계무역기구 등에서 니카라과의 품목별 수입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통관절차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니카라과 관세청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packing list
② original invoice
③ declaration of invoice authenticity

니카라과에 수입되며, 미국산 농산품의 절반 이상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품(돼지고시,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④ permits issued by Nicaraguan authorities
⑤ certificate of origin

수입업자는 국세청에 납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납세 인식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으면 관세청(법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수입업자에게 월별 재정보증능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단, 니카라과에 원조물품을 보내는 절차는 외교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수입물품이 니카라과 항구에 도착한 후 창고에 보관중인 상태가 2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세관 당국은 동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동 물품이 경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100불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CAFTA-DR('관세행정 및 무역 촉진 조항')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통관 관련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련 세관 조치를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통관된 제품은 즉시 수입되도록 허용하고 신속한 선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중미 통합 관세규약'(Central American Uniform Customs Code)에 따라, 니카라과는 서류 양식, 세관정보의 전자 송부, 관세, 세금 및 각종 수수료의 전자납부 등 세관절차를 회원국들과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당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산정할 때, 'WTO 관세평가협정'상의 기준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지투자 진출 외국기업들은 통관절차상 애로사항으로서 니카라과 관세청의 통관행정 지연, 자의적인 관세 평가, 부패, 정치화, 기술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8] 또한, 니카라과 전국경제인연합회

8_ *Doing Business In Nicaragua: a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S. Companies,* 미국 상무부, 2011.

(COSEP) 회장도 니카라과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불법 압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기업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입규제

니카라과는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국내소비에 필요한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만큼 관세 외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섬유 및 의류, 환경, 노동 등 특정 분야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 할당, 단계적 양허 등 수입제한 내지 금지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국제협약(WTO, CAFTA-DR 등)이나 개별 국내법령에서 이를 상세히 규정한다.

예컨대, '육상운송법'(2005/524)은 운행된 지 10년 이상의 차량은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소방청, 적십자사 및 종교단체에 기증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과, 골동품 차량의 수입은 예외로 한다.

니카라과는 WTO 회원국이므로 WTO협정에 따른 수입 규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safeguard 조치 등)를 취할 수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 관련 장벽

'기술표준 및 품질법'(1996/219)에 따라,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하 '표준품질위원회'는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한다. 상표표시(labeling and marking) 관련 사항은 '소비자보호법'(1994/182) 또는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용 포장식품에 관한 기술표준'(1999/021)에 따라, 모든 포장식품은 상표, 원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그리고 유통 만료일자를 스페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반입될 물품의 경우, 스페인어 외,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도 관행상 표시해야 한다.

식료품 및 음료제품의 수입이 보건부(검역실)에 신고되면 산업통상부(표준실)는 동 제품이 상표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보건부(의약품실)는 의약품이 소매 유통을 위해 스페인어로 상표표시되고, 의약품 사용방법이 분명히 표기될 것을 요구한다. 수입업자는 제품의 견본을 스페인어로 상품표시한 후 관계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니카라과는 '생물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므로, 유전자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 관련 규제

니카라과는 환경 관련 규제를 보건법, 광업법, 임업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비교적 완화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 및 천연자원 통합법'(1996)은 기업과 개인에게 오염을 완화하고 야생지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오염유발자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고, 환경 관련 분쟁을 담당할 '환경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한다. 니카라과에서 환경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기소될 수도 있으며, 대중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장벽

식품 및 음료제품의 통관 관련, 보건부(식품검사실)에서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농산물안전검역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식품이 비포장(bulk) 형태로 니카라과내 반입된 후 상품으로 포장될 경우, 원산지 국가와 니카라과 보건부

(식품검사실)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통관 관련, 보건부(의약품실)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수입업자는 검역등록을 위해 실험실 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485.1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품의 통관 관련, 농림부(동물검역보호국)에서 검역 및 검사를 담당한다. 농림부(농약실)는 농약, 가축치료제 등 농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바이오 제품의 수입허가는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ICT 제품의 통관 관련, 체신청에서 무선통신장비, 케이블 TV장비, 전화교환장비, 상업용 방송장비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액화압축가스 용기의 통관 관련, 소방청(화재예방실)에서 액화가스 및 여타 압축가스 용기와 실린더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소형화기의 통관 관련, 경찰청(소화기 탄약실)에서 소형 화기, 탄약, 폭발물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정책

니카라과는 CAFTA-DR 협정에 따라 일정 금액이나 비율의 수출을 조건으로 수입관세 양허 면제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하나,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약'에 따라 필요시, 관세양허 유예조치는 취할 수 있다.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일단 니카라과 내로 합법적으로 반입된 제품은 현지 제조 물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거래된다. 다만, 니카라과 국민의 보건 위생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당국은 의약품과 가정용 가스 등 의 시장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CAFTA-DR 협약 및 니카라과 국내법에 따라, 현지 등록된 외국기업도 내국민대우를 받고 니카라과 정부조달 경매 등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자격있는 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 동 기업의 국적국가가 발행한 서류를 니카라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반드시 현지에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니카라과 정부 구매 등 입찰에 낙찰되기 위해 가급적 현지에 등록되는 것이 유리하다.

'경쟁촉진법'(2006/601)과 '정부조달법'(2010/737)은 정부계약 입찰에 참가하는 민간기업간 공개경쟁을 유도한다. 동 법은 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입시 예외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니카라과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비당사국이다. 따라서 니카라과의 정부조달 관행 및 정책은 국제표준의 공정무역 및 상거래 관행과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니카라과 당국의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법'(2010/737)이 제정되어 앞으로 니카라과 정부조달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 같은 부정적 관행들이 상당히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니카라과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에 따라, 상표권, 영업비밀, 거래 비밀, 저작권 등을 충분히 보장한다. 니카라과는 지식재산권 관련 다수의 다자적·양자적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해 일련의 관련 입법 개혁을 추진해 왔다.

니카라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제도[9]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

9_ 니카라과의 지재권 관련 주요 법률은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법'(2007/63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2006/577), '위성신호프로그램보호법'(2006/578), '상표권 및 기타 독창적인 표식법'(2006/580), '신품종보호법'(1999/318) 등이

가되나, 관련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당국의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영상 미디어의 불법 복제와 상표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의약품 관련 시험데이터 보호와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10]

서비스 장벽

니카라과는 서비스 분야 관련 외국인의 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내지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과거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 투자 진출이 제한되었던 일부 분야(전기, 통신, 체신서비스, 유류, 에너지, 금융, 보험, 사회보장 서비스 등)에 대해, 니카라과 정부는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또는 WTO, CAFTA- DR 등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민간투자에 개방하거나 해당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2년 이후, 니카라과 정부는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하에 350여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다. 현재 국영기업체는 상하수도 공사(ENACAL), 해운항만청(EPN), 전력배전공사(ENATREL) 등이며, 동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는 금지된다. 반면, 국영기업체이나, 보험공사(INISER), 전력공사(ENEL), 메르세데스 공단, 석유공사(Petronic)에 대한 민간투자는 일부 허용된다. 사회보장연금기금(INSS) 분야에서도 민간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한편, 니카라과가 가입한 지재권 관련 국제협약은 '세계저작권협약'(제네바 1952, 파리1971),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1971),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1974), '국제신품종보호협약'(1978), '무역 관련 지재권 협약'(1995), '파리 산업재산권 보호협약'((1996),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조약'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실연·음반협약'(1996) 등이다.

10_ *Market Reports/Tariffs*, 미국 상무부, August 2012.

투자 인센티브

재생에너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소비재, 컴퓨터 장비, 통신장비 및 서비스, 의료장비, 광학장비, 플라스틱, 농산물, 식품가공, 냉장설비, 건축장비, 밀, 옥수수, 콩기름, 두류 제품, 쌀 등이 니카라과에서 투자 유망분야로 주목받고 있다.[11]

니카라과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중개인이나 기존 유통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니카라과에서 영업활동은 수도인 마나과에 집중되고, 대부분 외국인투자자들은 마나과에 현지 중개인(1인)을 둔다. 현지 변호사를 고용할 것을 권하며, 정식 파트너계약 체결에 앞서 니카라과 현지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좋고, 사업파트너의 신의성실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도 좋다.

분야별 투자 인센티브

'어업 및 양식업법'(2004/489)은 어업 및 양식업에 사용되는 가솔린을 면세해 준다. 다만, 동 분야에서 면세받기 위해 산업통상부(자원국)와 어업청(INPESCA)에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보호 및 지속개발법'(2003/462)에 따라, 임업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와 자본재에 대해 관세, 특별 재산세, 소득세가 면세된다. 다만, 니카라과에서는 임산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동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력발전 진흥법'(2005/531)과 '재생에너지 발전 진흥법'(2005/532)은 전력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산업용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소득세 및 재산세 등 각종 면세혜택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동 분야에 대한 규제수준도 상당한데, 예컨대 일부 하천(Asturias, Apanás, Río Viejo)에서는 수력발전용 댐 건설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금지되며, 여타 하천의 경우에도 30 메가와트급 이상의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_ *Guia del Inversionista en Nicaragua 2013*, PRONicaragua, 2013.

'광산 보호 및 개발 특별법'(2001/387)은 광산개발을 허가받은 투자자에 대해 자본재 수입관세를 면제해 준다. '관광 인센티브법'(2005/575)은 마나과 외 지역에 대한 관광투자(3만불 이상)와 마나과 시내에 대한 관광투자(10만불 이상)를 구분하고 각 10년간 소득세의 80~90%와 재산세를 면세해 준다. '관광법'(2010/724)은 관광 진흥세의 성격으로 호텔 소유주에 대해 투숙객당 0.5불과 객실당 객실료의 2%를 부과한다.

'외국인 은퇴자 및 거류자법'(2009/694)은 주거 목적의 주택을 건축자재, 물품 및 차량 수입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동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 은퇴자 및 거류자는 월 소득이 600~750불에 이르는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유무역공단(Zonas Francas)

141개 기업이 니카라과 전역에 설치된 39개 자유무역공단에서 10.5만여 명의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2013년 총 22억불을 수출하였다.[12] 대부분 자유무역공단은 마나과 및 인근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투자업종이 기존 섬유 및 의류산업(60%) 중심에서 최근에는 농업, 자동차 부품, 콜 센터, 의료기기, 신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출 진흥을 위한 가통관법'과 '조세평등법'에 따라, 수출인센티브와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면세 혜택이 부여되고, '산업수출을 위한 자유무역공단 시행령'(1991/46)에 따라 자유무역공단내 투자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해외송금 면세 포함) 및 영구적으로 일부 면세(수출가공에 필요한 원자재, 기계류 등에 대한 수입관세, 수출세, 재산 이전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지방세, 운송세, 인세, 창업 및 합병세 등)를 부여한다. 자유무역공단관리청(Coporacion de Zonas Francas: CZF)은 자유무역공단을 관리하며, 자유무역공단내 투자하려는 업체는 마지막 급여와 기타 수수료에 대한 보증금을 자유무역공단관

12_ *Datos Claves Conferencia de Prensa*, 자유무역공단관리청, 2013.6월.

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및 수출시 인센티브

'조세평등법'(2009/712)은 수출품의 FOB가격의 1.5%에 대해 세제 혜택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소득세 공제를 허용한다. '수출 촉진을 위한 가통관법'(2001/382)은 변형가공, 수리 및 교체 후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장비, 원자재 등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다만, 동 법에 따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생산품의 25%(금액 기준 최소 5만불)를 수출하여야 한다.

동 법에 따라, 수출용 제품을 현지에서 조립 및 가공하는 기업(소위 '마낄라')은 연간 생산품의 최소 25%를 수출하고 최소 5만불을 해외에 판매할 경우, 자유무역공단과 같은 소득세 면세 혜택은 누릴 수 없지만,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공단에 투자하는 기업과 달리, 자유무역공단 외, 어디든 자유로이 공장(자유무역공단 외, 니카라과 전역에 2013년 현재 47개 공단이 설치 운용중)을 설립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수입 및 유통을 독점하는 국영기업인 ALBA-NISA는 베네수엘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금융특혜를 지원한다.

투자 장벽

'외국인투자촉진법'(2000/344)은 ①내외국인 투자자간 동등한 대우, ②외화자금의 자유로운 반출입, ③외국인 투자자의 니카라과내 자유로운 재산 소유 및 운용, ④니카라과 당국의 수용시 적절한 보상, ⑤완전한 환전 및 투자수익의 반출, ⑥투자금액에 대한 한도 폐지, ⑥외국인의 현지기업 100% 소유, ⑦자본재의 조기 감가상각, ⑧현지 국내은행을 통한 대출 등을 허용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WTO, CAFTA-DR 등 다자적 무역협정과, 한국 등 19개국과 상호 체결한 양자적 투자보장협정을

통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보장한다.

그러나 니카라과 정부가 이념적, 정치적 또는 정책적 목적에서 개입하여 발생한 외국인 투자분쟁의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추어 그 해결이 쉽지 않으며 니카라과내 투자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 제한 분야

니카라과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독과점적 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던 국영기업 일부(예컨대, 통신 분야)에 대한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 참가 허용 조치 이래, 니카라과에서 외국인 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분야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다만, 공공 질서, 공중 보건, 환경 보호 등 정책적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는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법인 설립(지사 및 사무소 설치 포함) 및 활동상의 제한

니카라과 법령은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합명회사(sociedad colectiva),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재단, 조합 등 영업주체의 형태를 폭넓게 인정한다. 따라서 외국회사는 현지 지사, 합작투자, 외국회사 소유의 자회사 또는 여러 형태의 투자방식을 통해 니카라과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니카라과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상법에 따라 등기소(Registro Publico)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 및 영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합법적인 납세자이자 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 설립에 통상 6주 가량 소요되며, 4천불 내외의 등록수수료가 부과된다. 국제금융보고표준(IFRS)과 국제회계표준(IAS)에 따라, 니카라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재무제표를 매년 갖추어야 한다.

니카라과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는 회사 창업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013.8월 투자단일창구(Ventanilla Unica de Inversiones) 사무소를 신설하였다. 동 사무소에는 산업통상부, 등기소(Registro Publico Mercantil de Managua), 소득청(Direccion General de Ingresos), 마나과시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근무하며, 신설 기업 창립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신설 기업 창립절차에 소요기간은 평균 25일이며, 향후 15일까지 단축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투자단일창구 사무소 연락처
- 주소: Colonia Los Robles, de la Gasolinera UNO Plaza el Sol 1 1/2 cuadra al sur
- 전화: + 505 2277-3860, 3871, 9820

회사의 국적, 주주의 국적, 회사의 운영 형태 및 방식에 관계없이,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은 없으며, 따라서 외국인 임직원이 현지 영주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보다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투자자는 니카라과 이민청으로부터 거류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 및 토지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활동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감정을 신청하고, 환경관리를 위한 적정한 계획의 수립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유무역공단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유무역공단관리청에 투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기술이전의 의무

니카라과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투자할 때 라이센스 계약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약 내용이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기술이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

부과 외,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 해외송금, 환전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니카라과는 외국인에게도 현지인과 동일한 부동산 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대차하고자 하는 외국자본 소유의 현지기업이나 외국계 회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없다. '자본시장법'(2006/587)이 동산 및 부동산 관련 사항을 규율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니카라과에서 재산권 관련 다수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니카라과 정부는 28,000여 건의 외국인 부동산에 대해 몰수 조치를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수천명의 개인들이 니카라과정부에 대해 보상이나 재산 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동산 등록제도가 미비하여 부동산 관련 기록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2009년과 2010년 Ortega 대통령이 민간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자들을 퇴거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불법토지 점유 관련 분쟁신고가 급증한 바 있다.

따라서 니카라과내 부동산 구입에 관심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선 현지 법률전문가로부터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2000/344)과 '은행, 비금융중계 및 금융기관법'(2005/ 561)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관련 자금을 자유로이 환전 및 해외송금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산업통상부에 신고하여야 한다.[13]

13_ '은행금융기관감독원'(SIBOIF)이 현지 금융거래를 관리감독한다. '은행 및 금융감독기관법'(2006/576), '은행, 금융기관, 비금융중개기관 및 은행대기업 통합법'(2005/561), '예금보증인제도법'(2005/551)이 금융시장을 규율하며, '금융

현지 금융기관도 자유로이 환전 등 외환을 취급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은행계좌를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으나 개설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현지은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투자 위험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해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경향이 있다.

1990년대 이래 니카라과 정부는 국책은행들에 대한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외국계 은행은 100% 지분을 소유한 지점을 니카라과내 설립·운용할 수 있으며, 미국 등 외국계 은행들은 주로 현지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니카라과에 진출한다.

니카라과의 공식환율은 미달러 대비 현지 통화(córdoba)를 연 5% 평가절하는 평가조정 고정환율제도(crawling peg)에 따라 니카라과 중앙은행(BCN)이 일일 단위로 조정한다.

니카라과는 'WTO 금융서비스협정'의 당사국이나, 모든 자산과 증권의 관리를 동 협정의 양허대상에 포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니카라과 금융자본시장이 아직 초기 발전단계에 있다는 점, 금융사기 및 배임횡령 등 금융부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제재가 미약하다는 점, 정치권 등 비금융부문으로부터 외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니카라과의 금융분야에서 개선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14]

기관예금보증인기금'(FOGADE)은 예금한 개인 및 기관당 1만불을 보증해 줄 수 있다.

14_ 니카라과 미소금융기관(19개 기관이 총 2.5억불의 자산 운용중)은 현지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자금공급원이다. 그러나 2008.7월 Ortega 대통령이 미소금융대출의 상환을 중지하고 이들의 고금리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고, 곧이어 소위 '상환거부 운동'이 전개되어 니카라과 미소금융부문에 큰 타격을 주었다. 더욱이 2010.2월 니카라과 국회는 국내외로부터 비판을 받은 '상환유예법'(2010/716)을 제정하고 미소금융업체들에 대해 대출금리를 16%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세제상의 제한

니카라과는 경제활동에 있어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세제상에서도 외국기업을 특별히 차별하지 않으며, 내국인 및 기업과 동일하게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다.

'조세평등법'에 따라, 경제활동 주체의 국적, 소득원의 성격 등에 관계없이, 니카라과 영토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니카라과에 영구사업장[15]을 가진 모든 기업(단, 자유무역공단 제외)은 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개인의 경우 3만불 이상의 소득에 대해 3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모든 순수입의 30%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해외 송금시에도 소득세가 원천과세된다.

니카라과 비거주자에 지불되는 특허료,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예컨대 니카라과 비거주자에게 지불되는 특허권사용료의 21%, 니카라과 비거주자 또는 비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이자소득의 10%, 비거주 기관에 지불되는 기술서비스료의 10.5%, 비거주 개인에게 지불되는 기술서비스료의 20%에 대해 각각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0.8-1.0%의 부동산세를 부과하며, 부동산 매매시 4%의 부동산 거래세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2%의 등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모든 재화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업은 근로자 급여의 16%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5_ 영구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표준 관련, 니카라과는 OECD 기준과 달리, 사실상 니카라과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니카라과 세법은 조세회피 조항(safe harbor provision)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투자분쟁 해결제도 및 절차

'조정 및 중재법'(2005/540)은 외국인의 투자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 협약'과 '뉴욕 협약'의 가입국이다.

그러나 실제로 니카라과에서 상업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이 니카라과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니카라과의 사법체계는 복잡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법원조직이 부패하여 정치적 외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상행위 관련 다수의 법규와 파산법이 존재하지만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16]

니카라과 법원은 공식조사와 집행소송을 기간의 제한없이 진행하기 위해 'amparos'라 불리는 가처분금지명령제도를 빈번히 발급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관련 분쟁의 해결이 한층 지체될 수도 있다.

경쟁정책

'경쟁촉진법'(2006/601)은 니카라과내 경쟁문화를 양성하고, 경쟁 제한적 관행을 예방, 금지 및 제재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주체들간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니카라과 시장에 경쟁 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행위는 비록 니카라과 역외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경쟁진흥청'(PROCOMPETENCIA)은 현지 시장내 경쟁 제한적 활동을 조사하는 독립기관이다.

16_ *National Report: Nicaragua*, USAID, 2011.

다만, 경쟁촉진법이 명백히 금지하지 않는 한, ①지식재산권의 행사, ② 생산 및 경제활동 촉진, 기술표준, 기술개발 및 환경 보호 목적의 행위 일부, ③고용주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④시장에 경쟁 제한적 영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제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 수출 진흥 목적의 상업적 협약, ⑤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니카라과 정부가 취하는 조치 등은 동 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경쟁촉진법 외, 헌법(99조, 104조, 105조 등)은 경쟁 제한적 관행을 금지하고 경제 효율성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을 규정하며, 기타 다수의 법률(상표법, 은행감독법, 통신법, 석유유통법, 전력산업법, 에너지 청조직법, 소비자보호법 등)에서도 경쟁정책을 일부 규정한다.

2000년대 이후 국가적 독과점 대상이었던 일부 산업에 대한 민영화와 민간투자 개방이 진행중이고, 특히 2009년 경쟁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경쟁 제한적 관행을 시정하려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의 경쟁 관련 법과 정책은 현재 초기단계에 있고, 효과적인 법 집행 및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국가로부터 독과점적 내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거대 국영기업체 다수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니카라과의 경쟁정책은 앞으로 개선사항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17]

노무 및 노동정책

니카라과는 헌법상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국가인 만큼 주요 8개 ILO 국제협약을 모두 비준하였고, 노동고용 관계 법령을 중요한 법률 중 하나로 인식한다.[18] '헌법'(1987)과 '노동법'(1996)은 모든 노동자에

17_ *Paper done by Anudeepa Nair of CUTS*, 2006.

18_ 니카라과의 공식 실업률은 6-8%(불완전고용 50-70%)에 이르며, 농촌지역의 미숙련 노동력이 저렴하고 풍부한 편이나 대부분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계은행은 니카라과 인구의

대해 최소한의 자유와 존엄성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고용주는 노동자와 노무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노동규정(근로내규)을 마련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 동 내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니카라과 노동자들은 근로내규 하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 근로내규에는 고용주가 특별히 마련한 근로조건 외,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근로조건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법'은 관리직을 제외한 노동자의 90%가 니카라과 국민일 것을 요구한다. '예술가 보호 및 예술표현 진흥법'(1996/215)은 외국인 투자자는 전체 생산비용의 5%를 문화발전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예술 보조인력의 10%를 의무적으로 니카라과 국민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CAFTA- DR 등 일부 무역협정은 동 조항의 면제를 규정하기도 한다.

니카라과 헌법은 일일 8시간의 표준근로시간과 주당 6일 48시간의 표준근로일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최소 고용연령은 14세이고, 14세~16세 사이의 아동노동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용법령은 '임의해고'(at-will employment)란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고용주는 노동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19]가 있을 때 노동자를 해고만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노동자는 무급휴가와 현재 급여 등 일부만 수령할 수 있다.

경영계, 정부 그리고 노동계는 법정 최저임금 책정을 위해 협의하고 그 결과는 국회에서 추인된다. 업종별 최저임금기준은 상이하며 6개월마다 재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평균 15% 상승하였으며, 특히 자유무역지대에서는 8~12% 상승하였다. 최저임금 규정은 공공

46%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며, 특히 15%는 절대 빈곤상태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9_ ①고용주와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②회사에 대한 범죄행위 및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행위, ③작업장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④고용주의 영업비밀 누설, ⑤3일 이상 무단 결근, ⑥고용주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

부문에서 제대로 준수될 뿐, 초과근무 수당 지급, 과도한 근로시간 외 근무 금지 등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근로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법은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노조결성권을 부여한다. 법률상 고용주는 노동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를 재고용해야 하나, 법 집행력이 미미하여 사실상, 고용주들은 법적인 해고수당을 더 얹어 주는 조건으로 노조 관련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법은 단체교섭권과 복수노조 설립권, 복수노조 가입권 그리고 파업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노사쟁의조정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소요됨에 따라, 대부분 파업은 불법파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정치노선에 따라 노조들이 분열되는 경우도 있다.

기타 장벽

이민법

니카라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이민청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취업비자를 취득하는데 3~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투자자의 경우, 거류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니카라과 비자면제 대상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관광 목적의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2013년부터 시행중인 개정 이민법에 따라, 거류비자를 신청할 경우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인프라 상황

니카라과내 교통망, 통신망 및 항만 등의 취약한 인프라는 현지 투자비용을 높이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20] 또한, 연간 천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하는 니카라과는 주요 발전용 에너지를 대부분 베네수엘라에서 수입

(91%) 하고 있고, 소비시장 협소 및 저장시설 부족 등으로 유류비가 중미에서 2번째로 비싸다. 아울러, 전력인프라 취약으로 전기료도 중미에서 가장 비싸다.[21]

사법환경

니카라과의 사법환경은 중남미지역내에서도 열악한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은 사법제도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부패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규제당국이 자의적이고 방만하며, 법률절차가 너무 느리고 때로는 편파적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행정당국 또는 현지 사업파트너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과 절차가 미비한 만큼 사소한 분쟁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규제제도의 투명성

니카라과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련의 행정조치와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절차 및 서비스간소화 법'(2009/691)은 창업 절차 간소화를 규정하고, '경쟁촉진법'(2006/601)은 가격 담합, 영업구역 분할, 독점적 거래, 상품 끼워팔기 등 경쟁 제한적 영업관행을 조사할 수 있는 경쟁진흥청을 설립하고 2010년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전자서명법'(2010/729)은 기업과 정부의 거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기술실)에서 전자서명의 인증업무를 담당한다.

20_ 니카라과정부는 취약한 물류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니카라과 대운하 건설(500억불), Monkey Point 항만 및 태평양-카리브해간 dry canal 건설(도로 및 철로망)(5억불), 통신위성 구매(3억불) 등을 추진중이다.

21_ 전력난 등 에너지수급 문제, 원유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문제 등 해소를 위해 니카라과 정부는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Humano 2012-16) 등에 따라, Tumarin 수력발전소(11억불), 태평양 연안 정유공장(60억불), 재생에너지 전력화(PNESER)(3.8억불), 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풍력) 개발 사업 등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니카라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보고서'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정부규제의 품질면에서 열악한 국가군에 속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니카라과 규제당국의 자의적이고 방만하고 편파적인 법적용 관행을 지적한다. 투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제도가 부족한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니카라과의 대외경쟁력 제약 요소

세계 주요 기구들이 조사하는 사업환경, 부패지수, 경쟁력지수 등에서 니카라과는 하위에 머물고 있다.

세계은행(WB)의 2015 Doing Business 평가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119위(183개 평가대상국)를 차지하였다. 비록 2014 지수(124위) 와 비교시 소폭 상승했으나, 중미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2013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공공분야 부패인지도에서 127위(175개 조사대상국)를 차지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의 2014-2015년도 세계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의 세계경쟁력은 하위(조사대상 144개국 중 99위, 중미지역 국가 중 최저)로 평가되었으나, 점차 개선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2]

니카라과의 국내외 정치상황

니카라과의 현 정치여건에 대해 미국, 유럽 선진국들은 현지 투자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니카라과 고위인사들의 미국 및 서구와 자본주의,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적 발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중 하나로

22_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주재국의 2014-15년 세계경쟁력지수는 전체 조사대상국중 99위인 바, 2012년 108위로 중남미지역 최하위였으나, 최근 수년간 꾸준히 순위가 상승중이다.

지적된다.[23]

Ortega 대통령은 경제권한을 정부와 민간부분간 양분시키는 혼합경제 개념을 도입하고, ALBA 동맹을 통해 베네주엘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24]

23_ 2008년 이래 Ortega 정부의 부정불법 선거 의혹 가능성을 미국, 유럽 등에서 지속 제기하여 온 바, 2011.11월 니카라과 대선 이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니카라과 주재 자국 대사관을 철수하였거나, 일부 유럽국가는 니카라과 원조 규모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4_ 미국은 현재 니카라과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며, 미국정부는 니카라과 경제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가지 제도(섬유류 Tariff Preferential Level, Property Waiver, Transparency Waiver)를 운영중이다.

- 대미 수출용 섬유류 특혜관세(TPL): 미국은 CAFTA-DR 협정에 따라, 니카라과산 섬유 및 의류 수출품에 대해 미국내 수입시 무관세를 부과하나, TPL이 2014년말 만료 예정임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 및 업계는 연장을 위해 노력중이다.
- Transparency Waiver: 미국정부는 수원국이 경제적 자원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의 양자적 원조 및 협력을 법률에 따라 유예해야 한다. 그간 미국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니카라과 자금지원(니카라과 GDP의 7.7%, 세입의 40% 상당)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등 니카라과 정부예산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11년, 2012년에 이어 2013.7월 미국은 TW를 중단하고 예정된 니카라과 원조(3백만불)를 유예하였다.
- Property Waiver: 미국법률은 미국시민의 재산을 몰수한 국가에 대해 미국정부가 IMF, 세계은행, IDB 등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차관 공여에 반대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1980년대 니카라과가 몰수한 미국시민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상문제의 진전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동 조치 집행의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3.7월 미국 정부는 니카라과에 대해 property waiver의 연장(1년)을 결정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대외 수입정책과 관련 교역대상국에 WTO 상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WTO 관세협정에 따른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하여, CARIFORUM을 통해 CARICOM 회원국들과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였고, 중미 CAFTA 5개국과 연계하여 미국과 체결한 FTA(DR-CAFTA)가 2007. 3.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CARIFORUM과 유럽연합(EU)간 경제제휴협정(CARIFORUM-EU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도 2009.1.1 일부로 발효되어 특혜무역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한편,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와도 무역 활성화를 위한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로 일부품목에 대해 관세, 비관세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특별히 수입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2013년 평균 MFN(최혜국대우) 관세는 7.5%로 브라질(13.2%), 베네수엘라(10,6%),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3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입세 10%를 부과한 바 있으나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IMF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수입세 2%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WTO 패널은 동 수입세가 다자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하였고,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를 수

렴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10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수입되는 일부 섬유품목(폴리프로필렌 부대, 직물원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가 WTO에 제소되어 패소한 후 2012.4월 동 상계관세를 철회한바 있으며, 2012.7월 담배수출을 제한한 호주를 WTO에 제소하여 현재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절차상 14년 말까지 호주측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지속적인 시장개방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 분쟁해결,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교역증진 및 시장개방을 위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 장벽

1995.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01.7.1일부로 관세협정에 부합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HS 체계(Nomenclature of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련 제세는 최고 20%의 관세, 10~78% 특별소비세(알코올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등), 18% 부가가치세(ITBIS), 0.4%의 세관서비스 수수료 등 4개 종류가 있다. 관세, 특별소비세 및 세관서비스 수수료는 CIF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수출자유구역(Zona Franca)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전제품 등 24개 특별 품목에 대해서는 WTO의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관리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수입인정가격 기준은 세관당국의 자료 미비와 절차 비투명성으로 인해 신규 제품 및 모델 수입 시 과다한 관세

가 부과되는 등 관련 품목의 교역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수입관련 제세이외에 기타 수입부과금은 없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시 통상 8일이 소요되며, 구비 서류는 총 5가지로 선하증권, 송장, 수출신고서, 포장명세서, 검역증명서 등이다.

한편, 수입 시에는 통상 10일이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화물인도지시서, 세관신고서, 포장명세서, 터미널 화물처리 영수증 등 총 5가지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14년 통관절차 효율성 순위에서 189개 국가 중 33위를 기록하여,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영사송장제도 폐지, 통관업무 표준화 등을 추진중이다. 또한, 2009.12월 우리나라 EDCF 자금으로 구축된 통합세관업무시스템(SIGA)으로 통관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및 신속성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통관절차는 물품명세, 물품가격, 중량, 세번 분류 등에 관한 서류심사, 선적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 과표 설정 및 제세 부과, 세금 납부, 항만창고료 납부 등으로 이루어진다.

통관은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소정 통관신고서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업무관세시스템(SIGA)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통관 부대서류들도 스캔 파일로 DUA(단일통관신고서)에 첨부하여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다. 인터넷 제출을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한편 1987.9.29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512호에 의거 수출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했는데, 여러 차례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되어 오다가 2006.7월부터 완전 폐지되었다.

수입통관 관련 비관세 장벽중 하나로 현재 한국산 중고차가 대거 수입되고 있는데 13년 기준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계기로 주재국 세관에서는 수입관세 부과 기준 과표 기준을 차종별로 평균 2배정도 인상하였다. 이는 그동안 수입중고차의 언더벨류 인보이스 가격을 정상화 하기 위한 주재국 관세청의 조치로 이해되나 한국산 중고차 수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규정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며, CARICOM, 중미공동시장(CACM), 미국(DR-CAFTA) 및 EU(CARIFORUM-EU EPA)와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 상 나타난 도미니카공화국 특혜관세 체계는 DR-CAFTA, SGP(GSP), Cotonou(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들과 더불어 EU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entroamerica(CACM), TLCaricom, AAPP(파나마), CBTPA(CBI)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CARIFORUM-EU EPA는 기존의 FTA와는 다른 불균형 협정으로 선진국 연합체인 EU가 개도국 연합체인 CARIFORUM(CARICOM 14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해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개발원조를 통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의 성격도 가미된 경제 파트너십협정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카리브산 제품의 대 EU 시장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설탕, 바나나, 럼주, 담배 등 전통 품목의 수출 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CARIFORUM-EU EPA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은 대 EU 시장 진출을 위한 섬유의류 및 신발, 의약품 등 생산 수출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

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 규정의 대폭 완화로 원자재 확보가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일반적인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입규제

안전,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 및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련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 된 중고차와 오토바이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73.1.3일 법률 제458호를 통해 중고 의류제품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98.3.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는 폐지되었으나 일부 농산물, 무기, 화약류, 육류, 약품류, 설탕 등 수입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관행 및 긴급수입제한과 관련 2001.12.11일 법규를 제정한 이후 동 법규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2010년 중미산 26개 제품에 대하여 30-40%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역시 중미산 폴리프로필렌 포장재에 대해 국내산업 보호를 이유로 38%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도미니카공화국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결국 2012.4월 세이프가드를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2011.6월에는 터키산 철강제품에 대해서 덤핑판정을 내려 14%

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2011년 이후 5년동안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공부 산하에 의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무역위원회 등 무역 관련 규범을 제정하고 심사하는 법적 제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 및 위생 및 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위원회 등에 다수의 통보조치를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96년 제1차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2002년 및 2008년에 TPRM에 따라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 받은 바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수출 관련 정책

2014년 9월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촉진을 위해 55개의 수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3개가 줄어 들었다. 자유무역구역법(법률 제8-90호)에 따라 입주기업에 소득세, 법인 설립 관련 차관계약 및 부동산 이전에 따른 세금, 회사설립 및 자본금 증액에 따른 세금, 지방정부세, 수출자유무역구역으로 반입하는 원자재, 장비, 건설장비, 사무용품 등에 대한 수입세 및 관세, 수출 및 재수출세, 공업 재화 및 서비스 이전세(ITBIS),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비 수입세, 업무용 차량의 수입세 등 다양한 관세 및 세금 면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에는 섬유(109), 서비스(73), 담배(64), 농산품(52), 콜센터(51), 유통(45), 의약품(26), 전기·전자제품(24), 제지·인쇄(22), 신발(21), 금속(18), 보석(17), 플라스틱(11), 건설(11), 화학제품(8), 주류(8), 가죽제품(5), 식품(3), 기타(36) 등 다양한 분야의 총 604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약 14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 운영 주체는 민영이 63%, 공영이 28%, 혼합형이 5.7%로

운영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의 수출은 2009년 12.9% 감소하였으며, 특히 섬유업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31.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0년에 11.2% 성장을 보인 데 이어 2011년도에는 15.8%, 2013년에는 24.8%의 성장률을 기록해 다시 반등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수출자유구역의 총 수출액은 49억불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수출자유구역 이외 일반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1999년 도입하였으나 일부 분야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광산물,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1998.5.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표준과 기술 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차별을 두지는 않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한 두 가지 labeling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2001.2.7일 제정된 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약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체의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공인 ISO, CE 등이 인정되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5.22일 법률 제218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88.5.30일 법률 제50호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0.8.27일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등 가축병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1973.1.3일 법률 제458호는 병균 전염가능성이 있는 중고 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법 준수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장벽

일반적인 비관세 수입장벽은 폐지되었으나 2000.8.18일 제정된 법률 제64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농산품은 고관세, 가격통제정책 등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쌀, 닭고기 등의 품목은 WTO 상의 수입쿼터로 보호받고 있고, 설탕 수입량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5년 이상 된 중고차 및 중고의류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가전제품 수입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 수입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산 자동차 등 중고차 인지도

가 좋은 차량을 중심으로 5년 이상 된 노후중고차에 대한 수입수요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 동 제한규정이 완화된다면 한국산 중고차의 수출이 매우 유리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2012년 세제 개혁을 통해 수입되는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CO2 배기량을 기준으로 새로운 이산화탄소 배출 부과세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로 세금 부과

Co_2 120g 미만-Km, 0%
Co_2 120g 이상, 220g 미만-Km, 1%
Co_2 220g 이상, 380g 미만-Km, 2%
Co_2 380g 이상-Km, 3%
예외-16인승 이상 차종과 트럭

차량 수입 시 수입관세(MFN) 8~20%, 부가가치세 18% 외에 등록세 17%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 보호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2001년 WTO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자유구역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정책의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재연장을 요청하여 최장 2015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수출자유구역 섬유, 의류, 신발류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내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기타 중소기업 수출진흥책, 수출기업에 대

한 기술연구개발 보조 및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1.6월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내수판매를 허용하였다. 기존에는 수출자유구역소재 기업에 관세 및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대신 내수판매는 허용하지 않은 반면, 내수판매를 허용하고 대신 내수판매 수익에 대한 3.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2012년 세제개혁, 법률 253-12)

2007.3월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에서는 농산품 수출보조금 폐지에 합의했으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농산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보조금을 용인키로 하는 한편, 동 보조금 폐지를 위해 다자간 틀 속에서 협력키로 했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 관련 WTO 다자간 협상 가입국이 아니나 2006년 채택된 정부조달법은 상품, 서비스, 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에 따른 차별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정부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 공급자와 합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 발효 전에 미국 측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정부조달 관련 정부계약법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부입찰 시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이 가능토록 하며, 건설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입찰금액 한도를 지정하여 그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금년에는 재화와 용역의 규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의 입찰을 통해 계약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재화	용역	공공 프로젝트
공개경쟁 입찰	RD$3,130,758 이상	RD$3,130,758 이상	RD$230,655,179 이상
제한 입찰	RD$3,075,402 - RD$3,130,758	RD$3,075,402 - RD$3,130,758	RD$96,106,325 - RD$230,655,179
추첨	-	-	RD$57,663,795 - RD$96,106,324.99
견적 비교	RD$576,638 - RD$3,075,402	RD$576,638 - RD$3,075,402402	RD$15,377,012 - RD$57,663,795
소액 구매	RD$76,885 - 576,637.99	RD$76,885 - 576,637.99	-

또한 2012년 법률 543-12를 통해 정부 각 기관은 예산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도록 법제화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도미니카공화국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Universal Convention on Copyrights),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y of Trademark) 등 주요 국제협약 가입국이다.

현행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상표 및 상호법(법률 제1450호), 발명특허법(법률 제4994호), 외국인 투자법(법률 제16호) 등이 적용되며 산업통상부에서는 UN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분산된 법률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발명특허권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법률 제4994호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나 발견, 새로운 물질의 제조방법과 생산 장비, 생산물 등을 개발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소유권으로서,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특정 기간 동안(5, 10, 15년) 생산, 사용, 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가 보호된다. 단 완전히 새롭지 않은 경우와 동 발명이 공중질서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는 무효이며,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사용이 중단된 경우, 그리고 특허권자가 발명품과 유사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는 특허권이 상실된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가진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발명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해외에서의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 및 상호명 등록에 관한 법률 1450호에 따르면, 유사한 특성의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상표는 독특한 단어, 조건,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거나 제3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정의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마크, 로고, 슬로건 등은 판례를 근거로 보호한다.

상표 등록은 상표의 소유권한을 부여하는 것 외에 최초 1년간의 효력을 보호하는 것이나, 최초 1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권리는 무효화된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86호는 모든 형태의 저술, 예술작품과 모든 창작품에 대한 저자의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한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위원회(INDOTEL)는 케이블 신호와 비디오의 불법 복사, 판매, 방송에 관한 단속 기구로 위반물의 압수나 영업정지 명령권을 행사한다.

전반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가 미약한 수준에 있으나, 미국 및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 발효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및 실제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6월 WIPO에 가입하고, 1996년 제1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저작권, 산업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2000.5.10일 법률 제20호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01.11.14일 도하 WTO 각료회의 시 채택된 “무역 및 공공위생 관련지식재산권 협정”(TRIPs 협정)과 2003.8.28일의 Doha 선언 관련 조항 시행 메커니즘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규는 있으나 국민의 인식이 낮고 단속이 철저하지 않아 침해 사례가 많으며, 국제지식재산권협회와 미국 등은 의약품 등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측은 도미니카공화국에 한층 강화된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DR-CAFTA 협정에서 발명특허권은 TRIPs가 정한 최소한의 기간인 현행 20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저작권은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를 일층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사무국(ONDA)을 제도적·경제적으로 확충하여 무단 전송 및 무단 복제 해적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서비스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GATS 160개 분야 중 60개 분야에 양허하였으며, 금융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도 가입하였다. 양허내용에 비해 서비스 개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많은 개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 등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은행 이자율은 2004년 32%까지 인상되었다가 2005년에 23%로 인하되었으며, 2009년 이후 20%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2013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비자 대출 19.13%, 상업 대출 12.57%, 주택 대출 11.86%를 유지하였다.

특히 대외교역과 관련, 1991.1월 환전세 제도를 도입하여 2006.6월까지 13% 고율의 환전세를 부과해 왔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2006.7월 완전 폐지하였다.

현지 관행상 광범위한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적절한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대금 미지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해결에 관한 법적 제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외국보험사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는 외국에 개방하고 있지 않으며, 관광가이드 및 카지노딜러는 반드시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이어야 한다.

투자 장벽

1995.11.20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제16호)은 국내 투자시장 개방 및 외국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자유구역을 통한 수출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세금 및 관세혜택 등으로 입주기업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자유구역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수출의 52%에서 2005년에는 77%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 상반기 기준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1997.2.27일 대통령령 제109호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OPI-RD(투자진흥청)가 설립되면서 제도적인 기반도 완비하였다. 현재 OPI-RD는 수출진흥청인 CEDO PEX와 합쳐져 수출투자진흥청인 CEI-RD로 변화하였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광산, 원유탐사 및 정유, 매스컴, 산림개발 등은 특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를 사전 승인받도록 하여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농업 및 가금류, 광업, 어업, 금융업, 보험업 등은 외국인 주식보유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법률상 외국인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는 분야는 없으나, 정책상 기술이전과 고용효과가 큰 첨단산업 분야인 IT, BT 산업과 물류중심지를 건설하기 위한 운송, 해상보험 분야도 장려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제한 및 투자절차상 제한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과거 사전 투자심사 허가제를 폐지하고 통계유지 차원에서 사전 등록제를 채택,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이 아닌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본 도입 후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된다.

즉,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CNZFE)에 입주심사 신청 및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를 하면 동 위원회가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한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 투자는 현지법인으로서의 절차를 준용하되, 외국기업의 현지지점(사무소)으로 소재지 등록이 필요하다.

1966년 제정된 대리점법(법률 제173호)은 외국회사의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내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대리점 계약은 계약사항의 구체적인 위반이나 공급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만일 공급자에 의한 계약해지 시, 대리점에 대해서 투자자금 및 지출비용 외에 5년간 영업이익을 보상하고 5년 이상 대리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의 10분의 1을 추가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산화의무 부과

국산화의무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수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이 생산품을 국내로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산품의 20%까지는 관련 제세 납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최소 25% 이상의 국산화의무를 충족시키거나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관련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2,000평방피트(S/F) 이하의 토지구입, 국내영업이 허가된 외국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는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임대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계약을 해결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단 내 투자기업 대부분은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자(개인 및 법인)는 과실송금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투자자본의 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순수익을 모두 과실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 납부여부 및 순이익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매우 어렵다. 즉 이자율이 높고, 도미니카공화국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1년 이상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수출자유구역 투자업체는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면제되어 있어 현지금융의 필요성이 다소 덜한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도미니카공화국내 기업은 연간 평균 9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2006년까지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75개로 매우 복잡하였으나 2009년부터 9종류로 축소되었고, 2006년에 시범 실시되었던 온라인 납세시스템이 2009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납부절차가 한결 편리해졌다.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나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의 경우 소득세는 물론 제세 일체가 15년간 면제된다. 또한 아이티 국경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투자기업은 20년간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현행 조세법에 규정된 국세는 소득세(ISR), 공산품과 서비스 유통세(ITBIS),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건축세, 회사설립 및 증자세, 수출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 등이 있다. 단, 수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조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때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수출자유구역 투자업체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했었으나 외국인 투자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현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수출자유구역 투

자진출업체들의 철수 및 폐업이 나타남으로써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정책

경쟁정책과 관련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그 취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법이 2007년 채택되어 2009년 중 발효되었으며 2011.6.29일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2.1월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활동은 주로 공정 경쟁을 통한 국가 경제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해당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헌법 제8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기 및 특정 농산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63.4.27일 제정된 법률 제13호는 기본생필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00.11.1일 제정된 법률 제112호는 산업통상부가 석유류 제품의 지역별 소매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탕도 가격통제 품목 중의 하나이다.

1998년 소비자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에 법제화(법률 제358호)되어 소비자보호원(Proconsumidor)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입국비자 및 체류허가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나, 취업 등 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에 해당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투자를 위해 장기체류를 원하는 투자자는 이민법(법률 제285-04호)에 명시된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를 위한 임시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후 투자체류허가증(유효기간 2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운전면허

도미니카공화국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으로 동 국제협약에 따라 1년간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체류허가(임시체류허가 포함)를 득한 우리국민은 한국운전면허증을 도미니카공화국 면허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개선실적

우리국민은 도미니카공화국 입국 시 외국인에 부과하는 관광입국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멕시코

멕시코는 한국의 수출 11위(97억 달러), 무역흑자 6위(74억 달러)의 교역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이다. 중남미에서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남미 대륙 최초의 한인 이주 및 정착국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POP 등 한류에 열광하는 멕시코인들이 늘면서 양국간 문화교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세계 10위권의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서 UN, OECD, APEC, G20, FEALAC, MIKTA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인권, 안보, 개발, 환경, 노동, 금융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2014년 멕시코 경제동향

금년 5월 중순까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멕시코 재무부, 멕시코 중앙은행 등이 모두 금년 멕시코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1분기 경제지표 성적이 저조하다는 점, 미국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8월 멕시코 중앙은행은 5월에 이어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3.3%에서 2.0~2.8%로 또 다시 하향 조정했다. 한편 2015년 경제성장률은 3.2~4.2%로 유지했다. 멕시코 재무부는 현재 멕시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세제, 통신 등 개혁 성공여부에 따라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실효를 거둔다면 2015년 성장률은 4.7%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3.8%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재무부는 에너지 개혁이 향후 멕시코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금년 2월 5일 멕시코 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A3'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A등급은 무디스 신용등급 가운데 7번째로 높은 등급인데,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칠레와 더불어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국가가 되었다. 무디스는 2013년 멕시코 정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개혁, 방송통신법 개혁 등 경제개혁이 향후 멕시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추후 멕시코의 잠재적 성장 및 재정적 기초체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013년 멕시코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35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2는 127억 달러 대비 178% 증가한 액수다. UNCTAD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맥주 생산업체인 안호이저-부시가 멕시코 맥주 생산업체인 모델로 그룹(Grupo Modelo)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완만한 성장, 멕시코 방송통신 및 에너지 시장 개방, 멕시코 자동차 부품과 항공우주 산업 성장 등을 이유로 추후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멕시코 교역동향

한국의 대 멕시코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수출 97억 27백만 달러, 수입 23억 1백만 달러로 74억 26백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인하는데, 1990년대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품 생산을 위한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이 급증했고, 한

국은 재화의 수입보다는 멕시코 현지에서의 생산 활동을 통해 멕시코 수출 및 고용 창출로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수출 분야에서 2013년에 평판 디스플레이, 승용차 수출이 전년대비 각각 14%, 26% 감소한 반면, 칼라 TV 및 자동차 부품은 각각 84.5%, 8.3% 증가했다. 특히, 멕시코 내 건축구조용 및 라인파이프 수요 증가, 국내 철강업체의 멕시코 내 자동차용 아연강판 공장의 본격적 가동에 따른 원자재 수입수요 증가로 중후판 제품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한국 선박의 대 멕시코 수출도 대규모로 이루어져 6억 2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에서는 전반적으로 기타 금속광물, 아연광, 고철 등 1차 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동차 부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입은 전년동기간 대비 각각 34.3%, 51.3%, 51.5% 증가한 반면, 기타 금속광물, 아연광은 각각 27.1%, 30.0% 감소하였다.

한국기업 투자동향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는 1994년 멕시코의 NAFTA 체결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북미시장 진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미국 진출을 꾀하는 한국 가전기업과 협력업체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는 1억 1천만 명의 소비시장을 가진 멕시코 내수시장 진출, 미국・캐나다 등 NAFTA 권역시장 진출 및 동일 문화권인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968년~2014년 2분기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액은 약 30억 달러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9억 25백만 달러(781건), 광업 13억 62백만 달러(50건), 도소매업 3억 86백만 달러(113건) 등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라 한국 관련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GM 등 다국적기업이 생산설비를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멕시코로 옮기고 있어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의 진출이 늘어났다.

한편, 2014년 8월 기아자동차가 몬테레이(Monterey)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현지 공장을 짓기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년부터 연산 30만대 규모의 소형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인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멕시코는 현지 생산량의 10%까지 무관세 수입쿼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3만대까지 국내 완성차의 멕시코 무관세 수출도 가능해진다.

가전분야의 투자로는 삼성전자가 띠후아나(Tijuana)에 TV 생산공장, 께레따로(Queretaro)에 양문형 냉장고, 프렌치 도어 냉장고 등 고급 냉장고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며, LG전자 또한 멕시칼리(Mexicali) 및 레이노사(Reynosa)에 TV 생산 공장, 몬테레이(Monterey)에 냉장고, 전기오븐, 가스오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건설 플랜트 분야는 KMS(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컨소시엄)가 2008년 5월 CFE(연방전력청)로부터 Manzanillo항에 15만 kl 용량의 LNG 저장탱크 2개와 선박 접안 시설, LNG를 기화해서 송출하는 시설 공사를 수주하여 2011년 9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012년 3월 준공식을 가졌다. KMS에서는 완공 이후 20년간 이 시설들의 운영을 맡아 연간 LNG 380만 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총 운영 매출은 1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철강 업계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OSCO는 뿌에블라(Puebla), 산 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 아구아스 깔리엔테스(Aguas Calientes), 셀라야(Celaya)에 자동차 강판 복합가공 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며, 알타미라(Altamira)시에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 제 2공장을 완공하여 연간 90만 톤을 처리하고 있다.

광물 분야에서도 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산타 로살리아(Santa Rosalia) 인근에 동광 개발부터 정·제련을 포함한 일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1,600개로 추정되고 있다.

멕시코의 시장 특성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큰 국가로 부유층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고가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가격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고품질 제품과 저품질 제품으로 양분화되는데, 고소득층은 가격보다는 제품의 질을 가장 우선시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매를 결정하는 포인트는 브랜드, 디자인, 제품 인지도, 제품의 질, 기능 등이다. 특히 상류층은 전자 및 가전제품,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다수다.

반면, 중·저소득층의 경우 꼭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전자 및 가전제품, 자동차 구매 시 심플한 디자인, 추가 기능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 정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제품 성능이 양호한 제품을 선호한다.

최근 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 중심의 활발한 진출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브랜드 한국상품에 대한 멕시코 수입상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또한 멕시코는 수출입의 7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미국 일변도의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중요한 것은 한국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멕시코 업체들에 대한 자사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멕시코 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외무역시장 개방으로 요약된다.

멕시코는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중남미 주요국 등 전세계 45개국과 14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6월 멕시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을 체결한 바 있다. 4개 국의 총 인구는 2억 1,500만 명이며, 총 GDP는 2조 달러가 넘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 블록이 될 전망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미 5개 국(엘 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과의 단일 FTA를 체결, 2013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테말라에서 4년 이내에 경차, 기계류, 5톤 이하의 버스 등의 관세 철폐, 온두라스, 엘 살바도르에서 10년 이내 상기 제품들의 관세 철폐 등이다. 동 FTA 회원국은 과거 별도 FTA를 통해 모두 시장이 개방된 상태였지만, 앞으로는 모든 회원국을 통합시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멕시코는 과거에는 보호무역정책을 견지하여 왔으나, 1986.9월 GATT 가입과 동시에 자유무역주의로 전환하여 수입관세 인하, 공정가격제도의 폐지, 수입허가품목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1991년 이후에는 수입개방의 여파로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1993.7월 신대외무역법을 공포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쿼터, 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비관세 장벽을 도입한 바 있다.

관세 장벽

멕시코는 1988년부터 8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다.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이나 7자리와 8자리는 멕시코내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상품

분류는 22개의 SECCION과 98개의 CAPITULO로 구성되며, CAPI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FRACCION으로 세분된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의 10단계로 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0%: 서적 등 교육 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마낄라도라(maquiladora, 수출입 가공)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및 반제품
2) 3~5%: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 부품
3) 10~13%: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
4) 15~20%: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5) 23~35%: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

관세는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종가세로 운영된다. 최혜국에 대한 단순평균 관세율은 2007년 11.2%, 2008년 10.4%, 2009년 8.3%, 2010년 5.2%로 낮아지고 있으며, 2001년 16.5%에 비하면 하락폭이 크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마낄라도라(maquiladora) 산업의 경우에는 재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및 기계류의 경우 임시적으로 무관세 수입이 적용되었으나 NAFTA 협정에 의해 2000.12월부로 종료되고, 대신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에 의해 대부분의 품목이 0~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멕시코 의회는 2008.6.20일 멕시코에서 부과하는 대중 반덤핑관세 중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대상 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나머지 204개 민감 품목 대상 관세는 2011년 말까지 점차 인하하기로 한 관세 철폐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에서 2007.12월까지 대중 반덤핑관세를 폐지하기로 중국과 합의했었으나, 2007년 말 이후에도 멕시코 업계 요청에 따라 철폐를 유예해

온 바 있으며, 이에 반발한 중국의 요청으로 2007.12월 이후 6개월간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08.10. 15일까지 반덤핑관세 철폐 품목은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이고, 2011.12.11일까지 반덤핑관세 철폐 품목은 안정기, 양초, 연필, 점화기 등 204개 품목이다.

HS Code 2단위 기준으로 중국의 對멕시코 수출품중 상위 10위를 점하는 품목이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카테고리에는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조치로 인해 한국의 수출에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철폐된 2012년 이후 한국제품의 對멕시코 수출경쟁력이 다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세 인하는 비농산물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멕시코 정부는 2011년 11월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화학 및 농수산물 관련 480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을 공포하였다. 이번 관세 인하방안은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관세인하 정책의 연장선으로 165개 석유화학 제품과 315개 농수산물이 이에 해당된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데, 석유화학 제품이 평균 4.2%→4.0%, 농수산물은 21.7%→14.2%로 인하된다.

2012.11.23일 관세 조정된 주요 제품

적용 관세	주요 제품 (HS Code)
0%	면도기 손잡이(3924.90), 광전지 포함 광선 과민 반도체 제품(8541.40.01), 태양광 전지(8541.40), 광전지 조립 모듈 및 패널(8541.40), 노리 김(1212.21), 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2916.14), 톨루엔 디이소 시아네이트(2929.10), 6-에톡시-1, 2-디하이드로-2, 2.4-트리메틸 퀴놀린(에톡시퀸)(2933.49), 폴리비닐 피롤리딘(3905.99), 석면 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 파이버 시멘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중 기타 항목(6811.89), 면도기 및 면도날 기타(8212.89), 안전 면도날(면도날의 반제품으로서 대상인 것을 포함)(8912.20), 완구류(9503.00)
5%	호밀(1002.10), 파종용 보리(1003.10), 파종용 귀리(1004.10), 옥수수(1005.90), 쇄미(1006.40), 메밀 및 기타 곡물(1008), 동물 사료(2309.90), 에틸렌글리콜(에탄디

적용 관세	주요 제품 (HS Code)
	올)(2905.31), 금속 표면을 위한 조제품을 스트리핑시키는 것:납땜하거나 용접되는 땜접을 위한 융제와 분:금속과 타 제품으로 구성(3810.10), 고무 가황 촉진제(3812.10), 비중이 0.94 미만인 폴리에틸렌(3901.10), 비중이 0.94 이상인 폴리에틸렌(3901.2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3901.30), 폴리에틸렌, 염화되거나 클로로 설폰화 부하 또는 변형자, 또는 안료가 미 포함된 무수말레산 에틸렌 공중합체(3901.90)
6%	발연황산(2807.00), 산화아연(2817.00), 염화칼슘(2827.20), 나트륨황산(2833.11), 코드 2833.25.02의 항목을 제외한 황산동(2833),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2836.30), 탄산칼슘(2836.50), 무기 수은화합물(2852.90), 아크릴산과 그 염(2916.11), 디페닐메탄-4.4-디이소 시안산염(2929.10), 폴리에틸렌 왁스(3404.90), 디페닐메탄 디이소 시안산염과 폴리메틸렌 폴리페닐 아이소 시아네이트의 혼합물(3824.90), 석유, 역청 미네랄을 함유하지 않거나 70% 미만 함유한 바이오디젤 및 혼합물(3826.00), 그을음 없는 폴리프로필렌(3902.10), 그을음 없는 프로필렌 혼성중합체(3902.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3903.30), 스티렌과 디비닐벤젠의 클로로메틸레이티드 공중합체(3903.90), 비 가소성 염화비닐 중합체(3904.21), 비 가소성 염화비닐 수지(3904.22), 에톡실린, 시클로알리파틱 또는 노볼락 에폭시 수지(3907.30), 아디프산과 글리콜의 파생된 폴리에스테르 수지(3907.99), 헥사메틸렌디아민과 도데칸디오익산 폴리머(3908.10), 전자공학용 실리콘계 수지(3910.00), 동량이거나 45%를 초과한 아크릴로니트릴을 함유한 폴리(부타디엔-아크릴로니트릴)(4002.59)
10%	가정용 공구(8419.19), 합성유기 유연제(3202.10.01), 비누를 제외한 유기적 설폰화 생성물, 개선된 탄산염, 칼륨 또는 나트륨의 혼합물(클리너, 습윤제 또는 유화제) 또는 조제품 수산화물 또는 인산염 제품(3402.20), 염기성 접착제(3506.91), 소매용에 적합한 유압 제동액(3819.00), 스티렌 중합체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3915.20)
20%	제 56.02 또는 56.03호로 분류되는 직물제 의류(6210.10), 테니스・농구・체조 등 활동을 위해 고안된 발 등을 덮는 신발(6403.91), 테니스・농구・체조 등 활동을 위해 고안된 끈이 있는 신발(6403.99), 아기 기저귀 및 유사 제품(9619.00), 포도(0806.10), 메밀 및 조(1008.10), 파종용 메밀 및 조(1008.21), 밀(1001.11)

국경지역에 대해서는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수입령'이 적용되는데, 이는 멕시코의 남쪽 및 북쪽 국경지역에서는 육류에서 전자제품에 이르는 총 1,342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며, 393개 품목에는 5%의 저관세를 적용하는 법령이다. 동 법령이 적용되는 주요제품으로는 농·수산물, 향수류, 전자제품, 가구류,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

다양하다. 동 조치는 이전의 국경지역 수입 프로그램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수혜업종으로는 무역업, 서비스업(호텔, 식당, 문화, 레크레이션, 스포츠, 교육, 연구소, 의료업, 임대업) 등을 들 수 있다.

적용지역으로는 바하 깔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바하 깔리포니아수르(Baja California Sur), 치아빠스(Chiapas), 치와와(Chihuahua), 꼬아우일라(Coahuila), 누에보 레온(Nuevo Leon), 와하까(Oaxaca), 소노라(Sonora), 따바스꼬(Tabasco), 따마울리빠스(Tamaulipas), 낀따나로(Quintana Roo) 주이며, 주별로 10~20km 범위의 국경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참고로 멕시코 경제부 사이트(SIAVI)에서 HS CODE별로 FTA 체결국 및 미체결국의 관세 확인이 가능하다. 동 사이트는 업데이트가 늦은 편이므로 DIA 사이트에서 비 FTA 국가에 대한 최근 관세를 재확인해볼 수 있다. DIA 사이트는 스페인어판은 유료이다. 영어판은 관세검색 내용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무료정보인 관계로 FTA 체결국 관세율, 반덤핑 관세 등 상세내역은 제공되지 않는다.

o 경제부 : http://www.economia-snci.gob.mx:8080/siaviWeb/siaviMain.jsp
o DIA : http://www.diaenlinea.com.mx/

통관절차상의 장벽

(1) 수입사전 신고제

1997년 동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이후 동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과 동구산 물품의 저가수입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1998.8월부터 철강, 섬유, 신발, 비료 등 HS 8단위 74개 품목의 아시아 및 동구로부터 수입시 정부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시행하였으나, 2005.11.9일 폐지하였다.

(2) 최저수입가격 고시제

멕시코는 1993.8.4일부터 HS 8단위 기준 72개 품목, 상품수로는 110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동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토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치 않아 불합리한 요소가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출국 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가전제품과 같이 기술개발로 제품 생산가가 수시로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세관당국이 현실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최저수입가격만을 고집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규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금지품목이 없다. 다만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수입허가(padron de importacion)를 얻어야 하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보건부, 농업 및 수자원부, 사회개발부 등의 허가(Permiso) 또는 등록(Aviso)을 요한다.

(1) 완성차 수입제한 철폐와 고관세 유지

멕시코는 1990.1.1일부터 발효된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왔다.

1994.1월 발효된 NAFTA 협정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멕시코는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1.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비 FTA체결국산에 대해 20%라는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對멕시코 직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2000.10월부터 현대자동차와 크라이슬러 간 체결된 전략적 제휴에 따라

크라이슬러사를 통해 Atittude, i10가 수입 판매되었고, 2003년부터 GM을 통해 GM대우의 MATIZ, Creative 등이 멕시코에 수입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014년 7월부터 멕시코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및 체코, 인도 등에서 생산되는 자사 승용차를 멕시코에 직접 판매하고 있다.

(2) 중고차 수입 일부 허용

멕시코내에서는 중고차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1994. 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 제외하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미·멕 국경지대 및 일부州 등지 소재 중고차 거래상들은 동 지역 내 운행용으로 중고 승용차 및 트럭, 버스 등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멕시코는 1994년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단계적(5년씩)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개방 절차를 밟아왔다. 체결 5년 후인 1999년부터 미국-캐나다산 신차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0년 후인 2004년부터는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15년 후인 2009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중고 트럭 및 버스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트럭 및 버스의 경우 계속하여 2년마다 8년, 6년으로 수입 차량 연수를 낮출 예정이다. 이처럼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 보다는 멕시코 내 자동차산업 보호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원산지증명서제도

멕시코 정부는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자 1993.4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산 신발, 섬유 등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원산지가 위조되어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95.1.1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co Ⅲ)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동 조치를 한국 등 WTO 회원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8.3.31일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조치(DECRETO por el que se otorgan facil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고, 동 조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동 조치로 중국산 보복관세 대상 품목과 동일한 상품의 경우도 일반상품과 같이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과 같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반덤핑·상계관세

멕시코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7.28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내생산의 25% 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의한 제소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며 경제부 무역구제본부(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의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제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13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내려야 하며 26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최종판정의 효력은 5년간 지속되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매년 재심이 가능하다.

1992년 이후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와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월부과 중인 반덤핑 건수는 14개국 35품목 44건이다. 반덤핑관세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 14건, 미국 7건, 러시아 4건, 우크라이나 4건, 브라질 4건,

한국 2건, 인도 2건, 그 외 칠레, 프랑스, 일본, 카자흐스탄, 영국, 루마니아, 베네수엘라가 각 1건이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0년 LG를 비롯한 한국산 중소형 냉장고가 반덤핑으로 제소된 이후 2001.6월 예비판정(35.3%의 잠정관세)이 내려졌으나 그 이후 2002.3.8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이 난 바 있다.

2001.6.22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해서는 16.3%의 반덤핑판정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오다가 2007.5.5일 종료되었다.

1993.8.19일에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일몰 심사를 통해 매 5년마다 동 조치를 연장해오고 있다.

한편, 2012.10.1일 UPCI는 멕시코 철강회사인 Terniun사의 신청(7.6)을 받아 들여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조사대상 품목은 도금 코팅을 하지 않은 너비 600mm 이상, 두께 3mm 미만의 한국산 냉연강판(미소둔 강포)이며, 제소기준으로 멕시코 냉연강판 수입량은 2011년 881,879톤이며 이 중 한국산이 425,181톤을 차지하고 있다. UPCI는 양 당사자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2013.6.3일 한국산 포스코 냉연강판에 60.4%, 현대 하이스코 제품에 6.45%라는 고율의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양측간 타협을 통해 수입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보았다.

서비스 교역

해운, 유통,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멕시코 내에서 활동하는데 특별한 제약은 없는 편이나, 인프라구축 등을 위한 국제입찰에는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가의 기업이라는 조건이 부과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규격(NOM) 제도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M: Norma Official Mexicana)는 1992년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묵시적인 수입규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표준규격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할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서 동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강제검사 제도이다.

멕시코 정부는 1994.3월부터 대상품목을 81개에서 2007.12월 기준으로 총 6,600여개 품목에 대해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NOM규정의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규정을 개정할 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런 관보 공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업계의 애로가 크다.

2009.10.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멕시코 국가인증기관인 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와도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멕시코에 특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시험성적서만으로 멕시코 강제인증인 NOM마크 취득이 가능하게 된바,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멕시코표준인증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는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1992년 설립되었으며, 총 85개의 멕시코 표준규정(NOM, NMX)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하여 전국 5개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제부 표준국에 등록된 멕시코 표준규격(NOM)인증기관은 제품에 따라 총 23개이며, 금번 협약에 서명한 ANCE는 이중 가전기기, 오디오 비디오 제품, 정보 사무기기, 전력관련 제품의 NOM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멕시코는 한국처럼 제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즉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APODERADO LEGAL)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하고 평균 700달러의 수임료가 필요하다. 소요기간은 모든 서류 및 샘플이 준비된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검사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고 하나,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검사대상품목이 중고품, 재생품(Reconstruido), 단종품(Discontinuado), 넌스펙품(Fuera de Especificaciones) 등인 경우에는 하자 보완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사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

검사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인증비용 평균 250달러, 시험소 검사비용 평균 325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NOM 미취득시 국내 생산제품은 제조사가, 수입품은 수입상에게 책임이 있으며, 통관보류, 물품 압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벌금부과의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 ANCE는 8개국(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과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타이어 NOM의 경우 1993년부터 NOM의 권리이양을 허용치 않

고 있다. 종전에는 타이어 수출업체가 NOM을 획득한 후 수입업체에 NOM의 권리이양이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각 수입상마다 NOM을 획득하게 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타이어의 NOM을 패턴별로 획득하도록 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상이 10개 패턴 제품을 수입할 경우 1개 패턴 검사비용이 3,000달러이므로 총 30,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1994.10월에는 타이어 NOM 규정을 또 다시 바꾸어 모든 사이즈에 NOM을 얻도록 하고 NOM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허가받도록 하였다.

신발류 라벨링 기준 강화

멕시코 정부는 신발의 불공정거래 및 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8.17일 신발류 라벨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여 1998.10.25일부터 발효하였다. 주요내용은 신발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종전의 스티커식을 고정부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경제부와 소비자보호원(Prefeco)이 공동으로 신발업계가 라벨링을 철저히 부착토록 감시하며, 라벨링이 부착되지 않은 신발의 유입과 불공정 거래, 언더밸류, 덤핑수입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라벨링 부착제도 시행

멕시코 에너지부는 2011.9.11일부터 186개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해 단위시간당 소비전력과 필요할 경우 대기전력을 표기하는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186개 에너지 사용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에너지지속사용가능국가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불이행 또는 라벨링 표시의무 위반 시 매장에서 관련 제품 판매가 제한된다.

환경 관련 규제

멕시코 정부는 1988.1월 종전의 「1982년 연방환경보호법」을 폐기하고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마낄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6월 유해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의 정부조달에 관한 기본정책은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자국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공급자와 국내상품(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국제조약(FTA 등) 하에서 국제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적절한 국내공급자가 없을 때, ③응찰자가 없을 경우 ④국제금융기구(IMF 등) 차관자금에 의해 국제입찰이 규정된 경우, ⑤입찰 참가자가 금융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단지 몇 개의 국내 회사만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부기관에 의한 검토과정에서 국내입찰자의 제시가격이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될 때 외국인에게도 입찰참가를 공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심사 시, 내수시장 최저가와 제출가를

비교, 동일 조건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국내산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 및 미국 측의 압력에 따라 상표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규는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지 않아 불법복제복사물품의 시장유통이 많은 편이다.

특히, 외국산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의 불법복제물과 유명상표의 가짜 의류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 미국 및 구주기업으로부터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제한 분야

멕시코는 과거에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제한이 심했으나 1984년 이후 몇 가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3.12월 도입된 「외국인투자법(LIE)」은 외국인투자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1996년 개정). 이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하에서는 금지분야(석유채굴 및 정유, 국가안보관련 산업 등)로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704개 분야 중 60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98개 분야 중 37개 분야는 외국인투자위원회(CNIE: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로부터 사전허가를 얻을 경우 100% 투자까지도 허용되고 있다. 35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자지분을 10%, 25%, 또는 49%(특히, 장거리 통신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밖에 2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분야 중 16개 분야에 대해서는 멕시코 국민에게만 투자가 허용되며, 10개는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그밖에 외국인 출자지분이 49%를 초과할 때와 총 투자가치가 매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의해 설정되는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뻬냐 니에또 정권은 방송·통신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일대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한다.

<방송·통신 분야 개혁>

2013년 3월 멕시코 정부는 아메리카 모빌, 텔레비사 등 주요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연방경쟁력위원회와 연방방송통신청 등 두 개의 감독기구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방송통신청은 통신과 TV부문의 감독을 맡게 되고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기업을 독점으로 규정하여 제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재 대상 기업은 현재 방영하는 TV 네트워크를 케이블 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해야 하고, 강제적인 자산 매각이 포함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유선통신 자산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사라지며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방송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도 최대 49%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카를로스 슬림의 아메리카 모빌은 현재 멕시코 통신시장의 70%를 점령하고 있으며, 텔레비사는 TV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어 이들 두 대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방송통신 개혁의 세부 법안이 2014년 7월 최종 통과되었다. 방송통신 개혁안은 2013년 3월 통과되었지만, 세부 법안과 관련하여 멕시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지다가 2014년 7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여 뻬냐 니에또 대통령의 승인까지 확보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세부 법안의 주요 골자는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독점 기업에 대한 제재

로, 이로 인해 동 분야에서 시장지배자로 규정된 아메리카 모빌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송통신 세부 법안 통과로 인해 독점 기업을 규제하는 연방방송통신청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방송통신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 증대가 예상된다.

한편, 2015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될 것인바, 이에 따라 디지털 방송 수신기, 안테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에너지 분야 개혁>

2013년 12월 민간 사업자에게 멕시코 에너지 사업 참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 8개월 만에 이와 관련된 부속 법안이 멕시코 상하원을 통과하여, 2014년 8월 뻬냐 니에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에너지 개혁 부속법안에는 탄소법, 멕시코 석유공사법, 연방전력청법, 석유수입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속 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탄소법에는 멕시코 석유공사(PEMEX) 및 자회사가 석유의 탐사 및 채굴을 위해 공공입찰을 통해 민간 및 외국회사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관련 업체들도 멕시코 에너지 부문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탄소법에는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정유, 생산, 운송, 저장, 수출, 수입 부문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며, 2016년부터는 가스 수입이 전면 허용된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o 민간 자본이 석유자원 탐사에서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o PEMEX와 전력청(CFE)은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PEMEX의 경우 이 계약에 의해 원유 및 가스 탐사, 생산 등을 수행할 수 있음

o 석유 자원의 탐사 및 생산, 가스 처리, 정유, 저장, 공급 및 전력 생산 및 판매를 개방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 국가는 석유 판매로 얻은 일정 수익 또는 석유 생산을 통해 취득한 자원의 일정 부분을 민간투자 기업에 지급할 의무를 가짐

o 석유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자금을 기금으로 마련해 멕시코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이를 통해 최소 연간 GDP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 재정으로 확보하여 연금 지급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임

o 천연가스 국가관리센터 및 국가 환경보호 및 산업안전기구를 신설하고 에너지 규제위원회 및 국가 탄소자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

o 전력 부문의 국가 전력시스템 관리는 국가 에너지관리센터를 통해 정부가 계속 운영하도록 하되, 이 기관의 감독 하에 계약을 통해 민간이 전력을 생산, 판매할 수 있음

이번에 통과된 에너지 개혁법안은 PEMEX의 경쟁력 약화 및 석유 생산성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멕시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 민간 연구소는 동 개혁법안의 시행으로 멕시코 경제가 내년 4%까지 성장하고 2018년까지는 5~6%대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으며 2018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4,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 및 캐나다 등 외국 기업들은 동 개혁법안이 기대 이상으로 진전되었으며, 석유 회사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출의무비율 및 현지부품사용비율상의 제한

내수판매의 수출의무비율 연계는 보세가공무역방식으로 투자하는 마낄라도라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수출액의 일정비율을 내수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마낄라도라 기업의 내수판매 허용비율은 1998년 75%, 1999년 80%, 2000년 85%, 2001년 100%였으나, 2001

년부터 철폐된 바 있다.

현지부품사용비율 제한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 원산지규정을 충족치 못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수출할 경우 면세혜택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NAFTA산 원산지규정 강화로 현지투자진출 가전기업들이 원부자재 수입 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서 외국정부 또는 국영기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금융부분에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국영은행의 현지 투자진출은 불가능하다.

모든 금융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은행의 경우 2010.10월 기준 최소자본금 90백만 UDIS(약 20백만 달러), 일부 기능만 수행하는 상업은행(Niche Bank)은 최소자본금 36백만 UDIS(약 8백만 달러)이 필요하다.

상업은행의 외국인 지분에 있어,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한 국가의 은행은 외국인 지분 100% 참여가 가능하며(대부분의 FTA 체결 국가),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소속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내 금융기관은 상업은행(모든 기능 및 일부기능 포함) 42개, 특수은행 7개, 소매금융 8개(2012년부터 허가)가 있다.

멕시코는 외환거래 자유국으로서 과실송금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재투자, 과실송금 등이 자유로운 상태이며 수출대금 회수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환보유에 제한이 없다.

멕시코 현지금융시장에서는 은행들의 기업대출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준이자율은 3.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상의 제한

멕시코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계상 특별히 우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보세가공 무역인 마낄라도라 기업에 대해서는 도입 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국기업도 보세가공수출을 할 경우 마낄라도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對멕시코 진출 유망품목

품목명	선정사유
디지털 도어락	도난사례가 증가하면서 점차 디지털 도어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기업고객 및 고급주택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ABS 수지	주요 수요처인 자동차 및 전자제품 산업의 생산 증가와 더불어 수요 동반 성장이 예측됨.
에너지 절약형 전구	2009년 11월부터 에너지부에서 에너지 절약형 전구 교체 프로그램을 CDM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음. 우선 시범적으로 50만 개의 에너지 절약형 전구 교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백열전구 판매를 금지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도 이 의견에 동조하고 있어 조만간 백열전구의 유통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전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태양광 모듈	태양광 모듈은 정부의 격오지 태양광 발전기 설치 프로그램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자가 발전하려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임. 저유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유인은 줄어들었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하여 관심을 가지고 진출을 꾀해야 할 것임.
LED 조명	그동안 전광판 등에 집중되어 있던 LED가 조명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GE 등의 대기업들도 멕시코에 LED 램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현재 에너지 절약기금(FIDE)에서는 LED 사용 촉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LED 조명시장은 향후 몇 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풍력 발전기	2009년 멕시코의 신재생에너지 진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건설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풍력발전기의 수입이 급증하였음. 우리기업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멕시코에 진출한 스페코의 풍력발전타워 생산라인이 준공되어 가동된 것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풍력 발전기 이외에도 소형풍력발전기 수요도 해변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현재 멕시코 바이어들의 공급선 문의도 종종 들어오고 있어 한국 업체들의 멕시코 소형 풍력발전기 시장진출에 관심이 필요함.

품목명	선정사유
기능성 섬유	멕시코의 기존 섬유시장은 내수생산이 튼튼하고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기능성 섬유들의 경우 부가가치 제품들의 수요 증가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임. 특히, 아직까지는 중국산 제품들의 품질이 국산제품을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혈당 측정기	멕시코의 당뇨병 환자는 약 1천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9위에 달하는 수치임. 당뇨병 관련 시장은 2007년 이래 해마다 8%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이에 가정에서 자가 진단을 위한 혈당측정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치과용 X-ray	멕시코는 인구 1억 1,200만 명의 내수시장을 보유, 시장 잠재력이 상당하며 소비수준의 증가와 함께 임플란트, 미용, 교정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임. 특히, 기존의 아날로그 제품을 디지털 장비로 교환하는 추세에 있어 한국기업의 시장 진입이 아날로그 시장(멕시코산 우세)보다 유리할 전망임.
자동차 부품	2014년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 부품의 동반 성장이 예측됨. 실제로 2014년 상반기 멕시코 자동차 생산량은 159만대를 기록하여 동기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멕시코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금년 자동차 생산량은 310만대로 예상되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BMW, 다임러 등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의 멕시코 신규 투자와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설비 증대로 인해 자동차 부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타포린	멕시코 내에서 폴리에틸렌 타포린 제품은 천막, 화물차량의 덮개, 방수 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멕시코 내 타포린 생산 업체는 전무한 상태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요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에게는 기회가 충분한 시장임.

* 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2014.9)

미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미국에 관한 WTO의 2014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10,514개 세 번)의 평균 실행 관세율은 4.8% 수준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체 품목의 36.8%가 무관세로 기계, 전자, 화학, 철강 제품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평균 관세율의 3배가 넘는 품목이 7%에 달하며, 특히, 섬유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고관세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한·미 FTA가 2012.3.15일 발효함에 따라 미국은 전 품목의 82.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92.8%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게 된다. 섬유류 분야에서도 미국 측이 품목 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특히, 우리 주력수출 품목인 스웨터(32%), 양말(13.5%), 화섬 남성바지(28.2%)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우리 제품의 대미국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되었다.

수입부과금 등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Customs User Fees) 중 하나인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와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품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품취급수수료는 종합예산 및 조정법률(Omnibus Budget & Reconciliation Act of 1986: Public Law 99-509)에 근거하여 1986.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속령의 제품(Products of Insular Possessions), 최빈국가의 제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Provided For In Title V of The Trade Act, As Amended(19 VSC 2462), 카리브연안 특혜제도(CBI) 대상국가의 제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CBERA)) 등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00달러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의 0.21%에 대한 수수료를, 2,000달러 미만의 물품은 자동신고 시 2달러, 수동신고 시 개인은 6달러, 세관은 9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물품취급수수료는 2003.9.30일에 만료되었으나 미국 의회가 연장법률을 통과시켜서 2014.9월까지 연장조치 되었다(Public Law 108-89). 이 물품취급수수료의 경우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등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수입액에 대한 종가세(ad-valorem) 형태로 부과됨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세관수속 비용과는 무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유지비는 수자원개발법(Water Resource Development Act of 1986) (Public Law 99-662)에 근거하여 1987.4월부터 미국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에 0.04%의 종가세로 부과되었으며 1991.1월부터 0.125%로 상향조정되었다. 항만유지비에 대해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미국이 실제 항만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으로 항만유지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품에 대하여 항만유지비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수출품에 대하여는 항만유지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수입품에 대해서만 항만유지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의 결과로 한국 상품에 대해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가 철폐되었으며, 따라서 향후 연간 8,000만달러로 추정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미국은 유류, 원유 및 석유류 제품, 오존층 파괴 물질, 스포츠용 낚시 용구, 활, 유류과다 소비 자동차 제품, 트럭, 트레일러, 트랙터, 백신, 주류, 담배, 총기류 등에 대해서 연방차원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맥주도 연방 소비세 부과대상인데, 국내 소규모 맥주 생산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초 6만 배럴에 대해서는 7달러를 부과하나, 수입산 맥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특례 없이 대규모 국내 생산자와 같이 무조건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내의 소규모 와인 생산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

통관

(1) 일반적 통관 절차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통관/국경보호의 상업적 운용에 대한 자문위원회(COAC: Advisory Committee on Commercial Operations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민간부문과의 공식적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2006년 안전항구법(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Port Act)에 따라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수출입 관련 표준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완벽한 이행은 되지 않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입을 위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속한다. 수입제품의 반출은 은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관련 형식적 절차의 완료 여부에 달려 있지 않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서류 접수 이후 5근무일 이내에 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7501)을 미국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는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관세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관별로 일부 상이한 세부 절차를 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관 절차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 안보통관절차 시행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외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24시간 이전에 선박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전자적 전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국토안보부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그리고 무역법(Trade Act of 2002) 및 해당 집행규정 등에 근거하여 통관/국경보호국이 출발지국에서 화물을 사전 스캐닝하는 시범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Program, 출발지 국가에서 화물의 외형 등을 검사하기 위해 인원을 파견하는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Program, 제조업 등의 공급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Program을 비롯하여 Fast(Free and Secure Trade) Program과 CEAR(Commercial Enforcement Analysis and Response) Program 등 다양한 안보통관 절차를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의 검사 즉 Manifest Hold Exam/VACIS Exam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해상화물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해 수입

자는 제조 및 상품관련 정보 10가지, 선사는 화물탑재계획 등 2가지 정보를 선적 및 출항 전에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10+2 보안신고제도(Security Filing)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수입업자는 검사비용, 보관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통관수속의 지연으로 인하여 수입품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제도의 이행으로 약 8억9천만 달러에서 7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던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외국항구에서의 100% 검사조치(CSI 프로그램의 일환)를 실효성 부족과 물류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2016년 6월 말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였다.

(3) 견본(Sample)에 대한 통관절차 복잡

견본이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세관은 섬유류 및 의류제품의 상업용 견본통관 시 천공, 견본표시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견본의 가치를 손상시켜 사실상 견본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4) 한·미 FTA

한·미 FTA는 양국간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를 규정하고 있다(도착 후 최대한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 또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전자적이고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화물 위험도에 따른 차등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관절차 개선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수입규제

(1) 수입금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거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

중도덕을 저해하는 물품이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의거하여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불법표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그리고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위생방역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물의 질병 및 식물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지되며,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및 연방가금육검사법(Federal Poultry Inspection Act)에 의거 수출국가의 수의공중보건 위생 통제와 작업장 위생관리 상황이 미국의 제도와 실행사항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등성 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와 작업장으로부터는 축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 CITES)에 의하여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의 돌고래 보호규정과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수확한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식물 및 식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수량제한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 또는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취해 왔던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형태인 섬유류 수입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1.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미국 내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중국산 섬유 수출품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2005년 중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2005.11월 미-중 섬유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하였던 바 있다.

(3) 수입허가 및 기타 규제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수입업자별로 제품별로 1년 단위로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아야 하며, 더욱이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방출 의료기기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청의 관련법규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데,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하든지, 파기시키든지, 재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요건을 적용받는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는 상무부의 수입허가 발급제 대상이다. 동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터 수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된다. 동 제도는 철강수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함으로써 수입피해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천연가스법). 장기 및 단기로 신청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가격, 공급업체, 물량 등의 정보를 최초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월별로 각종 정보들을 보고

해야 한다.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통관 관련 규제

한국산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는 첫째로, 실제적 과제인 판매개척 활동을 적극적, 효과적으로 계획 실행하는 것이고, 둘째로 절차적 과제로서 관계 연방기관들의 수입통관 절차를 파악하여 수입 시 받게 될 불이익의 사전예방과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하는 것이다. 농축수산물 및 식품 통관, 관련 연방기관이 집행하는 법규와 임무, 활동 그리고 수입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역할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의 본부 조직과 국내 기능은 여전히 농무부 산하에 편성되어 있지만 국경 농산물 검역 기능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 및 국경보호국으로 통합 이전되었다. 외국 농축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병충해, 잡초 그리고 동물 질병으로부터 미국의 농업과 천연자원, 특히 식물자원과 동물자원의 건강을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철저한 수입검사 기능을 수행하여 식물 병충해나 동물 질병 등이 발견되면 특정의 검역조치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축산물의 생물학적 테러방지를 위하여 규정된 생물화약품 및 독소제품의 점유, 사용 그리고 이전을 통제, 검사하고 있다.

② 농무부 산하 동식물위생검사처/식물방역부

관련 근거 법규는 Plant Protection Act Replacing Federal Pest Act, Plant Quarantine Act, Federal Noxious Weed Act(Title Ⅳ of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of 2000),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of 2002, PPQ Regulation,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Regulation 등으로서 외국산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식물 병충해와 잡초(예를 들면 Mediterranean Fruit Fly, Oriental Fruit Fly, Citrus Canker, Asian Longhorned Beetle, Noxious Weed 등)를 차단, 통제하여 미국의 농업과 식물자원의 보호, 보존을 주임무로 한다. 국가별로 각 종류의 병충해 발생여부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국가별로 허용된 농산물 식품(예를 들면 List of Admissible Fruits & Vegetables from Each Country)의 수입 시 동식물위생검사처는 대체로 수입허가(PPQ Form 587)를 통한 수입프로그램과 CBP의 농업검사관을 통한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병충해가 발견되면 특정 구제조치와 폐기처분을 하고 기타 허용되지 않는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한국산 농산물 식품 중 동식물위생검사처가 수입허용 조치한 품목만 수입될 수 있으므로 수출하기 전에 수출하려는 품목이 허용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품목일지라도 병충해가 없는 제품을 선별하여 수출해야 한다. 각 국가별·품목별 과채류 수입요건은 동식물위생검사처 홈페이지에 마련된 수입요건 DB인 FAVIR(Fruit and Vegetables Import Requirem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농무부 산하의 동식물위생검사처/수의업무부

관련 근거는 Animal Health Protection Act,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Veterinary Service Regulation, Animal Health Safeguarding Review 등으로서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각 종류의 동물질병(예: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구제역(Foot & Mouth Disease), Rinderpest, Exotic Newcastle Disease, Classical Swine Fever 등)) 등을 차단·통제하여 미국의 동물자원에 대한 보호·보존 및 품질개선을 주임무로 한다. 동식물위생검사처는 동물 질병이 종류별로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검역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VS Form 16·3)와 철저한 수입검사를 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동물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국가로부

터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허가와 함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철저한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한다.

④ 농무부 산하의 식품안전검사처(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관련 근거 법규는 Federal Meat Inspection Act,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Egg Products Inspection Act, FSIS Regulation, HACCP Program 등으로서 육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금육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과정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각 단계마다 식품안전 위해를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하여 불량식품과 불법표시 식품(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을 퇴치시키고 이들 불량식품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예: E.Coli 0157:H7, Salmonella, Campylobacter & Listeria 등)으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 임무를 한다.

미 농무부는 현재 삼계탕을 제외한 한국산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기류 및 가금류를 소량으로 포함하는 식품,[1] 즉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은 일정한 요건 하에 수입이 허용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류 및 가금류의 원재료는 미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미국은 최근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육류 및 가금류 소량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를 2009.6.22일부터 강화하였다. 즉, 수입허가 시 종전보다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허가 시 종전에는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에서만 검토하였으나, 2009.6.22일부터는 APHIS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

1_ 최종제품의 함량 중 가공육류(cooked meat)는 2%, 신선육류(raw meat)는 3%, 지방, 우지, 육류 추출물(extract)은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워졌다. 계란성분을 소량으로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국내 수입업체들의 반대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카레 식품과 고기만두 식품 등이 식품안전검사처에 의하여 압수, 폐기처분된 사례가 있다.

미국은 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수입업자별·제품별로 매 1년 단위로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여 수입자 및 수출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케 하고 있다. 특히,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의 경우, 라면 스프 등으로 완전히 가공되어 식품안전에 위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 식품안전검사처는 통관단계에서 서류 및 라벨링 요건을 까다롭게 검사하고 있는데, 일례로 2014.5월 수입이 허용된 한국산 삼계탕 제품의 첫 통관시 사소한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누락으로 통관이 2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가 있으므로 수출업체에서는 검역증명서 및 제품표시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⑤ 보건부 산하의 식품의약청

관련 근거법규는 Food, Drug & Cosmetic Act, Bioterrorism Act, 식품의약청(FDA) Regulation, Bioterrorism Regulation 등으로서 식품공급, 의약품 및 동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그리고 방사선 방출 의료기기 등의 안전과 효능을 보장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품과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시켜 국민건강을 더욱 증진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식품에 국한하여 요약하면 물리적 오염, 화학적 오염, 그리고 생물학적 오염(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Contamination) 등으로 인하여 식품의 안전을 해치는 불량식품과 불법 표시 식품(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을 퇴치시켜 국민건강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FDA는 더욱 강화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산 신고배가 농약잔류 허용치 초과, 즉, 화학적 오염문제로 수입검사와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열처리 가공과 진공 포장된 저산성식품과 산성화 식품에 해당되는 식품은 FDA에 시설등록과 제조과정을 신청하여 FDA로부터 FCE No.(Food Containing Establishment Registration No.)와 SID No.(Submission Identification No.)를 획득·유지하고 Botulism 이라는 박테리아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가공처리를 한 후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산 깻잎 통조림, 장아찌 통조림 등과 두유, 식혜 등 음료제품 등이 FCE No.와 SID No.의 미등록으로 말미암아 폐기처분 및 재수출한 사례가 있다.

한편, 건조 농산물 식품(Dried Fruits & Vegetables)의 경우 건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물리적 오염(예 : 흙, 곤충벌레, 쥐털, 새털)에 감염되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폐기 처분된 사례가 있으며,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Seafood)의 경우 수산물 식품의 수입 공급선상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식품안전의 위해요소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System)를 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식품의 제조과정부터 최종 판매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Physical, Chemical & Biological Contamination)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조치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FDA는 최근에 HACCP Program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가는 경향이다. 즉, HACCP Program중 수입자 검증절차(Importer Verification Procedure)를 실시하지 않는 수입업자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칙과 수산물 식품의 폐기처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1) 제주산 감귤

2010.10월 한국산 온주밀감의 미국 본토 수출이 허용된 이래 한국산 한라봉·천혜향도 온주밀감과 동일한 검역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

규정 개정안이 2014.7.29일 입안 예고되었다. 농무부는 2014.9.29까지 60일간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식약처와 미 환경보호청(EPA)간 협의를 통하여 2013년 7월 한국산 감귤의 흑점병과 녹응애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인 만코제브 농약이 미국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2) 농산물 병해충 위험 평가(PRA) 지연 문제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는 2005.12월 말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한국산 파프리카(Bell Pepper)에 대한 병해충 위험평가(PRA: Pest Risk Analysis)를 종결하고 2006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6년 수출요건 타결 이후 매년 10~15톤 수출하였으나 미국이 총채벌레 관리 방충망 요건을 강화(0.6㎜)하여 2010년 이후 수출이 중단된 상태로 방충망을 대체한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2005년부터는 한국산 박과작물(호박, 수박, 오이, 참외) 및 포도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한국 정부가 1999.4월 미나리 수출을 요청한 이후 9년 만에 미국 정부는 한국산 미나리에 대해 2008.3.20일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2014.4월 한국산 당근 수출허용 요구에 따라 미측은 PRA를 진행하고 있다.

(3) 삼계탕 수입허용 절차 완료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처(FSIS)는 우리나라 삼계탕 등 가금육 관련제품의 대미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연방규정 개정규정을 2014.3.26일 최종 공표하고 2014.5.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한국산 삼계탕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작업장 등록, 표시사항 합의 및 수출증명서 서식 합의 등의 잔여 행정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그 후 한국정부는 수출작업장 미국정부 등록(6.18), 수출증명서 합의(6.23) 및 삼계탕 수출제품의 표시사항 합의(7.24)를 완료함으로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미 삼계탕 수출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으

로 이로써 그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미측의 현지점검 등 동등성 평가 절차에 이어 미국내 입법절차가 완료되었다. 미국은 그간 호주(타조류), 캐나다, 칠레, 프랑스, 영국,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타조류), 중국(미국 등에서 도축한 가금육으로 생산한 가공품만 허용) 등 10개국에서만 가금육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한국이 추가됨으로써 미국의 가금육 수입허용 국가는 11개국이 되었다. 미 식품안전검사처는 그간 한국의 가금육 위생관리에 관한 법규와 검사시스템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한국의 관리제도가 미국의 가금육제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에 의한 관리제도와 동등(equivalent)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은 한국정부의 인증을 받고 미국에 통보되어 등록된 2개 업체에서 생산된 삼계탕이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고, 수출 가능 품목은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화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검사처가 한국을 대미 수출 적격국가 목록에 등재를 하더라도 수출 제품은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청(APHIS) 등 다른 기관의 소관법령(전염병 방역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에도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및 뉴캣슬병 발생국인 한국에서는 질병 제한조건으로 인해 신선가금육 대미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측은 우리나라의 위생관리 동등성 유지 여부에 대해 최초 3년간은 매년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후에는 현지점검 주기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4)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국에서 운영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동 협정은 2014.7.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게 된다. 즉, 그간 우리나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 '유기' 표시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2014.7.1일 이후부터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에 체결된 동등성 협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등성 인정의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되며,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방사선조사 등 금지물질(방법)을 유기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금지하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기농업 또는 유기가공식품 제조에 항생제의 사용은 상호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와 배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미국에 유기제품으로 수출할 수 없고, 항생제 처방을 받은 동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미국에 유기제품으로 표시하여 수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5)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시행에 따른 식품수입규제 강화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12.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FDA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개인용도로 소지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수입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운송의 경우 2시간 전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운송의 경우 8시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FDA는 식품관련업체의 기록유지 및 억류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을 제정하였다. 상기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6)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

미국 정부는 2007.11월부터 국내 생산 식품은 물론 수입식품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식품안전(Food Safety)과 식품안보(Food Defense-인위적

인 위해를 가할 목적의 계획적인 오염 방지)의 개념을 망라하는 식품보호계획(Food Prote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식품의 안전 관리방식을 reactive에서 proac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2007.7.18일,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 안전작업반(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 작업반장: 보건부장관)이 작성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Action Plan for Import Safety)의 일부로서 마련된 것이다.

동 계획은 수입식품의 증가와 이로 인한 안전 문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및 행태 변화는 물론 인구변화(demographic change)까지 반영한 것이며 특히,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식품 등에 대한 안전 및 recall 문제 등 아시아지역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 미국 정부는 2007.12월, 중국정부와 "식품 및 동물사료의 안전(the Safety of Food and Feed)"과 "의약품, 부형제 및 의료기기의 안전(the Safety of Drugs, Excipients and Medical Devices)" 등 식품 및 의약품과 관련된 2개의 중요한 협약(MOA)도 체결
  - 미국의 식품수입규모: 연간 소비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2조달러가 수입되고 있다(연간 150여 개국 30만개의 회사로부터 생산된 식품이 13만여 수입자를 통해 수입)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요인에 대한 예방, 둘째, 위험에 기초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개입, 셋째, 위해 요인 또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다. 또한, 각국의 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 동 계획은 시행과정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식품안전현대화법 입법

2007~2008년 중국산 식품에서의 공업용 제제 발견과 2008년 미국 내 살모넬라균 오염 땅콩버터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 내 식품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10.12월 미 의회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 고위험식품군(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관리권(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 고위험식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 시 전자수입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cates) 요구
-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를 2년마다 새로이 갱신
- 우수제조수입품질관리기준(cGMPs) 기준을 부합시키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조사 비용(new reinspection fee) 부과
- 기업의 자발적 recall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recall 실시권 부여 등

동 법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 식품 시설의 매년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미 식약청(FDA) 수입검사를 대상으로 한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2010.12.21일에 의회에서 통과된 식품안전법(2011.1.4일 오바마 대통령 서명)은 연방 규제 기관이 이미 발생한 식품 오염에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주안점을 전환함으로써 미국의 식품 공급이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 내 식품을 원인으로 야기되는 질병은 의외로 심각하다. 매년 미국인 6명 중 1명 꼴로 총 4천8백만명이 식품을 원인으로 한 질병을 앓고 수십만명 이상이 입원하고 수천명이 사망한다. 해당 법안의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우선 예방적 관리에 있다.

동 법에 포함된 몇 가지 중요한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아래와 같다. 법안을 통해 FDA는 식품공급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예방을 기본 목적으로 한 관리를 요구하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식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들을 평가하도록 하며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개선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매년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수백만 가지에 달하는 식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전체 식품 공급량의 약 15%가 수입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60%, 수산 식품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로 하여금 수입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외국의 업체나 국가가 FDA의 검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 식품의 반입을 거부하는 권한을 FDA가 위임받게 된다.

수입업체가 식품 안전에 대한 조치를 이미 취하였을 경우 선적된 수입제품이 보다 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FDA가 수립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식품 안전 조치를 취하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식품안전현대화법 일환, 수입식품 안전기준 강화 신규 규정

FDA는 해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수입자가 해외공급자 또는 수출자와 연대해 입증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 신규 규정을 2013.7월에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가 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과 관련된 질병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세관당국의 위생검역과는 별도로 미국 외 식품생산업체는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수입된

식품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업체에게 보다 신중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가 제 3자의 감사 및 증명(Accreditation of Third-party Auditors)으로 FDA의 승인뿐만 아니라 감사 혹은 증명을 FDA로부터 검증된 제3자에 의해 실시될 수 있어 증명서 발급이나 실시된 위생검역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FDA는 제3자의 감사 및 증명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해외 정부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지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FDA는 동물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료제조시설에서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및 HARPC(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 적용을 강화하는 사료관리규정 개정안을 2013.10.29일 입안예고 하였다. 사료제조시설에서는 사료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방안을 구체화하며, 모니터링 절차와 결과의 기록, 문제 발생 시의 조치계획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들을 문서화한 계획서(written plan)를 가지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4.2.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규정(final rule)이 공포된 뒤 60일 후에 발효되며, 소규모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업체 규모별로 단계적(발효 후 1년, 2년, 3년 등)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수입제도 변경 사항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Prior Notice of imported food)는 미국 내 공급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에 의해 제정(2002.6.12),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개정(2013.5.30)되었다.

바이오테러대응법률은 FDA가 세관과 협력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 내에 도착하기 이전 사전 신고된 정보를 직접 제출, 분석 및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검사에 집중,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건전

한 식품의 유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식품 사전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에서 다른 국가에서 식품 안전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면 FDA에 사전에 수입이 거절된 사유를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오염된 전례가 있다면 모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011년 5월 5일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사전신고제 개정이 잠정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으로 발표, 2011년 7월 3일에 발효되었다. 식품안전현대화법 304조는 사전신고 시, 미국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또는 사료 관련 타 국가에서 통관을 거부한 이력이 있을 경우 타 국가 이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FDA에게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잠재적 위해 관리를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 FDA는 2013년 5월 30일 잠정최종규칙을 채택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발효하였다.

(8) BSE 관련 소 및 소 관련제품 수입규정 개정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검사청(APHIS)은 2012.3.16일 입안예고한 바 있는 BSE와 관련한 수입규정을 현대화한 최종 규정을 2013.12.4일자로 발표하고 2014.3.4일부터 시행하였다. APHIS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수용된 과학적 문헌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례로, BSE 위험성이 거의 없는(negligible risk) 뼈를 제거한 쇠고기(boneless beef)도 BSE 발생사례가 있었던 국가로부터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 발효시 boneless beef는 BSE 위험등급에 상관없이 수입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APHIS는 다른 나라의 BSE 위험 지위를 평가할 때 OIE가 사용하는 기준과 분류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며, 다만 어떤 국가가 아직 OIE에 의해 위험등급이 결정되지 않아 OIE의 평가기준에 따라 APHIS에서 위험평가를 수행해 줄 것을 원할 경우 등에 대해

서는 APHIS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2014.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국제적으로 위험무시국(negligible risk of BSE)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미국에서도 조만간 내부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를 위험무시국 리스트에 등재할 예정이다.

(9) 우리나라산 수산 패류 수입 재허용

식품의약품청(FDA)은 2012.5.18일 식품안전을 이유로 우리나라산 냉장·냉동 수산 패류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FDA가 2013.1월 우리나라 패류 위생프로그램(KSSP)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KSSP가 미국 패류위생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NSSP)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고, 2012.2.8일자로 미국에 해당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작업장 목록(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ippers List)(ICSSL)에 KSSP 인증업체(certified KSSP shellfish dealers)를 다시 등록하였다.

한편, 2003년 10월, 해양수산부와 미 FDA간에 체결한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가 2008년 갱신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산 냉동-냉장 이매패류의 대미 수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약화되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양해각서를 갱신하여 한국산 이매패류의 대미 수출기반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의료보험개혁 관련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된 소위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2010 : ACA)로 미국 의료보장은 1965년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약 3조 달러(미국 GDP의 17%)의 국민의료비지출(NHE)로 미국경제의 1/6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산업 전반이 크게 성장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오바마케어의 영향으로 2014년 11월 현재까지 무보험자수가 약 8~11백만 명이 감소하였고, 2017년까지 26백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Congressional Budget Office).

또한, 온라인마켓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 수가 현재까지 6.9백만명이며 이 중 85%에게 보험료 지원금이 지급되어 평균 76%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메디케이드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로 27개 주에서 연방빈곤선의 138%까지 확대되어(23개 주는 비확대) 법 시행 이후 약 8.7백만 명이 신규로 등록(이 중 7.5백만명이 27개 확대 주에서 등록)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이 대폭 강화되었다.

반면, 이러한 보장의 확대는 재정지출 등 의료비지출의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함께 시행되었다. 먼저, 책임보장기관(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제도를 도입해서 특정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행위별 수가 → 포괄수가), 예방 및 건강관리 인센티브제공 등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개편도 함께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제약, 의료기기, 병원, 보험 등 보건의료 및 관련 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S&P 500 보건의료지수(Health Care Index)의 주가상승이 일반 주식의 상승을 크게 넘어서는 24% 증가를 기록하였다. 보험회사도 2014년까지 57개가 신규 진입하였고 병원들은 무보험자들의 보험가입으로 20014년에 57억달러의 고질적 미수금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는 10년(2010~2019)간 생산자 부담금(fees) 및 의약품 할인 등을 통해 약 850억달러의 재정 부담 예상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 수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가장 큰 수혜 업종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수요의 증가로 처방의약품의 매출 증가, 생물의약품의 특허보호 강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약업계의 10년간 수익 증가는 부담규모를 훨씬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메디케어

(Medicare) 처방의약품(Part D)에 대한 가격 할인,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2020년까지 메디케어 중 처방의약품(Part D)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간의 완전 폐지는 노인계층의 의약품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 계층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약품의 사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생물의약품의 가격경쟁 및 혁신법(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은 ①오리지널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해서는 혁신 및 개발동기를 부여, ②생물의약품의 제네릭에 해당하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또는 follow-on biologics)에 대한 허가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양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2014년 11월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앞으로 오바마케어 내용에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있으나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로서 ①의료기기세(medical device tax)의 폐지, ②정규근로자 범위의 축소(주 30시간 이상 → 주 40시간 이상)가 공화당에 의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나, 의료기기세 폐지시 10년간 280억달러의 재정수입 감소 문제, 정규근로자 범위 축소시 혜택에서 제외되는 계층의 반발 문제 등 이미 확대된 혜택을 줄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산지규정

(1) 미국 원산지규정 개관

원산지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율, 수입쿼터, 원산지의 정확한 표시 등의 집행을 위한 주요한 기준이 된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명칭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정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

의 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기도 한다.

그런데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품목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품목인 경우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제3국을 통한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에서의 조립과정이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군에 속할 경우 수입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법상 미국이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재단기준"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 원산지규정을 개정하였다(1996.7.1 발효, §102.21 of CBP Regulations Implementing §334 of Uruguay Round Agreement Act). 이는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고, 중국 등 저임금 노동국을 통해 봉제 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EU는 동 원산지규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하였으며, 1999.8월에는 미국과 EU측이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염색과 나염을 한 후 2개 이상의 사후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다시 적용키로 합의하였다. 미국정부는 동 합의의 이행을 위해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의 405조를 통해 직물 일부 품목에 대해 종전기준으로 환원키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2000.5.18일부터 동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재개정후(2000.5.18)
직물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2개 이상의 염색 및 프린팅 공정을 거쳐 가공한 국가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만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 및 프린팅하고 2개 이상의 사후처리공정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의류	재단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WTO 섬유 및 의류협정에 따라 2005.1.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류 쿼터가 폐지됨에 따라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2005.10월 개정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과거 섬유 및 의류 수입 시 제출되던 섬유신고서(textile declaration)가 폐지되고, 대신 수입업자는 원산지 및 제조업체명, 주소 등이 기록된 '제조업체 증명코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2) 한·미 FTA

한·미 양국은 한·미 FTA에 특혜 원산지 기준 중 완전 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는 약 5,000여개(HS 6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 양국간 교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의 하나이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덤핑·보조금 판정이나 산업피해판정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여지가 커서,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재라는 반덤핑·상계관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급(Retrospective)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바, 미국으로의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현재의 수출물량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심 예비판정, 원심 최종판정, 연례 재심 등을 거쳐 2~3년 후에야 정확한 부과액을 알 수 있는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이슈는 제로잉(Zeroing)인데, 제로잉이란 덤핑 마진율을 계산할 때에 부(-)의 마진율은 모두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제로잉을 적용할 경우 당연히 덤핑 마진율이 높게 나오게 되고, 對美 수출기업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WTO는 그간 수차례 원심과 재심을 막론하고 제로잉의 사용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원심의 경우 평균거래가격 대 평균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Average)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로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타깃덤핑 등의 경우에 사용하는 평균거래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Transaction)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로잉을 사용할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재심의 경우에는 그간 평균거래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Transaction)을 사용하고 제로잉을 적용해 왔다. 다만, 2012.2월 재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A to A를 적용하고, 이 경우에는 제로잉을 쓰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향후 발생하는 재심에만 적용되며, A to A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로잉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2014.11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총 16건(반덤핑 13건, 상계관세 3건)이며, 부문별로는 철강 11건, 전자 3건(가전 2건 포함), 화학 1건, 섬유 1건 등이다.

최근 미국 철강업계가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를 확대함에 따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가 증가하고 있다. 2013.7월 이후, 철강 분야에서 반덤핑 2건(유정용 강관,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상계관세 3건(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 못, 송유관) 등 총 5건의 신규 제소가 있었으며, 이 중 유정용강관 반덤핑, 무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은 관세 부과가 확정되었다.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과 무방향성 전기강판 상계관세는 각각 산업피해 무혐의 및 덤핑마진 미소 판정을 받았으며, 강철 못과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는 2014년 11월 현재 판정이 진행중이다.

한·미 FTA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를 규정하였고 가격과 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중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하였다. 양국 간 무역구제위원회를 구성, 반덤핑 관련 규정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판정을 내리는 관행) 및 현장 실사(verification procedur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의 사실성 확인을 위해 피조사 기업을 방문 조사하는 절차)와 관련한 조사 관행을 무역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우리 수출자들이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채널을 마련하였다. 또한, 다자세이프가드 발동 시, 우리 수출품은 적용대상에서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이유로 다자세이프가드를 발동 시, 우리 수출상품이 동시에 발동 대상이 되는 위험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적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WTO「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의 요구사항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못한 것이 많아 對미국 수출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이들의 규격 수는 93,000개(연방정부 44,000, 민간부문 49,000)에 달한다. 또한,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달라 모호한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준 및 인증 관련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 의무화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관할 시정부는 최초 기계설비 및 시공 시 UL마크 획득 의무 및 현지 업체 시공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현지 진출상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UL마크는 미국 내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는 품질인증 마크 중의 하나이며,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가 시행하는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부여를 받는다(소형 냉장고의 경우 비용이 6,000~10,000달러 소요). 물론 UL마크 획득이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몇 개 지방정부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제품의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국 소비자들은 구매 시 UL마크를 확인하며, K-Mart와 같은 대형 유통업자들은 UL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형냉장고와 같은 소비용 전기제품이나 간단한 기계류 등의 경우 UL 규격의 획득은 이해가 되나, 대규모 공장설비의 경우 한국에서 각종 안전규격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않고 새로운 현지규격

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더욱이, 현지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중에는 범용성이 있는 일반기계가 아니라 주문에 의해 생산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 등 자본재의 경우에는 UL 규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

아울러, 생산설비의 시공업체도 미국 내 라이선스를 획득한 업체가 시공해야만 시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기계의 특성상 한국의 시공업체 기술자가 현지출장 등을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현지 업체에게 맡김으로써, 복잡해지고 비용도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진출업체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기안전공업규격, KS 등의 규격을 획득하였다면 현지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조치 또는 양국 인증기관간 상호인증 추진 등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라벨링제도

미국정부는 자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하여 국산화율(미국·캐나다산 부품 사용비율), 연비, 안전도에 관한 정보가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선, 국산화율 표기 라벨에 대해서는 「미국 자동차 라벨링법(American Automobile Labelling Act)」(1992.10월)에 근거하여 ①미국·캐나다 부품 사용비율, ②미국·캐나다 이외에 15% 이상 부품을 조달한 국가와 조달비율(최대 2개국), ③최종 조립국가, 주, 도시, ④엔진 원산지, ⑤변속기 원산지 등을 라벨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연비관련 라벨은 교통부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와 환경청(EPA)은 2013년 모델 차량부터는 평균연비(도시 및 고속도로 연비 병행 표기), 연간유류비용, 동일차종의 평균 유류소비량 대비 절감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스모그 영향 정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능력, 충전시간 연비, 전력소비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2]

안전관련 라벨은 2007.9.1일 이후 생산되는 승용차부터 충돌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른 전면(운전석 및 조수석) 및 측면(앞좌석 및 뒷좌석) 충돌, 전복 사고에 대한 안전도, 그리고 전반적 안전도가 별 5개 만점으로 표기된다. 픽업트럭은 라벨 표기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었지만 자발적인 표기는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소비재 안전 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2008년 도입된 소비재 안전 개선법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소비재에 대해서 라벨링 요건, 시험인증요건, 중금속 함유 상한 요건 등의 강화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9.2월 이후 새로이 정해진 납 성분 상한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 용품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영구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각 주들도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FTA

한·미 FTA는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TBT 협정문의 범위에 사실상 미국 주정부를 포함시켰으며, 한·미 TBT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적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2_ 상세 내용: www.epa.gov/fueleconomy

환경관련 규제

기후변화 국가비전 및 계획 발표

오바마 대통령은 2013.6.25(화) 조지타운대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고, 탄소배출 감축 등을 위해 관련 부처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탄소오염 저감(cut carbon pollution), 기후변화의 영향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 기후변화 관련 국제노력 주도 3개 분야를 강조하고, 이 중에서도 특히 신규 및 기존 발전소 탄소배출량 규제를 통한 오염유발 에너지 사용 감축, 클린에너지 사용 증가, 에너지 효율 증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행동계획에 따라, 미국내 신규 및 기존 발전소 모두에 대한 탄소배출량 규제 실시,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연재해 대비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동향

미 환경보호청(EPA)은 2010.5.13일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관행 및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온실가스 배출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대상 배출원(排出源) 기준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1단계(2011.1.2-6.30)에는 여타 오염물질(납, 이산화황 등) 배출 허가를 받은 시설물 중 연간 7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물만 온실가스 배출 허가제 적용 대상이 되며, 제2단계(2011.7.1-2013.6.30)에는 신규 시설물 중 연간 100,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기존 시설 변경으로 추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연간 75,000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제외한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70%를 차지하는 시설물들이 온실 가스 배출 허가 대상이 된다.

한편, 미 환경보청은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내 발전소 탄소배출 규제 정책방향 발표(5.31)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6.2 기존 발전소를 대상

으로 하는 규제 계획인 “Clean Power Plan”을 공시하였다. 동 계획은 미국내 정부·업계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탄소감축 프로그램 및 기존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상의 배출규제 등에 따라 미국내 발전소들이 2030년까지 발전분야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하고 분진·질산화물·이산화황 배출량을 기존보다 25% 감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계획은 주별 이행계획 수립에 최대 3년의 시간(기존 시한에서 1-2년 연장)을 제공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을 주 정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미 환경청은 수차례의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2015.6월까지 동 규제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의 기업평균연비(CAFE: 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및 온실가스 규제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인 2010.5월에는 환경청과 교통부가 2012~2016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온실가스(GHG) 배출 및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안을 발표하여 종전 연비만 규제하던 것을 온실가스도 병행 규제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2016년 생산모델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은 마일 당 평균 250g/mi, 기업평균연비는 35.5mpg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2년 생산모델부터 연평균 5% 수준의 연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2012.8월에는 2017~2025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확정 발표하였는바, 2025년까지 연비 54.5mpg, 온실가스 163g/mi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의 연료비 절감 총액이 약 1.7조달러에

이르고, 차량 1대당 소요되는 연료비가 약 8,200달러 절감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석유 소비량은 120억 배럴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도 60억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기정화법

대기정화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0년, 1977년, 1990년에 개정되었다. 특히 1990년 개정법은 자동차 배기가스중의 탄화수소(HC) 배출량을 종전의 1마일 당 0.41g에서 0.25g으로, 질소산화물(NOx)도 1.0g에서 0.4g으로 감축하여 이 기준을 1994년형부터 신차의 40%에 적용개시하고 1996년형부터는 신차 전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다.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안건마다 행해져야 한다.

평가실시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미 FTA

미 행정부와 의회는 2007.5월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하였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다자환경협약(①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미국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 및 조치의 채택·유지 및 집행을 약속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호수준을 약화·저하하는 방식으로 환경법을 면제·손상할 수 없으며 △환경 분야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하여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 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환경 chapter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013.2.14일 제1차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미국 정부조달 환경 개관

미국에 관한 WTO의 2014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2012년 약 5천179억달러로 연방정부 총 지출액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

하는 법령은 「연방구매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며 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종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은 미국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미국 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 규정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미국내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재료가 50% 이상 사용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동 협약은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기관이 일정 규모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잔존하고 있다. 더욱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州는 총 50개 중 37개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3개의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13개): 앨라배마, 알라스카, 조지아, 인디아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한편, Buy American 조항은 2009.2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경기부양법에도 포함되었다. 즉,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미국제품 구매 의무화 대상에 철강과 함께 공산품을 포함함과 동시에 동 조항을 국제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임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연방조달

과 양허를 한 주정부 조달에 있어서는 별다른 형식상의 차별은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공식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미국내 납품실적 요구, 특정 규격 요청 등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존재한다.

또한, 미 연방조달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 국방부 조달의 경우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 비양허 품목의 입찰가격에 50%의 가격상향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참여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 WTO 정부조달 협정 비양허 품목(22개 품목군):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90개 품목군중 22개 품목군, 무기, 미사일, 선박, 엔진, 비행기, 베어링, 손도구, 계측기, 통신·탐지·레이더 기기, 전기·전자 부품, 섬유·가죽·의류 제품, 철제 봉·판·구조물 등

그러나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이라도 모든 조달 기회에 있어 미국 기업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는 못하는데, 미 국방부의 식품, 의류, 특수철강 조달을 미국산으로 제한하는 Berry 수정법 적용품목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 공급업체에게만 조달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직접 구매가 아닌 Prime Contractor에 대해서도 조달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제조업체의 제조물 보증서 및 공급업체의 보증서 등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산 우선 구매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내 과거 실적 요구, 미국 시민권자가 주요지분을 가진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금 거래 요건 및 미국산 부품 사용 요구 등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65만불 이상의 모든 계약에는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하부계약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미 FTA

한·미 FTA를 통해 중앙정부의 상품·서비스 정부조달시장 개방 하한 금액은 미국 측이 현행 약 2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우리 측이 약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중 하나이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가 신기술 개발 분야이며, 이러한 장점이 실제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자국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교역을 함에 있어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337조 조사)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미국 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법 "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ITC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되면 ITC는 세관 당국에 대하여 동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국경에서 차단하도록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내릴 수 있다.

일반법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통상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하여 이

절차는 1년 내외에 신속히 완료될 뿐만 아니라 구제방법도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등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타국의 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일반법정을 통한 법적 분쟁에 대신하여 또는 이와 병행하여 빈번히 사용하는 절차이므로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미국 특허법 개정 (2011년 Smith-Leahy America Invents Act)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특허 및 상표의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를 취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의 경우는 지난 200여 년간 발명자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 기초한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및 선사용주의(first-to-use system)를 채택하여 왔다.

이는 형식적으로 누가 먼저 출원하였는지 보다는 누가 먼저 그 발명을 했는지 또는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특허법이 기업의 출원증가와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2011. 9.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전면 개정되어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로 전환 및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후 심판제도(Post Grant/Inter Parties Review)를 도입하는 등의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특히 근본적인 변화인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선시하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는 2013.3월부터 시행되었다.

아울러, 우선심사제도(Prioritized Examination)의 도입, 출원료 및 등록료 등 수수료 인상(15%), 중소기업과 영세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50%) 등은 미국 특허 출원을 검토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미국의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를 도입함으로써 한국 특허법

과 비슷하게 변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선 사용자 권한(prior user rights)과 같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와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요소가 혼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PAEs(Patent Assertion Entities, 일명 Patent Troll)에 대한 규제 강화

지난 5년동안 PAEs들이 제기한 소송은 전체 특허소송의 28%(2009년: 640건)에서 67%(2013년: 3,608건)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한 해 동안만 전체 7,737개의 Defendant중에 4,843개, 즉 63%가 PAEs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Top 10 Plaintiff는 모두 Patent Assertion Entities(PAEs)로서, Melvino/ArrivalStar, Wyncomm, Thermolife들이 각각 1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였다.[3]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5월 지속적인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PAEs의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의 legislative recommendation과 5개의 executive actions[4]를 발표하였다. 이는 미 의회 등에서도 지지를 받으며 각종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미 특허상표청을 비롯한 정부기관들로 실행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안들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특허괴물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 특허소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3_ RPX가 보고한 "2013 NPE Litigation Report"

4_ 5가지의 executive actions은 ⅰ)발명이나 특허에 대한 소유권 정보의 정기적 갱신 규정 마련, ⅱ)지나치게 폭 넓은 S/W특허 청구항과 관련, 기능적 청구항 심사의 질을 제고 방안 강구, ⅲ)본래 용도대로 제품을 이용한 소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며, ⅳ)특허 정책 아이디어 확보 및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교육과 연구 확대, ⅴ)수입배제명령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작업수행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

우리기업이 미국에서 손쉽게 단기간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한·미 특허청간 구축된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양국 특허청은 2009.1.29일부터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공통으로 신청한 특허출원 건에 대해 제1출원국인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제2출원국인 미국에서는 해당 출원 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특허의 내용, 심사관련 통지서, 영어번역문 등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2009.1.28일까지 1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10.1.29일부터는 영구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1.7월부터는 PCT 특허심사하이웨이도 시행하고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 특허청의 중복심사를 생략하고 출원인들에게는 미국에서 다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절차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미국에서 특허기술을 조기에 사업화할 계획이 있거나, 특허의 전략적인 활용과 특허분쟁 등에 대비하여 개발된 핵심기술을 미국에서 신속히 특허등록을 받기 원하는 기업체나 연구소, 발명가에게는 유익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2013.10월 현재 미국 특허청에서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보기까지는 평균 18.2개월이 소요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하이웨이이용신청을 승인받는 날로부터 1~3개월 정도면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한국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양국 특허를 모두 확보하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다.

한·미 FTA

한·미 FTA는 특허 분야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제도 등을 도입하여 특허권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상표 분야에서는 증명표장제도 도입과 소리·냄새 상표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품질보증기능의 강화와 다양한 브랜드의 개발, 활용을 통한 기업의 자산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상표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침해 관련 물품의 압류명령,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보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 도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투자 장벽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적인 규제가 있다. 외국인투자가 예외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주요 분야는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이다. 對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한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법」 5021조(Exon-Florio Amendment)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인수 및 합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그 거래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007.9월에는 미국 안보 및 기간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심사 및 집행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8.11월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CFIUS))의 운영절차를 규정하는 Regulation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조사대상을 외국인에 의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을 운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Covered Transaction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고, 검토기간은 30일 조사기간은 45일로 제한함으로써 심의절차를 효율화하였다. 상기 외국인투자 심의제도에 따라 2008~2012년간 총 538건의 외국인 투자가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실제로 168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2년에 최초로 중국계 기업의 대미투자 1건에 대해 투자제한 조치가 결정되었다. 한국 기업의 경우 투자제한 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으나 제조업 및 금융정보서비스업 분야 투자에 있어 2011년 1건 및 2012년 2건이 "Covered Transaction"으로 분류된 바 있다.[5]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반적인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절차는 없다. 법인의 설립은 자유로우며 州法에 의해 설립된다. 州法의 내용은 州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州로부터 영업목적 등을 명기한 허가증을 받으면 법인이 설립된다. 미국의 경우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절차는 지극히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경쟁정책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하여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시장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국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독점금지국)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이며,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기업 간 담합을 통한 가격을 인상·고정, 시장 분할, 생산량 할당 등 경쟁제한 행위들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커니즘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

5_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port to Congress(2013.12월)

으며, 이를 위해 2004.6월부터 개정된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벌금을 법인 1억달러(종전의 10배), 개인 백만달러(종전 35만달러)로 증액하고, 개인에 대한 징역상한도 10년(종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카르텔 벌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상기의 개정 셔만법 이외에 별개 법률인 「벌금증강법」(Alternative Fine Statute: 18 USC Section 3571)에 의해 카르텔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2배 혹은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의 2배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따라서 평소에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카르텔 처벌 시 「벌금증강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3월에 테러 방지법(Patriot Act 113조)을 개정하여 반독점법 위반사건 조사 시 경쟁당국이 비밀리에 기업과 임직원의 유선통화, 구두대화 및 전자통신 등에 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약 1백5십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3백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미 법무부는 1999.4월부터 2002.6.15일 기간 중 국제반도체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3억달러, 하이닉스에 1억8천5백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두 회사간부(삼성전자 6명, 하이닉스 4명) 10명에 대해 5개월에서 14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최근에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07.8월에는 2001.1월부터 2006.7월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선 승객 및 화물 항공요금 담합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3억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11월에는 TFT-LCD 국제가격 카르텔에 가담한 LG Display 사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 금액은 당시 미국 법무부가 부과한 벌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다. 2009.5월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합으로 5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은 바도 있으며, 2011.3월에는 삼성SDI가 CDT(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담합으로 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4.10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액은 총 12.7억 달러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카르텔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카르텔 유혹에 빠져 회사는 물론 개인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력 있고 평판이 좋은 우리 기업이 카르텔 가담으로 인해 더 이상 고액의 과징금을 물지도 않고 한국기업의 이미지도 실추되지 않도록 미국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또 다른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법무부와 차별화하여 소비자 보호 업무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사기행위 규제 등 전통적인 소비자 보호업무이외에 최근에는 개인정보 도용, Spyware 메일, 크레디트 거래 사기 등의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2010.8월 기업결합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지침은 1992년 이후 대폭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변화된 경제적·법적 환경 변화 및 경쟁당국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지침에 반영토록 하여 기업결합 심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중 검토대상이 되는 시장집중도 수준을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기준으로 종

전의 1800에서 2500으로 상향시킨 것은 실제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할 때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기준을 반영시킨 것이다. 기업결합 검토 시 잠재적 경쟁자 범위의 사업자를 단기간에 실제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자로 국한시켜 관련시장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현실적인 경제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Hart-Scott-Rodino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개시 이전에 반드시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산 혹은 의결권 있는 주식 규모기준으로 2억 달러 이상의 큰 거래의 기업결합은 반드시 신고대상이 되고, 이보다 작은 거래이더라도 기업결합 취득자 및 피취득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대상 기업결합규모는 미국의 GDP에 연동되어 매년 고시되므로 대형 기업결합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미 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후에는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기기간동안 기업결합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일일 최고 16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업결합 시에는 심사료를 미 경쟁당국에 지불해야 하는데 심사료 수준은 기업결합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금액은 45천 달러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이 경쟁법 집행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현 미국 경쟁당국은 전 공화당 정부에 비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미국시장에 상품 및 용역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 경쟁법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독점금지법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양국간 기관장 회의를 개최(2014년의 경우 11.1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한·미 FTA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통해 경쟁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으며, 경쟁법 관련 집행 과정에서 양국 기업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하였다.

해운서비스 시장에 대한 제한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미국적 상선에 의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우선적취권(Cargo Preference) 제도를 두고 있다.

「1904년 군사화물 우선적취법(Military Transportation Act, 1904)」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수송되는 모든 군수품을 포함한 물자는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4년 공식결의 제17호(Public Resolution No.17)는 미국의 정부기관(수출입은행 포함)이 시행하는 차관으로 조달된 생산물은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사청이 미국 상선대가 충분한 선박 및 적재능력, 적당한 운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 차관 수혜국에게 50%까지 적재를 허용하고 있다.

「1936년 미국 해운법(Shipping Act of 1936)」에 따르면, 정부공무원 이사화물은 미국 국적선으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61년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국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erchant Marine Act of 1936의 Section 901」을 개정한 화물우선적취법(Cargo Preference Act of 1954)은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화물의 최소한 50%를 미국적 선박이 운송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국선박의 운임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외국선박을 사용해야 하는 유효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선박에 선적이 가능하다.

「1985년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 of 1985)」상에는 잉여농산물 등 외국원조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물자의 최소한 75%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1995년 알래스카산 석유 금수해제법」은 알라스카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해외 수출할 경우 미국 국적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Cargo Preference 선박들은 VISA[6]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경우 미국적 선박으로 3년 동안 등록되어 있으면 적취권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 연안운송에 대한 규정으로 「1920년 미 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27장(46 App. USC 883)에서 미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국적선(U.S. built, U.S. owned, U.S. flag vessel)"에 의해서만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위 Jones Act).

Jones Act의 목적은 안정적인 연안수송서비스의 발전 및 국가 비상시 연안 해운산업의 국제통제를 위한 것이며, 나아가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의 제공 및 미국 국민의 고용 보장을 위한 것이다.

미국내 화물 물동량의 대부분을 Jones Act 선박이 수송하고 있다. 미국 해사청(MARAD)은 Jones Act의 유지가 미국내 해운 관련 고용 창출과 미국내 신조선 건조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6_ VISA(Voluntary Intermodal Sealift Agreement) program :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미국의 해운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선박으로 대부분이 컨테이너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적 선박 중 유조선의 80%이상, 컨테이너선의 25%, VISA용 선박의 30%가 Jones Act 선박으로 분류된다.

Jones Act는 WTO와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예외로 인정받았으나, 일본 등 WTO 회원국들은 GATT 근본 취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노동관련 규제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미간 노동 관련 문제도 한미 FTA상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의 노동챕터는 협정 당사국으로 하여금 1998년의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선언이 표명한 노동권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협정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존의 노동협정들에 비하면 매우 강력한 수준이다. 2006년 신통상정책이 도입되기 전에 비준된 오만과의 FTA 등에서는 당사국들이 기존 노동법을 통해 확립하고 있는 노동기준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의무만 부과할 뿐이었다. 1998년 ILO선언이 정하고 있는 기본노동권은 ①결사의 자유, ②단체교섭의 효과적 인정, ③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제거, ④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⑤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제거 등이다.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을 의무로 규정하고,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되며,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점은 기존 FTA 노동챕터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기본 노동권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한미 FTA의 노동챕터 규정은 자원 배분을 이유로 노동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종전의 노동협정이 국내적 자원 배분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권에 관한 의무

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대국이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지는 못하도록 했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미 FTA에서는 노동 분쟁도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패소하는 나라가 지불하는 벌금은 승소국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상금의 성격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기존의 여태 FTA보다 노동협정의 의무 이행 위반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제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기준 이행장치로서는 "공중의견제출-정부간 협의-분쟁해결패널의 중재-벌과금"의 네 가지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베네수엘라

총론

베네수엘라 경제통상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의 특수한 정치 환경에 관한 선행 이해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좌파적 이데올로기 및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정권의 정치특징을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국가로 지난 2014년 4.14일 故차베스 대통령이 후계자로 지명한 마두로 후보가 1.6%의 근소한 표차로 승리함에 따라 국가의 여론이 양분되어 정치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대내결속과 지지기반의 공고화를 위해 차베스 전 대통령의 반미의지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계승함에 따라 시장개방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둘째, 21세기 사회주의(socialism)를 표방하면서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기초 생필품 가격통제 및 수입허가제 실시 등 자유 시장경제 활동 제한 및 국가무역센터(Cencoex)와 외환거래보완시스템(SICAD)를 통한 외환배분으로 외환거래 통제 및 국내 달러화 거래제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셋째, 미국으로 대변되는 이윤 지상주의식 자본주의와 약소국에 대한 자원수탈형 19세기 제국주의식 경제정책에 반발,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인 전기, 전화, 시멘트, 철강, 석유, 가스 산업에 대한 대대적이고 과도한 국유화로 인하여 정부고용 인력이 점차로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주재국은 100달러의 외화 가득액 중 94달러가 석유수출에서 발생하는 석유의존형(Petro-economy) 경제구조로 석유수입금으로 식료품, 의약품 등 기초 생필품을 수입하는 수입형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베네수엘라는 2008년부터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원자재나 중간재 등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귀금속이나 차량 등 고가의 사치성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는 등 수입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20~25%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차종에 따라 33%에서 35%수준이다.

- 0% : 자유무역지대 반입품
- 5% : 원자재 및 자본재
- 10% : 역내에서 일정수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중간재
- 15% : 각종 공산품
- 15~20% : 농수산물, 식품, 의류 등 최종 소비재
- 20~25% : 귀금속류 등 사치품, 제지 및 인쇄품목
- 35% : 자동차

관세는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가세(CIF 가격 기준)를 원칙으로 하며, CIF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Reference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최고 40%에 달하는 높은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12%, 특별소비세 10%, 수입기금 1%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수입부과금은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CIF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한 품목에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8~16.5%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이 가능하다. 차베스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종전 14.5%였던 부가가치세를 2002.9.1일부로 16%로 인상하였다가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2004.8월부터 15%로 인하하였으며, 이를 다시 2005.9.15일부로 14%로 인하하였다. 2006년 인플레율이 17%에 달하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7.3.1일 부가가치세를 11%로 인하한데 이어 2007.7.1일부터 9%로 추가적인 인하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유가하락으로 정부재정수입이 급감하자 차베스 정부는 2009.3.21일 경제위기 극복 긴급대책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9%에서 12%로 인상하여 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하였다.

베네수엘라는 2002.8.1일부터 일부사치성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고급승용차(4만4천 달러 이상), 오토바이(500cc 이상), 헬리콥터, 경비행기, 경주마, 귀금속(500달러 이상) 등으로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베네수엘라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 및 국내 생산제품의 부가가치 확대 창출 등을 위한 일환으로 2006.10월부터 수입 자본재 부품 및 설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동 조치에는 712개 품목이 포함되며, 주요 품목으로는 발전기, 압축기, 섬유기계, 제빵기기, 승강기 및 동 부속품 등이 해당된다. 한편, 2009.10.23일 차베스 정부는 국내경기 진작을 위해서 관보 제39,291호를 통해서 제조업, 건설분야 등 715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를 단행하고 효력은 3년간으로 한정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정부 및 정부기관이 수입하는 337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를 단행하였는바 효

력은 2년간으로 한정하였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품검사는 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나 이 방법에 따른 검사에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세관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신고를 낮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도 않고 물품을 빼내는 일이 잦았으나, 차베스 정부 들어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 지면서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물에 마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 재검사를 실시하며 오히려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관수수료, 창고사용료 등이 비싸고 보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통관 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첫째, 관세법상 특별한 물품의 수입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로 이는 관세율표상 구속요건란에 5번으로 표시되어 있다. 둘째는 안데안 국가 간 교역 시 관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이다. 셋째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원산지국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반덤핑 관세부과 품목의 원산지를 속여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막

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 업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거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입 규제

일반적으로 상품 수입을 위한 라이센스나 정부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거나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기도 하는 등 일종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 사례로서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국가무역센터(Cencoex)의 외환 배정, 국내 미생산 확인서 및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 제출, 자동차에 대한 수입 쿼터 배정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또는 관련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2003.2월 외환관리위원회(CADIVI)를 창설하여 모든 수입을 통제하면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필요한 외환을 구입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ADIVI 제도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수입대금은 CADIVI 신청절차 종료 시 수출업자 계좌로 자동 송금되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절차 종료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수출업자로서는 대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6.12월 베네수엘라 경공업무역부는 수입업자가 Cencoex에 외환 구입을 신청하기 전에 필수 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용 원자재 등을 제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류,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제품 등 3,500여개의 관세코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 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국내 미

제조 확인서" 및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각각 1년, 3개월에 불과하여 수입 시마다 갱신하여야 하고, 동 확인서 발급에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또 다른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경공업무역부는 2008.1월부터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산 차량에 대해 115,500대만 수입을 허가하는 한편, 3,000cc 이상 대형 고급차량 수입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종의 수입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말 금융위기 여파로 유가하락이 심화되자 국내 조립판매자동차 회사에게 시행하던 완성차 수입쿼터를 전면 금지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010년 6월 부족한 외환을 보완하기 위해 CADIVI를 보완하는 새로운 외환시스템인 SITME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한 일평균거래량은 2,500~4,500만 달러로 CADIVI의 공급미달을 상당부분 충족시켜주었으나, 운영에 따른 국가 채무가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2013년2월8일 동 시스템을 폐지하고, 동년 3월 이를 보완한 새로운 외환시스템인 SICAD(외환거래보완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새로운 'Superior Currency Body(외환상위기관)'산하에 운영되는 SICAD는 일종의 경매식 시스템 이라는 점에서 SITME와 유사하지만, 전처럼 유가증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PDVSA 오일펀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베네수엘라는 1992년부터 반덤핑법을 시행하고 있다. 1997년 한국산 주사기에 대한 제소가 있었으나 1999년 무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베네수엘라 철강업체 SIDOR사는 일본,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제소, 2000.1월 철강 바, 튜브 및 쉬트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토록 한 적도 있다.

1999년 세이프가드법 제정이후 이에 따른 조치도 이루어졌다. 2000.1월

에는 한국을 포함 미국, 유럽 각국의 열연 및 냉연 강판 제품에 대해, 3월에는 승용차용 타이어, 5월에는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 각각 세이프가드 제소가 있었으며, 2002.9월에는 열연강판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2001.8월 이래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직물·의류·플라스틱·농산물·자동차 분야에서 일련의 수입규제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도 있다.

그러나 2003년 들어 외환통제정책에 따라 각종 수출입이 감소하게 되자 그 동안 수입제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던 철강 및 신발류 등에 대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는 인정되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ech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12)에 의해 300여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규격을 정해놓고 동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관(SENORCA)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업용 기계부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차 부품의 경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업시험검사소 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소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동 확인서 유효기간이 1개월~1년 정도로 자의적으로 발급되어 제품의 생산과 운송에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 확인서를 받은 후 주문을 할 경우 통관시점에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재발급이 안 될 경우 통관을 못하고 물품이 세관에 방치하는 일이 발생, 기업들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베네수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을 이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준이 Tier 0(Tier는 미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를 위하여 2008.1월부터 모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인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한 바 있고, 이를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하였으나 2014년 현재까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천연가스 Kit의 안전성 문제 및 소형차량에의 탑재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품목별 장벽

경공업무역부(MILCO)는 국내 조립산 차량의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2008.1월 외국산 차량의 수입을 전년 대비 62.2% 축소한 115,500대로

제한키로 결정하는 한편, 3,000cc 이상 차량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약 23,000대가 수입 판매된 한국 차량의 경우 2008년도 수입허가 규모는 전년대비 약 40% 정도에 불과한 9,000여대로 축소되었으며, 3,000cc 이상 차량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그간 주재국내에서 인기가 높았던 국산 인기 차종의 수입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완성차량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베네수엘라는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 및 저소득층의 소형 차량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2005.6월부터 VeneMovil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08.6월까지 1,600cc 이하 1만 달러 미만의 소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었다.

정보통신부는 IT 제품 수입에 따른 외화 낭비를 방지하고 국내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성 안테나, 셋톱박스, 휴대폰, 광케이블 등의 제품 신규 생산 및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거치기간 1~3년, 연 2~4%의 저리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정보통신부 구상대로 향후 5~7년 내 주요 IT제품의 국내 자급자족이 실현되면 한국산 IT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수엘라는 커피, 카카오, 바나나 및 기타 과일류의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소규모에 불과해 큰 의미는 없으며,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추진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 충족을 위한 제조업 육성에 치중하고 있어 수출 보조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베네수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조달전담기구는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조달업자 공급업체 등록 및 정부조달 업무의 기획 및 조정을 위해 조달청(SNC)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물품 조달업무는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정부조직이 비대하고 석유산업, 알루미늄산업, 철강산업 등 각종 기간산업이 국영화되어 있어 입찰에 의한 정부 및 국영기업의 구매가 많다. 정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에 주재하는 기업으로서 SNC에 조달업자 공급업체로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외국 업체들은 SNC에 등록된 베네수엘라업체를 에이전트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입찰절차법에 의하면, 정부조달 상품의 구매에 있어 국산품 가격이 경쟁 수입품보다 5%이상 비싸지 않은 경우 국산품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국내 부가가치가 20%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제품일 경우에는 추가로 각각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국 내 생산제품은 외국산 제품 대비 최대 15%의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정부조달은 대부분 공개입찰의 형태로 입찰이 이루어지지만, 차베스 정부에서는 정부 대 정부 간 협정 또는 계약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및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대형 공개입찰은 매우 제한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였으며, 실제로는 인맥 및 자금을 통한 대정부 사전 로비활동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공개 입찰의 경우에 공고 기간이 통상 2주일 이내로 짧아 외국 업체가 참가하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를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의무화함으로서 외국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베네수엘라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으로서 파리협약, 베른협약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도 서명하였으며, 국내적으로도 제반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1997.4월 SAPI(Servicio Autonomo de la Propiedad Intelectual)를 설치하여 상표, 발명, 신기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고,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내세워 규제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적이나 CD, 음반 등의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바지, 의류, 모자 등의 상표 도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3년 이후 외국산 의약품 관련 특허를 한건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2005년 이후부터는 어떠한 종류의 특허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서비스 장벽

1996년 베네수엘라 국영통신회사 CANTV의 독점이 폐지된 이후 국내외 유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공급회사가 크게 증가 하였다. 공중파 방송의 영업 허가기간은 25년으로 2007.5월 반정부 보도를 사유로 차베스 정부가 RCTV에 대한 방송 허가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베네수엘라는 선박의 자국 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안 무역이나 운송은 자국 내 등록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1999.10월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의 외국인투자는 기본적으로 국내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금융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다만, 차베스 정부에서 2006년 이후 석유산업 국유화에 이어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점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약

TV, 라디오 방송 및 현지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 직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동 제한 분야는 국내 투자 지분이 80% 이상인 국내기업에만 허용되고, 외국인 투자자는 동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의 지분을 19.9%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석유 등 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정권까지는 자원개발에 외국인투자를 대폭 완화하여 13개에 달하는 한계유전의 개발권을 외국기업들에게 양허한 바 있으나 차베스 정부는 1999.12월 헌법 개정을 통해 석유 등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을 확실히 하였다.

이에 따라, 2005.7월부터 석유 개발은 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 합작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기존 외국인 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2006.3월 제정된 에너지석유부의 합작회사 관련 규정에 의하면, 20년 기간으로 외국기업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되 지분의 6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현지 법인 대신 지사를 설립할 경우 주재국 상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상법상 회사형태를 채택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에 설치된 외국법인의 지사는 영업활동에 있어 국내법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외국회사가 에이전트 또는 판매 대리인 등을 통해 사업을 할 경우 여타 중남미국가와는 달리 에이전트나 판매 대리인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계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계약 종료 시 이들이 갖는 권리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권리에 한정된다.

외국법인의 지사는 법인세는 연간 총소득 대비 34%, 부가가치세 12%, 사회보장세 2%, 과학기술개발기여금 1%, 실업기금 1%, 약물퇴치기금 1% 등 세제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국산화의무 부과

원칙적으로 현지 부품 사용의무는 없다. 석유 및 광물자원을 제외한 베네수엘라의 국내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산부품 사용을 강제할 상황에 있지는 않다. 다만, 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미생산 확인서나 국내생산 부족 증명서 등을 경공업무역부(MILCO)에서 획득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엄격한 외환통제 정책과 더불어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 제조업 육성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생필품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제조 상품, 특히 음식료품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의무를 특별히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IEX)에 등록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절차들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 및 서류 보완 요구, 급행료 요구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은행이 작성한 Doing Business 2014-Venezuela 보고서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평균 141일이 소요되어 조사대상 189개국 중 181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투자진흥청인 CONAPRI(The National Council for Investment Promotion) 홈페이지(www.conapri.org)를 방문하면 베네수엘라 투자 관련 절차 및 규정 등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베네수엘라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장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곳은 카라카스 시내 및 카라카스 외곽 고속도로 부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된 환경보호지역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주 또는 시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우 별 문제가 없다.

내국인 채용 의무

외국 법인의 지점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국적이나 주재 장소 등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노동담당 직원(labor relations manager)은 반드시 베네수엘라 국적을 보유한 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선박이나 항공의 Captain 또한 베네수엘라인 이어야 한다.

피고용자 10인 이상의 기업은 피고용자의 9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민

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급여총액의 8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국내에 부족한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상기 90% 고용에 대해서 유예조항을 두고 있다.

노무관리상의 제약

베네수엘라인의 생산성은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은 편이다. 지각하는 사례가 많고 공사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며 이직률이 높아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풍부한 인력에 비해 숙련 노동자나 전문경영인 영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베네수엘라의 노동법은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고, 강성노조로 인한 파업이 빈발하는 등 노무관리에 특별히 어려움이 많아 내국인들조차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단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고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투자시 다른 기업의 채용 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2.5.1일 개정된 노동 및 노동자기본법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은 주간 근무자의 경우 일일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야간 근무자는 일일 7시간, 주당 최대 35시간, 주야간 혼합 근무자는 일일 7.5시간, 주당 최대 37.5시간이다.

근로자 최저임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5월1일 조정되지만, 차베스 정권시절에는 최저임금의 실질소비력을 높이기 위해 1년에 두 번 인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2013년에는 이를 3회로 늘렸고, 2013년 5월, 9월, 11월에 각각 20%, 10%, 10%씩 인상하였고, 2014년에는 1월 10%, 5월 20%씩 인상하여, 2014년 9월 현재 도시근로자의 최저임금은 4,251.40Bs.F로 유지되고 있다. 이를 정부공식환율((1$=6.3Bs.F)로 환산하면 675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근로자 최저임금은 중남미지역에서는 수준이 높은 편이나, 상기 최저임금은 주재국의 공식환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암시장 환율로 환산 시 실질임금은 낮은 수준이다.

2004~2012년 기간중 베네수엘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률

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상승률	누적물가상승률
2004	Bs. 321.235	30%	19,2%
2005	Bs. 405.000	26,07%	14,4%
2006	Bs. 512.325	26,5%	17%
2007	Bs. 614.790	20%	22%
2008	Bsf. 799,23	30%	30,9%
2009	Bsf. 967,50	20%	25,1%
2010	Bsf. 1.223,89	25%	27.2%
2011	Bsf. 1,548.22	25%	29.0%
2012	Bsf. 2,128	21.9%	20.1%
2013	Bs.F2972.99	39.7%	56%
2014	Bs.F4,251.40	32%	38%(1~8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외에 최소 15일치에 상응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중식 제공, 주택자금 적립 지원, 사회보장세 및 고용보험 지급, 교통비 및 식사 보조비 지급, 직업교육 실시 등 임금 외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매우 많다.

금융상의 제한

베네수엘라에 진출하는 기업은 외환배분위원회(CADIVI)에 초기 자본금을 등록하고 사후에 이윤발생 시 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자본금 유입 후 1년이 지나면 공식 환율(1$=6.3 Bs.F)로 외환송금 가능하며 송금 시 금액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CADIVI에서 승인에 6~12개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기업들이 채권시장(Parallel Market)에서 비공식환율로 환전, 송금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0.6월 채권시장을 불법으로 규정, 채권시장

을 폐쇄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은 과실송금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폐쇄된 상태이다.

베네수엘라는 1996년부터 환율밴드제(폐장년도 환율기준 7.5% 내외에서 환율 운용)를 채택해 왔으나, 2003.2월부터 부유층들의 외환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외환통제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5.10월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1만 달러 이상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외환 규정에 의하면, 중앙은행이 모든 외환통제 법규를 관장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외환은 중앙은행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자신이 구득하는 모든 외환을 사전 지정된 환율로 중앙은행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수입상은 상품 수입용 외환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무역센터(Cencoex))의 까다로운 사전 외환 획득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출업자로서는 대금 회수에 대부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진출 유망 분야

정보통신부가 주재국 내 IT산업 육성을 위해 휴대폰, 위성 안테나, 광케이블 등 IT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분야에서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제품 생산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합작회사를 추진 중인 현지 업체들의 사례를 볼 때, 외국 기업의 참여 지분은 10~20% 수준으로서 현지 업체들은 직접적인 금전적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 인력 교육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고, 부품 수입에 있어서도 국

내 미생산 확인서나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자동차 부품의 현지 생산 비율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재국 차베스 대통령이 제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기술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외국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하여 TV, 냉장고 등 한국산 가전제품도 현지 판매 대리점으로 하여금 조립라인을 설치토록 하여 일정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쟁정책

1992.1월에 제정된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법'에 따라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 감독위원회(일명 Pro-competencia)를 설치하여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가격 담합, 독과점 등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ro-competencia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2007년 이후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은행, 식품 유통, 주유소 운영, 민간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등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에의 정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활동 영역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기타 장벽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국가개입 과도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외환통제, 가격통제 등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보조로 운영되는 대규모 국영기업의 활동증대로 민간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예컨대, 최대 식품도매업체로 등장한 농산물공급공사(CASA)는 2004년의 경우 4.31

억 달러의 식품을 수입, 이를 국내에 2.23억 달러에 공급하고, 그 손실액으로 매월 2,400만 달러를 정부에서 보조받았는데, 이는 식료품 분야에서 외국기업 및 국내 민간기업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켰다. 또한, 정부의 각종 경제 수치와 통계에도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치안 불안

수도 카라카스에서만 매주 평균 50명 내외 정도가 피살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는 물론 공항, 주택지역에서도 강도, 절도, 소매치기 사건이 빈발하는 등 치안이 불안하다.

베네수엘라 공항 도착 시에는 사전에 연락된 사람의 마중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된 공항택시 이외의 교통수단(일반 택시 등) 이용은 금물이다. 또한, 체재 시에는 비교적 고급호텔에서 투숙하고 야간출입을 삼가는 등 신변안전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08.9.29일자 정치평론지 Foreign Policy에 의하면,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살인률이 67% 증가하였다. 미국 여행전문 사이트 Amerikanki에 따르면 수도 카라카스는 인구 10만명당 피살자 수가 122명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위험한 도시이며, 도시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고 소개되고 있다.

국민성

베네수엘라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그란 콜롬비아'의 변방에 위치한 비교적 소외된 지역으로 하층민들이 거주해온 지역이며, 석유개발이후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의 집단이 많아 온건한 기질보다는 반항적이고 타산적인 기질이 강하다. 특히, 과거 석유개발로 인해 한때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부국이었던 자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거만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 수출입업자나 지상사 직원들의 현지 거래 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법부의 부패

부패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으나, 특히 사법부의 부패가 심하여 이른바 Judical Terrorism으로 기업의 명예훼손과 함께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담보물이 압류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1998.8월 차베스 대통령 정부 이후 부패판사 대량퇴출 등 사법부의 일대 개혁이 단행된 바 있으나, 오래된 사법 행태의 개선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 면허증

통상 한국 운전면허증을 국제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제출하면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등 해당 관청의 업무처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체류 비자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광사증 면제각서가 2007.12.23일부터 발효하여 양국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지상사 주재원 등에 대한 장기체류 비자는 신청서류가 복잡할 뿐 아니라 발급기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주재국 금융시장 통제권은 은행금융기구감독원(SUDEBAN)이 갖고 있으며 민간은행에 대해서는 수수료 규제와 함께 전체 대출금의 40%를 농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저리로 대출하도록 하고 있고 총 예금의 30%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7월 차베스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내 3위 민간은행인 스페인계 Banco de Venezuela에 대한 국유화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두고 금융계 일각에서는 2007년 하반기 민간은행에 예치된 공공자금의 국영은행으로의 이관 조치와 더불어 금융권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표면화된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었다. 마침내 베네수엘라는 정부는 2009.5월에 Banco de Venezuela를 10억 5천만 달러에 스페인계 Santander 그룹에 지불하고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2009.11월에 민간계 은행인(Banpro, Confederado, Canarias, Bolívar Banco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출처분명의 자금을 활용했다는 명분으로 국유화를 단행하였으며 2010.6월에는 Banco Federal을 국유화 조치하였다.

개선 실적

과거 한국과 베네수엘라 양국 정부가 서로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일정기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 왔으나 2007.12월부터 양국 간 관광사증면제 교환각서가 발효되어 90일간 관광목적 무사증 입국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볼리비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볼리비아정부는 관세정책을 수정한 최고법령 제 29349항(2007년 11월 21일 제정)을 통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 새로운 관세규범은 유럽연합(EU)과 안데스공동체 간의 협상에서 볼리비아의 협상력을 유리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세 구조는 0%, 5%, 10%, 15%, 20%, 35%의 관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자본재에는 5%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산업발전을 위한 일정한 자본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불요불급한 자본재의 수입에도 5% 관세율을 적용한다. 볼리비아 현지 생산품과 동일한 일부 품목에는 15%, 20%로 관세를 적용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호한다. 최고법령(Drecreto Supremo) 제 125항(2009년 5월 13일 제정)을 통해 관세 구조에 일부 품목(섬유제품)에 35%의 관세율을 만들었다.

특별히 볼리비아 관세청(ANB)은 인플레이션 조절을 위해 음식료품 같은 특정 품목의 임시관세율을 매달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임시관세율은 육류, 닭고기, 토마토, 오렌지 같은 음식료품을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관세율은 안데스공동체 회원국(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볼리비아와 통상협정을 체결한 국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2012년 8월 볼리비아 관세청(Aduana Nacional de Bolivia, ANB)은 국경과 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품목의 창고 보관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균일화하여 모든 품목에 균일 세율을 적용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고가상품이나 품목 수량이 크고 적음에 대한 차별화가 모두 사라지게 되므로 수출 및 세관 수수료로 인한 세입이 손실을 입으며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으며 볼리비아 상공회의소 수출부서의 부사장은 세관 당국이 새 규칙을 실행에 옮기기 전, 해외 시장에서의 볼리비아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창고 보관 상품에 대한 균일 세율 적용 발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볼리비아 주요품목별 관세율

품 목	세율(%)
가공식료품	5~20
광산품	5~10
화학제품	0~20
플라스틱/고무제품	0~20
가죽제품	5~20
종이 및 지제품	0~20
섬유제품	5~35
금속제품	5~20
전자가전제품	0~20
수송기계류	0~20
광학제품	0~20
동물 및 동물 관련 제품	0~20
육류 및 내장 가공 식품	5~20
어패류	5~20
유제품	5~20
식물, 야채 및 종자	5~15
과실류	5~15
커피 및 차	5~20
곡식류	5~15
음료 및 주류	10~20

수입부과금

관세이외에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CIF가격에 14.94%의 부가가치세(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가 부과된다.

또한, 담배류, 주류에는 특별소비세(ICE : Impuesto al Consumo Especifico) 부과된다. 담배류는 CIF 가격의 50~55%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주류에는 주종에 따라 리터당 0.61~9.14 볼리비이노(Bs)가 부과된다.

그러나 주류와 일부 의약품의 경우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샘플인 경우 의약품 샘플과 함께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미리 제품에 '무료 샘플'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미리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도서 및 간행물, 금(보석 제외), 개인 지참 현금(300$ 미만), 영사 및 외교관의 경우 정부 협약 또는 지역 협정에 따라 수입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물품수입 가격에 0.1~2.5%의 통관수수료가 부과되고 창고 사용료는 처음 5일 동안은 무료이나, 그 이후 15일마다 톤당 1.2달러, Kg당 0.09달러가 부과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볼리비아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under value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이전에 비해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실제로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이 일반적이다.

연간 5천불 이하 수입은 수입업자 개인이 할 수 있으나, 연간 5천불 이상의 경우에는 통관사나 통관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

통관절차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DJVA: Declaracion Jurada de Valor en Aduanas)를 세관장에 제출함으로서 개시되고 관계서류 제출, 관세

등의 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통관을 위한 서류는 '세관에 관한 일반 법률' 111조에 따라 제출서류 요약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화물도착 통지서, 보험증서, 선적관련 비용증명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제출을 기초로 세관은 볼리비아 통관절차정보시스템(DUI: Declaracion Unica de Importacion)에 통관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세관에서 설정한 프로그램(SIDUNEA)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황색(Amarillo)채널로 판정된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적색(Rojo)채널로 판정된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전량 Invoice와 대조·검사하게 되며, 녹색(Verde)채널로 판정된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한 통관절차가 진행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수년 전까지 볼리비아세관은 모든 수입 물품에 원산지인증서(Certificado de Origen)를 요구했었다. 초반에는 볼리비아 당국이 수입 제품의 실제 가격을 알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볼리비아세관은 국제물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증서 요구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수입 규제 품목인 동·식물 및 중고 의류 등의 경우에는 통관 절차를 거칠 시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안데스 공동체(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우대 관세의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규제

볼리비아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품목에 대한 규제가 없어 수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상품은 세관에 관한 일반법

령에 의하여 수입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중고 의류제품, 3년 이상 경과된 중고차나 오토바이(단, 차량중량이나 적재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은 예외 규정 적용)는 수입할 수 없다.

곡물 또는 식료품, 동식물의 수입할 경우 국립농식품 및 축산원(SENASAG)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햄, 소시지, 치즈 같은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경우 농산물 및 가축 위생, 무해식품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산물 위생관리 부분에서 볼리비아 보건인증 전문가들이 볼리비아로 수출하려는 식품의 제조공정을 검사하기 위한 수출국 탐방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을 위한 사전허가의 발급이 필요한 특정 품목으로는 총기와 탄약과 같은 무기류, 화학물질, 항공기, 헬리콥터, 진정제류의 마약성분이 들어간 약품, 향정신제(정신안정제, 환각제 등), 일반적인 알칼로이드 품목과 그 파생 제약, 차량용 연료 및 윤활유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송기기는 수입 시 통신국(Telecommunications Office)의 승인이 필요하며 상표가 있는 모든 의약품과 OTC(Over-The-Counter, 처방전이 필요 없이 조제 가능한 의약품) 의약품은 보건체육부(Ministerio de Salud y Deporte)에 등록해야 되며 제약팀(Unidad de Medicamentos y Laboratorio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 검사에 약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중요 제품 검사에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관련 법령(Dercreto Supremo N 23.308)은 존재하나 이를 운용할 조직이 없고 동 법령이 적용된 사례가 없다. 세이프가드 에 관한 법령은 아직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검사 기관으로는 볼리비아 표준 및 계량원(IBMETRO)과 볼리비아 품질표준원(IBNORCA)이 있다. 석유·가스 저장을 위한 금속용기 및 장비, 에어컨, 냉장고, 소화기 등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 품질인증기관의 검사서 등을 IMBETRO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배류는 IBNORCA에 원산지증명서, 품질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공된 수입식품류에는 제조날짜, 유효기간, 성분, 원산지, 제조사 주소를 스페인어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고, 수입자 및 배포사와 동사의 주소, 납세자등록번호, 수입식품 등록(SENASAC)번호가 기재된 별도 라벨도 붙여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중고차 수입할 경우 법률 3467 및 대통령령 28963호에 의하여 세관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배출가스 측정을 받아야 하며 측정결과는 IBMETRO에 통보되어 환경평가 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또한, 자동차, 냉장고에 쓰이는 냉매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허용된 물질을 써야 한다.

품목별 장벽

수입 금지품목은 1) 의약법 제 1737조에 의거, 식약청에 등록되지 않은 성분의 의약품 2) 식용 가능 상품, 식용 조제 물질, 변질되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이 첨가된 음료나 주류 3) 질병에 감염된 산(生) 동물, 4) 식용 식물, 과일, 씨앗, 미생물이나 기생충이 있거나 농축산부가 유해하다고 판정한 기타 농작물, 5) 해외복권, 위조 화폐, 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재, 우표, 물질적 가치가 있는 기타 물질 포함(수집을 위한 화폐나 우표는 제외). 6) 오래 된 착용품, 예를 들어 속옷, 잠옷,

실내복, 구두, 의류, 섬유 재질의 밧줄류, 폐기 의류, 7) 독성, 부식성, 방사능물질, 폐기광물,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 위험 폐기물, 8) 강철(중고차량의 부품, 기타 탈 것에 사용된 부품) 제련 폐기물 등이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볼리비아는 1995년 9월 12일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보조금과 보상정책은 WTO 협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볼리비아에 수출할 때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을 하는 것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한다. 헌법상 국제협약에 관련하여 명시한 내용이 아니라면, 행정부에서 최고법령에 의거해 세금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률, 보상 권리, 반덤핑 권리에 관련한 법규를 제정한다고 일반 관세법 제 1990조 26항(1999년 7월 28일 제정)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동 법령을 집행할 기관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볼리비아는 WTO의 공공거래에 대한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의 서명국이 아니다. 따라서 볼리비아의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볼리비아 정부의 소비는 경제발전을 "계획"하고 자국의 생산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만든 과정이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 생산업자들은 1백만불까지는 볼리비아 정부조달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정부조달은 원칙적으로 볼리비아 기업이나 볼리비아에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볼리비아 제품을 상업화하는 회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볼리비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일 경우 외국회사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국내생산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만 아니라면, 해외상품 제공자들의 참여도 허락한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조달, 공공입찰, 국제입찰 계약은 모두 실행 가능한 재정능력이나 경력 확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채택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국내 지적재산권보호국(Servicio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 SENAPI)은 최고법령 제 27938항에 의거한 볼리비아 전역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이다.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법규의 엄중한 준수, 불법행위 감시, 산업재산권에 대한 독보적인 권리의 효율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지적재산권보호협회는 차별성, 발명특허, 실용신안 통합설계디자인, 산업디자인 같은 저작권등록 절차를 해결하고 위법행동이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Procedimiento Administrativo Ley) 제 2341조, 최고법령(Reglamento Decreto Supremo) 제27113조, 안데스공동체위원회(Comision de la Comunidad Andina) 결정 제486조에 의거한다. 수출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경우 해당 상표 소유주는 저작권보호국에 불법 활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안데스 조합 위원회 결정 제486조 3장 15절에 명시되어 있다. 의약 품명은 국내 지적재산권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볼리비아 정부는 자연에서 파생된 상품의 특허를 발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즉, 만약 한 회사가 자연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상품을 특허 요청한다면, 그 상품의 특허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비스 장벽

볼리비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매우 많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비용과 가격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수준도 저하시킨다. 볼리비아는 전체 수입에서 운송 분야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 우루과이라운드 후속협상의 차원에서 볼리비아는 통신, 금융서비스 관한 일련의 공약에 서명하였으며 이 서명 내용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4, 5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 볼리비아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비스와 소유권에서 볼리비아정부는 “볼리비아는 이미 WTO의 테두리내에

가지고 있는 공약을 벗어나 더 큰 것을 약속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볼리비아는 모든 서비스 규제의 자유화를 쉽게 공약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 장벽

2009. 2. 7일 공포된 주재국 신헌법 320조는 내국인투자가 외국인 투자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현모랄레스 대통령은 그간 주재국이 체결한 모든 양자투자보장협정을 전면 재협상하도록 국유화 담당 무임소장관에게 지시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6. 4.1 주재국과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 한바 있으며 주재국은 기존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 독일, 아르헨티나, 칠레, 쿠바, 덴마크 등 22개국과 신헌법상 자원민족주의 이념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신헌법은 특히, 자원분야에 대해서는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여 광산분야에 투자한 외국업체의 재투자 의무 등 탐사, 개발, 정제, 운송, 판매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신헌법 공포 이전에도 대통령령에 의하여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가 시행된 바 있다. 2008년 5. 1 Chaco사, CLHB 등 3개 외국계 석유회사에 대한 국유화 선언으로 국영석유가스공사(YPFB)에 흡수시켰으며, 2010. 5. 1 외국회사가 지분 50%를 갖고 있던 Corani, Guaracachi 등 전력회사 3개사와 배전회사 1개사의 국유화를 선언한 바 있다.

광산분야 합작투자에 있어서도 적어도 주재국측의 지분이 51%이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투자이행보증금은 은행에 공탁시키고 투자를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재국 광업당국이 공탁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있다.

법인・지사 설치

법인이나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 상업등기소(FUNDEMPRESA)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제무제표, 당해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법인장, 지사장) 등이다.

또한 주요일간지에 법인 또는 지사 설립을 공고하여야 하고 신문에 공고내용을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밖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과,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할 시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소에 등록비용은 83.5 미불이다 .

금융상의 제한

주재국 정부는 해외송금을 통제하여 1천불 이상 은행을 통해 송금할 경우 송금금액의 0.3%를 은행송금세(ITF : Impueto a las Transcciones Financieras)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도 1만불이상은 공항 등에서 제공하는 세관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5만불이상 50만불 이하 반출의 경우 볼리비아 중앙은행 및 공항 등에서 신고를 하여야 하며 50만불 이상 반출할 경우에는 공공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자원개발 관련된 세제는 법령 N 3787호 제97조에 의거한 로열티(Regalia Minera) 부가가 광물 종류에 따라 판매액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부과(철의 경우 2~4%)되며, 법령 N 1606 제 50조에 의한 법인세(Impuesto sobre las Unilidedes de las Empresas)는 기업순이익의 25%가 부과된다. 또한 광물의 실거래 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가격보다 높을 때만 적용되는 추가비례세(Alicuato Adicional : 법 N 3787, 제101~102

조)는 기업순이익에 12.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면제 제도가 있다. 오루로주와 포토시주에 10만불 이상 투자시 5년 동안 법인소득세(IUE) 면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입기계류에 대한 부가가치세(IVA)도 면제되나 주류산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라파스 인근 서민층이 거주하는 El Alto 지역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10년간 소득세가 면제(법 N 2658)된다.

경쟁정책

모랄레스 대통령 취임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정책기조를 유지, 석유가스 및 전력산업의 국유화 추진, 시멘트, 우유, 설탕, 제지 등의 산업에서도 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가스 석유는 주재국 최대 회사인 볼리비아 국영석유가스공사(YPFB) 만이 관여할 수 있으며, 외국계 석유가스회사가 생산한 가스 등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고 전량 YPFB에 판매하여야 한다.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정부 참여가 확대되는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의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 체류 비자

한국과 볼리비아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목적비자(Objeto Determinado)를 발급(30일 체류, 2회 연장 가능) 받은 후, 주재국 이민청에 1년 기간 임시체류증을 발급받고, 그 종료기한 이전에 2년 기간 임시체류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1년간 임시체류증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로는 목적비자를 받은 유효한 여권, 체류 신청서, 노동계약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자영업자인 경우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무범죄경력

증명서(한국 경찰청에서 발급), 임차계약서 등 주거지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주재국 사용은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또한, 주재국에서도 Automovil Club Boliviano에서도 국제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 면허증은 주재국의 정식 면허증으로의 교환은 불가능하다. 주재국 발급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을 보아야 한다. 주재국 운전면허 취급기관은 라파스 교통국(Organismo Operativo de Transito)과 산타크루스 교통국 등이 있다.

브라질

개관

브라질 경제

브라질은 1990년대 시장 개방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 개방 경제를 지향한 바 있으나, Lula 정부 이후 기존의 적극적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심해 유전에 대한 주권 강화 조치 및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이전, 국내 생산 촉진 정책(2011.8.2일「Brasil Maior」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지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대체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1995.1월 발족한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중심국가로서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들은 대외공통관세(CET)제도를 도입하여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Mercosur는 브라질 통상정책 추진의 주요 기반이 되고 있다.

브라질은 1995년 헌법을 개정하여 통신·전력·항만·석유개발 분야 등에 외국자본 참여를 허용하고, 내·외국인 차별을 철폐한 이후 외국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653억달러의 FDI 순유입을 기록(전 세계 4위, 브라질중앙은행 자료)한 바 있다.

브라질경제는 2000년대 중반 국제원자재가 상승, 외국인투자 급증, Lula정부의 성공적 경제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4.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천연자원, 농목축업, 심해유전(Pre-salt) 개발,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개최 확정 등을 계기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0년에는 소비 및 투자 확대

에 따라 7.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유로존 위기,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요 감소 등의 대외요인과 함께 브라질 산업경쟁력의 지속적 저하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이 맞물려 2011년 이후 저성장 추세에 있으며, 2014년 1/4분기 및 2/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기술적 경기침체" 상황에 돌입하였다. 아울러, 저조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 활성화가 절실한 브라질정부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저성장 추세,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정부재정의 불건전성,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내부적 문제와 함께,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외부 여건도 만만치 않아 브라질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잡한 세금, 관료주의, 부족한 인프라, 경직된 노동문화 등의 소위 브라질 코스트로 일컬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가 브라질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의 통상환경 및 경제 사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브 관계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이다.

한국과 브라질간 교역 규모는 2011-2013간 연평균 166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전체 교역규모의 약 30%에 해당한다.

2000년대 들어 한-브간 교역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에는 글로벌경제의 전반적 부진에도 불구,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이 전년대비 52.5% 늘어난 11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동기간 수입은 34.6% 증가한 63억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또한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55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성장세를 이어오던 한-브간 교역은 최근 2년 연속 하락(2012년 164억 달러, 2013년 153억 달러 기록)하면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 이는 브라질 경제의 부진으로 인한 브라질의 교역 규모 성장률 감소, 브라질정부의 공업세(IPI) 인상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 환경의 악화, 우리기업의 브라질 현지진출 확대에 따른 완제품 수출 감소 등이 주요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3년 우리 자동차(HS Code 8703)의 대 브라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부품,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주로 첨단기술을 요하는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브라질은 우리나라에 철광, 사료, 박류, 천연섬유원료 등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과 브라질간 교역은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 비중이 수입 보다 훨씬 큰 무역 불균형 관계를 이루고 있다. 2013년 기준 대 브라질 수출이 한-브 교역액의 약 63.9%를 차지, 수입의 약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MERCOSUR 관세동맹 공식 출범 및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브라질의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1996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 이후 2014년 6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누적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67.6억 달러(실제 투자 57.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브라질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동국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23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반덤핑 관세 부과로 대표되는 브라질정부의 각종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교역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투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브라질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과 자국 산업 육성·보호를 위해 수입이 급

증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둔화되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입규제 조치는 당분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브라질 통상 환경의 변화와 특징

브라질 경제는 지난 3년간 저조한 경제성장(2011년 2.7%, 2012년 0.9%, 2013년 2.3%) 및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14.9월 브라질중앙은행이 발표한 GDP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도 0.7%에 그치고 있는 등 이미 경제성장이 침체 주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으며, 2014년 초 하향 조정된 올해 기초재정수지 목표치 1.9% 달성 가능 여부도 불투명할 정도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종합해 볼 때 당분간 현 경제상황의 반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Dilma 정부는 2011년부터 Brazil Maior(Bigger Brazil) 정책을 통해 수입억제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4.10월 대선에서 Dilma 현 대통령이 재선됨으로써 이러한 보호주의적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기업의 진출 여건에 어려움이 상존할 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 간 한-브 교역규모 감소는 브라질경제가 2011년 총 GDP와 교역액 측면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이 주요인이며, 이에 더하여 수입자동차에 대한 브라질정부의 공업세(IPI) 인상을 포함한 보호주의 조치 강화도 교역 축소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 브라질의 교역 추이

(단위 : 억 달러,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증가율)	153.0 -22.7%	201.9 32.0%	256.0 26.8%	242.5 -5.26%	242.1 -0.2%
수입 (증가율)	127.7 -26.2%	181.8 42.3%	226.2 24.5%	223.1 -1.37%	239.6 7.4%
교역액 (증가율)	**280.7 -48.9%**	**383.7 74.3%**	**479.2 51.3%**	**465.6 -6.63%**	**481.7 7.2%**
무역수지	25.3	20.1	29.8	19.4	2.5

최근 5년 한국의 대 브라질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9	5,311	-10.4	3,744	-14.5	1,567	9,055
2010	7,753	46.0	4,712	25.9	3,040	12,464
2011	11,821	52.5	6,343	34.6	5,478	18,164
2012	10,286	-13.0	6,085	-4.1	4,201	16,371
2013	9,688	-5.8	5,573	-8.4	4,115	15,261

아래 표를 보면, 2011년도 우리의 대 브라질 수출에서 18.5%를 차지했던 승용차가 2013년에는 6% 비중으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수입자동차에 대한 브라질정부의 IPI(공업세) 부과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업계는 현지 투자와 병행하여 대브라질 자동차부품 수출에 더욱 힘쓰면서(2011년 수출 비중 5.5% → 2013년 15.5%) 변화된 교역환경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한국의 대 브라질 주요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

주요 품목	2011		2012		201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자동차부품	**646,651**	**5.5**	**1,116,058**	**10.9**	**1,503,736**	**15.5**
승용차	**2,190,203**	**18.5**	**1,058,227**	**10.3**	**579,568**	**6.0**
무선통신 기기부품	1,040,330	8.8	601,255	5.8	982,747	10.1
집적회로 반도체	240,082	2.0	640,138	6.2	997,956	10.3
평판디스 플레이	570,967	4.8	839,217	8.2	862,815	8.9
총계	11,821,399	100	10,286,065	100	9,688,236	100

수입정책상의 장벽

대외무역기관

브라질의 모든 대외거래를 총괄하는 최고기관은 국가통화위원회(CMN)이며, 개발상공부, 재무부, 중앙은행의 대표가 모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국가통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입허가, 통관, 외환관리 등 수입과 관련된 행정사무는 개발상공부 산하 대외무역국(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 SECEX), 재무부 산하 관세청(Secretaria da Receita Federal, SRF),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BCB)이 각각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개발상공부는 대외무역에 관한 정부 주무부서가 되며, 그 산하 대외무역국이 재화나 서비스의 대외거래를 총괄하는 정책 실무를 담당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대외거래에 관한 모든 금융활동을 감독 및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세 장벽

브라질은 1995년 발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통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고 있다(2012.7월 베네수엘라 신규 가입).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를 통해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들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대부분의 역내 교역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설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별도의 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규율된다. HS코드와 마찬가지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코드)은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통관세는 2013.8월을 기준으로 총 10,029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과거(1990년 32%)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은 물론 러시아(6%), 중국(8%) 등 여타 신흥경제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관세는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s)이다.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소해 오던 평균 수입관세는 2007년부터 점차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 10.61%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10.6%이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원자재(평균 8~9%)나 반가공품(평균 11.9%)은 완성품(평균 15.8%) 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외공통관세 적용의 예외로서, 자본재(capital goods), 정보통신(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제품 등 일부 품목은 특혜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0-2%의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품목리스트 제도를 2015.12.31까지 활용할 수 있다. 동 제도 적용(2012.10.1 발효)에 따라 브라질의 해당 100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복잡한 조세체계

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II) 외에도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인 공산품세(IPI)와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인 상품유통 및 서비스세(ICMS), 사회보장세(Pis/Cofins)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산품세(IPI)의 경우, 국산제품은 판매시점에, 수입제품은 통관 시에 부과된다. 공산품세는 부가가치세이므로 판매시점에 최종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며, 이는 판매자의 매출세액으로 계산되어 추후 매입세액(통관시지불한세액)과 함께 정산할 수 있다. 공산품세는 브라질 내 최종소비자에게 얼마나 긴요한 품목인가의 정도에 따라 세율을 최저 0%에서 최고 300%(담배 등)까지 적용한다.

상품유통·서비스세(ICMS)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국산제품과 수입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수입제품의 경우 CIF+관세+공산품세가 적용된 가격에 부과된다. ICMS는 공산품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ICMS 세율은 주별로 12~18%이다. 주경계 밖으로 상품이 이동할 때에는 목적지 주정부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상품이나 건설서비스, 광업, 전기에너지, 액체 및 가스연료, 국내생산기계와 장비제품에는 ICMS가 면제된다.

사회보장세(Pis/Cofins)의 경우, 과거에는 국산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2005. 4월부터는 수입제품에도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Pis/Cofins 세율은 9.25%로 CIF+관세+공산품세+상품유통서비스세를 합산한 가격에 부과된다.

이렇게 복잡한 조세체계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증방식의 세금 계산과 맞물려 수입가격이 거의 배로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세계은행 발표자료를 보면 브라질이 세금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2,600시간으로 OECD 국가의 187시간 대비 14배 이상 소요되는데 우리 기업으

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브라질로 제품 수입시 부과 세금(예)

세금명	세금산출방식	세액
수입관세(II)	제품가격 CIF X 관세율14%=$100 X 0.14=$14	$14
공산품세(IPI)	(CIF+II) X 공산품세율15%=($100+$14) X 0.15=$17.1	$17.1
상품유통·서비스세(ICMS)	[(CIF+II+IPI)/(1-ICMS세율18%)] X ICMS 세율 18% =[($100+$14+$17.1)/(1-0.18)] X 0.18=$28.78	$28.78
사회보장세(Pis/Cofins)	(CIF+II+IPI+ICMS) X 사회보장세율 9.25% = ($100+$14+$17.1+$28.78) X 0.0925	$14.79
	세액 합계	$74.67

※ 제품 가격(CIF기준)을 100달러로, 관세(II)율 14%, 공산품세(IPI)율 15%, 상품유통 서비스세(ICMS)율 18%, 사회보장세(Pis/Cofins)율 9.25%로 각각 적용하여 산출

통관절차상의 장벽

(1) 수입절차

브라질 내 수입업자는 개발상공부의 대외무역국(SECEX)에 등록을 해야만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대외무역국은 1997. 1월부터 동 무역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상당수 품목이 수입 자동 허가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대외무역국 등록은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한 첫 번째 거래 시 납세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최소자본금 구비 요건 등을 갖춰야 하는 등 수입업자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2007년부터 무역자동화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됨으로써 무역등록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고, 관련 비용들도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산정

되도록 개선되었다. 한편, 수입 관련 불법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최대 2년 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지급 기간이 360일을 초과하는 수입 거래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Invoice 발송
2) 수입업자가 남미공동시장 공동상품코드(NCM: Common Mercosur Nomenclature)에 맞춰 수입상품 분류
3) 무역자동화 시스템(SISCOMEX)을 통해 수입라이센스 신청
4)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와 상업송장을 발송(수입허가가 요구될 경우 수입허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선적할 수 없음)
5) 화물도착 전까지 수입통관업자는 SISCOMEX를 통해 수입신고를 이행하고, 관세를 비롯하여 각종 내국세와 통관비용을 지불

브라질에서 통관 대행업체들이 모든 통관절차와 세금 납부 처리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수입신고 절차는 위험평가방법(risk assessment method)에 따라 아래 4개 채널로 분류되어 진행된다.

1) 녹색: 자동 통관
   - 전시회를 비롯하여 모든 반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최적의 채널
2) 황색: 서류 정보 일치여부 검사
   - Master Airway Bill, House Air way Bill 혹은 B/L, 상업송장 등 기본 서류 정보검토
3) 적색: 서류 정보 일치여부 검사 및 화물 실사
   - 반입품 정보와 서류상 정보가 일치해야 함.
4) 회색: 서류 및 화물의 심층 실사(fraud-related inspection)
   - 기본적인 절차는 적색채널과 동일하지만 반입물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2010~2012간 채널 분류 통계

채널	2010	2011	2012
녹색	83.16	87.45	87.81
노란색	7.25	6.87	7.11
붉은색	9.55	5.63	5.07
회색	0.04	0.05	0.01

통관 절차 소요시간은 원칙적으로 48시간 내 이루어져야 하나, 반입품의 채널 배정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통관비용은 반입품의 Gross Weight, Net Weight 그리고 물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IT Software를 저장한 외장하드디스크의 경우 본 무게는 1kg 미만이지만 상품가치가 높아 10kg의 자동차 부품과 비슷한 통관비용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다.

브라질의 경우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세관의 파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을 진행하고, 그 진행속도는 현저히 줄어든다.

브라질 세관은 수입되는 많은 제품에 대해 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2.8월 무역국산하에 국가통관운영센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ment)가 설립되었으며, 원산지 허위 신고를 포함한 조세 회피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관원이 수입제품의 가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8일 기간 내에 새로운 관세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수입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013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로 물품을 수입하는데 걸리는 시일은(평균 17일) 최근 3년간 변화가 없었으나, 컨테이너당 소요되는 비용은 2009~13년간 거의 두 배(2,275미불)로 증

가하였다. 주요 요인은 열악한 항만 시설에 따른 적체, 통관 분야의 관료주의 및 관련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빈번한 파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수입규제 품목

대부분의 상품은 자동 수입 허가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품, 의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해당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 혈액제제와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헌옷, 중고 타이어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허가 절차나 입증서류의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중고기계와 장비수입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재생중고기계에 대한관세율은 신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브라질은 수입제품의 관세, 환율, 영사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벌칙과 벌금을 부과한다.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수입쿼터 대상 품목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생산제품 및 FTA 체결지역 상품으로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요구되는 품목(중고 기계 및 장비)
- 모든 중고 상품
- 관세감면 혜택 대상 품목
- UN이 규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 해당 관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브라질은 1994년 이후 GATT 및 WTO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은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중 91.2%인 209건이 반덤핑, 4.4%인 10건이 상계관세, 2.6%인 6건이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조치였다.

최근 5년간 수입규제 조치 신규 건수를 보면, 2008년 16건, 2009년 19건, 2010년 12건, 2011년 15건, 2012년 18건으로 최근 3년 사이에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59건으로 제일 많고, 미국 25건, 인도 15건, 멕시코 9건, 러시아 8건, 남아공 6건, EU 5건 등이다.

브라질은 수입규제 조치 중 반덤핑관세의 적용이 두드러지는데, 2012. 1~9월간 47건의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으로써 종전 최다 기록인 2010년 40건을 넘어선바 있다.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은 1) 철(25%), 2) 플라스틱 및 고무(16.7%), 3) 의류(16.7%) 순이다. 브라질 반덤핑관세 적용 국별 순위를 보면 1995~2012년간 중국 79건(1위), 미

국 52건(2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만 볼 경우 우리나라도 브라질이 진행한 반덤핑 조사 총 28건 중 6건에 해당하여 중국 다음으로 많은 건수를 기록한바 있다.

반덤핑 관련 브라질 정부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실무는 무역구제국(DECOM),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대외통상위원회(CAMEX), 반덤핑관세 징수는 관세청(SRF)에서 담당한다.

대외통상위원회는 7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개발상공부장관이 의장)되어 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대외통상위원회 밑에 공공이익을 검토하기 위한 기술그룹으로서 2012년에 설립된 GTIP가 있으며, 무역구제국이 제출한 기술보고서를 정리하여 1~2페이지 내외의 최종보고서를 대외통상위원회에 제출한다.

2014.10월 기준, 우리나라는 8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고 있고, 현재 총 4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우리나라 제품의 대브라질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수입규제 조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8건은 PVC-S(염화비닐수지), 철강 3개 품목(실리콘강판, 후판, 냉연강판), 부타디엔 고무, 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이며, 최근 폴리프로필렌 수지 품목이 추가(2014.8.27 판정)되었다.

현재 버스트럭용타이어, MDI 폴리머, Ferrite Magnet, 탄성고무관 총 4개 품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2014.11월 경 최종 판정이 예상되는 버스트럭용타이어 품목의 경우 우리 해당업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브라질정부 유관부처를 접촉, 우리 기업에 보다 유리한 판정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중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 현황

구분	구분	업종	품 목	조사 착수	결 과
2009년 까지	1	섬유	인조합성사	1993.11	1994.12, 무혐의 판정
	2	섬유	나일론6번사	2000.1	2001.6, 덤핑판정(5.2%), 2006.6 종료
	3	철강	스테인리스강관	2000.6	2001.5, 무혐의 판정
	4	화학	PVC	2001.11	2002.11, 무혐의 판정
	5	섬유	폴레에스텔레진	2004.3	2004.7, 무혐의 판정
	6	화학	PVC	2007.9	2008.8, 덤핑판정(2.7%),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관세 유지 판정(2014.9월)
2010년	7	화학	SBR(부타디엔)고무	2010.6	2011.6 덤핑 판정(8.9%, 3.4%)
	8	철강	도금강판	2010.8	2012.9 무혐의 판정
	9	화학	NBR합성고무	2010.10	2012.3 무혐의 판정
2011년	10	철강	도금강판	2011.4	2012.9 조사 중단
	11	화학	폴리카보네이트수지	2011.12	2013.6, 무혐의 판정
2012년	12	철강	실리콘 강판	2012.4	2013.6, 덤핑 판정
	13	철강	냉연 강판	2012.4	2013.10 덤핑 판정
	14	철강	후판	2012.5	2013.10 덤핑 판정
	15	섬유	나일론사	2012.7	2013.12 덤핑 판정
	16	화학	승용차용타이어	2012.7	2014.1 덤핑 판정
2013년	17	화학	액상애폭시수지	2013.1	2013.12 조사 중단
	18	화학	폴리프로필렌수지	2013.3	2014.8 덤핑 판정
	19	화학	버스트럭용타이어	2013.6	조사 중
2014년	20	화학	MDI 폴리머	2014.6	조사 중
	21	철강	Ferrite Magnet(자석)	2014.6	조사 중
	22	화학	탄성고무관	2014.6	조사 중

품목별 장벽

자동차

2011.12월 브라질정부는 수입차 급증에 따른 내수시장 보호 및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자동차 제품(48개 세번)에 대해 30%에 달하는 공산

품세(IPI) 인상과 동시에, 국산부품 65% 이상 사용 및 브라질 현지 생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산품세 인상 면제를 부여하는 조치를 도입(12.12.31일 만료)하였다. 이후, 동 조치를 대체하는 중장기(2013-2017) 자동차산업 육성 시책("INOVAR-AUTO" Program)을 도입, 2013.1.1부터 시행하고 있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1)연구 2)기술개발 3)기술혁신 4)전략적 투입요소(strategic inputs)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정신용을 통해 공산품세를 공제 받도록 하고 있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브라질 현지에 투자하여 생산하는 기업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보호무역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브라질정부는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당분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및 멕시코에 투자한 기업에도 30%의 자동차 공산품세가 감면되고 있는바, 공산품세 인상 조치 이후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브라질-멕시코 양국은 멕시코산 자동차의 브라질 수입 제한을 위해 수입쿼타 도입에 합의(2012.3월)한바 있다.

정보화제품

브라질통신규제청(ANATEL)은 부피가 크거나 운반비용이 엄청난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화 제품에 대해 브라질 내 시험소의 인증을 거쳐야만 브라질 내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내" 인증 절차는 브라질로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 구매시 브라질 기업 생산제품에는 세금 감면 등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에 유사상품이 존재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ANATEL이 강제 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3개 분야로 분류된다.

① 일반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 전화기 단말기 등
② 통신용장비의 일부로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③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중 I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광케이블, 다중통신전자시스템 Multiplex), 라우터(router) 등

석유제품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는 광물에너지부 및 국가에너지국의 통제와 석유공사(PETROBRAS)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의약품, 의료용구 및 가공식품 등

수입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건용구, 화장품, 가공식품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제품 등록을 승인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의약품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허가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기관인 ANVISA(위생관리국)이며, 허가서 취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도 지연될 수 있어 對 브라질 시장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VISA는 연방법(법률10,742/2003)에 따라, 의료용구를 등록하려는 기업들로 하여금 세계시장 출시 예정가격 등 제품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수입규제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청량음료, 가연물질, 항공기, 위험물질, 살충제 기타농약, 애완동물용사료도 관계부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 농림식품부(MAPA)는 “포도주 또는 포도주 파생제품” 및 “음료 또는 식초류”의 수입에 대해 “원산지 및 시험 증명서”의 신규 제출 제도를 2010.5월 도입하고, 2010.11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Busan Branch), 한국식품연구원(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분석기술연구원(Korea Analytical Technique Research Institute Co. Ltd),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Korea Health Supplements Institute) 5개 기관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서 브라질 농림식품부에 통보하였다.

수출 지원 정책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수출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PROEX의 재원을 기존 12억헤알(R$)에서 31억헤알(R$)로 확대(2012년)한바 있으며,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브라질 기업에게 장기저리의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FINAME 프로그램의 경우, 브라질 기업의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자본재 금융지원(capital financ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 주목적은 수입장비대신 국산장비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2007.10월, 브라질 정부는 법률 11,529호에 의해, 헤알화 강세로 타격받는 수출기업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 조치를 부활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특정 산업(섬유, 가구, 장식용 석재, 목재, 가죽, 중장비·농업기계, 의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세(PIS/COFINS)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동 법률에 의거, 이러한 조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전 수출업체로 확대되었다. 9.25%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업 수입의 70% 이상이 수출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된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동 의무 수출비율이 60%로 낮아졌다.

2005년 도입된 IT수출지원프로그램(REPES)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정

보기술을 수출하는 브라질 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연간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수입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수출기업 자본재 지원 프로그램(RECAP)에 의해서, 3년 이상의 기간 중 수출비중이 총소득의 80% 이상을 상회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수입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역시 감면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브라질은 베른협약, 워싱턴협약(Washington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등에 서명한 바 있다. 2001년 공포된 법률 제10196호는 의약품의 특허 신청에 앞서 보건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공포된 법률 제10603호는 수의약품, 비료, 농약 및 관련 특허 상품이 등록 후 2년 내 상용화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등록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브라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취약한 측면이 있다. 특허와 상표권을 포괄하는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보호법은 1997.5월에 발효되어 지식재산권 보호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브라질은 아직까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저작권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브라질은 1998년 법률 제9610호 및 소프트웨어법을 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저작권보호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음향 및 영상 상품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바, 최근 브라질 산업연맹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브라질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양의 불법복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품목은 CD로 나타났다. 2위는 DVD이며, 3위는 각각 6%를 차지한 안경과 시계로 나타났고, 그 밖에 의류, 제화, 가방, 장난감 등이 대량 불법 복제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최근 브라질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CNCP(National Council to Combat Pir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s)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할 23개 프로젝트를 2009.5월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브라질 특허청인 INPI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고 있다.

2013년 2분기 현재, 브라질 특허 보유건수는 전 분기 1699건에서 270건이 추가된 1969건을 기록하였다. 한편, 브라질 특허청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영국,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규 특허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년-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을 120일 내에 해결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바, 특허등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장벽

브라질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제한적인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의 자의적인 적용,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자본 참여 제한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음향 및 영상서비스

브라질 정부는 2002년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영화진흥위원회(Ancine)를 설립하여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도모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외국영화와 외국인에 의한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는 한편, 브라질 내 배급자에 대해서는 동 원천 징수액의 11%를 영화산업발전기금(CONDECINE)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을 국내 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70%가 브라질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에 사용될 경우, 해당 배급자의 영

화산업발전기금 납부는 면제된다.

브라질에서는 모든 영화 및 TV 프로그램 필름이 국내에서 인쇄되어야 한다. 또한, 영화 및 텔레비전시장에서 사용되는 컬러 프린터 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국내 영화의 스크린 쿼터도 유지되고 있다.

방송

외국인의 브라질 유선사업 참여시 49% 이내로 지분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회사는 브라질 내에 본부를 갖고 과거 10년간 영업을 해왔어야 한다. 브라질은 텔레비전(non-cable) 분야 등에 외국인 투자 참여를 금지하여 왔으나 2002년에 법률 제10610호를 제정, 브라질 내 인쇄 및 공중파TV 방송미디어 사업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프로그램의 80%는 국내 영상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브라질의 통신 분야는 외국인 참여 지분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에 걸쳐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이 1996년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1998.7월에는 국영전화회사(Telebras)가 외국인 지분 참여 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1997년 제정된 일반통신법은 외국인의 통신시장 참여에 있어 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조항과도 관련되어 있어 조만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정회선 분야 등에 있어 접속료를 포함하여 불리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신규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의 경우 브라질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청(ANATEL)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전화 접속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브라질 보험시장은 최근에 남미의 가장 큰 보험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96년에 브라질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였다. 이후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설립된 보험회사들과의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대거 진출하였다.

재보험은 1939년 이래 브라질 정부 소유의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 왔다. 그러나 2007.1월, 보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의해 재보험에 대한 정부 독점을 해제하였다. 동 법률은 브라질 내 재보험회사의 종류를 ①브라질 내에 등록사무소가 있는 국내(local)사업자, ②해외에 등록사무소가 있고 브라질 내에 대리사무소가 있는 인정(admitted)사업자, ③브라질 내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eventual)사업자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재보험에 대한 정부독점이 해제됨에 따라, IRB는 국내사업자의 하나로서 남게 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제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게 되었다.

브라질은 은행, 증권서비스를 비롯한 비보험 금융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1997년에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헌법은 새로운 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외국소유 은행의 확장을 억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금융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99년에 8개 지방정부 소유은행의 민영화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는 기존 은행의 확장이나 지분매입을 통해서만 허용될 방침이라고 발표한 후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투자 장벽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법 4131(Lei 4131)에 따라 외국자본도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방정부에서 부여하는 투자유치는 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ZFM)나 북부지역 투자 우대 정책 등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 및 분야별로는 인프라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투자 조건 및 혜택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주별 투자유치정책인데, 브라질의 주정부는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브라질에서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 산업분야, 교통, 우편업무, 국내선항공, 우주공학,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1995년 외국인 차별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을 하였으나 개별 시행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신, 유전, 광산, 금융 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외국 건설회사는 브라질회사가 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 보유 불허 및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광산 채굴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이 브라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브라질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 법인은 브라질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이러한 제한 내용 등을 일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분야

분 야	내 용	기 타
지하자원, 광산, 광물자원 및 수력 에너지의 개발· 이용	투자를 위해서는 광업에너지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브라질 기업은 외국인의 통제 하에 있다 하더라도 광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광산업은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허용됨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 분야임.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권을 유지하고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양허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
항공·우주산업	헌법상 외국인투자 금지	
핵에너지 개발	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 조항(제21조 23항)에 포함되어 있음	외국인 투자 금지
연안 수상 운송업	브라질에서 건조되어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이상을 브라질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함	해당기업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항만관리청의 사전허가 필요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잡지 또는 기타 발행물 등 언론 분야	소유나 경영에 대한 헌법(제222조 1항)상의 제약이 있음. (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라디오방송사 자본과 의결주식의 최소 70%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브라질 출생자 또는 10년 이상된 브라질 귀화인에 속해야 함.	즉 외국인투자는 총자본과 총 의결주의 30%까지만 가능하되, 브라질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음.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사의 경영과 출판물 제작에 대한 경영관리직은 브라질인 또는 귀화한지 10년 이상 된 사람만 맡을 수 있음
케이블 TV		외자는 의결권의 49%까지만 허용
농목업, 삼림 소유 및 국경지대	외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님.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여 관련 토지를 소유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관련된 규제를 받을 수 있음. 법률 제5709호(1971.10.7)	이 규정은 외국인, 외국법인이 지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데 기업 간 합병이나 투자가의 변동 및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도 적용
국내 항공운송	제한규정	국내 항공사에 대한 외자참여는 의결권주식의 25% 이상을 넘어서는 안됨. 임원의 3분의2 이상이 브라질 국민이어야 함
육상 화물 운송	육상화물운송회사에 대한 외자참여는 투표권 있는 자본의 1/5을 넘어서는 안 됨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여야 함
금융업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함.	브라질 은행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가진 국가에 본점을 둔 은행, 금융기관은 브라질 은행과 금융기관의 의결주(voting shares)의 30%까지만 소유가 가능함(법률 제4131호/1962, 제51조)
우편. 전보서비스	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으로 규정(헌법 제21조)	

분 야	내 용	기 타
보험	보험분야는 투자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외국인투자가 허가됨.	보험감독원(SUSEPE)의 사전허가 필요. 주요 미국보험회사들이 J/V형태로 브라질의 보험업계에 진출함
보건서비스 분야	헌법에서 외국자본 이나 외국기업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제199조 3항)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투자실행상의 제약 요인

(1) 법적·제도적 문제점

단일화된 외국인 투자법이 없고 분야별로 법들이 산재해 있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법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관련 내외국인 불평등이 특별히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정부조달시 차별적 대우, 지적재산권 보호 취약 등 WTO 기준에 미달하는 분야도 다수 존재한다.

(2)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71년 제정된 외국인법에는 외국인의 농지 취득 및 국경지역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 토지 취득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법규 및 세제의 복잡함 및 빈번한 개정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세율이 상당히 높다. 브라질정부가 거둬들이는 직·간접세가 전체 GDP의 35% 에 달한다. 아울러, 과세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탈세를 하게 될 수 있으며,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무관리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4) 국산부품(Local Contents) 사용의무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은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과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사용 계획을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국산화 정책은 특히 심해저 유전 개발을 위한 시추선 건조와 관련하여 강화되고 있다.

국산부품 사용(PPB: Processo Produtivo Basico) 요구 조건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산부품의 사용이 투자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나우스 무역 자유지대(ZFM) 관리기관인 SUFRAMA 사이트(www.suframa.gov.br)에 접속하면 PPB와 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금융 및 외환

투자원금, 이익, 배당금, 로열티 등의 대외송금에는 제한이 없고 15%의 원천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브라질 국가통화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사치 및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연 8%까지 대외이익금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브라질은 외국자본의 대외과실 송금 시 당해 이익금에 대해 기지급한 법인세 이외에 추가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동 추가소득세는 최근 3년간의 대외 과실 송금액(소득세 및 송금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송금액 기준)이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된 투자금액의 12%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소정의 가산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자국민과 동일하게 현지 외환 구좌개설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외환은 90일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하여야 한다.

세제상의 제한

브라질 헌법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게 다양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

다.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는 수입세외에 공산품세(IPI), 소득세(IR), 금융거래세(IOF), 지방토지세(ITR), 사회투자기금(FINSOCIAL), 순이율에 대한기여금(CSLL), 사회통합프로그램(PIS/PASEP), 그리고 급여 기여금 등을 들 수 있다.

주정부 세금으로는 유통세(ICMS), 자동차세(IPVA), 상속 및 증여세(ITCD) 등이 있다. 시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서비스세(ISS), 토지가옥세(IPTU), 재산이전세(ITBI) 등이 있다.

기타 장벽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지사 설립대신에 현지법인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브라질에서는 지사 설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외국법인의 지사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개발상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1)브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2)지점 자본금을 납입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허가 기간은 보통 3~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 등 지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점 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장기체류를 위한 상사 주재원의 비자발급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즉, 상사주재원의 경우 일단 임시 체류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브라질 노동부의 체류허가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동 허가서를 첨부하여 주한브라질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비자 발급에는 통상적으로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정부조달 및 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대부분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관세 및 수입허가와 같은 전통적 무역장벽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여, 세계에서 비교적 개방된 경제중 하나로 평가되었었다.

그러나 최근 수입 및 수출제한제도의 재도입을 통해 이러한 추세는 점진적으로 반전되어 왔으며, 특히 2007.12월 취임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국가의 시장 간섭을 정당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중국, 브라질, EU 등과 빈번한 무역마찰을 겪어왔다.

2008년 이후 아르헨티나가 도입 또는 강화해온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는 통관 시 추가적 검역, 통관 수속항 제한, 최저수입가격 대상품목 확대, 자동 및 비자동 허가제도 확대, 수입가격이 수입최저가격에 미달할 경우 인근 아르헨티나 영사관의 공증을 받은 송장 제출 의무 부과 등이 있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동 조치들이 모두 WTO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세계은행 자문기구인 GTA(Global Trade Alert)에 따르면 2014.9월 현재 총 230개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적용한 수입규제·보호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2011.10.23일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2012.2월 사전수입허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주재국 정부는 수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2.4월 아르헨티나 최대 석유회사인 YPF사의 국유화 및 외환규제 강화 등 극단적인 국가개입주

의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2012.6~8월간 EU, 미국 및 일본이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제도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는 등 아르헨티나와 주요국간의 통상마찰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규제가 강화된 항목은 자동차 항목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4년 1분기부터 자동차 수입을 27.5% 줄이도록 하였고, 이 조치가 시행되면서 브라질 자동차 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2014.8.22 회람된 WTO 패널 보고서는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규범(수량제한 금지 및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 적시하였다. 2014년 현재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 확보를 위해 현재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는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 외에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1991년 창설된 MERCOSUR는 회원국들(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2011년말 현재 역내 교역의 99%가 무관세로 이뤄지고 있다. 1994년 '결정 제24호'에 의해 설탕, 섬유, 신발, 철강 은 MERCOSUR 자유무역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도 플렉스(Flex)라는 쿼터제를 통해 규율되고 있다.

MERCOSUR 회원국들은 1995.1.1일부터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 제도를 도입하여 역외 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관세율은 0~20%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으나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MERCOSUR 회원국 간 의견조율이 어려워 별도의 관세 체계가 적용되므로 최대 35%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1995.1.1일부터 MERCOSUR 공동상품분류체제(MERCOSUR Common Nomenclature)를 준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혼합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MERCOSUR는 2007.9.27일 1,200개 품목에 대한 대외공동관세율을 최대 35%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10.8일부로 상향 조정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MERCOSUR 공동상품분류체제상 주요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 동물 및 관련 제품: 2%
- 비료 제품: 5%
- 무기 화학약품: 2%
- 기타 화학약품: 14%
- 종이 및 종이제품: 16%
- 플라스틱: 14%
- 서적 및 인쇄물: 0~16%
- 의류 및 액세서리: 35%
- 가구, 매트리스, 쿠션: 18~20%
- 장난감: 20%

※ 일부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26%, 신발류에 대한 관세율은 35%로 상향 조정(경제생산부 Resolution 476/2008)

※ 2012년도 관세율 평균은 11.4%

MERCOSUR 개별 회원국들은 대외공동관세가 적용되는 10,759개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별 면제품목리스트 제도를 2015.12.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다. 회원국은 매 6개월마다 동 면제품목 중 20%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세는 대외관세보다 높거나 낮게 부과할 수 있다.

2012.6월 말 아르헨티나 Mendoza주에서 개최된 MERCOSUR 정상회

의에서 회원국들은 MERCOSUR 공동관세의 적용제외 품목을 현재의 100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4.9월말까지 추가 제외품목 리스트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며, 2015.12월까지 100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면제품목은 국내제조업의 투입요소에 대해 관세를 낮게 부과하는 품목으로 △화학제품(0~6% 관세/CET 12%), 기계류(0%/CET 14%), 일부 철강제품(0~8%/CET 14%), 합성섬유(0-10%/CET 16%)가 있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으로 △올리브유(31%/ CET 10%), 마늘(25%/CET 10%), 너트 및 볼트(26%/CET 16%), 컴팩트디스크(26%/CET 16%)가 있다.

MERCOSUR 공동시장위원회는 아르헨티나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본재 및 신기술 제품 710개 품목에 대해 2012.12.31일까지 수입관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바 있으나, 2012년 대통령령 1026을 통해 2012.6.1일자로 동 품목들에 대해 2~1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변경하였으며, 2013.1.1일부로 10%와 14%의 관세가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단, HS CODE 9030.32.00은 관세율이 2%에서 0%로 변경됨). 그 밖에 중고 자본재의 수입은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2008.1.1일부로 금지되었으나, 대통령령 2646/12를 통해 직접 사용자의 국립산업기술원의 수입자 등록절차 후 종류 별로 28%, 14%, 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보통신제품에 대해서는 2015.12.31일까지 별도의 관세 체계가 적용된다.

현재 대외공동관세의 예외품목 리스트에는 우리의 對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류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대외공동관세가 20%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 품목은 대부분이 수입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지 생산 활동을 위한 부품, 원료 및 자본재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칠레, 멕시코 및 안데스 공동체회원국 등에게 양자적 또는 MERCOSUR 차원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수입 정책

수출입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 22415/81(관세법)에 따르고 있으며 수입 관련 주무부처는 경제부 산하 대내외거래총괄차관실이다. 실무 담당기관은 연방세입청이며 행정시행령 599/76과 695/77에 의거 정책결정을 제외한 관세법의 적용과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1991.10월 법령 제2248/91을 통해 수입자유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수입금지, 수입제한, 수입할당 등 기존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대폭 철폐하였으나, 2001.12월 디폴트 발생 이후 재정 균형, 무역수지 강화 및 외환보유고 확보 등을 위해 수입규제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는 보호무역 기조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2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동수입승인 제도를 도입(전 경제・공공서비스부 결의 17/99)하여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수입인가장을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2008.10월 무역정책차관보실 규정 16/2008을 통해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1,200개 품목(총 수입 소비재의 50%에 해당)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경제부 결의 505에 따라 동 제도는 폐지되었는데, 이는 2012.2.1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연방세입청의 사전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신규사전수입허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자동수입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동수입승인제도보다 더 강력한 규제방법인 비자동수입허가제도를 1999년 인쇄용지의 품질 관리 차원에서 도입(산업 차관실 결정 653/99)한 이래, 2003년 자전거(결정 220), 2004.7월 세탁기 등 가전용품(경제부 결정 444), 2005.8월 비스포츠용 신발 및 장난감, 2006.8월 모터사이클(경제부 Resolution 689), 2007.4월 축구공(경제부 Resolution 217), 2007.8월 핸드백 등가죽 제품 및 신발 재료(경제부 Resolution 47/2007 및 61/2007), 일부 섬유제품(결정 343/2007)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왔다.

아울러 2009.1월에 타이어(생산부 Resolution 26), 2009.3월에 침구류, 농기계, 목재가구 및 냉방장치(동 Resolution 61), 2009.4월에는 금속제품, 저가 섬유제품(동 Resolution 123), 2009.5월 나사 등 제품(동 Resolution 165), 2009.8월 자동차 부품(동 Resolution 339)을 대상품목으로 포함시켰다.

2011.2월에는 이에 3000cc 이상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이륜차, 자전거, 화학제품, 유리제품, 세탁기 등 가전제품, 컴퓨터 등 200여개의 품목을 추가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2013.1.25일자 결의 11/2013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비자동수입승인제도 대상품목에서 576개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상기 576개 제외 품목은 기존 비자동수입승인제도 대상품목의 95% 가량을 차지하며, 수입액의 약 10% 가량을 차지한다(자동차,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타이어, 금속제품, 강철, 섬유, 신발, 장난감, 종이, 가전제품 등 포함). 향후 비자동 수입승인제도가 계속 적용되는 품목은 합성수지류 카펫(HS CODE 5703.30.00) 및 자전거류(HS CODE 8712.00.10 및 8712.00.90)에 불과하다. 수입승인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9개월이며, 발급된 인증서는 60일간 유효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1.10일 연방세입청(AFIP) 결의 3252를 통해 신규 사전수입허가제도(DJAI)를 도입(2012.2.1일부로 발효)함으로써, 기존의 수입규제제도를 한층 강화하였는바, 동 제도 하에서 수입업자는 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주문을 수출업자에게 송부하기 이전에 △수입품의 최종 목적을 기술하는 법적 서약문서(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를 연방세입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방세입청은 동 서약서를 관계기관(경제부 대내외거래총괄차관실)에 회람, 의견을 수렴하여 수입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 제도 하에서 경제부 대내외거래총괄차관실은 매월 3만건의 수입주문을 접수하여, 적시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통관 지연 등 수입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밖에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1.2월 해외 자동차 수입 및 유통업체들

에 수입 20% 감축을 요청하며 해외 고급자동차 통관을 금지해 항구에 묶어 놓은 이후, Giorgi 산업부 장관이 2011.3월 아르헨티나 자동차 수입업체 대표들을 초빙한 자리에서 "수입 1달러=수출1달러" 정책을 내세우며 수입액 상응 수출 의무를 요구하는 등 비공식적인 수입제한조치를 강화해왔다. 동 수입액 상응 수출액 의무는 2012.2월 가전제품, 농기계, 신발,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584개의 품목을 수입허가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만약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비자동수입허가가 무제한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10.3월 연방항소심은 장난감 수입에 부과되는 비자동수입허가 제도의 합법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아르헨티나 법제도상 법원 판결은 개별사건의 경우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유사한 판결이 지속 반복되지 않는 한 제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입업자들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건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다.

아르헨티나의 비자동수입허가제도 및 수입액 상응 수출액 요구 등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2012.5월 EU, 2012.8월 미국 및 일본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 2014.8.22일 회람된 패널보고서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수입제한 조치가 GATT 1994 제11조 1항(수량제한 금지) 및 제3조 4항(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 적시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동 결과에 반발하여, 상소를 추진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수입 시 부과되는 각종 명목의 제세공과금으로는 관세 외에도 통계세, 부가가치세, 이윤세, 내국세 등이 있으며, 수입차량의 경우 판매가의 7%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기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으로 0.5%의 통계세가 부과되나, 잠정수입, 면세수입에는 통계세가 면제되며, 남미공동시장 역내 수입품에 대해서도 통계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에 부과되며, 일반 부가가치세와 향후 재판매시 발생할 수익에 대한 선납세 개념인 추가 부가가치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품 통관금액[수입가액+관세+통계세(0.5%)]에 대해 품목별로 21% 혹은 10.5% 부과되며, 만일 수입품이 재판매 될 경우는 각각 10% 또는 5.5%의 추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소비재 수입에 대해서는 3%의 이윤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주류, 담배, 음료수 등 대부분의 소비재에 대해서는 최대 60%에 이르는 내국세가 부과된다.

가전제품의 경우 2009.11.5일에 가전제품세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 주요 가전제품에 부여되던 내국세 면제 혜택이 일부 품목(에어컨, 휴대전화, 컴퓨터, TV, 홈시어터 세트, 내비게이션 장치, 자동응답기, 음향장치, 카메라, 영상재생장치, 라디오, 전기스토브, 헤어드라이어, 다리미 및 여타 가정용 전열기)에 대해 폐지되고 20.48%의 내국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되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수입물품의 성격에 따라 Canal Verde (녹색 채널: 즉시통과), Canal Naranja(주황색 채널: 서류심사 후 통과, 1~2일 소요), Canal Rojo(적색 채널: 서류 및 물품 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 Canal Morado(적갈색 채널: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 10일 내외 소요)의 4가지 과정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한다.

녹색 채널 및 주황색 채널의 경우, 수입 물품은 별도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게 되지만 필요한 경우 아르헨티나 세관은 이러한 물품이 수입업자의 창고로 운송된 후에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적색 채널에는 예치금을 공탁하는 방식과 공탁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예치금을 공탁하는 방식은 수입물품의 가격이 아르헨티나 세관이 설정한 최저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 되어 있을 때 적용되며 허위가격 신고(under-billing) 방지를 위한 특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예치금의 규모는 세관당국이 설정한 최저수입가격과 신고가격간의 차액 만큼이며, 현금 예치 또는 은행 보증서 공탁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999.1.19일부터 수입품의 허위가격 및 관세포탈 방지를 목적으로 세관 검사 방법에 적갈색 채널(Canal Morado)을 추가 도입하였다. 동 채널의 경우, 세밀한 서류 및 물품검사를 거쳐 통관에는 10일 내외가 소요된다. 특히 가전, 섬유, 완구, 잡화 및 타이어 등 소비재가 적갈색 채널의 주 대상이다.

최저 수입가격 제도

연방세입청(AFIP)은 송장조작을 통한 관세 등 세금포탈 행위 근절을 위해, 1996년 수입자유화의 일환으로 폐지했던 최저 수입가격 제도를 2001.5월부터 재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된 수입가격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정한 최저 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토록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5.7.7일 AFIP General Resolution 1907/2005 및 1908/2005를 통해 최저수입가격 기준을 재조정하고 수입물품의 FOB(본선인도) 가격이 최저수입가격의 80% 이하인 경우 과세 조건을 보다 엄격히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최대 21%까지, 소득세는 최대 11%까지 상향하여 부과하도록 하였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유예 및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세관에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식도 현금, 은행 담보 및 공채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수입규제강화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2008.10.17일 관세청 고시 90/2008 및 91/2008을 통해 최저수입가격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에 140개 수입물품(가전제품 20개, 섬유류 50개, 타이어, 모터사이클 부품 등)을 추가하는 한편 기준가격을 현 국제시세에 맞게 조정하였다.(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되는 품목은 총 24,000여개인 것으로 추산). 또한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은 다양한 범주의 수입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섬유제품, 가전제품, 신발류, 장난감 등 종류별로 통관 포인트를 지정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가격 신고 심사 강화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은 2007.8.24일 고시 57/2007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소비재의 허위가격 신고(under-billing) 등 증가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세입청이 정한 그룹 4에 속하는 국가들(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인도, 북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로부터 수입되는 소비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격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제품이 아르헨티나 세관이 정한 기준가격 또는 동종 수입품의 평균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세관은 추가 증빙 서류 접수, 원산지 관련기관 접촉 등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동 기간 동안 통관이 보류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아르헨티나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의 원산지 명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1개국이어야 하고, 2~3개국 개입으로 변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s of Origin)는 對아르헨티나 수출시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이 요구할 경우, L/C상에 첨부조건이 명시된 경우 또는 섬유제품, 신발류 등 아르헨티나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 인증 및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남미 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들 간에 거래되는 자동차, 버스,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농기계, 자동차 부품 등이 MERCOSUR 협정에 따라 역내제품으로 간주,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60% 이상이 역내산 부품으로 구성되었다는 원산지 규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입 규제

현행 수입금지 품목에는 중고 자동차(경제부 Decree 504/2000), 중고 모터사이클 및 세발자전거(경제부 Resolution 790/1992), 중고타이어(Law 25626/02, 26329/07), 중고 의류 및 액세서리(경제부 Decree 2011/2010), 중고 엔진(경제부 Decree 524/94), 중고 의료기기(경제부 Decree 524/94), 특정 위험 물질(Resolution 750/2000, 845/2000, 182/1999), 순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약품 및 보건제품 수입 시는 보건부 수입업자 상품등록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약완제품 수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취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선진국 제품의 경우 1년 미만이지만, 한국 등 여타국가 제품은 최소 3년이 소요된다.

농수산품,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등 몇몇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나, 수출국의 품질, 규격 및 위생수준이 아르헨티나보다 높거나 엄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는 형식적으로 행해지며 자동으로 승인이 부여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증가 억제를 위해 2001.1월 도입된 최저수입가격제도의 적용 품목 및 대상 국가를 2007.8월 확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10월에는 연방세입청 고시 90/2008 및 91/2008을 통해 최저수입가격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에 140개 수입물품을 포함시키는 한편, 적용 품목 및 국가 목록을 확대 수정함으로써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수입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자국업체의 보호를 위해 뚜렷한 덤핑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단기간에 수입물량이 증대된 경우 일단 조사에 착수하여 수입을 규제시키는 경우가 많다. WTO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08.10월 이후 30개 이상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는바, 대부분은 주요 교역 상대국인 브라질 및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신발, 금속 제품 등이 해당되며, 몇몇 조사건에 있어서는 잠정관세를 부과하였다.

2004년도에 개시된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직물과 PET chip에 대한 조사의 경우, 우리 정부와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공동대처한 결과, 가격인상 및 무혐의 판정이라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냉연강판의 경우, 2008.1월 및 2010.7월 2차례의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014.9.10일 최종 반덤핑 관세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아연철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2012.11.19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한편,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규제는 2008.8.22일에 종료되었다. 2010.2.16일에는 국산 에어컨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2011.7.18일 조사가 종료되었다. 2010.12.15에는 한국산 코팅지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고, 2011.12.1일 한국산 코팅지는 수입물량이 미소하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2.4.25일 한국산 PET 제품 원료(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테)에 대해 조사가 개시되어, 2013.10.24일 8%의 반덤핑 관세(단, KP케미컬, 롯데 인터내셔널 제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이 이뤄졌다. 2013.1.4일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4.7.2일 52%의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한 후, 관세 부과는 2015.1.17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결 사례

- 1994.8.11 한국산 컬러 TV(14인치, 20인치) 반덤핑 판정, 관세 부과

- 1996.9.3 한국 가전 3사의 전자레인지에 대해 반덤핑 판정
- 1998.1.20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 조사 실시
- 2000.6.22 폴리에스터, 나일론에 대해 향후 3년간(2000.6.23~ 2003.6.22) FOB 기준으로 kg당 최저가격을 9.5달러로 정하고 이하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덤핑세율(나일론: 97.78%, 폴리에스터: 46.075%) 적용
- 2001.5.31 재생식물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결정하고 향후 5년간 8.73달러/kg의 최저 수입가격 적용
- 2001.6.02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직물에 향후 5년간 최저가격 kg당 8.73미달러 판정
- 2001.6.21 1,000cc 소형오토바이 및 스쿠터에 대한 세이프가드 결정, 향후 3년간 최저 수입 관세 부과키로 최종 결정
- 2002.12.5 일회용 주사기 덤핑 무혐의 판정
- 2003.1.11 냉연강판제품 반덤핑 관세 결정(CIF가격 기준 60.46%의 고율 반덤핑 관세 5년간 부과)
- 2003.5.28 아연철판제품 반덤핑 관세 결정(CIF가격 기준 49.67의 고율 반덤핑 관세 5년간 부과)
- 2002.11.15 폴리에스터 화이버에 대한 반덤핑 판정(3년간 U$1.85/kg의 최저수입가격 부과)
- 2005.8.22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판정하였으나, 한국의 주요 5개 업체와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가격인상에 합의함으로써, 가격인상에 참여한 우리 주요 기업들에게 특혜 부여
- 2005.9.28 한국산 PET chip에 대한 무혐의 판정
- 2008.1.8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일몰재심 개시
- 2008.4.2 한국철강협회로부터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아르헨티나 측의 반덤핑 조치 관련 대응 불요 입장 접수
- 2008.5.29 아연철판제품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2008.5.25일 재심 개시, 재심기간 종료 시까지 규제 유효)
- 2008.8.22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

- 2009.7.7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기간 연장(2009.7.8~2010.7.8)
- 2010.2.16 에어컨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0.10.7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을 위한 조사 개시
- 2010.12.15 코팅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0.7.6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결정
- 2010.12.15 한 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종이)와 판지 조사 개시
- 2011.7.18 에어컨에 대한 무혐의 판정
- 2011.11.30 한 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종이)와 판지에 대한 무혐의 판정
- 2012.12.1 한국산 코팅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대상 제외
- 2012.4.23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테(PET)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3.1.4 유입식 변압기(단락 용량 1만 KVA~60만 KV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3.10.11 PET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8%) 부과 결정(KP케미컬, 롯데 인터내셔널 제외)
- 2014.7.2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52%) 부과 결정(단, 2015.1.17부터 관세 부과 예정)
- 2014.9.10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률 제11275호(Merchandise Marketing Act), 법률 제22802호(Commercial Loyalty Act)에 의거하여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관광부산업·통상·중소기업차관실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RAM(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on)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표준화 담당 기관이고, OOA(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는

인증기관이다. 표준규격 관련 모든 제품은 IRAM 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각 제품별 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표준규격을 비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안전·인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승인된 연구기관에서의 규격 및 안전 검사를 요구하는 품목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행정 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규격 및 안전 검사 대상 품목도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검사기관은 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Industrial)로서, 표준/규격의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검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라벨 명시내용은 원산지, 수량, 질, 혼합률(필요시), 규격 및 중량(미터법) 등이며 상품에 따라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기제품은 사용전력표시(Ac.1. 3 Phase, 2.4wires, 50 Cycle, 220/380Volt)가 요구되며, 기계류는 금속라벨판을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볼트를 사용하여 영구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보호관련, 1993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Ley 24240)은 섬유, 가전제품 대해 라벨부착, 품질표시, 안전표시, 보증서의 첨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 내 소비자 보호정책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MERCOSUR 회원국들의 표준 담당 기관들로 구성된 MERCOSUR 표준협회 AMN에서는 회원국간 표준 및 관련 규제의 조화 및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MERCOSUR에서 승인된 규제는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에 유해한 품목 등(예: 독극물, 폭발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품목 내지 허가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식품 내지 약품수입 시 환경관련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 식품안전청의 허가를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유해폐기물의 생산, 처리 수입 등에 관한 법률(Ley 24051) 등 환경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전무했으나, 최근에 환경관련 인식이 제고되면서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입할당제가 가장 큰 비관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양국의 자동차 시장 접근시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양자 협약을 통해 MERCOSUR 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당초 MERCOSUR 회원국들은 2000년까지 역내 통합 자동차 시장 창출을 위한 자동차시장 자유화에 합의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해가 상충(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 갈등)됨에 따라 합의가 무산되고, 회원국 간 양자 간 합의에 의해 교역을 규율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2002.11월 및 2003.5월에 자동차산업 공동정책에 합의, 대외공동관세를 완제품에 대해 35%, 자동차 부품에 대해 14%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 간 자동차 교역의 경우, 2005년부터 수입과 수출의 비율이 2.6: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무관세로 교역되나, 동 범위를 초과하면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브라질의 對아르헨티나 자동차수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양국은 2006.6월 수입과 수출 비율을 기존의 2.61에서 2006.7~2007.6월간에는 2.1:1로 2007.7~2008.6월까지는 1.95:1로 축소키로 합의하였다. 1.95:1비율에 대한 유효기간은 2013.6월까지로 연장되었으며, 2014.6월에는 동 비율을 1.5:1로 변경하여

향후 1년간 적용하기로 양국은 합의하였다. 한편, 양국은 2014.7월부터 향후 2015~2020년간 양국간 자동차 교역조건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전기·전자제품

전기공업제품 표준규격제도(IRAM)를 강화시켜 모든 수입 전기, 전자제품들은 공업규격마크를 획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농산물·식료품·의료품

농산물 및 보건 관련 제품을 수입하려면 아르헨티나 연방 식품·의약품청의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아르헨티나 식품 코드(CAA: Codigo Alimentario Argentino)에 따라 위생, 품질, 포장, 운송 등에 관한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방농식품품질관리원(SENASA), 연방식품관리원(INVAL), 연방포도주관리원(INV) 등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아르헨티나는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주장하는 케언즈 그룹의 회원으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철폐를 주장하는 입장이므로 보조금 지원 제도는 없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대부분 미주개발은행(IDB)의 회원국 기업에게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기업들은 원천적으로 입찰 참여가 봉쇄되어 있었으나, 2005년 우리나라의 IDB가입으로 이러한 진입장벽이 없어져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국산품이 수입제품과 가격 및 품질 면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경쟁 시, 아르헨티나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 조달 및 공공서비스 사업권 제도"가 2001년 법률 제25,551호로 법제화(실업률 축소 및 내국기업 활동 촉진이 주목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산품의 조달가격이 동종 수입물품의 입찰가격보다 5~7%이상 높지 않을 경우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2002년에는 긴급경제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부조달 시 공개입찰 대신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긴급경제조치법의 시효를 매년 연장해 왔으며 현 시효는 2015.12.31까지이다.

지식재산권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는 미약한 수준이며, 2004년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저작권 및 특허권 관련 요주의국가 목록(Special 301 Report)에 아르헨티나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특허권 및 제조공정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약하여, 1997.4월에는 아르헨티나의 로열티 관련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품 중 113개 품목에 대해 GSP 혜택을 중지하였다가 2002.8월에 이를 해제한 사례가 있다. 저작권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2002년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조약(WCT)과 WIPO 실연·음반조약(WPPT)이 발효되었으나 집행이 미약한 실정이다.

서비스 장벽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경제개혁을 통해 서비스 시장장벽을 대부분 해소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비보험 금융서비스 업체에게 내국민 대우 및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WTO에 공약하였다. 단, 외국인 소유 은행지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에 제약을 두고 있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상황 이래, 해외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로건설의 경우 건설은 물론 유지관리까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입찰하고 있다. 즉, 20~30년간 통행료 징수권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對아르헨티나 진출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추가 공사수주 가능성이 저조해 관련 장비의 계속적인 활용이 곤란한 점 및 건설장비 투입, 전문인력 수송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1억달러 이상 규모의 공사를 수주 받을 필요가 있다.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對아르헨티나 건설 진출을 위해서는 단독 진출보다는 현지 건설회사와 합작 또는 국제 다국적 기업과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장벽

투자진출제한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1989.11월)하여 외국인 투자등록소(Registro de Inversiones de Capitales Extranjeros)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제한 또는 금지부문으로 핵에너지 개발, 우주산업, 방위산업, TV방송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유권 제한은 없으며, 이윤 재투자 의무, 내국 기업화 등의 기업형태의 전환 의무도 없다. 내국기업의 주식 취득도 100%까지 가능하다. 금융기관 진출 시에는 현행법에 의해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나, 주식투자에는 사전허가가 필요 없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약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이나 투자절차상의 제약은 없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본사의 재무제표 및 타국 지사보유 여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다.

국산의무화

외국인 투자 관련법에는 국산화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자동차 부문은 자동차공업법에 의무비율 규정이 있다.

- A TYPE(승용차): 40%까지
- B TYPE(픽업): 42%까지
- C TYPE(트럭): 규정 없음

2000.8월부터 시행 중인 MERCOSUR 공동자동차정책에 의한 회원국간 무관세 수입대상 차량에 대한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은 자동차 30%, 트럭 25%이며, 제3국산 부품은 자동차 40%, 트럭 50%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업진흥법에 의한 각종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업진흥지역내의 생산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동차 산업 등 주요산업과 주요 국책사업 발주시 강화된 국내조달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광업분야의 경우 2012.5.28일 기획부 산하 광업차관실 결의 12/2012를 통해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하는 광업회사가 수출과 관련된 자재, 장비 및 서비스 등 로지스틱스 구매 시 전적으로 국내조달에 의존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결의 13/2012를 통해 각 광업회사에 수입대체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매 분기별로(늦어도 실제 구매일 120일 이전에) 로지스틱스 조달 계획을 광업차관실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는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투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이 필요하다. 법인설립은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Greenfield형과 기존기업을 인수하는 M&M형으로 구분된다. 예외적으로 아르헨티나 내 매출이 2억 페소 이상인 기업의 인수는 국가경쟁력보호위원회(CNDC)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법인설립 절차는 생산법인의 경우 평균 3개월, 판매법인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된다. 투자 타당성 조사 시 인터넷이나 발간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개 자료의 신뢰성 문제뿐만 아니라, 잦은 정책 변경 및 독특한 경제환경 등이 존재하므로, 현지를 방문하여 정부기관, 유관협회, 진출업체, 경쟁업체, 수요업체, 원·공급업체 등에 대한 직접 상담을 기초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수행하려는 제품 확보와 아르헨티나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중남미 주변국가 내 수요 및 공급선 확보는 투자 타당성 조사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국경지역에서의 토지취득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아르헨티나 통화 당국은 수출 대금으로 들어오는 외화를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해지했으며, 수출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제기간을 90일로 연장하는 한편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대금 선납을 허용하고 있다.

2005.7.11일 발표된 중앙은행 규칙(A4385)에 따라 소비재 및 완제품 수입대금 지불을 위한 달러화 매입은 수입품의 국내 도착 이전 또는 도착

이후 3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상들은 잠정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외환을 구입,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외환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다.

고금리를 노린 해외자본의 초단기 일회성투기를 막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 유입되는 해외펀드는 180일간의 최소투자기간 후에야 해외반출이 가능해진다.

2001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금융거래세를 도입, 금융소득이 아닌 모든 당좌계좌(Cuenta Corriente)의 입출금액에 대해 0.6%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금융거래세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적용되며,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추가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거래세가 금융의 정상적 가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심해지자 2004년부터 입금시 금융거래세는 0.4%로 하향 조정(출금 시는 0.6% 유지) 되었으며, 축소 및 폐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GDP의 2%를 차지하며 국가 세수의 기본요소로 굳어져,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1.10월말 이래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제수지 방어 및 외환보유고 확보를 목적으로 외환거래 규제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2011.10.31 연방세입청(AFIP) 결의 3210을 통해 은행 및 환전소가 개인 및 기업을 상대로 외환 매도 시 목적 및 규모를 불문하고 사전에 연방세입청에 온라인상으로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후 연방세입청은 대부분의 미화거래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미화 수요자인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2011.10월 모든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으로 획득한 미화를 수출상품 선적일 기준 180일내에 국내외환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12.4월 결의 142/2012를 통해 동 기한을 15일로 축소한데 이어, 2012.5.30일로 다소 확대하였다. 광업회사들의 경우에는 통상 선적 후 180일이내에 수출대금을 수령하며, 정확한 판매가격은 선적일이 아닌 광물이 제련소에 도착 후에 결정되는 관행을 감안하여 이후 상품 선적을 중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경제부는 주요 광업기업

에게 환전의무 기한을 120~180일로 완화하여 적용 중이다. 2013.11월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 추가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47 개 기업(관광, 에너지, 의료, 교통, 금융. 자동차 자재, 전자제품, 화학, 패키징, 식료품, 플라스틱 등)에 대해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해외 송금을 1일 10만 달러 이하로 제한했다. 그리고 자동차, 철강, 농화학, 전기전자 등 주요 사업 분야의 대기업에 한해서 수입대금 결제시기를 수입 후 30~45일에서 90~180일로 늦추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2012.5.28일 연방세입청(AFIP)은 결의 3333을 통해 여행사 패키지 상품구입을 통해 해외로 여행코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미화 구입을 위해 여행기간, 목적, 미화금액, 소득 출처 등 세부사항을 AFIP 홈페이지에 신청하여 승인을 획득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밖에도 아르헨티나 언론은 주재국 정부가 경제부 고위급 인사들을 통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주요 외국기업의 경영진에게 본국으로의 미화 송금을 자제할 것과, 각 기업이 외환시장에서 미화를 매도한 액수에 상응한 금액만큼만 미화 매입을 승인할 계획을 통보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아르헨티나 국내 주요 외국기업은 본국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급여를 미화가 아닌 현지화(페소화)로 지급해야 하는 등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는 2014년 8월 기준 283억 달러까지 감소하여,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미신고 달러 자금이 약 700억 달러으로 추정되며, 주재국 정부는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2013년 6월 시행(채권 발행)하여, 외환보유고 증대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

오래전부터 아르헨티나는 노동법 및 급여보호에 관한 법 등 여러 법률에서 미화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현지 고용인에게도 아르헨티나 법정화폐인 페소로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화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세제상의 제한

아르헨티나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되므로 우리 진출기업의 지상사 직원 및 수산회사 선원의 경우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 수산회사 선원의 경우 본봉의 50%(본인+회사부담)를 국민연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상사 및 선원들은 1~2년간 단기 체류하고 있으므로 기 납부한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협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아르헨티나와 체결 추진 중이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수감소 및 아르헨티나의 對한 투자가 미미한 점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쟁정책

아르헨티나의 주요 공산품의 경우 독과점이 많으며, 특히 유통망의 경우 외국대형 유통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나 규정은 특별히 없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쟁정책 관련 규정으로는 법률 제25156호와 대통령령Decreto 1019/1999가 있다.

기타 장벽

2003.11.28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내무부 행정령 제362호(2003.11.26)로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뿐만 아니라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지상사 직원 등이 발급 받는 거주비자가 있으며 통상 비자 신청 시 아르헨티나 기업의 초청장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거주비자의 체류허가기간은 1년이며, 1년 이후는 매년 이민청으로부터 DNI(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신분증명서)의 갱신 허가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다. 최초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나 1년 단위의 연장

절차는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개선실적

아르헨티나의 통상장벽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2013년 말부터 외환보유고가 급감하여, 2014년 9월에는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83억 달러까지 감소함에 따라, 외환확보를 위한 수입제한 조치가 심화되고 있어, 당분간 통상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에콰도르

2013년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은 9억 1992만 달러, 수입은 약 4840만 달러로서 약 8억 7150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에콰도르 양국관계는 2010.9월 에콰도르 Correa 대통령 방한 이후 다방면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양국간 교역은 2010년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주로 우리나라 수출규모가 에콰도르에 비해 월등한 비대칭적인 구조이다. 2013년에도 우리나라 수출 증가(7%)에 비해 에콰도르로부터의 수입이 월등히(2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2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3년 한 해 동안의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 주요 품목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기계・컴퓨터, 유기화합물 등이 차지하였다. 2013년 에콰도르의 對 한국 수출 품목은 대부분 농수산품으로 이 중 어류가 가장 많이 한국으로 수입되었으며, 2013년 3,729만 2천달러로 2012년 2,679만 6천 달러 대비 39%로 대폭 증가하였다. 어류 이외에 동괴 및 조제사료, 코코아 등이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나, 에콰도르 최대 수출품중 하나인 장미 등 화훼 수출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00년 초반까지 대 대한국 최대 수출품이었던 원유는 추가 정제시설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입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재개되고 있지 않다.

상기와 같이 에콰도르의 對한국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무역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바, 에콰도르 정부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감소를 위한 방안을 우리정부에 적극 요청해 오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국간 교역 현황(2008-2013)

(단위: 천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626,426	438,410	826,677	861,895	856,768	919,924
수 입	25,957	10,053	12,254	30,634	39,507	48,399
무역수지	600,469	428,357	874,940	856,135	817,261	817,525
교역규모	652,383	448,463	899,448	917,402	896,275	968,323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 상위 5대 품목(2013년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12		2013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자동차	455,731	-0.27	424,314	-0.07
2	플라스틱	62,842	10	100,882	60.5
3	기계・컴퓨터	199,446	23.6	93,638	21.6
4	석유・석탄	1,616	299	67,797	4095
5	전기제품	30,330	28.3	52,247	72.2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입 상위 5대 품목(2013년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12		2013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어류	26,796	145	37,292	39.1
2	동(구리)	6,368	-28.7	5,167	-18.8
3	기타조제품	1,136	15	937	-17.5
4	조제사료	980	-63.6	750	-23.4
5	코코아	695	-41.4	703	1.1

우리의 대에콰도르 투자

(단위: 천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누계
(건수)	272 (3)	0 (0)	23.234 (10)	25,992 (7)	765 (4)	50,263 (24)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일반적으로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 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무역정책의 최고기구는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대외무역위원회(COMEX)로서 FTA,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Safeguard 등 무역전반에 걸친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안데스 공동체는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회원국으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지대(베네수엘라는 2006.4월 탈퇴하였으며, 칠레는 2006.9월 준회원국으로 가입)로 회원국 상호간의 무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안데스 공동체의 대외단일관세는 수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안데스 공동체는 2004.10월 메르코수르(MERCOSUR)와 상호 경제보완협정(Acuerdo de Complementacion Economica No.59)을 체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진행된 EU와의 통상협정은 난항을 거쳐 2014.7.17 최종 타결되었다. 이로서 에콰도르 바나나, 참치, 브로콜리 등 농수산품의 대EU 수출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EU로부터는 자동차, 의약품, 주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콰도르는 그 외에도 중남미통합연합(ALADI)의 회원국으로서 무역특혜를 받고 있으나, 대미 무역에서 많은 특혜를 누렸던 안데안 무역특혜 및 마약퇴치법(ATPDEA)이 2013.7 종료되어 대미 무역에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ATPDEA 종료로 에콰도르는 장미등 화훼, 브로콜리, 망고, 섬유, 참치 등 농수산품의 수출 분야가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대 미국 수출품에 대해 분야별로 1-15%까지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ATPDEA 종료에 따른 대미무역 감소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수출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액 공제 및 보조금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미국은 에콰

도르 대외 수출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어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중요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좌파성향의 개발경제학자 출신의 Correa 대통령 정부는 이념적으로 자유무역(Free Trade)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타국와의 통상협정체결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의 통상협정, 개발문제를 포함한 경제협력, 정무분야의 대화 등 3개 분야가 포함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Acuerdo del Comercio Para el Desarrollo)"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거부감으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차원의 FTA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FTA와의 일부 개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꼬레아 정부는 최근 페루 및 콜롬비아, 칠레 등 주변 경쟁국들이 미국, EU 및 우리나라와의 통상협정을 타결함으로써 대외 무역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 정책을 전환하여 2013.4월 대외무역을 전담하는 대외무역부를 신설하고, 2014.7월 EU와의 통상협정 체결하는 등 WTO 규범에 근거한 FTA 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다음 무역협정체결 대상국으로 한국, EFTA, 캐나다 등으로 정하고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및 수입쿼터

1995년 WTO 가입시 에콰도르는 양허각서목록을 채택, 발효시켰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30% 내외의 관세 상한선을 수정한 것이었으나 실제는 안데스 공동체의 무역규범의 적용으로 물품별로 0%, 5%, 10%, 15%, 20%의 관세율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35~40%의 관세가 부과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2.6.11 대외무역위원회(COMEX)를 통해 자동차, 휴대전화 수입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자동차, 휴대전화기, 가전제품,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수

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수입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적용
- 휴대전화기 수입쿼터 도입 및 제한: 2012년 휴대전화 수입쿼터로 33개 수입업체에 대해 195만대, 1억 4300만 달러를 배정,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의 쿼터가 차면 추가 수입 불가, 해외여행객의 휴대전화 허가개수 개인당 1개로 제한
- 자동차 수입 쿼터 축소: 2012년 총 수입쿼터로 38개 수입업체에 대해 4만 8179대, 5억 2834만 달러 쿼터를 배정,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로 쿼터가 차면 추가 수입 불가. 동 조치는 2014.12.31까지 적용 예정되어 있으나 향후 조치에 대해 현재까지 에콰도르 정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
- 가전제품 및 각종 잡화 관세 인상: 텔레비전, 카메라, 세탁기, 담배, 가방 등 100여 가지 이상의 수입상품 관세가 5-20% 정도 상향 조정됨.

주요 수입품목의 관세 조정(상품가격당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 카메라 0% → 25%
- 텔레비전 5% → 5~20%
- 주류 20% → 알코올 도수당 $0.25
- 면류 20% → 30%
- 세탁기 15% → 25%
- 오디오 5% → 20%
- 담배 15% → 20%
- 가방 20% → 30%

해외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인상과 감축 책정된 수입품목의 쿼터제로 인해 시장에 공급 부족과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주류와 가전제품, 휴대전화기, 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술 품목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2014.1.14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고시 116호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물품에 대한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동 정책에 대한 국내수입업자 및 해외 수출업자들의 반발 및 국내 물품부족 등으로 세제류, 원자재 품목의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조업 부품, 건설자재, 화장품 및 미용용품 수입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COMEX 고지 116호의 적용을 받는 물품들의 수입은 2014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하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에콰도르 국내 생산이 일부 증가해 당초 정부가 의도한 대외무역수지 흑자 및 국내생산 증가 등 일부 목표를 시현한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수입대체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에콰도르는 관세 산출에 있어 참조가격(reference prices)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상의 신고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자의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으나 일부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으며, 1999.2월 행정명령 제609호의 발동으로 Safeguard 조항 설치, 추가 관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 이외 수입부과금은 아동발전 기금이 CIF가격의 0.5%, 수입물품 통관 시 전품목에 대하여 12%의 부가가치세(VAT)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며 부과기준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에콰도르의 통관절차는 2007년 이전에는 약 15일정도가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평균적으로 약 6-7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지난 2010년 에콰도르에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2011년 싱글윈도시스템을 수출하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에콰도르 관세청(SENAE)은 우리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에콰도르에 적용한 신전자통관시스

템(ECUA-PASS)을 구축하였으며, 2013.2월부터 동 시스템과 정부 18개 부처를 연결한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을 통한 통관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동 시스템 활용으로 무역 및 관세 관련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통관기간 및 비용이 상당부문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수의 수출입업자들은 수출입물품 통관 시 기존 세관운영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해 신규 시스템 도입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에콰도르 국내에서의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s)에서 납세자 번호(RUC)를 교부 받는다.

(2) 관세청(SENAE: Servicio Nacional de Aduanas)에 수입업자 등록을 한다.

- 2011.8.26자 산업생산부는 대외무역위원회의 결의안 17호를 발효 조치함에 따라, 51개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의 선적에 앞서 사전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산업생산부(MIPRO)에서 검토 및 인가를 주관한다.
- 에콰도르 재계의 강한 우려와 수입업자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 2011.9.1 일부 항목을 완화하는 결의안 24호를 발표하였으며 일부 타이어, 냉장고 관련 항목은 수입 허가 없이 수입 가능하게 되었다.

(3)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금지 품목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2003.4월 대외무역 및 투자위원회(COMEXI)의 결의 제182호를 참조해야 한다. 이는 상품분류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분류된 상품의 성격에 따라 수입품이 수입 전 허가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 선적 전에 상기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식품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식약청이 발급하는 증명서(Registro Sanitario) 없이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4) 수입품목에 따라 관련 부처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5) 결의안 17호에 명시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검토 및 수속 기간은 60일 이내 처리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 선적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에콰도르는 안데스 공동체(CAN)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율은 0%이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등의 회원국 수출 품목은 0-20%까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관행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에콰도르는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정(CITES)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정 등에 의거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유해 화학물품, 중고타이어, 중고 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차 수입 역시 금지되어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 규범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들을 준수한다.

국제우편 무게 및 횟수 제한(4X4)으로 샘플 송부 애로

에콰도르 정부는 그간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4kg이하 400불이하 물건에 대해서는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최근 에콰도르 섬유협회 등은 에콰도르내 상인들이 마이애미에 주소를 둔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횟수에 상관없이 의류 및 신발류, 전자제품을 들여와 국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편물의 도입제한을 요청하였다.

이에 에콰도르 세관은 2014.10.9부터 국제특송업체를 통한 배송물품 중 무게 4kg, 금액 400불 이내의 화물에 대해 42불의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서 물품종류를 불문하고 관세를 부과하며, 42불의 통관 수수료를 적용받는 화물은 연간 5개, 1200불 이내로 제한하여 초과할 시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더불어 4kg을 초과하는 소포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적용하여 장시간이 소요되기에 상기 규정(4x4)을 초과한 회사 홍보용 카탈로그, 샘플 송부시 수령자측과 관세를 누가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협의에 필요하다.

그러나 상기 4x4규정은 주로 미국 마이애미에서 의류 및 신발류 등 상품을 소규모로 들여와 상품화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전세계 우편제도(EMS)를 통한 상품 수입은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 물건들은 우편제도를 사용하면 관세 및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통상협정국(관세혜택)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안데스 공동체(CAN), 유럽국가와의 관세제도(GSP, 2014.12.31 종료 예정) 등 여러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는 2011.12월 제42차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의에서 정회원 가입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정회원국 가입신청을 4개 회원국들이 수락하면 정식 가입협상을 거쳐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베네수엘라의 경우 4년간의 협상기간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협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4.7월에는 EU와 통상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35%에서 향후 7년에 걸쳐 무관세로 전환될 예정이며 공공조달시장에서도 EU 기업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어,

우리기업의 대 에콰도르 주력상품인 자동차, 전자제품 및 의약품의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 검사 및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에콰도르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reputable)표준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가 있으며, 에콰도르기술표준원(INEN: Instituto Ecuatoriano de Normalizacio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2014.1월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293개 품목에 대한 INEN의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품목은 INEN 규정 따라 수입 시 에콰도르 국립표준원(INEN)의 품질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나 에콰도르내에서 품질인증서 발급 기간이 길고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인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물량이 크게 줄고 있다. 에콰도르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페루 및 콜롬비아 등 안데안 공동체 국가들은 동 조치가 안데아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안데안(CAN) 사무국에 제소하여 2014.8 결의안 1695호를 통해 에콰도르의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에콰도르는 이에 불복하여 안데스사법재판소에 재항소하는 등 역내국가간 무역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식의약품은 국가위생감관리청(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on y Vigilancia Sanitaria)에서 분석 후 유통허가(Registro Sanitario)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에콰도르 수입이 더욱 까다로우나, 2014.3월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제도(Homologacion)를 부여하여 우리의약품의 경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서류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의약품의 대 에콰도르 수출에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약품 수입절차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기간은 품목

에 따라 약 3개월에서 3년간 지연되기도 하는 등 의약품 인증 획득에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또한 INEN 측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제출로만 심사하는 반면, 담당자별로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어 예상치 못한 품질 증명서를 요청받을 우려가 있다.

에콰도르 국가교통안전국(ANT)는 2013.8.15 2014년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해 최소안전규정에 따라 안정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개정계획을 발표하였다.(자동차최소안전규정 개정은 당초 2013.10.23 발표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발표되고 있지 않음.) 동 조치로 고시 발표 후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에콰도르에 수입 및 생산되는 자동차는 이전보다 많은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됨에 따라 수입가 상승, 생산설비 증대 등 원가상승 압력으로 인해 자동차 업계는 당분간 고전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동조치 시행은 유예 기간이 짧다는 자동차 수입업계 및 국내 조립생산업체의 요청 등에 따라 연기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시행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7.7일 채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2.6월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조치 제66호, 67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수입규제조치 발표 배경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폐휴대전화 배출량 증

가로 인한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동 조치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하고, 카르타헤나 의정서, 몬테비데오 조약 등을 언급하는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2013.6 발표된 환경보존을 위한 저효율 에어컨 수입제한 조치는 사전홍보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효율 에어컨을 발주하고도 통관이 불가능하여 혼란을 겪었다.

품목별 장벽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에 따라 에콰도르는 중고 의류,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파충류, 상아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에콰도르 정부는 공공운수업자, 가정용 가스 및 전기 요금에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차원의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가스사용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기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까지만 제공될 예정이며, 최근 에콰도르 정부는 가정용 주방 조리기구를 인덕션(INDUCTION)으로 교체하는 가정에 대해 2018년까지 일정 부분 전기요금 면제 및 저렴한 전기 요금 부과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밖에 에콰도르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완제품의 재수출시 이에 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각종 입찰에 외국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 내 관세청에 단일회사등록(RUP: Registro Unico de Proveedores)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 RUP 신청서
- 출신국가 발행 사업자등록증 및 번역문(아포스티유 받을 것)
- 재정증명서
- 지정한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외국인인 경우 여권, 에콰도르인의 경우 Cedula 혹은 투표증명서 사본 동봉)

  *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은 사본 제출 전 회사등기소에(Registro Mercantil)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청(IEPI)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하여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적 재산권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허는 등록 후 20년 실용신안은 10년간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상표권의 경우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을 필히 해야 한다.

에콰도르는 CD/DVD 불법복제 판매가 난무하고 있으며, 2008년 초부터 정부는 불법복제 판매원들에 대해 현재까지 특별한 제제를 가하고 있지 않다.

투자 장벽

개관

외국인 투자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EL Código de la Producción, Comercio e Inversiones)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내국인 대우를 받으나 외국인직접 투자에도 현지법인 설립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현지법인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는 개인투자의 경우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에서 납세자 등록번호(RUC)를 교부 받은 후 시청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주권이나 사업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에콰도르의 경우 종업원이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순이익 중 15%를 종업원에게 배당해야 하는 피고용인 보호 위주의 노동법으로 노조의 파업도 빈발하여 현지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제한 등 일정부분의 제한이 따르며, 관련분야로의 외국자본 참여는 일반적으로 정부 주관 하에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상기 국가안보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

2008.9월 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후 에콰도르 정부는 2009년 들어 그간 외국정부와 체결한 13개 투자보장협정의 폐지 추진 및 국제투자분

쟁해결센터(ICSID)로부터의 일방적 탈퇴(2009.6.12) 등으로 투자 외국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 장치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지난 2010.12.29일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신규투자(또는 재투자)를 할 경우 다양한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Codig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을 시행하고 있다. 동 투자법에 나와 있는 주요 혜택은 25%의 법인세를 연 1%씩 총 3% 인하하여 2013년 이래 22%의 법인세 납부, 현재 5%로 부과되어 있는 해외송금세의 약 1년간 면제, 기술혁명 분야에 재투자 시 10%의 세금감면 등이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대덕연구단지를 모델로 한 Yachay 지식기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외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시 Yachay 토지 제공, 법인 설립, 비자 등 행정절차 편의 제공, 고급 기술 적용 장비의 수입 관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페루 및 콜롬비아 등 주변 경쟁국들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를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일반적으로 2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재투자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해외도피 자금방지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기존에 2008년부터 0.5% 부과하던 해외 송금에 대한 송금세를 2009.11월 2%로 인상하여 적용하여 왔으며, 2012.11월부터는 동 송금세를 5%까지 인상, 적용하고 있다.

기타 장벽

에콰도르는 법과 제도보다 인맥이 우선하는 사회로서 경제체질이 불건전하고 불신과 부패 등이 만연하므로 투자진출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빈번한 정책변경 및 관련 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국제입찰 사업추진 시, 재원을 수주측 조달조건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국내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국제입찰이 유찰되는 사례가 있다. 그 외 사회간접시설의 낙후, 낮은 노동생산성 등도 에콰도르 투자에 있어서의 취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약칭 반독점법으로 불리는 시장능력 통제 및 규제법안(Ley Organica de Regulacion y Control del Poder de Mercado)이 2011.10.13일 관보 게재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의 시장개입권한이 더욱 확대되어 에콰도르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은 물론 개인업자 상품의 시장가격측정을 비롯한 다양한 경영분야에 규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 애로사항 관련 공관 해결 사항

- 2012.4월 건설프로젝트로 당지에 파견된 B사 법인장 A가 협력사를 찾아가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 프로젝트를 에콰도르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목숨을 위협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주에콰도르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상기 내용을 기술한 협조요청문을 에콰도르 외교부로 송부, 관계기관의 적절한 조사와 동인의 신변보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 A건설사는 지난 2012.9월 이래 에콰도르 생태공원조성사업을 수주하고 동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2013.8 동 사업의 발주처인 도시개발주택부 등으로부터 동 건설사업의 공사납기 지연 및 기술이전 미

비 등을 사유로 동 사업에 대한 일방계약해지통보를 접수하고, 동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에콰도르대사관에 애로사항 접수하였다.

이에 주에콰도르대사관은 동건 해결을 위해 A기업 최고 경영자 등을 면담, 그간 A기업과 에콰도르 관련부처와의 협의사항 등에 대해 청취하고 대책을 모색하였다.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상기 일방해지건에 대해 에콰도르 관계 고위인사를 접촉하여, A기업의 일방적 잘못으로 동 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허가 지연 등 에콰도르측 관련부처에도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등 동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주에콰도르대사관은 또한 에콰도르 최고위층에서 A기업과 에콰도르 주택부등 관련당사자를 불러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양자간 원만한 해결을 지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하여, 에콰도르 정부 최고위층과의 면담을 주선하였다.

이에 에콰도르 정부는 동사업 실패원인이 A기업만의 잘못이 아님을 인지하고, 양국간 우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금번 일방적인 계약해지건을 보류하고 쌍방 합의에 의해 조정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양측이 동건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2014.10월 현재 양측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 2013.9월 현지 우리 현대 및 기아차 자동차 독점판매권자인 엘후리그룹 네오현대측은 연간 2,00대를 수입 판매하는 현대 H1(스타렉스)에 대한 주재국 교통안전국(ANT)측의 사용차량 사용 불허로 동차의 수입에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해 왔다.

대사관은 2013.9월 이래 에콰도르 교통안전국과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건설부외에 대외무역부, 외교부, 산업생산부 등을 수시 접촉하고 동 차량에 대한 에콰도르 교통국의 사용허가 불허가 조치가 유사기종인 중국산 차량에 대한 허가조치와 비교시 명백한 차별조치이며, 이에 대한 에콰도르 정부의 시정을 요청하였다.

에콰도르 교통국 및 교통건설부측은 당관의 시정 요청에 대해 동기관 법규 등을 들어 시정하지 않고 있으나 2014.10월 현재 대외무역부 및 관련기관은 H1 상용불허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통안전국 및 교통건설부측과 협의 결과 에콰도르 정부가 금년내 H1에 대한 상용사용을 허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최근 5년간 주요경제지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GDP(십억 달러)	55.6	56.9	67.3.	72.9	93.6
실질GDP 성장률(%)	-1.00	3.6	7.78	5.0	4
인플레이션(%)	4.3	3.33	5.41	4.2	3.02
인구(백만 명)	13.9	14.2	14.4	15	15
수출(백만 달러)	13,864	17,490	22,322	23,764	24,878
수입(백만 달러)	15,089	20,591	23,088	24,181	25,979
무역수지(백만 달러)	-1,225	-3,101	-766	-417	-1,101
외환보유(백만 달러)	3,792	2,622	2,957	2,482	4,360
외채(십억 달러)	7.4	8.6	10.0	10.8	12.8
1인당 GDP(달러)	3,714	4,082	4,578	5,311	5,932
실업률(%)	7.9	7.4	5.2	4.9	5.6

출처: 에콰도르 중앙은행(Banco Central del Ecuador)

산업별 경제구조

에콰도르 산업구조는 2013년 기준 농업, 목축업, 임업 7%, 제조업 12%, 광산업 및 원유채굴 13%, 3차 산업 59%, 건설업 10.7% 등 이다.

원유 생산과 농산물 수출이 에콰도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수출품이 대부분 1차 상품이므로 이는 국제 가격 상승 및 하락 같은 외부 요인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국내 소비 시장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적다.

에콰도르의 석유 부존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말 88억 3천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남미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다음으로 3위 부존량 국가이며, 생산량은 남미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그간 아마존 열대우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야수니 국립공원지역의 유전개발을 유보해 온 정책인 “YASUNI ITT 이니셔티브” 정책을 2013.8월 폐기하고, 동지역 유전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야수니지역(Ishipingo, Tambococha, ,Tiputini)에 대한 유전개발을 통해 2021년부터 일일 최대 33만 배럴까지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광구는 동부 아마존(Napo, Pastaza, Sucumbios)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서부 태평양 해안지방에서 소량 시추 중이다.
- 생산 : 일일 평균 526,400배럴
- 수출 : 일일 평균 388,000배럴

농업은 GDP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나나, 커피, 코코아, 과일의 현대적 대규모 농업이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장미 화훼는 중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하였고, 연간 8억불 수출로 최근 커피와 코코아 수출액을 초과하였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으로 연간 23억 달러 정도를 수출한다. 바나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구는 에콰도르 국민 10명당 1명꼴인 140만 명 정도이다. 에콰도르는 또한 세계 4위 새우 수출국이며 새우는 석유, 바나나에 이어 세 번째 외화 소득원이기도 하다.

에콰도르 관광은 석유, 바나나 다음으로 중요한 외화 수입원으로 국토는 좁으나 동서로 안데스산맥과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태평양상의 갈라파고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에콰도르는 개방적인 경제이나, 2008.9월 신헌법에 따라 에너지·자원, 전력, 환경 등 전략분야에서 국가의 관여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수출이 GDP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고 원유 및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 경제부문이 여타 경제부문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

- 수출 : 248억 달러(2013년 기준)

주요 수출품 : 원유(수출의 약 57%), 바나나, 수산물, 화훼, 카카오
수출 상대국 : 미국 44.7%, 칠레 9.9%, 페루 7.6%, 콜롬비아 3.6%

- 수입 : 259억 달러(2013년 기준)
주요 수입품 : 경유, 석유, 천연가스, 의약품, 자동차
수입 상대국 : 미국 29%, 중국 12.6%, 콜롬비아 8.5%, 파나마 6.9%, 페루 4.2%

엘살바도르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특징

엘살바도르는 빈곤 타파, 고용 창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외수출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중소기업 육성, 성장동력산업 육성, 중미 경제통합 및 관세동맹 진전, FTA 확대 등 국내산업 육성 및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4.4월에는 중소기업육성개발법에 따른 특별기금(15백만불) 설립을 승인하였고, 6월에는 카리브석유협력기구(Petrocaribe)에 정식 가입하였으며, 9월에는 생산성 향상·다변화·혁신을 위한 국가정책을 발표하였다. 현재 페루·캐나다와의 FTA 협상 재개 및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중이며, 한-중미 FTA 추진 재개와 함께 한-엘살바도르 양자 FTA 추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엘살바도르의 대세계 수출은 54.91억불로서, 설탕, 섬유·의류, 종이,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107.72억불을 기록하면서, 무역적자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상반기에도 무역적자는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는 커피 및 설탕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반적인 수출액 감소의 영향이 크다. 반면, 2014년 상반기 관광·교통 등 서비스 수출은 방문객 수 증가(18%)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하였다.

2013년 한-엘살바도르 양국간 총 교역액은 1.7억불로, 2012년 1.5억불 대비 11.2% 증가하였다. 2013년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수출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1.5억달러, 수입은 54.9% 감소한 0.18억달러를 기록하여 우리의 무역흑자가 1.36억달러에 달하였다. 우리의 전통적인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타이어 포함)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2011년 이래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아연도강판, 열연·도금강판 등 철강판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아연도강판이 제1위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엘살바도르로부터 사탕수수당 등 당류 수입이 급감(2013년 수입 전무)한데 이어 커피류, 고철 등 다른 품목의 수입도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금년 들어 대엘살바도르 수입이 역대 최고치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8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87백만달러, 수입은 397% 증가한 50백만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2014.6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엘살바도르 투자는 현지 법인수 14개, 누적 투자액 43,538천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신규투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2014.9.30 미국-엘살바도르간 제2차 새천년원조기금(Fomilenio II) 사업 이행협정의 정식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태평양 연안지역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동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인적자본 개발, 투자환경 개선, 물류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총 368.2백만달러가 연안지역에 투자될 예정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엘살바도르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관세제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로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품목(유제품, 쌀, 육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역내국간 무역에는 무관세, 대외적으로는 공동관세(최대 15%)를 실시하고 있다.

-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0%
- 생산되는 기초원자재 5%
- 생산되는 중간재 및 자본재 10%
- 소비재 및 완제품 15%
- 의류 완제품(25%), 섬유(20% 이상), 자동차(25~30%), 일부 농산물(40%)에 대해서는 고관세 유지

수입부과금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IVA), 특별세(Ad Valorem) 등의 수입부과금이 운영되고 있다.

관세 부과시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부가가치세 13%
- 특별세 30~39%

특별세는 총기류와 담배품목에 부과되며, 일부 예외품목으로 주류, 담배, 음료수 등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종량세가 부과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심사 및 물품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 결과 청색신호(green light)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red light)인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최저 20% 이상의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황색신호(yellow light)인 경우는 서류상의 검사만 실시한다.

엘살바도르는 2014.1.6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물품 및 통과물품에 대해 컨테이너당 X-ray 검사 수수료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국경세관에서의 통관 지연, 불필요한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는 민간업계 및 인접국의 반발, 중미경제통합 관련 협정 위반을 이유로 한 이의제기 등으로 현재 통과물품에 대해서는 11.7까지 수수료 부과가 유예된 상태이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코드(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규정(RECAUCA)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무기류, 화약류, 주류, 화학물질, 의약품 등에 한해 수입규제가 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국가의 정치, 사회 및 경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책자 및 선전물, 외설물, 낙태용 약제, 마약류, 화폐제조기 등이 있다.

일부 농산물(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 할당관세(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최대 40%)가 적용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불공정무역규제조약이 1996.1.12일 발효되어 시행 중이며, 주무기관은 경제부 무역협정관리국이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사례는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테스트, 등록되어야 하며,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고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유통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농업부, 보건부 등 관련 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을 이유로 한 본격적인 무역규제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품목별 장벽

8년 이상 사용한 승용차 및 경화물차, 15년 이상 사용한 버스 및 중화물차는 수입이 금지된다. 그밖에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커피나무 및 씨, 동전주조용 기계, 도박용 기계, 낙태 약품, 대구경 화기, 아편,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를 교란하는 책자, 인쇄물, 영상물 등이 있다.

정부만이 수입할 수 있는 제한적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군용 비행기 및 함선, 방독면, 그리고 담배제조용 종이, 수입인지, 우표 및 니켈동전 등이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상품이 30% 이상 가치가 부가되도록 변형되어 중미공동시장 밖으로 수출되는 경우 상품가격의 6%를 환급해주는 drawback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동 제도가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2011.2.1 폐지되었다.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에 대해 10년간 관세 및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동 제도 역시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고 2013.2월 자유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법은 기존의 수출 기준 대신 입주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들에게 15~20년간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엘살바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다. 정부조달업무는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법(LACAP: 2000.4월 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재무부의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 규제위원회(UNAC)'가 조달 관련 정책을 수립하나 각 정부기관이 실제 조달을 담당한다. 동 법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2011.5월 LACAP를 개정, 공개입찰 하한선(threshold)을 기존 131,800달러에서 53,784.01달러로 조정하였다. 동 규모 이하 입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관련 법규는 상품·서비스·건설 서비스 모두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입찰조건이 동일한 경우 국내기업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엘살바도르는 WTO TRIPS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판권조약',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의 서명국이다. 국내적으로는 지식재산중진보호법'(1993년 제정, 2005년 개정), 상표및여타특징적표시법(2002년 제정, 2005년 개정) 및 형법 등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를 '국가등록센터'의 '지식재산권사무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관련 법규에 의거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 복제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6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내 곳곳에서 불법복제 DVD가 판매되는 등 이에 대한 실효적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판을 통한 시정 절차도 매우 느리다.

특허권에 대해서는 WTO TRIPs 협정과 동일하게 20년간 보호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15년만 보호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호보 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장벽

2007.10월 국제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국제유통, 국제화물운송, 콜센터, 정보통신, R&D, 선박 수리, 의료, 국제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제서비스법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및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와 소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한다.

2012.10월 정부가 제출한 국제서비스법 개정안이 2013.1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컨테이너 보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영화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투자제한 범위를 좁게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액 68,571달러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소규모 기업 투자 시에는 향후 종업원 증원 계획을 경제부의 국가투자청(ONI)에 제출해야 한다.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3.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제정, 공공서비스(보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 제외) 및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정부의 계약 불이행시 민간투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4.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개정, 동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청(Proesa)의 역할 강화 등 투자촉진책을 포함하였다.

지분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약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은 거의 없다. 다만, TV 및 라디오(AM, FM) 방송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케이블 TV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은 없다.

투자절차상 차별적인 조치나 제약은 없으며, one-stop 투자서비스 기관인 국가투자청(ONI)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내 신규투자 등록 시 16.5일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국가투자청(ONI)이 외국인 지사·사무소 설립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NI는 또한 노동 관련 사항, 이민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국가등록센터(CNR)는 통합서비스 창구를 설치하여 지사 및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지사 설치 운영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2,000달러(기존 11,428불에서 2008년에 2,000불로 대폭 축소)로서 스페인어 계좌 증명을 준비해야 하며, 회사의 이사 및 행정인력 명단을 상업등록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회사 내규
- 회사 정관
- 이사회 의사록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위임장(지사장 및 변호사)

위의 한국어 서류를 영어로 번역 후 변호사 공증을 받은 다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Apostillo를 받아, 스페인어로 번역 후 엘살바도르 각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012.5월 정부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MiEmpresa.gob.sv" 사업을 개시, 최초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업에게는 일부 구비서류에 대한 온라인 발급 신청을 허용하였다.

외국인종업원 규제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장법'은 현지인을 최소 총고용인원의 90% 및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국산화 의무

외국투자기업에 국산화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수출이행의무 및 수출시 인센티브

'투자법'은 투자자에게 일정 생산량의 수출, 기술 이전, 일정 수준의 현지구매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수출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법'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아래와 같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WTO 협정 위반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3.1월 면세혜택 기간을 15~20년으로 한정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수준을 낮추면서 기업 투자 수익 및 고용실적에 따라 감세 범위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동 법을 개정하였다.

- 수출품 생산용 원자재, 기계, 장비의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세금 면제
- 수출품 생산용 연료와 윤활유(국내생산분은 제외)에 대해 세금 면제
- 투자회사의 자산, 재산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 면세
- 수출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국내시장에서도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수출촉진법'에 따라 투자기업은 중미공동시장 밖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동 상품 FOB 가격의 6%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동 제도는 WTO 협정 위반으로 2011.2.1일 폐지되었다.

부동산 취득 제한

1980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연인이나 법인(내·외국인 불문)이 245ha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엘살바도르인에게 토지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토지 취득을 불허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국외로의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2) 자금차입 규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비교적 쉬운 편이며, 특별한 규제는 없다. 2001년 달러공용화(dollarization) 이래 저축 및 차입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중앙은행에 의해 신용(tax credit)이 부여된 은행을 제외하고, 해외에서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3) 금융거래세법 시행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회투자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2014.9.1 금융거래세법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000불을 초과하는 금융거래(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 외교단 제외 등 다수 예외규정 포함)에 대해 0.2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세율상의 차별 여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상의 차별은 없다. 주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IVA) 13%, 소득세 25%, 지방세(세율은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가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서비스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쟁정책

경쟁법은 가격담합, 생산제한, 매점, 끼워 팔기, 독점 등을 불법으로 규정,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장벽

장기체류비자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 체류가 가능하나,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장기체류비자(거주권)를 취득해야 한다. 투자법은 월 최저임금의 4,000배(969,6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거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투자등록 후 30일 이내에 거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자 및 가족도 해당된다.

장기체류비자 발급제도는

- 1년 기한 체류비자(최초 입국 후 5년간 5회 연속 1년 기한 체류비자 발급)
- 5년 기한 거주권(5년 연속 1년 기한 체류비자를 받은 경우 동 거주권 신청 가능)
- 임시체류비자(상기 1년 체류비자 등 기한 만료 시 3개월 유효 임시체류비자 발급)로 구분된다.

이민국의 장기체류비자 발급시스템이 비효율적이어서 발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장기체류비자 만료에 따라 출·입국 시 벌금 부과,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불가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서류는 ①재무부 발행 조세납부자 신분증(NIT) 원본 및 사본, ②여권 원본 및 사본, ③거주증, ④한국운전면허증 사본, ⑤시력 및 혈액검사증이다.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는 49.43달러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되며, 거주증 취득 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별도의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중미국가 중 공무원의 부패가 비교적 덜하며 규율도 엄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는 자유무역지대 세관의 경우 공무원의 근무지를 수시로 변경하여 관련 기업과의 유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기업의 선물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항만, 공항시설 부족에 따른 화물 적체가 빈발하여 수입물품 통관 시 신속 통관, 세금 경감 등 혜택을 빌미로 일부 공무원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컨테이너 통관 시 무작위 검사 대상(세관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파란불은 통과, 빨간불은 검사)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입업자와 세관원간의 음성적 거래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탈로그/개인소화물에 관세 부과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에 송부하는 각종 카탈로그에도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물론, DHL, Fedex 등 세계적인 물류업체는 통관업무 절차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무료로 송부되는 카탈로그라도 최소금액을 표기하여야 부당한 세금부과를 막을 수 있다.

온두라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온두라스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 속에 시장 확보와 교역 확대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타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 중으로, 최근 중미-EU간 제휴협정 (2013.8.1. 발효), 중마-멕시코간 FTA (2013.1.1. 발효), 온두라스-캐나다간 FTA(2014.10.1. 발효) 체결에 이어, 현재는 중미-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간 FTA, 온두라스-페루간 FTA(최종 협상 단계) 등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부상 중인 BRICS 및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등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온두라스는 주변 중미국가에 비해 GDP 대비 수출 비중(20-23%)이 높은 국가로서, 매우 개방적인 통상 정책을 취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수입 규제조치도 상당 부분 간소화 하였다.

온두라스의 수출 품목은 매우 제한적으로서, 주로 섬유 봉제 제품 위주의 마깔라 산업(임가공 수출산업)을 통한 수출이 전체 수출액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커피, 바나나, 아프리카 팜유, 새우, 설탕 등 농수산품이 전통적인 수출 품목으로서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14년도 상반기 수출액은 21.9억불, 수입액은 46억불로 24.1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전년 동기(23.3억불) 대비 3.4%(78.4백만불) 증가함. △2014년도 1/4분기 마낄라(임가공 수출)산업부문의 수출액은 9.61억불로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바, 현 추세 지속시 연말 예측치(36억불)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온두라스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관세제(Co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CAUCA)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Ley Nacional de Aduanas, Decreto No. 212-87)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관세로 일치시켰다. 역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관하여 0%~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옥수수 및 수수(sorghum) 수입에는 제한이 있는데, 가격 상한선제도와 정부 수매정책을 근거로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가 5%에서 45%까지 변동될 수 있다. 다만, 자국 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5%의 판매세(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판매세 면제 대상 물품은 기초 식료품, 연료, 의약품, 농화학제품, 청소용품, 서적, 잡지, 교육용 교재, 농업기계 및 기구, 수공예품, 그리고, 트럭, 트랙터, 크레인, 컴퓨터 등과 같은 자본재, 마낄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각종 면세혜택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차단 및 세원 추가 확보를 위해 현행 조세법 및 관세법상 적용받는 모든 면세 및 감세 혜택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동 관련 신규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맥주, 브랜디 등 알코올 음료 및 담배 등에 대해서는 15%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수입물품은 먼저 세관 보세 창고에 반입되어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수입품이 반입된 지 20일 이후부터는 창고료가 부과되며, 반입된 수입품은 1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세관 창고로부터 물품반출 시에

는 관세 및 창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통관절차는 수입신고로 시작되는데, 수입에 필요한 정보를 관세청이 지정하는 통합세관신고서(DUA) (Declaración Única de Aduana) 종이서식에 채운 뒤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이후 국세청[1] 웹사이트 (www.dei.gob.hn)에 접속하여 관세수입자동관리시스템(Sistema Automatizado de Rentas Aduaneras: SARAH) 웹 메뉴로 들어간 뒤, 적하목록(Manifiesto de Carga) 을 확인하고 자동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때 생성되는 등록번호를 DUA 종이서식에 기입한 뒤, 해당 관세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전자적으로 지불한다. 그리고 통관경로(canal)를 신청하면, 녹색, 적색 또는 황색 통관경로를 부여받게 되는데, 해당 경로를 DUA 우측 상단에 기입한다.

녹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우선 전자적으로 이 경로가 부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황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DUA를 물품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공무원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종이서류를 비교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기타 운송장, 원산지증명, 중량서류, 관세율 적용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적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세관은 물리적 검사 및 서류심사를 동시에 행하는데, 서류 심사대상은 모든 계산 근거 확인, 물품의 종류 및 원산지 확인, 중량 및 관세율 적용 확인, 현 상태 및 수량 확인, 물품가격 및 기타 물품의 특징 등을 확인한다.

1_ 국세청(Dirección Ejecutiva de Ingresos, 약어로 DEI): 온두라스에는 중남미 다수의 나라처럼 국세와 관세업무가 하나의 기관에 통합되어 있음. DEI 산하에 국세업무를 다루는 국세국(Dirección Adjunta de Rentas Internas, DARI)과 관세업무를 다루는 관세국(Dirección Adjunta de Rentas Aduaneras, DARA) 이 있음. 중남미에서 조세청 단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이며, 국세청과 관세청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는 칠레, 에콰도르 등임.

물리적 검사의 대상은 포장상태의 훼손 여부, 물품의 상표, 포장의 수량, 크기, 종류, 품질 등을 검사하여, 서류상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현재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물류 처리기간 단축 및 관세 징수 확대를 위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반덤핑, 상계관세 및 보조금상의 제약

온두라스 국내 관련 업계로부터 제소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인 산업통산부(SIC)에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보조금에 대한 제약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 5 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법(CAUCA) 및 중미통합관세법 규정(RECAUCA)에 의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온두라스는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대만,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파나마, 캐나다)에 대해선 FTA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규제

제조업이 취약한 온두라스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0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13년 이상 된 중고 버스, 트럭, 그리고 우측 운전석 배치 차량, 재생 자동차, 폐기 차량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단, 온두라스 소방본부, 적십자본부, 긴급재난본부 및 구청에 기증용으

로 수입되는 중고 승급차량, 재난구호차량 등의 반입은 허용된다. 또한 무기, 탄약, 유독화학물질, 포르노물, 마약류 등의 수입 또한 제한된다.

Labeling 및 상품표시 관련 장벽

온두라스 관련법에 따라 모든 가공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 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온두라스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은 사전에 위생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품명, 원산지, 제조일자, 유효기간, 원료 성분, 제조업자, 유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단 중미관세동맹(CACU)회원 국가끼리는 중미기술규정(RTCA 67.01.31.06)에 근거하여, 이미 한 국가에서 위생등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국가에서 재등록의 의무가 면제된다.

수입요건확인 관련 장벽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는 자국민들의 건강보호(식품, 의약품, 농축수산물 등), 안전관리(공산품의 표준관리), 사회안전(무기, 총기류), 자국 식량주권 보호(특정 식료품 또는 농산품) 등을 이유로 통관을 하기 전에 사전에 요건확인 기관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요건 확인기관으로는 OHN(국립표준원), SIC(산업통상부), SENASA(농축산검역청), SAG(수의학제품품질연구소), SS(보건부) 등이 있다.

특히, 오존파괴물질(ODS, ozone depleting substances)인 염화불화탄소(CFCs, chloro fluoro carbon)와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SAG) 산하 오존기술부(Unidad Tecnica de Ozono)와 농축산 검역청(SENADA)에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수입허가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환경 관련 규제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환경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장설립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이나 천연자원, 국가문화재나 유적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우선 온두라스 자원환경부(SERNA) (Secretaría de Recursos Naturales y Ambiente)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온두라스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GPA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정부조달 계약법은 2001년 10월 발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100만 렘삐라(2014년 11월 현재 약 U$47,170)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50만 렘삐라에서 100만 렘삐라 사이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50만 렘삐라 미만의 경우 입찰절차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면제 대상이다.

외국기업의 경우 온두라스의 정부조달 절차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온두라스 로컬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CAFTA-DR의 적용을 받는 미국기업들의 경우, 해당 협정에 따라 이런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절차를 조달청(ONCAE) 웹사이트(www.honducompras.gob.hn)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적 비효율성과 부정부패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온두라스 정부는 "표준입찰서식"을 지정하여 미주개발은행(IDB) 및 세계은행 등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기술장벽

온두라스에는 표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국가 표준법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령으로 이를 규제(WTO와 체결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 포함)하고 있으나, '중미표준, 도량형 및 승인절차 규정'에 따라 중미통합의 회원국은 국가표준과 관련, 독자적으로 법제도, 기술규정 또는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평가 규정을 실시할 수는 없다.

각종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품질 기준, 표준 및 효율 기준 등 기술관련 표준 관리 업무는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국립표준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Calidad: CNCA), 온두라스 표준기구(Organismo Hondureno de Normailizacion: OHN)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조치

WTO의 위생 및 검역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SAG), 농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opecuaria, SENASA) 및 온두라스 국립 식품위원회(CODEX) 등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보건법(Codigo de Salud), 동식물 검역법(Ley Fitosanitaria), 씨종자법, 중미위생 및 검역절차 규정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온두라스는 WTO TRIPS에 가입하고 있으며, 1990년대 말부터 지적재산권 보호 법률을 강화하였다. 특히 1999년 저작권, 특허 및 상표법, 2000년 1월 발효한 로열티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온두라스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는 특허청(Direccion General de

Propiedad Intelectual de Honduras: DIGEPIH) 소관으로, 특허청이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 업무 및 특허침해소송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특허등록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온두라스에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의 75% 정도가 불법복제물로 알려질 정도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심각하다. 특허청과 검찰청은 이를 단속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은 하였으나, 절차적 문제, 경제적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성과는 지지 부진한다.

온두라스법에 의해 특허나 상표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특허등록 유효기간은 그 중요도에 따라 10년에서 20년까지이다. 상표의 경우 등록일자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유명"상표의 경우 온두라스가 체결국으로 되어 있는 범미주협약(1917년)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명 상표를 불법적으로 온두라스에서 누가 등록을 할 경우, 일단 법원의 절차를 거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2005년 12월에 발효한 신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를 일종의 범죄행위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불법 복제물을 압수, 몰수, 파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피해기업의 제보가 없이도 검찰이 직권으로 특허침해 관련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해당 기업의 요청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온두라스는 특정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광업, 호텔업, 금융업의 경우 정부의 특별 허가를 요한다. 또한 외국인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관련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태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전자서명법은 의회를 통과하여 2013.12월부터 시행중이나, 관련 후속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경쟁 정책

온두라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경쟁보호 및 장려법'을 통해 가격 담합, 생산 제한, 매점, 독점, 공개입찰 제한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온두라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2010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기본 법률들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8월에 통과한 공공-민간기관 합작투자법, 11월에 통과된 시간제 근로자 고용법 등이 있다. 2011년 중 온두라스 국회는 외국인투자 보호 및 촉진법을 통과시켰다.

단,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의 경우 해당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전기발전, 송전 및 판매, 항공운송, 수산업, 수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 개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업 등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2014.7월 발효된 전력산업법(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ectrica No.404-2013) 시행을 통해 발전, 송전, 배전 등 제반

전력산업을 개방함으로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시장 자유화를 추진 중이다.

온두라스는 한국을 포함, 칠레,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와 투자보장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아직 이중과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없다.

지사·사무소·현지법인 설치상의 제약

온두라스 정부는 회사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002년 상법 제308조 개정). 또한 2011년 발효한 외국인투자 보호 및 촉진법에 따라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투자 및 수출촉진 재단(FIDE), 국가경쟁력위원회, 그리고 테구시갈파 상업회의소(CCIT)의 공동의 노력으로 2005년도 62일이 걸리던 회사설립 절차가 2009년에는 14일로 단축되었다.

온두라스의 회사설립 절차는 상법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양한 회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인형태는 유한책임회사(SRL)와 주식회사(SA)[2]이다.

유한책임회사는 납입자본금 5,000 렘삐라(약 254달러)와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으로 설립가능하며,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 25,000 렘삐라(약 1,270달러)와 최소한 5인 이상의 주주로 설립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확인한 설립절차는 총 13단계이며, 그 중 몇 개 단계는 테구시갈파 상업회의소가 수행할 수 있다.

2_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 익명회사)에는 주식과 주주가 있는 반면,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는 지분과 사원이 있음. 스페인어로 Ltda. 라고 부르는 회사는 영어 Ltd.처럼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책임회사 임에 주의할 것. 중소규모 회사나 가족 단위의 회사일 경우 주식회사 보다 유한책임 회사 형태가 더 유리함.

1. 로컬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 확보
2. 공증소에서 설립정관 작성
3. 온두라스 산업통상부로부터 상업활동 허가 취득(관보에 게재)
4. 수입인지 서식 구입(등록서식 및 변호사협회 서식)
5.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6. 사업자등록번호(RTN) 신청
7. 회계장부 구입
8. 지역 상업회의소에 가입
9. 구청에 영업허가 신청
10.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자로 등록
11. 온두라스 사회보장국(IHSS)에 등록
12. 온두라스 국립인력훈련원(INFOP)에 등록
13. 온두라스 주택기금(FOSOVI)에 가입

외국인 종업원 규제

온두라스의 노동법 제11조에 따르면, 현지인을 최소 총 고용인원의 90% 및 총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온두라스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서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1992년 제정된 투자법은 온두라스 헌법과 부동산 소유권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내외국인 차별 없이 자유로운 부동산 취득을 보장한다. 단 헌법에 따라 외국인은 온두라스 국경이나 해안으로부터 40 Km 이내의 토지는 구입할 수 없다. 최근에는 이 법이 대폭 완화되어서, 외국인도 지정된 “관광지역”의 부동산은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배당금이나 로열티의 국외 송금은 아직도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필요사항이다.

(2) 자금차입 규제

외화차입의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난다.

국내 차입의 경우 주로 은행들은 고율의 단기대출만 담당한다. 온두라스 시중은행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며, 2014년 11월 현재 렘삐라화 대출이자율은 18-36 %, 달러화 대출이자는 7-8%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세율상의 차별 여부

온두라스는 내·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상의 차별은 없다. 주요 세금은 부가가치세(IVA) 12%; 치안세(2%, 은행 거래 월 평균 6천불 이상일 경우), 소득세 15%(L.110.000,01-L.200.000,00), 20%(L. 200.000,01-L.500.000,00) 25%(L. 500.000,01이상); 법인세 25%; 지방세(세율은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가 있으며, 특별세로는 1998년에 제정된 관광서비스세(4%, 호텔, 렌트카, 여행사 등에 적용)가 있다.

비거주 외국인(보세구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 포함)은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에 대하여는 25%의 소득세를 적용하며, 임금, 급여, 커미션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최고 30%까지 과세한다.

기타 장벽

장기 체류 비자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 체류가 가능하나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거주권(residencia)을 취득해야 한다.

거주권 취득 절차는 온두라스 내에서 밟아야 하며 대체로 변호사가 대리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온두라스에 이민자로 입국하겠다는 신청서
- 온두라스 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진술서
- 신청자의 현거주지 경찰당국으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 확인서
- 신청자의 신분증 영사확인서
- 건강증명서
- 출생증명서(본인 및 가족)
- 여권 모든 페이지 복사본
- 혼인증명서
- 근로계약서(취업목적의 거주의 경우)
- 소득 증명서(연금수령자의 경우 월소득이 1,500달러 이상일 것)

우루과이

한국과 우루과이의 교역은 일시적인 위축과 확대를 반복해 오고 있다. 한국의 對우루과이 수출은 2002년 우루과이의 경제위기시 대폭 감소하였다.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8.9월 발생한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약 35% 감소한 64백만달러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우루과이의 경제호황 및 내수진작에 따른 수입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159백만달러(147.1% 증가)를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217백만달러(36.4% 증가)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여, 184백만달러(15% 감소)를 기록하였다. 2013년에는 386백만달러로 209%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은 경유수출(1.6억불) 때문이었다. 2014.9월까지 집계된 수출액은 176백만달러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화물자동차, 승용차, 전선, 냉연강판, 무선전화기 등이다.

한편, 한국의 對우루과이 수입은 2002년 이후 지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0년에는 전년 대비 27.7% 감소한 32백만달러를 기록하며 주춤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1년 75백만달러(131.6% 증가), 2012년 98백만달러(30%증가), 2013년 121백만달러(23%증가)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4.9월까지 집계된 수입은 57백만달러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펄프, 제재목, 소가죽, 천연섬유원료, 어류, 육류 등이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에 대해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보여온 바, 2010년에는 127백만달러, 2011년에는 142백만달러, 2012년에는 86백만달러, 2013년에는 265백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와 함께 역내 주요 경제 block의 하나인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이다. 남미공동시장은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공동 경제정책의 시행 등을 통해 재화,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하는 시장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창설되었는데, 사무국이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 위치해 있다. 2012.7월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단, 파라과이는 루고 대통령 탄핵 사태로 배제된 채 결정)으로, MERCOSUR는 인구 총 276백만명, 총 GDP 3.47조달러 규모로 남미 전체 GDP의 83%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block으로 확대되었다.

우루과이는 MERCOSUR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대해 이중적인 관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설탕 및 자동차를 제외한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가 부과된다. 대외공동관세율은 일반적으로 0~20% 수준으로 평균 13.5%에 이르나, 특정 신발, 설탕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23~35%, 특별 가공 복숭아에 대해서는 55%가 부과된다. 한편, 정보통신 품목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2019년까지 0~2%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루과이의 수입 관세율은 평균 10.5%로 집계되고 있다. MERCOSUR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대외공동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정할 수 있는 데, 우루과이에 해당하는 세부품목은 219개에 달한다. 우루과이는 산업별로는 섬유(18%), 의류(20%), 구리(0~2%), 설탕(평균 30%), 자동차(6~23%) 등에서 개별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원자재의 경우 2~6%, 중간재의 경우 8~9%, 소비재의 경우 10~20% 등 대외공동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며, 자동차, 농업 및 호텔 공급품,

수출품 재료에 대해서는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가 적용된다.

또한, 우루과이는 1980.8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중남미 공동시장 달성을 목표로 설립된 중남미통합기구(ALADI)의 회원국으로 동 기구의 사무국이 몬테비데오에 위치해 있다. 우루과이는 ALADI 회원국인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쿠바 및 멕시코와 각각 특혜관세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는 2003.11월 멕시코와 자동차 및 석유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나간다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수입부과금

외국 물품의 수입에 있어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사확인 수수료, 세관특혜용역비 및 특별세가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 수입품 통관금액(수입가액+관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22% 및 추가 부과세(advance payment) 10%가 부과된다. 생필품 및 의약품 등 최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부과세는 3%이다.

○ 영사확인 수수료(consular fees)
-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 수입품 가치의 2%가 부과되나 법령(decreto) 70/002 제24조에 의해 원유 및 제조업, 농목축수산업에 사용되는 수입자본재에 한해 예외적으로 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 세관특혜용역비(customs and preferential service fee)
- CIF 기준 수입허가서 가치의 0.2%이며, 관련 법률에 의해 50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특별세(extraordinary service fee)
- 수입허가서에 명시된 가치에 의해 산정된 부과금에 따라 특별세 금액이 결정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 Seguros del Estado)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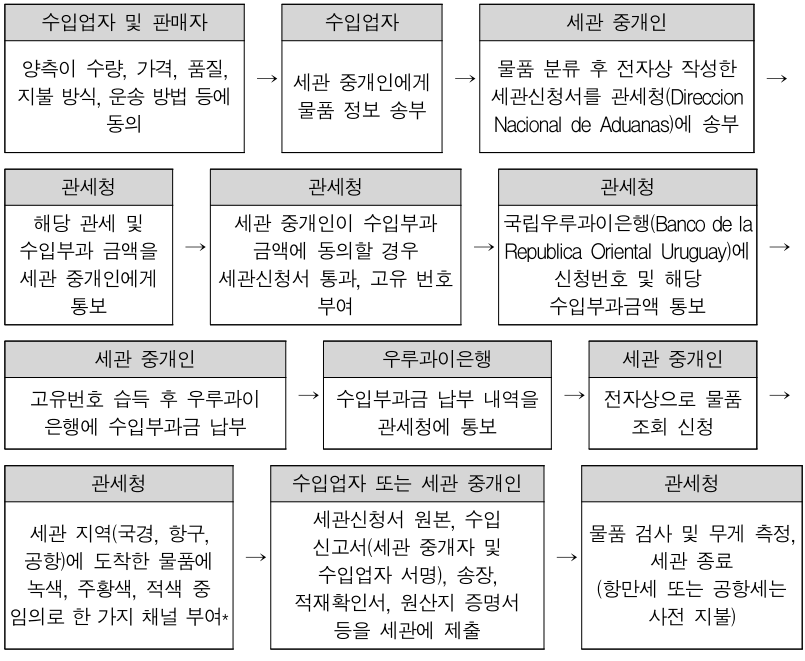

* 녹색 채널: 즉시통과
주황색 채널: 서류심사 후 통과
적색 채널: 서류 및 물품 검사(물품의 종류, 품질, 상태 및 수량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후 통과

보건, 환경, 국방 등 특별한 사유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2일이며,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기준으로 관세를 제외한 소요 비용은 약 1,330달러에 달한다.

통관시 석유, 식용유, 산업용 정제 설탕, MERCOSUR 비회원국산 섬유제품, 신발은 반드시 적색 채널을 통과해야 하며, 위스키 및 담배에 대해서는 특별 문서 제출 및 예치금 공탁의 추가 절차가 적용된다. 방송용 음반 및 개인적 용도로 국제우편을 통해 도착한 50달러 이하 음반을 제외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 규정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세관신청서에 명시된 일련번호 코드가 필요하다.

수입정책

품목별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제는 1970년대 중반에 폐지되었으며, 최저수입가격제도(minimum import prices)는 1998년 이후 폐지되었다.

농업용 살충제,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약 기기, 화장품, 음료수, 가정용 위생용품, 방사능 사용기기, 육류, 사료 등 보건·위생상 민감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목축수산부(Ministerio de Ganaderia, Agricultura y Pesca),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산업에너지광물부(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ia) 등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외 물품의 등록은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섬유, 기름, 신발, 자동차, 산업용 설탕, 출판용 종이, 아세트산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면허(import licence)가 필요하며, 동 물품의 수입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만 세관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수입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48시간에서 근무일 기준 10일이며, 면허 발급은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산업국(Direccion Nacional de Industria)에서 담당한다. 자동차의 경우 수입 면허는 90일간 유효하며, 여타 품목의 수입 면허는 60일간 유효하다. 면허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면허당 약 5달러이다.

원산지 규정

ALADI 및 MERCOSUR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간 특별 원산지 규정 이외에는 관련 국제법규에 위반되거나 차별적인 원산지 규정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ALADI 규정에 의해 원자재 가치가 완성품 가치의 50%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 ALADI 원산지 규정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MERCOSUR 협정에 따라 회원국간 거래되는 차량, 농기계, 자동차 부품 등은 역내산 부품이 완성품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원산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산업에너지광물부, 우루과이 산업회의소(Camara de Industrias del Uruguay), 상업서비스회의소(Camara Nacional de Comercio y Servicios), 국산품상공회의소(Camara Mercantil del Productos del Pais)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MERCOSUR 원산지 확인서 발급은 경제재정부(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산하 통상국(Direccion Nacional de Comercio)에서 담당한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규정은 대부분 보건, 동식물위생, 안전, 국방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시행되며, 해당 품목은 석면 포함물, 납 다량 함유 상자로 포장된 음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지, 군사용 무기, 마약 등이 있다. 이밖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몬테비데오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물 재료(composition of food articles)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우루과이는 GATT 및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을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산 폴리에스터 섬유, 아르헨티나산 옥수수기름, 호주산 철판, 멕시코산 시멘트, 이탈리아산 난방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 중 실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경우는 아르헨티나산 식용유 1건에 불과하였다. 최근에는 2012.2월에 중국산 난방기에 대해 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01.1~2002.6월 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MERCOSUR 역외산 직물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동 관세는 섬유의 경우 1kg당 1.62~4.55달러, 의류의 경우 1kg당 2.80~6.30달러에 달했다.

자유무역지구/자유항

현재 우루과이에는 Montevideo(3개), Nueva Helvecia(Colonia Suiza), Nueva Palmira, San Jose(Libertad), Colonia, Florida, Río Negro(Fray Bentos), Punta Pereira(Colonia), Rivera, Canelones 등에 위치한 12개의 자유무역지구가 있으며, 이중 2개는 국영(Nueva Palmira, Rivera), 10개는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무역지구내 입주업체는 대부분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기업 설립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서비스 및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Montevideo시에 Zonamerica 지구가 조성되었고, Fray Bentos시에는 펄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UPM지구가 조성되었다. 또한, 2011.7월에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 인프라 등이 비교적 잘 갖춰진 World Trade Center 자유무역지구가 Montevideo 중심가에 형성되었다.

자유무역지구에서의 산업 활동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자유무역지구에서 우루과이 영토로 유입되는 물품은 수입품으로 처리되어 관세 및 수입세가 부과된다. 한편, 우루과이 영토에서 자유무역지구로 이동하는 물품은 수출품으로 처리되어 해당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 법규가 적용된다. 자유무역지구에 등록된 사업자는 우루과이 영토

에서 어떠한 산업·상업적 활동도 할 수 없으며 우루과이 영토내의 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자유무역지구에서 가져올 수도 없다.

외국 또는 우루과이 영토로부터 자유무역지구로 유입되는 상품, 서비스 및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수입세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 가공 및 재수출이 가능하다. 자유무역지구에서는 모든 국세 및 상품 거래에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되며, 정부 독점 산업에 관한 국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1987.12월 제정된 자유무역지구법(법 15921)은 자유무역지구내에서 임차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중 우루과이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지구에는 MERCOSUR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우루과이 자유무역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이 여타 MERCOSUR 회원국으로 수출될 경우 대외공동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구 내에서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유령회사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2010.11월 법령 344/ 010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령에 따라 자유무역지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011.2월에 제정된 자유무역지구내의 직·간접사업자의 사업기간 계약 및 연장에 관한 법령 72/011에 따르면 직접사업자는 상업, 해상무역, 서비스업의 경우 10년, 제조업의 경우 15년간의 임차권이 허용되며, 기간 만료 이후에는 120일 안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간접사업자는 5년의 임차 기간이 허용되며 연장 신청은 직접사업자와 동일하다.

한편, 자유무역지구와 유사한 제도로서 산업지구,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치지구(private customs deposits) 등 특별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치지구는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수입세가 면제되며, 역내에서 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표 부착, 분리, 재포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자유항 내 물품의 보관 기간 및 보관된 물품의 수량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우루과이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가품질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TU: 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품질 보증 등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국가 차원의 품질 보증(certification) 및 기술표준 규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1997년 WTO 표준 설정 및 이행에 관한 규약(Code of Good Conduct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을 승인하였다.

국가품질관리위원회는 품질 테스트 연구소, 검역담당자 및 품질 검사기관에 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국제표준협회 품질 기준인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9000/9001과 합치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수입식료품에 대한 품질은 우루과이기술연구소가 관리하며, 동식물 위생 및 원자재 품질 관리는 농목축수산부 산하 국립농업국(Direccion Nacional de Servicios Agricolas)에서 담당한다. 이밖에 통신 자재 및 전기 품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통제한다.

라벨링 인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효기간, 총 무게, 우루과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환경 관련 규제

우루과이 헌법 47조 및 환경보호법률 17283은 환경 보호가 보편적인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정부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사업 허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투자진흥법률 16906은 청정 기술(clean technology)을 이용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토지환경부(Ministerio de Vivienda, Ordenamiento Territorial y Medio Ambiente) 산하 국립환경국(Direccion Nacional de Medio Ambiente)에서 환경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2005.9월에 발표된 법령 349/005에 따라 주택토지환경부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분야별 사업은 아래와 같다.

○ 교통 및 운송 인프라건설
- 국도 또는 지방도로의 건설 및 연장
- 철도 건설 또는 정비
- 새로운 기반 공사가 필요한 교량 건설 및 정비
- 공항 건설 및 활주로 교체를 필요로 하는 공항 리모델링
- 항만 건설 및 바다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항만 정비
- 석유 및 화학 물질 운반 터미널 건설

○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
- 유해 폐기물 처리 공장 및 매립지 건설
- 사용자 10만 명 이상 하수처리장 건설
- 1헥타르 이상의 제조 공장, 유해 물질 배출 공장 등의 산업용 건설

○ 에너지
- 새로운 광산 또는 갱구 건설을 요구하는 광물 채취
- 화석 연료 개발
- 10MW 이상 전력 생산 공장 건설
- 핵에너지 생산 및 처리 공장 건설

○ 무역, 여행, 농림
- 자유무역지구 또는 산업지구 확장 공사
- 리조트 및 여가 시설 건설
- 10헥타르 이상 주택 단지 건설
- 100헥타르 이상 채소, 과일 및 포도주 생산지
- 100에이커 이상 임업장 건설

해당 건설 업체는 국립환경국에 건설업체명, 토지소유자명, 토지 특성, 연관 기술자 신상 정보, 공사 내용,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및 환경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 건설환경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공사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 정도를 측정하여 A급(오염 가능성 낮음), B급(오염 가능성 중간), C급(오염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한 후 이를 국립환경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립환경국은 환경 카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환경오염 가능성 정도를 승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A급 사업의 경우 허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 변경 및 추가적인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B, C급 사업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환경영향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C급 사업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연무제(aerosol), 납 다량 함유 페인트 및 중질유, 특정 농업용 살충제 및 화학 약품, 유해 폐기물 등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할론 가스 등 몬트리올 협약(Montreal Protocol)에 명시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한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주택토지환경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MERCOSUR 대외공동관세는 원칙적으로 승용차 20%, 자동차 부품 2~18%, 도로 장비, 버스 및 트럭 2~20%가 부과되나, 세부 차량 품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회원국별 관세 체계가 적용된다. 우루과이는 일반 승용차에 대해 23%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 및 내국세 등 자동차에 부과되는 총 세금을 포함하여 MERCOSUR 역외산 자동차의 경우 가격의 49%, MERCOSUR 역내산 자동차의 경우 가격의 39%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2010.12월 제정된 법령 411/010에 따라 승용차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30% 내국세가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는 면제, △1,000cc 이하 자동차 20%, △1,000~2,000cc 승용차 25%, △2,000~3,000cc 자동차 35%, △3,000cc 이상 자동차 40%로 세분화되었다.

우루과이는 MERCOSUR 회원국들과 자동차산업에 관한 특혜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MERCOSUR산 부품을 60% 이상 사용한 우루과이산 자동차의 경우 연간 차량 수에 관계없이 무관세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에 수출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모델을 무관세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도입 초기에는 40%의 MERCOSUR산 부품 사용 비중 기준이 적용되며, 점진적으로 60%에 도달하여야 한다. MERCOSUR산 부품 사용 비중이 50% 이상 60% 미만일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연간 무관세로 수출 가능한 차량 수가 정해져 있다.

▪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자동차 협정 내용

	기존 차종 (부품 중 MERCOSUR산 부품 비중 기준)	신종	방탄 차량
연간 수량제한 없음	60%	도입 1년차 : 40% 도입 2년차 : 50% 도입 3년차 : 60%	60%
연간 수량제한 있음*	50%	도입 1년차 : 30% 도입 2년차 : 35% 도입 3년차 : 40% 도입 4년차 : 45% 도입 5년차 이상 : 50%	50%

출처: 우루과이 무역투자진흥공사(Uruguay XXI)

* 연간 수량제한:
  - 일반 차량 및 자동차: 20,000대
  - 트럭 및 트랙터: 2,500대
  - 방탄 차량: 1,200대
  - 부품: 1억달러

한편, 브라질 정부가 2011.9월 브라질내에 공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회사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공산품세를 종전의 7%에서 37%로 인상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자, 우루과이에 공장을 두고 생산량의 100%를 브라질에 수출해 오던 중국계 Effa사가 생산을 잠정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우루과이 경제재정부 및 산업에너지광물부는 브라질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루과이산 자동차가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동 조치에서 제외된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와 같이 우루과이도 브라질과 자동차산업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는 점을 들어 동 조치에서 우루과이산 자동차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우루과이내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브라질에 수출하는 Effa사, 기아자동차 및 Chery사(중국계)에 대해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자동차 공산품세를 부과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우루과이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장려를 위해 우루과이내에서 조립된

차량 및 우루과이산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수입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2012.8월부터 중고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령 175/012에 따라 우루과이내에서 조립이 불가능한 특수 교통수단이나 비영리목적으로 기증된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수출 보조 정책

우루과이 정부는 원칙적으로 수출품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목축수산부에서 특정 종자가 국내 소비를 위해 긴요하다고 명시하여 수출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수출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 품목별로 정해진 환급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품에 부과된 간접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수출업자들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임시 허가(temporary admiss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동 제도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완성품이 수출된다는 조건하에 일정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품은 완성품 생산을 위해 조작, 조립, 변형 과정을 거치는 품목(원자재, 부품, 모터, 모형, 중간재, 농산품 등)으로 정의된다. 임시허가의 신청 및 허가는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TU)에서 담당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우루과이 정부가 직접 소유하거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있어 정부조달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법령 194/997에 의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경우 외국 기업들은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우루과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 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우루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입찰 시작일 15일 전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전에 공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 기업의 입찰 가격이 외국 기업보다 10%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입찰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행정 절차상 입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우루과이는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베른협약(Bern Convention)을 비롯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로마협약(Rome Convention),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의 회원국으로 동 조약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이 우루과이내에서 우루과이 국민과 같은 저작권 보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소프트웨어, 전자 창작물 및 외국산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창작물에도 해당한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보장되며,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 역시 50년 동안 유효하다. 상표의 경우에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국립특허국(Direccion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의 허가를 받아 10년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재등록할 수 있다.

우루과이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협약(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가입해 있으며, 동 협약에 가입해 있는 국가의 특허권 소유자들은 본인의 발명품이 우

루과이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우루과이 국립특허국으로부터 취득한 산업 특허는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후 공공 소유로 전환된다. 사용 모델에 관한 소규모 개선 및 상품의 외형을 변경시키는 산업 디자인은 1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 장벽

개요

우루과이는 투자진출에 있어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을 바탕으로 안정된 사회적·법적 체제 및 남미 진출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정부 청렴도, △금융업 발전, △인프라, △고급 인력 면에서 중남미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외국 자본의 금융업 참여가 허용되며 이에 대한 규제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 경제는 2002년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여 2004~2008년간 GDP 성장률은 평균 8%를 기록하였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경제위기에 따라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9%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8.5%로 회복되었고, 이후 2011년 5.7%, 2012년 3.9%, 2013년 4.4%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농축산물 수출과 관광업이 국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IT, 금융, 교통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자유무역지구(국영 2개, 민영 10개 등 총 12개) 설립 등 투자 진흥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하고 있으며 방송국 및 정부 독점 공공사업을 제외하고 절차나 실질적인 면에서 외국 투자에 대해 비교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 투자 비율 및 회사들에 대한 최소·최대 자본 금액이 법률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우루과이인의 최소 주식 소유 비율 및 동업자 수, 그리고 우루과이인의 경영자 참여 등에 관한 조건도 필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우루과이에서는 엄격한 비

자 취득, 거주 및 근무 허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외국 기업의 수출입 활동 및 은행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자본 시장 및 외국환 거래 시장도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對우루과이 투자진출에 있어 약 3.5백만에 불과한 인구 규모 및 무역금융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루과이 정부는 역내외 여러 국가와 양자 차원의 무역협정을 체결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역내 시장에 교역의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 수준(민간기업 대상 평균 11.7%), 중소기업 보조 정책의 제한 등도 고려할 사항이다.

우루과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5년까지 GDP 3% 미만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여 왔으나, 최근 수년간 지속 증대하여 2010년 23억달러, 2011년 24.9억달러, 2012년 27.7억달러, 2013년 27.9억달러를 달성했다.

우루과이 FDI 유입 추세

연도	FDI 유입 금액(백만달러)
2005	847
2006	1,493
2007	1,329
2008	2,106
2009	1,593
2010	2,358
2011	2,498
2012	2,775
2013	2,796

출처: 우루과이 중앙은행

한·우루과이 양국은 2009.10월 상대국 기업의 자국내 투자를 보장하는 투자보장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2011.12월 발효되어 양국간 경제통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및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 법적 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공공 양허 사업(public concessions), △보험 및 은행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국가 안보 관련 산업 및 직접적인 외국 자본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 독점 산업(유선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및 석유 등)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으며, 100% 외국 소유도 허용된다. 국가 독점 산업 중 일부는 Build-Operate-Transfer(BOT) 형식으로 외국 기업과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1)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Inc.) 설립

사단법인의 자기자본(equity)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자기자본을 규정하는 최소액 또는 최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자본 및 회계 장부는 우루과이 페소로 기록해야 한다. 농·목축지, 라디오 및 TV 방송국을 보유한 사단법인의 소유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어야 하며, 라디오 및 TV 방송국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우루과이내 거주하고 있는 우루과이 국민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단법인 설립 절차, 소요 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 설립에 한 달 이상 소요되나 그 이전이라도 임시 사단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① 법인 정관 및 설립자 서명 공증(근무 기준 1일, 자본의 0.5% 또는 최소 898달러)
② 감사원(Auditoria Internal de la Nacion)의 법인 부칙(bylaws) 승인(달력 기준 30일, 545달러)
③ 국가상업장부(Registro Nacional de Comercio)에 법인 부칙 등록

(근무 기준 5일, 37달러)

④ 관보(Official Gazette)에 부칙 요약본 게재(근무 기준 2일, cm당 26달러)

⑤ 일반 신문에 부칙 요약본 게재(근무 기준 2일, 41-205달러)

⑥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신청서에 설립자 서명 후 공증인 인증(근무 기준 1일, 53.52달러)

⑦ 국세청 및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등록(근무 기준 1일, 비용은 ⑥에 포함)

⑧ 법인이사회 정보 상공등록부 등록

⑨ 노동장부(Registro Unico Laboral) 구입(2.6달러)

⑩ 노동신고서(planilla de trabajo) 구입 및 노동복지부(Ministerio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에 임금 장부 등록(근무 기준 1일, 90달러)

⑪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l Seguros de Estado)에 산업재해 보험 신청(근무 기준 1일, 무료)

▪ 여타 국가와의 사업장 설치 과정 비교

구분	우루과이	중남미.카리브 평균	OECD 평균
절차 수	5	9	5
소요 시일	6.5	36.1%	11.1%
소요 비용(인구당 GNI 대비)	22.7%	33.1%	3.6%
최소자본 제한(인구당 GNI 대비)	없음	3.6%	10.4%

출처: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Uruguay 2014

(2) 유한회사 설립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동업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이 국가상업장부 등록, 관보 및 우루과이 일간 신문에 요약본 게재, 국세청·사회보장공단·노동복지부·보험공단 등록 등 주식회사 설립시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소요 비용도 동일하다. 총 16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계약 체결 시점부터 유한회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공증받은 계약서 및 회사 장부(국가상업장부용), 공증 받은 신청서(국세청

및 사회보장공단용), 고용내역서 및 국세청·사회보장공단 등록증명서(노동복지부용)이다.

(3) 외국회사 지사 설립

외국회사의 지사를 설립할 경우, 공증된 외국 본사 규정 사본 및 외국 본사로부터 우루과이내 지사 설립을 명시하는 문서를 상업등록부에 제출해야 한다. 동 문서에는 지사명, 주소, 지사에 할당된 자본 및 대표명을 포함, 모든 내용이 스페인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상업장부 등록 후 관보 및 일간 신문에 게재되는 과정을 거친다. 총 소요 시간은 수개월이나 등록 시점부터 영업할 수 있다.

국세청, 사회보장공단 및 노동복지부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는 유한회사 설립과 동일하며, 지사 설립 역시 자본 최소 금액 또는 최대 금액에 있어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금융상의 제약

소득 또는 자본을 본국으로 송금할 경우 법인 설립, 등록, 활동 범위, 이익 배분, 주식 발행 등을 규정하는 우루과이 법인에 관한 법률 16060에 합치할 경우 금융상의 특별한 제약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조세 제도

우루과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우루과이 거주 법인으로 간주되는 바, 개인은 일년 중 183일 이상 우루과이 체류, 우루과이내에서 대부분 활동, 또는 주요 거점이 우루과이일 경우 우루과이 거주자로 분류된다. 우루과이 세법상 조세 대상자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우루과이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또는 상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역 관련 세금은 우루과이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최초 매매 활동에 부과되는 내국소비세(IMESI, Impuesto Especifico Interno)가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5~180%에 달한다. 내국소비세가 높은 품목들로는 디젤 승용차, 에너지 비효율 전자 기기, 술, 담배, 석유 제품이 있으며, 품목별 내국소비세 비율은 다음과 같다.

품목	내국소비세 비율(%)
디젤 승용차	115
디젤 다용도 트럭(농업용 제외)	34.70-80.50
기타 승용차	3.45-46
기타 다용도 트럭	0-11.50
주류 및 음료	10.50~80
향수	15
담배	70
석유 및 윤활제	35(항공용은 15)
각종 연료 및 석유 파생물	5~133
설탕	4~10
행정부가 지정한 에너지 비효율 전자 기기	180

※ 출처: 우루과이 국세청(2013)

이밖에 주요 직접세로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와 재산세(Wealth Tax) 및 주식회사규제세(Impuesto de Control de Las Sociedades Anonimas)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및 부동산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부동산 가치의 2%) 등이 있다.

법인세는 기업 소득의 25%를 부과하며, 우루과이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 및 비거주자 소유 우루과이내 영구적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또는 부분적인 상업 활동이 우루과이내 부동산 및 보조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연소득 2만 5천달러 이하의 소규모 기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달 약 7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는 재산 소득 및 근로 소득으로 나뉘며, 재산 소득세는 비례적으로 3~12%, 근로 소득세는 누진적으로 연간 소득의 0~25%에 해당

한다. 비거주자가 우루과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3~12%의 비거주자 소득세가 부과된다.

∴ 연간 근로 소득에 따른 개인소득세 부과 비율

연간 근로 소득(달러)	누진세 비율(%)
9,866~14,095	10
14,095~21,142	15
21,142~70,475	20
70,475~105,712	22
105,712~162,092	25
162,092 초과	30

출처: 우루과이 경제재정부(2014) 환율 1달러=24페소(2014.10월 기준)

주식회사규제세는 회사 설립시 회사 최소 자본의 1.5%가 부과되며, 이후 매년 0.7%가 부과된다. 외국회사의 지사의 경우에는 동 세금에서 면제된다.

재산세는 우루과이내 위치하거나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기업의 경우 연간 1.5%, 개인의 경우 0.7~2.5%의 재산세를 누진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22%에 달한다. 기초식료품, 의약품, 호텔 서비스, 의료 서비스, 부동산의 초기 판매, 신선 과일, 꽃, 채소 등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외환, 초기 판매를 제외한 부동산, 농업 기구, 우유, 책, 잡지, 신문, 교육 도구, 정부 및 민간 유가 증권에 대한 이자,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2011.11월 양국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2013.1.22에 발효되었다.

투자 진흥책

우루과이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내 투자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6906은 △인력 교육, △연구, 과학·기술 개발, △이익 재투자, △산업 기기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감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2012.2월에 통과된 법령 2/012는 투자규모와 분야에 따른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령 2/012는 우루과이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규모를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관심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무역투자진흥공사(Uruguay XXI)에 제출하면 투자법 적용 위원회(COMAP)가 투자 금액, 기간, 분야를 검토하여 세금 감면율을 정하게 되어있다.

일자리 창출, 지방 토지 활용도, 수출 기여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젝트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세금 감면율이 적용된다.

프로젝트의 점수에 따른 소득세 감세율

점수	감세율
1	25 %
2	29 %
4	47 %
6	64 %
8	82 %
10	100 %

출처: Uruguay XXI(2013), Decreto 2/012

관광, 임업, 석유, 바이오연료, 소프트웨어,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제도가 있어 이들 산업에 투자할 경우 산업별로 상이하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이 부여된다.

2011.7월 제정된 민관참여법(Participacion Publico-Privada)은 그간 국영기업의 관리하에 이루어져 온 철도, 도로, 항만, 공항, 교육·보건시설 등 인프라 투자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였다. 동 법은 △인프라 관련 민관합동투자 계약의 법적 근거 및 시행조건, △계약 체결, 자금 확보, 사업 운영 등 인프라사업 전 단계에 적용되는 공통 절차, △민간기업의 사업 보장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민관합동투자시 분쟁해결 방안, △자금 운영 및 회계 보고 시스템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민관참여법에 의한 투자를 철도 현대화 사업 및 공공시설건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쟁정책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2007.7월 법률 18159이 제정되었는 바, 동 법률은 기업 합병 후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경우 경제재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다수 공공부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바, 전기, 유선전화, 석유, 수도 부문은 정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철도 및 항만 운영 사업도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특정 농산물 및 천연가스를 제외하고 정부가 가격책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타 장벽

비자 취득

한·우루과이 양국간 일반사증면제협정이 2013.1월 발효되어 비자 없이 90일간 상대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 원본, 면허증 번역본 및 신체검사(적성검사) 확인서를 각 지방 시청의 교통 및 운송과에 제출할 경우 우루과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노동 정책

우루과이 헌법은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용자를 해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권리 보호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동 협약을 준수한다. 우루과이에서는 노동자 권리와 대우를 중시하고 있어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높은 수준이며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고용주들의 임금 부담이 약 30% 증가한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서비스업의 경우 주당 44시간(공업의 경우 주당 48시간) 기준, 8,960 우루과이 페소(약 373달러, 환율 1달러=24페소)이며, 임금 외에도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고용주는 △해고 사유가 차별적이지 않고, △피고용자의 총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1~6개월간의 임금을 지속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고용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노사간 분쟁에서 법원이 노동자측을 약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다.

2005~2010년간 집권한 Vazquez 前 정부 하에서 노동 관련법 36개가 통과됨으로써 노동 정책에 있어 노동자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피고용주가 파업권의 일환으로 직장을 점거할 경우 고용주가 경찰을 동원해 피고용자들을 강제 해산시킬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폐지되고, 노동조합에 유리한 법률이 다수 통과되면서 직장 점거 횟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결성이 꾸준히 증가하여, 우루과이 노동조합 총연맹인 PIT/CNT에는 전체 고용자의 21%인 35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2006년 상공회의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진흥보호법"이 통과되었으며, 2008년 법률 18395 및 18399가 통과되어 △정년퇴직 연령 하향 조정,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여성들에게 유리한 노동 조건 부여, △실업 수당 대상 연령 연장, △산업재해 정부보상금 증액 등이 실현되었다.

2009.9월 제정된 단체협상법(법 18,566)에 의거,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3단계 협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는 ①정부 및 노사간 고위 3자 위원회(정부 대표 9명, 사측 대표 6명, 노측 대표 6명) 협상, ②산업별 최저임금 및 노동조건 결정을 위한 임금조정위원회(정부 및 노사측) 협상, ③기업별 일반 노사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분쟁 해결

우루과이의 사법제도는 일반적으로 프랑스식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사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2000.9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가입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중재 또는 법정 해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시장 현황

우루과이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본, 지불 능력, 유동성 자산 보유율 등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낮은 국제 금리 및 자본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수익이 낮은 단점이 있다. 우루과이내 최대 규모인 우루과이은행(BROU)은 국내 총 대출의 41% 및 예금의 41%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국영 저당 은행 1개, 외국 소유 은행 11개, 국외 은행(offshore bank) 4개, 협동조합 1개 및 다수의 금융 기관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으나, 장기 대출을 위한 절차가 엄격해서 우루과이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기 대출을 받고 이를 연장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2002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루과이 중앙은행(Banco Central Uruguay)의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우루과이 국채는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1.7월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tandard & Poor's, Moody's 및 Fitch사

는 우루과이 정부가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경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루과이 국채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1단계 상향 조정(S&P)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우루과이의 국채 신용등급은 꾸준히 상승했다. 2012.1월 Moody's는 △우루과이 정부의 금융규제 실천, △양호한 적자 규모, △부채 수치 감소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우루과이 국채 신용등급을 Ba3에서 Ba1로 2단계 상향 조정하였다. 이후, 2012.4월 Standard & Poor's는 우루과이의 외부충격 대응능력을 평가하며 국채 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조정하였고, 2012.7월 Moody's도 연초 평가등급인 Ba1에서 다시 Baa3로 1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마침내 우루과이는 10년 만에 잃었던 투자적격(Investment grade)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는 2009.4월 OECD의 국제 금융거래 관련 OECD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지만 OECD가 규정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지칭하는 Grey List에 지정된 바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동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세 및 금융에 관한 양자 협정 체결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2.5월 동 기관 리포트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분류되었다.

자메이카

자메이카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1. 개관

○ 자메이카는 1962년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한 이래 보트사이트, 알루미나, 설탕, 바나나 등 전통적 상품의 수출 호조와, 관광수입 증대에 힘입어 197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6%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시현, 비교적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였음.

○ 그러나 관광 및 보트사이트 부문에 대한 편중 투자 결과 지나친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로 변모하였으며, 1973년도 1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관광수입 격감 및 보크사이트 가격 하락 등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었음. 더욱이 산유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저가 에너지 유인으로 인해 자메이카 제조업이 위축되었으며, 국민당(PNP) 정권의 사회주의 성향 경제정책 때문에 외화유치 등이 감소하여 1975 - 1980년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1980.10월 취임한 Seaga 총리의 노동당(JLP) 정권은 경제난 타개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노력하면서 각종 차관을 도입하고 재정안정 및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하여 1981년에는 장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2% 경제성장을 시현하기도 하였으나, 보크사이트/알루미나 수출 감소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난이 재현되었음.

○ 이에 따라 자메이카 정부는 국제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개선을 위하

여 수입 억제와 금융 긴축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동시에 비전통상품의 수출 산업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86-1987년간 3.7% - 5.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

○ 그러나 1988.9월 태풍 'Gilbert'로 농업, 광업,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어 수출이 감소하고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수입이 격감하였음. 또한 1989.2월 총선에서 국민당(PNP)이 집권한 후 신정부의 경제운용 능력 미숙 등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 1989년도 경제성장은 1.9%에 머물렀고 1989년 중 20%의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및 15-20%의 물가상승 등 경제난에 직면하였음. 이후로도 자메이카 경제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자메이카의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7%로 동 기간 전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1%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1인당 GDP도 연평균 0.6%의 성장률을 보여온 바 동 기간 전세계 평균인 1.8%의 3분의 1 수준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970년대 이후 거의 90%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1996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 부채 축적이 심화되어 동 기간 동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9%에서 141%로 증가한 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대자메이카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됨.

○ 이로 인한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현상도 심각한 바, 지난 5년간 자메이카 달러는 24% 평가 절하되어 전체 20개 중남미 카리브 국가 중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임.

○ 부채 상환에 투입되는 지출이 보건, 교육 등 필수 부문에 대한 지출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훨씬 상회하여 이루어졌는 바,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심각하게 억제되어 지난 20년간 평균 0.7%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임.

○ 특히 세입에서 부채 상환에 투입되는 비율이 2007년 세입 US 27억 7천만 불의 81%에서, 2009년 세입 US 33억 불의 119%, 2011년 세입

US 35억4천만 불의 77% 등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이자 상환에만 지출되는 비용도 2007년 39.6%, 2009년 62%, 2011년 37.4%에 이름. (회계연도별 세입 대비 부채 및 이자 상환 지출 비율은 아래 표 참조)

회계연도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세입 (US 백만 $)	2770.3	3035.1	3298.9	3456.6	3540.1
세입 대비 부채 상환 지출 비율	81.0%	99.2%	119.3%	72.9%	77.3%
세입 대비 부채 이자 상환 지출 비율	39.6%	45.4%	62.9%	40.6%	37.4%

○ 이러한 국가부채는 대부분의 생필품 및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면서(수입품의 35% 및 10%가 연료 및 식료품이며,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70%도 수입), 외화획득은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광물(보크사이트, 알루미나), 농산물 등 1차 산업 생산품 및 관광 산업에만 의존하여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2. IMF 경제 위기

○ 자메이카 정부는 2013.2.12(화) IMF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부채 교환 계획(National Debt Exchange)'을 시행한 바, 이는 자메이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메이카 국채(National Bond)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고(기존 국채 이자율에서 최대 5%의 이자율을 인하 적용), 만기를 연장시켜(최소 3년간의 원금 상환 집행 연기 조치), 2020년까지 GDP 대비 부채 수준을 연 8.5%(약 US 1억 9천만 불)씩 감축시켜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상기 계획은 2010년에 이은 또 한 번의 부채 교환 계획으로 자메이카 국채 소유주들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일종의 디폴트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된 바, 동 계획 발표 후 국제 신용평가사인

Standard & Poor's는 자메이카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B-등급에서 CCC 범주인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등급으로 하향 조정함(현재는 B-등급으로 복귀).

○ 이와 함께 자메이카 정부는 2013.5.1(수) IMF 측과 US 9억3천2백만 불 상당의 신규 차관 도입 협정을 체결한 바, 이의 이행조건으로 ▲ 공공부문 적자 개선(회계연도 2016/17까지 GDP 대비 1% 이상 흑자 전환) ▲재정 개혁(회계연도 2015/2016까지 조세지출 GDP 대비 2.5%로 감축)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s) GDP 대비 7.5% 흑자 달성 ▲공무원 인원 감축 및 임금 동결 등을 합의하였음.

○ 신규 차관 도입 등을 통해 자메이카 경기가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 물가상승 및 노동시장 환경 악화(2013년 7월 기준 실업률 15.4%)와 정부 지출의 대부분을 부채 변제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세입의 60% 이상을 채무 및 이자 변제에 투입) 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2013.1-8월간 무역수지 적자도 약 US 30억2천6백만 불을 기록한 바, 무역규모에 비해 역조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

3.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최근 경제 동향

○ 주재국 중앙은행 및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2014년 1/4분기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 부문(5.6%) 및 서비스업(0.3%)의 개선으로 1.6%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4분기에도 0.5%-1.5% 정도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농업 단지 육성 프로그램(Agri Park) 추진으로 인한 농업 부문 생산 증대 ▲알루미나 및 보크사이트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 ▲도로 및 호텔 리조트 등 건설 프로젝트 증가

○ 주재국 정부는 IMF의 이행 조건 관련 최근 4차 평가(2014.5.16 발표)까지 ▲기초재정수지 목표(GDP 대비 7.5%) 달성 ▲외환보유고 증

대(총 US 13억1천만 불) ▲정부재정지출 규제 마련 등 목표 수준을 충족함.

- 6월 IMF 이사회 승인을 거쳐 US 7천1백만 불의 지불금(disbursement)이 자메이카 정부에 지급될 경우 지불금 총액은 약 US 4억1천7백만 불에 이르며, 자메이카 정부의 구조개혁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

○ 한편, 정부 재정수지 목표 충족이 세입증대가 아닌 정부지출의 대대적 감축을 통한 긴축재정으로 이루어진 데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및 저조한 조세수입으로는 GDP 대비 145% 수준의 현 국가 채무를 회계연도 2025-26까지 60% 수준으로 감소시키기로 한 IMF와의 합의내용 이행은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2014.3월말 기준 자메이카 달러는 지난 1년간 10.8% 평가절하된 바, 이로 인해 전체 국가채무가 6%(약 US 10억 불) 증가한 US 176억 불을 기록하였으며, 자메이카 달러 약세로 채무 이자가 고금리로 설정되는 추세
- 현재 자메이카 중앙은행은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를 막기 위하여 통화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민간 부문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딜레마에도 직면한 상황
- 또한 조세 수입 증대를 위한 신규 조세 부과 조치(주류세 인상, 외국계 보험에 대한 원천과세 징수, 외국계기업 서비스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에도 불구, 세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금번 IMF 이행 조건 관련 4차 평가에서 조세수입 관련 목표치 달성은 부진

○ 한편 2014년 투자환경에 관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자메이카는 전체 189개국 가운데 종합순위 94위로 대외교역환경(118위) 등의 부문에서 하위권을 기록하였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2015

세계경쟁력지수 평가에서는 전체 144개국 중 종합순위 86위로 작년 대비 8계단 상승하였음.

나. 전 망

○ 자메이카 정부는 신규 차관 도입 관련 IMF와의 합의(MEFP : Memorandum of Economic and Fiscal Policies)에 의한 이행 조건 수행을 우선 경제정책으로 추진 중임.

- 특히 현재 GDP의 140%에 달하는 부채 감축이 MEFP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자메이카 정부는 동 계획이 시행되는 2013-2017 기간 동안 연간 약 1.5% 정도의 경제 성장을 예측하고 있음.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자메이카 정부는 조세 인상, 자산 매각 및 부채와의 교환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입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현재의 조세 수입으로 목표 수준의 정부 재정수지(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7.5% 흑자 유지를 통해 2020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 96%로 감축)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난망한 것으로 평가

○ 자메이카 정부는 IMF 프로그램 이행 조건을 만족시켜 민간부문 투자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친비즈니스 환경 조성, 민간 대출 활성화, 기업 인센티브 법안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권 및 재계의 경우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국가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정책 대안이나 근본적인 성장 동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국제 신용평가사 및 투자기관은 IMF 구제금융 체제 하에 있는 자메이카가 IMF 프로그램 하에서 이행해야 할 조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부채 수준을 극복하고 실제 경제 성장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 입장

4. 주요 경제지표

가. 최근 경제통계

(단위: US$ 백만, %)

구분 \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총생산	12,820	13,680	12,069	13,202	14,711	14,839
1인당 GDP(US$)	4,805	5,111	4,493	4,898	5,429	5,472
평균 환율(U$1 : J$)	69.06	72.92	88.49	87.38	86.08	88.99
물가상승률	9.3	22.0	9.6	12.6	7.5	6.9
실업률	9.8	10.6	11.4	12.4	12.6	13.7
외환보유고	1,878	1,773	1,729	2,171	1,967	1,126

나. 부문별 GDP

(단위: %)

부문 \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업	5.3	5.0	6.0	6.1	6.6	6.8
광업	4.2	4.1	2.1	2.1	2.4	2.2
제조업	8.8	8.9	8.7	8.5	8.6	8.6
건설업	8.3	7.8	7.3	7.4	7.3	7.1
전기 및 수도	3.2	3.2	3.4	3.3	3.4	3.4
운수창고 및 통신업	11.7	11.5	11.5	11.3	11.0	10.9
기타(관광 등)	63	64	65.8	65.7	64.9	65.3

다. 교역 현황

1) 무역수지

(단위: US$ 백만)

구분 \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무역수지	수출	2,305	2,683	1,320	1,336	1,622	1,710
	수입	6,894	8,361	5,066	5,326	6,439	6,595
	적자	-4,589	-5,678	-3,746	-3,990	-4,817	-4,885

2) 수 출

○ 주요 전통상품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구분 \ 년도	2010	2011	2012
보크사이트	128.7	141.9	130.1
알루미나	402.8	580.7	508.3
설탕	44.2	62.2	94.1
커피	24.9	18.3	13.8
럼	47.2	48.7	55.7
바나나	0.001	0.063	0.1

○ 주요국별 수출(2012년 기준)

(단위: US$ 백만, %)

구 분	금 액	비 율
미국	820	48.0
캐나다	123	7.2
슬로베니아	71	4.2
네덜란드	70	4.1
아랍에미리트	70	4.1
라트비아	60	3.5
러시아	59	3.4
영국	45	2.6
이탈리아	39	2.3
조지아	36	2.1
기타	316	18.5
총수출액	1,709	100

3) 수 입

○ 주요품목별 수입

(단위: US$ 백만)

구분 \ 년도		2010	2011	2012
소비재	전체	1,808.6	1,826.7	1,985.9
	식료품	661.3	714.9	732.0
	비내구재	520.9	462.5	522.7
	준내구내	175.6	165.3	165.2
	내구재	450.8	484.0	566.0
원자재/중간재료	전체	3,088.6	4,118.3	4,135.5
	원유	688.0	909.1	947.6
	연료/윤활유	999.8	1,401.1	1,438.8
	산업용품	901.4	1,182.3	1,182.3
	기타	499.4	655.3	566.9
자본재	전체	429.2	494.3	473.4
	운송기계	85.9	93.0	89.3
	건설자재	124.4	134.4	113.2
	기계장비	214.0	261.1	262.2
	기타	4.9	5.9	8.7

○ 주요국별 수입(2012년 기준)

(단위: US$ 백만, %)

구 분	금 액	비 율
미국	2,355	36.1
베네수엘라	1,015	15.6
트리니다드토바고	702	10.8
중국	311	4.8
멕시코	264	4.0
브라질	240	3.7
일본	209	3.2
캐나다	102	1.6
영국	86	1.3
코스타리카	57	0.9
기타	1,183	18.0
총수입액	6,524	100

수입정책상의 장벽

1. 세관 및 관세

가. 개 관

○ 자메이카 관세청(Jamaica Customs)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약 밀매 단속, 수출입 물품 제한 등의 업무도 맡고 있음.

○ 수입 및 수출 상품과 관련 다수의 양식이 필요함. 동 양식들은 자메이카 관세청 웹사이트(www.jacustoms.gov.jm)에서 구할 수 있으며, 동 웹사이트는 수입업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서비스업자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Live Support)도 보유하고 있음.

○ 세관부서(Customs Department)가 주로 징수업무를 담당하나, 우편/전신부서(Post and Telegraph Department)나 내국세부서(Inland Revenue)에 의해 징수될 수도 있음. (예 : 수입 우편물(imported post)에 대한 관세는 우체국에서 지불)

1) 수입 관세

○ 관세는 일반적으로 세관(Customs House) 또는 부두 및 공항의 통관부서에 지불함. 상품이 규정된 수입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된 통관업자를 고용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함. 단, 상품의 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CIF) 포함 가격이 US$ 5,000 이하인 경우, 통관업자 없이 진행할 수 있음.

2) 인지세

○ 인지세는 서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J$ 5에 해당하는 인지가 J$ 5,500 상당의 CIF 포함 가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 영수증에 부착됨. J$ 5,500이 넘는 경우 J$ 100에 해당하는 인지가 부착됨. 추가 인지세는 닭고기 상품, 돼지고기 상품, 주류 및 담배에 부과됨.

3) 소비세

○ 일반소비세법(1991)에 따라 일반소비세 및 특별소비세가 시행되고 있음. 일반소비세는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 및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품목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됨.

○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수입 상품에 CIF 포함 가격 0.5%의 환경세를 부과함.

4) 상품 가치 평가

○ 관세법에 따르면 상품 가치 평가는 자메이카 달러로 환산될 때의 CIF 포함 가격에 근거하여 계산함. 자메이카는 '관세 산정에 관한 WTO 협약(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의 가입국으로, 동 협약에 규정된 방법으로 관세를 산정함.

○ 거래가격법을 통해 관세를 산정할 때는 C84 양식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외 다른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C85 양식이 사용됨. 상품 가치 평가는 상품에 대해 지불된 가격에 크게 의존하며, 상품의 가치와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J$ 500,000 또는 상품 가치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됨.

5) 수하물

○ 수하물은 승객이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과 함께 도착한 휴대수하물과 화물로 따로 부친 비휴대수하물로 구분됨. 승객은 세관신고서(C5)를 작성해야 하며,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 신고해야 함. 출입국 관리관이 동 양식에 스탬프를 찍어 승객에게 돌려줄 것이며, 승객은 이후 만약 들여오는 상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거나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아니라면 'Nothing to Declare Line'을 통해 나오면 됨.

○ 비휴대수하물 신고는 관련 세관신고서(C27)를 작성하여 세관원에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야 함. 수하물 도착시 동 신고서와 적법한 ID 및 관련 서류를 근무 중인 세관원에 제출해야 함.

나. 상품 수출입 절차

1) 상업용 수입

○ US$ 5,000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송장을 이용하여 수입신고양식(C78)을 작성해야 하며, 적법한 허가서, 면허, 항공화물운송장과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들은 조사된 후 물품신고접수처로 보내지며, 이후 송장담당부서로 보내짐.

○ 다음으로 선하증권을 관련 항구에서 인증 받음. 적하목록(manifest)에 스탬프를 받아야 하며, 선하증권은 상품이 위치해 있는 창고에 제출되어야 함.

○ US$ 5,000을 초과하는 상품은 허가받은 통관업자를 통해야 하며, 통관업자는 수입신고양식(C78)을 인터넷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함.

2) 수수료

○ 세관 통과와 관련된 수수료가 있는데, 컨테이너가 반출(release)될 때 J$ 3,500을 검사료(Site Examination Fee)로 지불해야 하고, CIF 가격의 0.3%가 표준준수비용(Standard Compliance Fee)으로 징수됨.

3) CARICOM 역외공통관세

○ 자메이카는 CARICOM 회원국으로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역외공통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즉,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자메이카로 수입되는 상품에는 역외공통관세제도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고, CARICOM 회원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증명된 상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됨. 이를 위해 CARICOM 송장(C23)이 원산지인 회원국 관계 기관을 통해 증명된 후 자메이카 세관으로 제출되어야 함. 다만 관세는 면제되지만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는 적용됨.

다. 관세양허

○ 자메이카 세관은 승객이 가지고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 제한적 관세 양허를 부여함.

구분	통관기준
일반물품	o 본인의 직업과 관계된 본인 소유의 기구나 도구
술	o 1리터
담배	o 200개비, 시가 50개비, 가공 처리한 담배 230g
향수류	o perfume: 170㎖, eau de toilette: 340㎖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o 만 18세 이상 자메이카 여권 소지자 또는 자메이카 거주자의 경우, US$500을 넘지 않는 개인용품에 대해 추가적 반입 가능 (단 6개월 내 동 조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외국환신고	o US$10,000 이상 반입시 신고 필요
의약품	o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 필요, 여행자가 입국시 질병 때문에 약을 소지하고 여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의약품 반입 가능 (세관원의 재량)
식품	o 과일, 채소 또는 육류 등의 반입을 위해서는 허가(검역) 필요 o 밀봉·가공 식품은 소량 반입 가능
반입불허품목	o '마약 및 위험한 약품에 관한 1971년 협약'에 규정된 물질 o 춘화, 외설적 물질, 마술물질 o 장난감 총 및 이와 유사 물품 o 폭약 및 폭발물질 o 무기 및 탄약 o 불꽃 및 유사 제품 등 o 이러한 물품 등의 합법적 반입에는 사전 허가 필요
기타 유의사항	o 자메이카는 관광국가로서 통관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는 않았으나, 2013년 이래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통관절차가 엄격해지는 경향이므로 유의가 필요

투자 장벽

1. 개 관

○ 1990년대 이후 다수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고 산업 부문 개방 및 규제가 철폐되면서 관광업과 ICT 분야를 비롯한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알루미늄 국제가격

하락으로 그 원료인 보크사이트 수요가 동반 감소함에 따라 광산업이 저하되고, 2008년 이후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북미 및 유럽 지역 관광객 수 감소로 관광업 부문도 영향을 받음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함.

- 2012년 자메이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US 3억6천2백만 $로, US 7억$에 달하였던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두드러진 하락 추세

○ 특히 현 자메이카는 IMF 구제금융 체제 하 여전히 부채 상환 불능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되고 있는 바, 대자메이카 신규투자 관련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대자메이카 해외직접투자(FDI) 현황

○ 연도별

(단위: US$ 백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867	1,437	541	228	218	362

○ 주요산업별

(단위: US$ 백만)

구분 \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관광	107	186	197	196	155	72	8
광산	112	336	217	74	31	20	30
ICT	55	58	165	257	137	83	86
농업/제조업/유통업	119	41	47	75	24	11	22
금속/화학제품	13	12	5	2	0	1	6
기타	277	249	236	833	194	41	66
합계	683	882	867	1,437	541	228	218

3. 사업자 등록절차 및 내용

가. 개 요

○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범 및 세금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4단계 과정을 거쳐야 함.

① 법인 등기소(Office of 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
② 고용 보험(national insurance) 등록
③ 납세자 등록번호(taxpayer registration number) 취득 및 일반소비세(General Consumption Tax) 납세 등록
④ 법정 공제(statutory deductions) 항목 납부

○ 자메이카 회사법(Companies Act, 2004)에 따르면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Companies Office of Jamaica)이 기업(commercial entities)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업 등록청을 통해 민간 사업자는 회사의 법적 상태(legal status), 법적 준수사항(statutory compliance), 소유권(ownership)을 알아볼 수 있음.

○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기업 거래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대출(business loan), 정부대상계약(government contract)도 포함이 됨. 사업자 등록 완료 시,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이 발급됨.

○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은 자체 홈페이지(www.orcjamaica.com)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회사 및 상호명(business name) 검색이 가능하고, 회사 임원 세부사항(particulars of company directors)도 기입 및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양식(form)도 다운받을 수 있음.

1) 상호명(Business Name) 등록

○ 사업자 등록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는 상호명과 이에 대한 법률상의 수속을 밟는 것임. 상호명 선택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웹사이트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명이 아닌지를 검색하는 것이고, 검색을 통해 만약 등록된 상호명이 아닌 경우 등록청을 직접 방문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체(Businesses) 및 회사(Companies)의 법적 형태 구별

○ 사업(Business)은 몇 가지 법적 형태로 구별되는데 먼저 '회사(a company)'와 '사업체(a business)'는 법적으로 구별됨. 회사는 개인사업자(sole trader)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를 말하고, 사업체는 영리 기업(commercial enterprise)을 말함.

○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 지위를 신청할 때, 은행 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고지서와 같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address verification document)가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신청비용은 J$ 2,000이고, 처리에 3일이 소요되며, 등록증이 발급됨. 신속등록(express registrations) 서비스도 가능한데 J$ 1,500이 추가로 소요되며, 처리에 1일이 소요됨.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절차가 간소한 형태의 비즈니스임. 법적 구조상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에서는 전문기업(professional) 및 일반사업체(business)가 동일하게 인식됨. 결과적으로 사업주(business owner)가 사업상의 채무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사업주의 개인 자산이 채무 상환에 사용됨.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양식들은 아래와 같음.
  - 개인사업자를 위한 BN2 양식(BN1 Form)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TRN)

○ 동업관계는 2명에서 20명 사이의 동업자로 구성됨. 이익과 손실은 동업자들이 동등하게 나누며, 각 동업자는 기업의 부채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음. 동업관계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양식들은 아래와 같음.

- 동업자를 위한 BN2 양식(BN2 Form)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TRN)

○ 유한책임회사 구조에서는 개인 자산이 회사 채무 처리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되며, 회사가 피소되어도 사업주들은 개인 예금이나 부동산을 채무 해결을 위해 처리할 필요가 없음. 신청자가 사업체를 등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90일 동안 회사명 예약이 가능함. 회사의 목적에 따라 양식들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양식 1A(Form 1A) : 영리 기업(for-profit businesses)에 해당하며, 회사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은 인지세/양도세 사무소(Stamp Duty and Transfer Tax Office)에서 확인을 받아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함.
- 양식 1B(Form 1B) : 비영리 기업(non-profit businesses)에 해당하며, 정관은 인지세/양도세 사무소에서 확인받아야 함.
- 양식 2(Form 2) : 동 양식은 신청자가 자메이카 기업법(Companies Act, 204)을 읽고 숙지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됨. 동 기업법을 준수하겠다는 신고서(Declaration of Compliance)는 기업 임원(director) 또는 총무부장(company secretary)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양식 17(Form 17) : 기업 등록 주소를 명시함.
- 양식 20(Form 20) : 회사 총무부장(company secretary)을 임명하기 위한 양식임.
- 양식 23(Form 23) : 기업 임원진 명단으로 현 임원 또는 총무부장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양식 31(Form 31) : 외국계 기업이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할 경우 사용되는 양식으로, 모든 임원진 명단 및 주소를 포함하여 작성해

야 하며, 동 명단에는 기업 대표로 승인받은 자메이카 상주 최소 1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또한 자메이카 국적이 아니면서 사업에 착수하려는 신청자는 자신이 원하는 비즈니스 지원 서류와 함께 근로허가증(work permit)을 제출해야 함.

○ 해외 설립기업은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자메이카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등록해야 함. 등록비용은 J$ 25,000이며, 등록된 기업은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및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account)를 보고해야 함. 기타 신청 서류들은 다음과 같음.
- 양식 31(Form 31)
- 회사 정관 공증 사본

○ 모든 서류는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함. 번역본은 해외 주재 자메이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자메이카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자메이카 외교통상부를 통해 공증 받을 수 있음.

3) 회사 임원 및 간부 임명

○ 회사 등록 후 임원진 임명 후 14일 내에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통보되어야 함. 민간 기업은 최소 1명의 임원을 보유해야 하며, 공기업은 최소 3명의 임원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중 2명은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어야 함. 회사가 제출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음.
- 임원진 임명 통보(양식 작성)
- 각 임원들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납세자 등록번호

※ 서류들은 반드시 변호사,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증되어야 함.

○ 모든 회사는 반드시 1명의 총무부장(Secretary)을 임원진을 통해 임명해야 하며, 총무부장 임명 후 15일 이내에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통보되어야 함. 단독 이사(sole director)는 회사 총무부장으로 역

할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이와 관련 회사는 다음 사항들을 제출해야 한다.

- 총무부장 임명 통보(양식 작성)
- 총무부장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납세자 등록번호

※ 서류들은 반드시 변호사,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증되어야 함.

○ 기업 임원진 변경이 있을 경우,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 때 임원진 변경 통보가 양식으로 작성되어 납세자 등록번호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4) 연차 보고(Annual Returns)

○ 등록된 회사는 법에 따라 법인 등기소에 연차 보고를 해야 하며, 법인 설립 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연차 보고는 공문서(public document)로 회사 형태, 사업 활동, 등록 사무실, 임원, 자산에 의해 보증된 채무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됨. 연차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회사 등록이 취소됨.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회사 임원진 및 총무부장 납세자 등록번호 공증 사본
- (회사 임원진 또는 총무부장이 공증한) 최근 대차대조표와 회사 총회에 제출된 손익계산서

5) 지적재산권

○ 기업은 또한 그들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로고(logos)는 상표(trademarks)와 함께 보호될 수 있는바, 기업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음. 다른 기업들은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로고를 사용할 수 없음. 상표는 작성된 관련 양식을 자메이카 지적재산권 사무소(Jamaic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제출해야 함. 상표 신청을 위해 먼저 자메이카 지적재산권 사무소에서 동 상표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다른 상표와 유사하지는 않은

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상표 신청 양식(TM1)
- 등록용 상표 복사본(6개 다른 색)
- 상표가 보호할 상품 및 서비스 목록

○ 상표를 제출할 때 J$ 3,500이 등록을 위해 소요되며, 실제 등록 시 J$ 3,500이 추가로 소요됨. 상표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신청자의 상표 사용이 가능함.

나. 고용보험 등록

1) 고용보험제도

○ 자메이카 고용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65)은 18세 이상 모든 남녀가 고용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에 등록하도록 요구함.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각 등록자들의 영구기록(permanent record)을 유지함. 고용보험제도는 수혜자가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분담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업무상 부상, 장애, 사망 및 퇴직 등이 발생한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 연금수당(retirement benefit)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고용보험 수당으로, 동 수당이 지불되려면 근로자가 남성 65세, 여성 60세 정년에 이르러야 하며, 정년 이후 더 이상 고용이 안 된 상태여야 함.

○ 고용재해수당(employment injury benefit)은 피고용인(employee)의 업무상 재해 또는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음.

○ 장애수당(invalidity Benefit)은 수당 지급 신청 전 26주 동안 근로가 불가하였던 보험가입자(contributor)에게 연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단 신청자가 겪는 고통이 영구적이어야 함.

○ 또한 고용보험 의료제도(NI Gold Health Plan)라는 퇴직자들을 위

한 의료제도를 통해 의사 왕진(doctor visit), 처방약, 치과 및 안과 진료, 외과 진료 비용 지급이 혜택으로 제공됨.

2) 등록 절차

○ 기업과 개인의 고용보험 등록(employee registration)은 구별됨.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모든 피고용인들은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함. 고용주들은 전체 급여의 2.5%와 이와 동일한 규모의 갹출 자금을 고용보험 분담금으로 납부함. 고용주는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NIS Parish Office)에 각 피고용인의 공제 카드를 요청해야 함. 등록 불이행, 다중 등록, 생년월일 등의 필수 정보 오용은 고용보험수당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고용보험 등록증(NIS Registration Letter)은 사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의 발급을 위해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관계 사업체 모두 고용주 등록 양식 사본 및 각 소유주 또는 동업자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TRN)를 제출해야 함.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고용주 사업 등록 신청 양식(R1)
- 법인 정관 증명서
- 상호명 등록 증명서
- 각 임원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TRN)

○ 이후 고용보험 등록 레터 및 고용주 참조 번호(Employer Reference Number)가 회사로 발급됨.

○ 개인적으로 고용보험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을 통한 연령 증명 및 결혼증명 사실이 제출되어야 함. 제출된 증명 사실들은 제출 당일 처리되어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로 전달되며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음.

다. 납세자 등록 및 일반 소비세 등록

1) 납세자 등록번호(TRN)

○ 납세자 등록번호는 자동 시스템을 통해 개별 납세자, 기업, 기관(비영리단체, 동업관계, 자선단체, 교회, 교육기관, 재단)에 부여되는 고유한 9자리 숫자임(Tax Administration Jamaica, 2012). 등록번호는 일반소비세 납부나 운전면허 획득 등과 같은 정부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사용되며, 은행 등도 비즈니스를 위해 동 등록번호를 필요로 함. 신청 후 3주 정도 후에 개별 신청자들은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를 수령할 수 있음. 개인사업자는 등록번호 카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으며, 기업은 등록번호 증명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는다. 번호 등록에 부과되는 비용은 따로 없음. 공식 서류 및 카드가 처리되는 동안 신청자들에 등록번호와 배정표(assignment slip)가 발행됨.

2) 등록 처리

○ 신청자는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Application for Taxpayer Registration Number(Individuals) Form 1)를 유효한 ID(여권 또는 운전면허)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해야 함. 작성된 신청서는 납세자 등록센터(Taxpayer Registration Centre)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tax collectorate)에 제출해야 함.

○ 회사는 법적 형태에 근거해서 각각의 신청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회사는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2 신청서(Application for Taxpayer Registration Number(Organization) Form 2)를 작성하여 납세자 등록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음. 동 신청서는 반드시 추가 서류(supporting documentation)가 동반되어야 하며,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서류만이 인정됨.

3) 법적 형태별 신청 필수요건

○ 개인 신청자들은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 및 운전면허증과 함께 납세자 등록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개인 자영업자(기업 제외)는 작성 및 서명된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를 다음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유효한 ID
- 고용보험(NIS) 카드
- 상호명 등록증명서(상호명이 있는 경우)

○ 기관의 경우, 동업관계용과 회사용 두 가지의 납세자 등록번호 등록 형태가 있을 수 있음. 동업관계용은 동업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함.
- 상호명 등록증명서(상호명이 동업자의 상호명과 다른 경우 상호명 등록증명서 반드시 제출(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발행))
-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각 동업자의 납세자 등록번호 및 고용보험카드
- 서명인 ID

○ 회사는 임원 또는 총무부장의 서명을 받은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다음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함.
- 법인 등록증
- 회사 정관(임원들 명단이 정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양식 23(Form 23) 필요)
-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각 임원들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
- 서명인 ID

○ 자메이카에 사업체를 설립한 해외 기업들은 담당자 또는 지역 대표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들

과 함께 제출해야 함.

-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증 또는 공증 사본,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발행 등록증
- (회사가 자메이카에서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역 대표자가 명시되어 있는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이 발행한 양식 19(Form 19) 또는 31(Form 31)
- 지역 대표자 또는 임원진 납세자 등록번호
- 서명인 ID

○ 자메이카에 사업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해외 기업들은 담당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함.

- 등록증
- 담당자 ID 및 납세자 등록번호
-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체도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하는 회사 발행 레터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임원들 모두가 납세자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임원진 중 적어도 한 명의 납세자 등록번호는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함.

4) 일반소비세

○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로 일반소비세법에 의거 1991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구매자가 상품 및 서비스에 지불한 최종 가격에 포함되는 소비세임. 생산 및 유통 과정 각 단계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적용됨. 일반소비세법에 따라 자메이카에서의 영리행위는 아래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 세금행정처(Tax Administration Jamaica)에 등록

- 일반소비세가 적용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 징수
-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taxable period net tax due)을 계산하여 일반소비세 환급 요청
- 매입세액 공제 후의 매출세액 징수분을 세금행정처로 30일내에 송금

○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며, 통신서비스, 통신장비 및 통신카드에 25%, 관광서비스부문에 10%가 부과됨.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으며,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품목도 있음.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에 '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단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일반소비세 등록을 해야 함. 전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액이 연간 J$ 3,000,000 이하인 사업장이 여기에 포함됨. 이런 사업체에는 일반소비세가 징수되지 않으나, 동 사업체가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소비세가 징수됨. 전체 판매액이 J$ 3,000,000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등록 납세자(Registered Taxpayers)로 간주되고, 일반소비세가 징수되어 세금행정처로 송금됨.

○ 등록 납세자는 사업 운영에 사용된 구매 물품들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에 대해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동 환급은 생산 및 재판매(resale)를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서비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capital property), 사무용품과 같이 세금이 부과되지만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에 요청될 수 있음. 환급은 판매에 부과된 일반소비세에서 공제됨.

5) 등록 처리

○ 일반소비세법에서 '당사자(a person)'는 개인, 기업 또는 동업관계임(비법인, 합작투자, 신탁 관리자, 신탁 재단 포함). 당사자는 아래

의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일반소비세 등록을 할 수 있음.
- 일반소비세등록 양식 1 신청서
- 사업체 납세자 등록번호

○ 일반소비세 신청이 승인되면, 세무청장(Commissioner General)은 앞에서 언급된 기준 금액 이하(J$ 3,000,000)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통지서(Notice of Registration)를 발급하며, 기준 금액 이상의 사업체에는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가 발급됨. 증명서는 반드시 사업체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해야 함.

○ 당사자는 세금이 부과되는 활동을 시작한지 21일 내에 일반소비세 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됨. 벌금은 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J$ 5,000이고, 기업인 경우 J$ 10,000임. 또한 미등록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2.5%의 조세부가금(tax liability)이 적용됨.

○ 법정 공제(statutory deduction) 및 일반소비세 납부는 개별적인 조세 활동으로서 매달 발생하며, 고용주의 월 법정 급여공제는 매월 14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일반소비세는 매월 마지막 날에 보고 및 납부됨.

6) 납세 준수 증명서

○ 회사는 납세 및 급여와 관계된 법정공제를 최근까지 지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납세 준수 증명서(Tax Compliance Certificate, TCC)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납세 준수 증명서가 필요함.
- 통관업자 면허(Customs Brokers Licence) 신청시
- 채석 면허(Quarrying Licence) 신청시
- 도박 및 복권 면허(Betting Gaming and Lotteries Licence) 신청시
- 시민권(Citizenship) 또는 근로자격(Work Permit) 신청시
- 보안업체 등록(Security Firm Registration) 신청시
- 정부와의 계약(Contracts from Government) 신청시

- 통관을 위한 수입신고(import entry)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수입업자

○ 납세 준수 증명서는 세금행정처(Tax Administration Jamaica)에서 획득할 수 있음.

※ 납세 준수 증명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투자진출환경 세제 부분 참고

라. 법정 공제 준수

1) 법정 공제 종류

○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월 공제(monthly deductions) 또는 기여금(contributions)이 있으며, 고용보험도 그 중의 하나임. 그 외 교육세, 주택신탁기여금,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HEART) 기여금 등이 있음.

○ 세금 및 기여금 종류

법정공제 항목	피고용인 부담	고용주 부담	계산 기준
고용보험(NIS)	2.5%	2.5%	전체 보수
주택신탁기여금(NHT)	2%	3%	전체 보수
교육세	2%	3%	법정 소득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없음	3%	연간 J$ 173,328 이상의 급여

출처: www.jamaicatax.gov.jm

○ 등록을 위한 양식들은 세금행정처 웹사이트(www.jamaicatax-online.gov.jm)에서 출력할 수 있음.

2) 교육세

○ 교육세법(1983)은 교육부에 추가 수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모든 피고용인,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함. 고용주는 3%, 피고용인은 2%, 자영업자는 2%를 부담함. 수입

세와 마찬가지로 교육세는 일정한 등록 형식은 없으며 법정 소득에서 공제됨. 세금 납부에 필요한 양식은 회사의 법적 구조에 따라 다양함.

- 양식 ET01(Form ET01): 개인사업자 및 동업관계(모든 동업자 각각 양식 작성)
- 양식 ET02(Form ET02):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양식 ET03(Form ET03):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동업관계 및 유한책임회사

3)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HEART) 기여금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법(1982)에 근거하여 청년층에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 기여금은 자메이카 전반의 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HEART Trust/NTA에서 관리함. 고용주는 월급으로 최소 J$ 14,444(연 J$ 173,328)을 받는 각 피고용인 급여의 3%를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함. 'HEART 신탁 송금 양식(HEART Trust Remittance Form)'을 사용하여 세무서에 송금된 총 급여가 계산의 기준이 됨. 양식은 세무서나 HEART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음.

4) 주택신탁기여금(National Housing Trust Contribution)

○ 주택신탁기여금은 1976년에 국가보험법(1976) 수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현재는 주택신탁법(1979) 관리하에 있음. 주택신탁기여금은 자메이카 주택 문제 해결 및 본인 주택을 구입, 건설, 보수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동 기여금은 고용주들의 의무적인 기여금 납부를 통해 활동 기금이 조성됨. 5%의 기여금은 회사 기여금 3% 및 피고용인 월급에서의 2% 공제로 구성됨. 동 기여금은 NHT(주택신탁) 사무소 또는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음.

○ 고용주는 등록을 위해 가까운 고용보험(NIS) 사무소에서 '고용주 등

록 양식(R1)'을 확보하여야 함. 동 양식을 고용보험 사무소에 제출하고 회사는 참조 번호(reference number)를 발급 받음. 사업체 또는 회사 형태에 따라 개별적인 서류들이 요구되는 바, 등록 시 개인사업자 및 동업관계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소득신고양식(법원 공증)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카드
- 고용보험 등록증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
- 여권 사진 1장(최근)
-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유한책임회사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고객정보양식
- 법인등록증
- 정관
- 사업체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
- 고용보험 등록증

4. 세 제

가. 개 관

○ 자메이카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로 주요 부과 세금은 다음과 같음.

- 소득세
- 수입세
- 거래세(일반소비세, 양도세, 관세, 인지세)
- 재산세(토지/재산세, 자산세)
- 급여세(세금원천징수, 고용보험, 주택신탁기여금, 교육세,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 기타(연간회사등록비용, 자동차면허세, 여행세 등)

나. 세금 유형별 안내

1) 소득세

○ 연간 J$ 507,312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피고용인의 경우, 소득세는 세금원천징수(PAYE) 시스템을 통해 공제가 되고 이는 세무서에 매월 납부됨. 근로 소득 뿐인 납세자는 보통 일반적 연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2) 재산세

○ 자메이카에서 재산세(capital taxation)는 부과되지 않음. 다만 토지 및 건물 등 일정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5%의 양도세가 부과됨.

3) 법인세

○ 자메이카내 상주 법인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범위에 속함. 비상주 법인은 자메이카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사무실 또는 영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자메이카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됨.

○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연금, 자선단체 등 특정 기관의 소득 등은 면세됨.

4) 법인에 대한 소득세율

○ 법인은 순수익의 33.3% 고정 세율임.

5) 수익배당금 및 양도소득

○ 주식이 자메이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자메이카 법인에 의한 수익배당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 의한 수익배당금은 회사(33.3%), 개인(25%)의 세율로 과세됨. 배당금이 외국계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자메이카와 해당 국가 간에 조약이 발효되어 있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6) 회사간 지불

○ 외국계 기업의 경영 수수료, 연구개발비용, 총무행정비용에 대한 지불은 제공된 서비스를 고려하여 공정거래비율로 인정될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함.

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자메이카내 외국법인의 현지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소득세 또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함. 현지 사업장이 사무실 또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곳이라면, 지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함. 개별적인 법인이 대신 등록할 수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등록이 가능함.

8) 지점 운영

○ 영업활동의 특성과 관계없이 지점 운영은 자메이카와 유관하게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 지점, 본사 및 자회사간 거래는 기업간의 거래(at arm's length values)로서 취급됨.

9) 배당금, 이자, 로열티

○ 자메이카로부터 외국계기업에 지불된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는 33.3% 또는 조약상 세율(세율이 더 낮은 경우)이 적용된 소득세가 부과됨.

10) 서비스비용, 관리비용 및 임대료

○ 자메이카로부터 외국계기업에 지불된 서비스 비용, 관리 비용 및 임대료에는 33.3% 또는 조약상 세율(세율이 더 낮은 경우)이 적용된 소득세가 부과됨.

11) 일반소비세(GCT or VAT)

○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나, 실질적으로는 생산 및 유통 과정 각 단계에서 징수됨.

○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며,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 및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품목도 있음.

○ 세무서에 납부되는 세금을 계산할 때, 납세자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소비자에 부과하는 세액(매출세액)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해 납세자 본인이 지불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함.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일반소비세 환급 요청 가능)

12) 양도세

○ 양도세법(1971)에 따라 각 양도에 대해 5%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며, 양도세는 자메이카에 위치한 일정 등급의 재산에 적용되는 것임. 이러한 재산은 토지, 건물, 토지임대, 회사증권, 처분 시 수익권으로 구성됨. 자메이카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세금이 면제됨.

13) 기타 간접세

○ 아래와 같이 일정 활동 및 산업에 적용되는 다수의 세금이 있음.
- 호텔 숙박세
- 건설 활동세
- 수입세
- 인지세
- 서류세
- 수권자본에 대한 인지세

14) 동업

○ 동업관계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conduit)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동업자, 법인 또는 개인들에 수익 분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됨. 합작투자도 일반적으로 동업관계로 간주됨.

15) 외국계 동업자에 대한 과세

○ 법인 동업자를 포함한 자메이카 비거주 동업자는 자메이카에서 축적 또는 파생된 동업관계 이익 분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됨. 관련 조세협약이 제공하는 정의가 없을 시 만약 영업활동이 자메이카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동업관계가 자메이카내에서 관리 또는 조정되는 경우, 수익은 보통 자메이카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함.

16) 조세협약

○ 자메이카 정부는 자메이카와 중요한 무역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와 자메이카에 중요한 투자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과 동 협약에 대해 협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 현재 자메이카는 12개 국가(미국, 캐나다, 덴마크,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카리콤, 스위스, 중국, 프랑스)와 조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주로 자금유입을 촉진하고 및 해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함.

다. 납세 관련

1) 개 관

○ 납세에 필요한 대부분의 양식들은 국세청 홈페이지(www.jamaicatax.gov.j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납세신고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함.

※ 국세청(Tax Administration Jamaica) 연락처
- 전화 : 1-888-829-4357
- 이메일 : taxhelp@taj.gov.jm
- 홈페이지 : www.jamaicatax.gov.jm

2) 납세 준수 증명서

○ 납세 준수 증명서(Tax Compliance Certificate)는 개인 또는 회사의

최근까지의 조세채무 및 법정 공제 지불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임.

○ 납세 준수 증명서는 각 세무서(collectorate)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하며, 납세 준수 증명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한 후 지정 세무서에서 수령할 수 있음. (단, 현재까지 납세를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

▪ 지역별 세무서 연락처

지역별 세무서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Kingston 세무서	(1876)922-7919	(1876)931-9194	tcckingstreet@ird.gov.jm
Port Antonio 세무서	(1876)993-9852	-	irdptant@ird.gov.jm
Constant Spring 세무서비스센터	(1876)969-0006~7	(1876)922-2876	tcccspring@ird.gov.jm
St. Ann's Bay 세무서	(1876)972-1378	(1876)749-4866	irdbrtwn@ird.gov.jm
Spanish Town 세무서비스센터	(1876)984-3877	(1876)962-6095	tccspntwn@ird.gov.jm
May Pen 세무서비스센터	(1876)968-2224	(1876)952-2766	tccmaypen@ird.gov.jm
Mandeville 세무서	(1876)625-5137	(1876)902-1811	tccmandeville@ird.gov.jm
Montego Bay 세무서비스센터	(1876)952-6016	(1876)794-9038	tccmobay@ird.gov.jm

○ 이메일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양식을 세금행정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③ 수령을 원하는 세무서에 이메일로 신청서 송부

○ 팩스로도 신청서를 송부한 후 납세 준수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자메이카 국세청에서 파악한 사항이나, 현지 특수성상 해당 세무서마다 실무 처리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실제 세금 관련 업무는 현지 세무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납세 준수 증명서를 처음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함.

- 국세청 납세준수과(Compliance Section of the Tax Administration office)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해야 하며, 납세준수과는 신청자의 납세가 최근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Clearance Letter)를 발급함.
-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함.
  ① 신청양식 작성
  ② 납세자 등록번호(TRN)
  ③ 아래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개인소득세, 회사소득세, 교육세, 일반소비세에 대한 국세청 내 국세부(Inland Revenue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 Office)의 증빙서류도 필요
  ④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⑤ 세금 납부 계획 공증 사본(Certified copies of all arrangements to pay)

○ 납세 준수 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① 신청양식 작성
②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③ 세금 납부 계획 공증 사본(certified copies of all arrangements to pay)

④ 아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또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 납세 준수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음.

- 개인 물품 통관 관련(Individuals Clearing Personal Items)의 경우
  ① 신청양식 작성
  ② 통관 영수증 원본 및 사본
  ③ 법정공제가 지불 증빙서류
  ④ 물품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 등 수입 관련 서류 원본 및 사본
- 상업 물품 통관 관련 자영업자의 경우
  ① 신청양식 작성
  ②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③ 아래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개인소득세, 회사소득세, 교육세, 일반소비세에 대한 세금행정처 내국세부(Inland Revenue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 Office)의 증빙서류도 필요

④ 납세자 등록번호(TRN)

정부조달 관련 장벽

1. 공공부문 조달

가. 개 관

○ 자메이카 공공부문 조달제도는 재정회계법(Financial Administration and Audit Act)과 조달청법(Contractor General's Act) 등의 적용을 받음.

○ 특히 조달청법은 공공단체(public body)의 면허, 허가, 양허, 승인 사항 및 공공단체가 발주한 건설 또는 상품/서비스 공급에 대한 계약(agreement)을 포함하고 있음.

나.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 국제경쟁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계약 체결 전에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에 등록되어야 함.
- 국제경쟁입찰을 통한 조달 정보는 일간지 광고란에 게재되며,

UN Development Business(UNDB) 웹사이트, 조달기회 관련 국제 정보란에 게재됨.

다. 조달기관 의무

○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공개경쟁의 기준이 되는 기술 규격 제시
- 입찰자 평가 및 낙찰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명시한 공식 입찰 서류 제공

라. 조달청 및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

○ 조달청(Contractor General)은 정부계약 체결 및 이행을 감시하고, 관련 법(Contractor General's Act)을 통해 국가계약위원회(NCC)에 정부계약 체결 관련 신청서 조사, 승인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하며, 내각의 심의에 상정할 수 있음.

○ 조달청법에 따라 국가계약위원회는 등록을 위한 검증 기준 및 정부계약 입찰서 제출 절차를 명시한 규정을 제정함.

마. 공개 입찰제도 및 절차

○ 자메이카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이 제공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 자격심사 절차(pre-qualification)를 거쳐야 하며, 이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경험, 기술, 재정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 업체는 일반적으로 국제경쟁 입찰인 경우 국가계약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특히 해외업체는 납세 준수(Tax compliance) 및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 등록 등과 관련된 입찰 참여 적격성 여부가 중요함.
- 납세 준수 여부는 해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계약이 자메이카내에서 시행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유효한 납세 준수 증명서(TCC)를 확보, 제출하

여야 함.

- 국가계약위원회 등록 역시 해외업체 입찰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자메이카내에서 계약 내용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동 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함.

○ 일반적인 조달 절차는 아래와 같음.

①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이 입찰 관련 물류, 항목,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

② 조달될 상품, 서비스 등의 특성, 가치, 참여 희망 기업 관심 등을 고려하여 조달 방법 결정

③ 조달 계획 수립

④ 입찰 모집 공고 게시

⑤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사전자격심사 및 적격성 기준 통과에 부합하는지 점검

⑥ 조달기관은 결정된 조달 방법에 적합한 관련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입찰 진행

⑦ 입찰을 통해 계약자로 선정된 기업은 조달청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부처 차관, 국가계약위원회, 내각(기획재정부 지지 필수)에서 승인 획득

바. 전력·에너지부문 입찰 관련 주요기관 역할

○ 전력・에너지부문 입찰 관련 진행, 심사 및 승인 등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공공사업규제청(Office of Utilities Regulation) ▲과학기술에너지광업부 ▲조달청(Office of the Contractor General)임.

○ 공공사업규제청법(The Office of Utilities Regulation Act)에 따라 공공사업규제청이 전력・에너지부문 사업 허가(license)를 위한 제안서(application)를 입찰 참여기업들로부터 제출받아 심사(process)한 후 과학기술에너지광업부 장관에게 각각의 제안서 수락(acceptance) 및 거절(rejection)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함.

○ 과학기술에너지광업부 장관은 공공사업규제청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사업을 허가하거나, 공공사업규제청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사업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 조달청은 관련 법(The Contractor General Act)에 따라 정부계약 체결 및 이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에너지부문 사업 관련 공공사업규제청 및 과학기술에너지광업부의 입찰 절차, 진행 및 허가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권고(recommendation)를 할 수 있으나 강제력은 없음.

기타 장벽

1. 입국 및 근로허가

가. 입국 사증

○ 관광, 일시 방문 등을 위한 입국시
- 사증면제협정에 의하여 90일까지는 사증(visa) 없이 방문, 체류 가능
- 단, 사증 없이 입국 후에는 노동 비자 등으로 전환 곤란

○ 상업 및 근로 등 목적 입국시
- 원칙적으로 자메이카 입국 이전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에서 근로허가(Work Permit) 또는 그 면제(Exemption)를 획득한 뒤, 노동 비자(working visa)를 발급(필요서류: 여권, 근로허가, 1년 유효 귀환티켓 등)
- 그러나, 일본소재 자메이카 대사관, 미국소재 자메이카 공관 또는 한국소재 자메이카 명예영사 등을 통해 단기비자(유효기간 3개월, 1회 사용가능)를 받아 입국한 후 현지에서 근로허가를 받은 뒤 해당 비자로 전환하는 경향(자메이카 이민국 홈페이지 참조, http://www.pica.gov.jm)

나. 근로허가(Work Permit)

○ 원칙적으로 자메이카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메이카 입국 전 노동사회복지부로부터 근로허가(Work Permit) 또는 그 면제(Exemption)를 신청하여 획득하여야 함. 이는 근로 형태(자원봉사, 상업, 전문직, 봉사활동,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에 상관없이 적용됨.

○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가 '외국인 및 영연방 국민법'(1964)에 따라 근로허가 발급 기관으로서 역할을 함.

1) 개 관

○ 근로허가 신청자는 고용주 또는 대리인을 통해 노동사회복지부 근로허가과('Work Permit Department')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허가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여 커버 레터, 첨부서류(supporting documents), 관련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함.
(신청서와 커버레터는 3부씩, 첨부서류는 2부씩 준비("Investment manual", http://www.jamaicatradeandinvest.org) 참조)

○ 근로허가 담당기관(신청서 교부처)
- 기관명 : 노동사회복지부(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 주소 : 1F North Street KINGSTON
- 전화 : 1-876-922-9500-14
  1-876-922-6740
  1-876-948-2759
  1-876-948-2594
- 이메일 : mlssworkpermit@gmail.com
- 홈페이지 : www.mlss.gov.jm
- 노동사회복지부 지역 사무소(Ministry of Labour Social Security parish office)는 수도 킹스턴 이외 지방에도 소재

○ 신청서 작성 방법
- Part I은 신청자가, Part II는 고용주가 작성하고 해당일자 입력 및 서명
- 질문사항 43~50의 현지인 채용 관련사항을 작성
- 신청자와 해당없는 질문에 대하여는 N/A로 표시
- 승인시 고용주에 통보 및 비용납부(자메이카 NCB 은행)

○ 근로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근로허가증(번호, 사진 포함되어 있는 카드 형태)이 발급되며, 신청자(영연방국인 제외)는 노동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2) 첨부서류

○ 커버 레터(Cover Letter)
- 피고용인 대신 근로허가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자신이 작성한 커버 레터를 노동사회복지부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 앞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 이유 ▲신청인 근로 형태(직책) ▲예상 근로기간 ▲자메이카 현지인 채용 불가사유 등이 적시되어야 함.
- 자영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근로 형태 및 기간이 명시된 커버 레터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투자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투자계획에 대한 서류상의 증명도 제출).

○ 기타 첨부물
- 사진 2장(25mm × 35mm)
- 자격증명(번역공증) : 학력 또는 경력 증명서(이민국 발급 승인서(letters of accreditation)도 가능), 신청자의 이전 사업/상업/직업 활동에 대한 증명서류, 전 고용주의 추천서 등이 자격증명 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시 원본 지참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출신국 해당기관 발부) : 경찰청 최근 6개월 이내 발부
- 회사설립증명 및 정관(각 공증)
- 여권 사본

- 납세자등록번호(Tax Registration Number, TRN) 등
  ※ 참고로 상기 관련 서류들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 번역본이 제공되어야 함.

○ 기타
- 근로허가신청 및 분실시 비용이 발생하고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전 고용주의 동의서 필요
- 가족 동반시 근로자만 신청하여 취득
- 기간은 통상 4-6주가 소요되나 서류보완 필요시 지연
- 근로허가신청과 관련, 신청비용으로 J$ 14,400(환급불가)을 납부해야 하고 근로기간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함(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J$ 27,000, 6개월 이하인 경우 J$ 54,000, 9개월 이하인 경우 J$ 81,000, 12개월 이하인 경우 J$ 108,000, 그 이후 3개월마다 J$ 27,000씩 추가). 허가기간 전 근로를 마치는 경우 환급가능

3) 근로허가 면제(Work Permit Exemption)

○ 근로허가 및 그 비용을 면제받기 위한 신청으로서 동일한 신청양식을 사용함.

○ 자메이카 국민의 배우자, 외교관, 공무원, 선원, 항공승무원, 문화예술인, 학자, 의료진, 종교인, 투자이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는 근로허가 면제(또는 비용감면) 여부는 사업의 공공성, 계약상대방 등 종합적인 요소를 참조하며, 사업자의 교섭에 상당부분 좌우되고 조건이 부과 가능함.

○ 근로허가는 자메이카 도착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 계약상대방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한 바, 사전 문의를 통해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예외조항

○ 사업상 일시목적 방문의 경우 근로허가 신청 자체가 면제됨.

① 자메이카 설립회사 또는 이를 지배하는 회사의 이사, 감사

② 사업상 대리인(business agent) 등 임명 또는 상담 목적 입국

③ 공장, 기계, 설비 등을 검사하거나 기술 조언 목적

○ 1회 30일, (복수 방문 시 1년 중 통산하여) 총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허가 신청 자체가 면제됨.

※ 법령 근거 : 외국인 및 영연방국민법(Foreign Nationals and Commonwealth Citizen's Exemption Regulations 1964, 2011년 개정)

2. 노사관계

가. 개 관

○ 자메이카는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노조 등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어 주의를 요하는 바, BITU(Bustamante Industrial Trade Union), NWU(National Workers' Union) 등 주요 노조가 정당 정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

○ 분쟁 시에는 협의나 노동부개입 이전 성급하게 파업을 개시하는 경향이 있고(일단 파업후 조정, 중재 경향), 공공서비스 등에 있어 불법파업이 용인되고 있으며, 다른 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동관련법(LRIDA 등)이 노후화 되었으나 법정비가 미진함.

○ 외국기업의 경우 법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초기 진출단계에서는 자메이카 노동부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Outreach Service)를 받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노동운동의 역사

○ 전통적으로 설탕 공장 등지에서 많은 쟁의가 발생하여 노동조합법

(Trade Union Act, 1919)이 제정되었고, 현재의 교직원조합(JTA)의 전신인 교직원노동조합, 목수, 페인트공 조합 등이 생겨났으며 이후 다수의 노조가 신설되어 통폐합되기도 하였음.

- 1938년 발전, 부두, 설탕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알렉산더 부스터만테(Alexander Bustamante), 노먼 맨리(Norman Manley)의 주도로 발생, 이후 노동 지도자들은 총리 역임
- 1939년 부스터만테의 주도로 부스터만테 산업노동조합(Bustamante Industrial Trade Union, BITU)이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자메이카노조의회(Jamaica Trade Union Congress, JTUC)가 노조 통합운동 전개
- 1952년 국민당(PNP)에 의하여 국가노동조합(National Workers' Union, NWU) 설립
- 한때 125개가 넘는 노조가 생겨났으며, BITU, NWU는 현재 대학근로자연합(University and Allied Workers' union, UAWU)와 함께 자메이카 3대 노조 형성
- BITU, NWU, JTUC 및 지역공무원노조(JALGO)가 연합노조 연구발전센터(JTURDC : Joint Trade Unions Research Development Center)를 만들었다가, 1994년 Jamaic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JCTU) 설립
- 현재 전력, 건축분야에서는 Electrical and Construction Workers Union 등이 유력하며, 이에 대응하여 고용주 단체인 Jamaica Employers' Federation(JEF)도 활동하고 있음.

다. 분쟁해결

1) 비공공 부문

○ 정부(노동부)는 당사자에 의한 자발적인 해결을 추구하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하여 노동부의 조정서비스(conciliation service) 청구가 가능함.

- 당사자의 자발적인 제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기한제한은 없음.

- 배정된 노동담당관 하에 당사자들이 노동부에 출석하며 자발적 합의에 의하여 조정함.

○ 조정서비스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아래 3가지 방법에 의한 해결 절차가 있음.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사적 중재 회부 :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abour Relations and Industrial Disputes Act(LRIDA, 1975)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단체협약의 해석, 해고문제 등을 주로 다룸.
- 당사자 합의 또는 노동부 직권에 의한(특히 파업 발생시) 산업분쟁중재소(Industrial Dispute Tribunal, IDT) 회부 : 단체협약 해석, 해고 뿐 아니라 임금협상 등 본질적인 문제도 다룸.(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Section 12)
- 노동부에 의하여 임명된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에 의한 질의, 권유 : 구속력은 없으며, 질의위원회는 분쟁의 사전방지를 위해 활용되기도 함.(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Section 14)

2)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은 급여심사위원회(PSRB)에 의하여 해결을 원칙으로 함.

라. 징계절차, 애로진술 절차

1) 사내 징계절차

○ 일차적으로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개선을 유도

○ 징계회부시 공정성 유지
- 철저한 사실조사(증인의 서명진술서 획득, 근로자기록)를 통해 잘못이 확실한 경우 징계절차 회부

○ 노사가 참여한 회사규정 마련 및 숙지기간 필요
- 징계절차는 공지 및 변론, 불복의 기회를 필히 포함
- 징계심문 시 사측 복수인물 참석으로 증거 보전 필요

- 조합대표는 상근 조합간부와 토의한 이후에 징계가 가능하며, 중대잘못을 제외하고는 처음 위반으로 해고는 부당(Labour Relations Code)

2) 사내 고충처리(Grievance) 진술 절차

○ 관련절차 활용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한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 상시 근로장소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불만 등이 진술될 수 있어야 함.

○ 애로사항은 먼저 직속상사에 진술하고, 그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시 상급 관리자에 진술할 수 있으며, 다시 임명권자에 진술할 수 있는 3단계 절차를 마련하되,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합의에 의한 중재 또는 노동부 제소가 가능함.(노조는 관리자에 진술하는 단계에서 개입 가능)

마. 노동사회안전부 역할

1) 개 관

○ 노동사회안전부 산업관계과(Industrial Relations Division)의 (1) 조정 부서(Conciliation Section) 및 (2) 임금 및 고용기준 부서(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에서 노사관계, 취업, 산업안전 부문을 관장하고 있음.

○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음.
-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설정
- ILO 조약상 근로조건 준수
- 산업안전조건 감시
- 구직자와 고용자간 효율적 정보 공유

2) 조정 부서(Conciliation Section) 역할

○ 조정서비스
- 노조 관련 분쟁의 경우 조정으로 우선 해결되며, 노조 또는 사용

자 일방이 조정신청 가능

- 단체협약(Labour Management Agreements) 체결 및 운용, 해고, 기타 근로자 관련 권리의무 분쟁을 당사자간 합의서 작성의 방법으로 조정

  ※ 상담,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상의 자발적, 비자발적 중재회부, 조합의 대표성 확인 투표,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 회부 등이 주요내용

- 조정 부서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사회안전부 장관은 산업분쟁중재소(Industrial Dispute Tribunal)의 중재에 회부

○ 산업분쟁중재소(IDT)

-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필요, 공공서비스 관련 불법쟁의 발생, 당사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회부
- 소장 외 2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되며 변론과 증거 및 증인심문 후 21일 내에 과반수 동의 또는 3명 의견 불일치시 의장 결정으로 중재결정
- 중재소는 절차진행 중 쟁의금지를 선언할 수 있으며 위반시 소추 가능
- 중재결정 전 당사자 합의시 중재절차 철회요청 가능

3) 임금 및 산업기준 부서(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법, 유급휴가법(Holiday with Pay Act), 출산휴가법(Maternity Leave Act), 고용법(Employment Act ; Termination and Redundancy payments)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함.

- 2014년 현재 최저임금은 J$ 5,600(1주 40시간 근로기준)이며, 직종별로 상이(예 :산업현장 경비원의 경우 J$ 8,198)
- 전화상담도 제공

4) 교육 프로그램(Outreach Program)

○ 노사 당사자에게 권리의무, 관행, 시장개방 등에 따른 이슈, 제3자 개입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노동사회안전부의 각 부서(Conciliation Section, 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 Industrial Safety Division)가 직접 방문도 가능

- 역할극(role-play), 사례연구 등을 통해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

5) 노동관계법

○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abour Relations and Industrial Disputes Act)

- 1975년 제정되어 전반적인 노동분야 및 상설 산업분쟁중재소(IDT) 설치 등에 대해 규정
- 노조의 대표 결정 투표, 해고자복직, 집행력확보,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 노동관계규칙(Labour Relations Code), 대표권한, 단체교섭 등을 규율

○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 1919년 제정되어 노조등록, 노조재산관리, 노조규정, 해산, 쟁의절차 등을 규정

○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 최저임금권고위원회(MWAC)에 의하여 노동부는 명령을 통해 산업별, 분야별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규정

○ 유급휴가법(Holidays with Pay Act) : 유급휴가 등을 규정

○ 공장법(Factories Act) : 공장, 빌딩, 건설현장에 적용되며, 위험한 기계, 안전장비, 화재시 피난경로, 안전교육, 위생, 구급 등을 규정

천연자원 현황

1. 개 관

○ 자메이카는 보크사이트 이외에는 특기할 광물자원이 많지 않음. (석고, 대리석, 석회석, 실리카 등이 있으며 구리, 납, 망간, 철 등의 광물은 소량 매장)

○ 한편 현재 자메이카내 희토류 추출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나, 초기 단계로 상업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시범사업 수준이며 알려진 성과는 없는 상황임.

2. 보크사이트 개발 현황

○ 자메이카는 현재 세계 5위, 중남미 2위(브라질 다음) 수준의 보크사이트 매장량(20억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St. Elizabeth, Manchester, Clarendon, St. Catherine, St. Ann, Trelawny 등 중부 지역에 매장되어 있음.

○ 현재 자메이카에는 1개 보크사이트 공장 및 4개 알루미나 공장이 있음.

구분	회사	위치	소유권	연간 생산량 (백만톤)	설립 연도
보크사이트	Noranda Jamaica Bauxite Partners	Discovery Bay	Noranda Bauxite Limited(49%), 자메이카 정부(51%)	4.5	1952
알루미나	Windalco	Ewarton, St. Catherine	UC Rusal(93%), 자메이카 정부(7%)	0.7	1959
		Kirkvine, Manchester	UC Rusal(93%), 자메이카 정부(7%)	0.65	1952
	Jamalco	Halse Hall, Clarendon	Alcoa(55%), 자메이카 정부(45%)	1.45	1972
	Alpart	Nain, St. Elizabeth	UC Rusal(100%)	1.7	1969

3. 희토류 개발 현황

○ 국영 자메이카 보크사이트협회(Jamaica Bauxite Institute)와 일본 알루미늄 생산업체(Nippon Light Metal)가 공동으로 희토류 추출을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시행 중임.

○ 동 시범사업은 Nippon Light Metal 측이 US 3백만 불을 투자, 희토류 매장 가능성이 있는 자메이카내 보크사이트 침전물(red mud) 퇴적지에 연구소를 건설하여 추출된 희토류의 상업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13. 2월 착수되었으며, 2014년에 완료될 예정임.

○ 주재국 정부는 현재 희토류(rare earth oxides)가 kg당 US 3,500불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톤당 US 330불의 알루미나 대비 수익성이 높은 자원이므로, 상업적 추출에 성공할 경우 자메이카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칠레

최근 칠레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

- 칠레는 1990년부터 주로 중도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 하에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는 개방경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 2013년 칠레 경제, 구리가격 하락 및 세계 경제 침체로 주춤

- 칠레 경제는 연간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구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구리의 주 수입국인 중국과 유럽, 미국의 경제 둔화가 구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칠레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료원 : 칠레 중앙은행, 구리위원회(2014년 8월 기준)

- 구리 국제가격이 '12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달러 대비 칠레 페소 환율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 '14년 경제 성장률은 당초 4%내외의 성장이 예측되었으나, 하반기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2%내외로 전망된다.

※ IMF는 2014.10월 칠레 경제성장 전망을 기존 3.6%에서 2%로 인하

- 칠레 페소화의 대미 환율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 하락 등으로 구리 수요가 줄어들어 외환유입이 감소되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4년 연말가지 550~600페소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칠레 조세개혁 법안 통과

- 2014.3월 출범 이후 칠레 바첼렛 신정부는 의료, 교육, 노동 등 사회개혁을 위한 재원 확보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세제 개혁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 동 법안은 하원과 상원의 심의를 거쳐 2014.9월 바첼렛 대통령이 공포함에 따라, 10.1부터 발효하였다.
- 세제 개혁의 주된 내용으로는 기존 20%인 법인세를 2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세율은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업의 재두자 이익에 대해 면세를 해주던 납세제외기금(FUT) 제도와 1974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 장려를 위해 시행하던 외국인투자법(DL600)을 폐지하였다.
- 당초 디젤차량에게만 부과하고 했던 자동차 환경세는 디젤과 가솔린 차량 모두에 적용될 예정이며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중 시행될 예정이며, 배기가스, 연비, 판매가격에 따라 산정될 예정이다.

○ 칠레, 태평양동맹을 통한 대 아시아 협력 강화

- 칠레는 2012. 6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와 함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출범시킨 이래 4개국간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최근 몇 년간 안정된 경제성장률 및 낮은 인플레율, 재정건전성, 풍부한 에너지·자원, 매력적인 외국인투자유치 대상 지역 및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을 바탕으로 재화·서비스, 자본 및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 일정을

소화해 나가고 있다.

- 또한, PA는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비전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도 2013년 8월 동 태평양동맹에 옵서버국가로 가입하면서 PA 회원국 및 옵서버국가(미국, 중국, 일본, 스페인 등 약 20개 국가)들과의 협력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 PA 회원국 인구는 약 2억명으로 중남미 전체 GDP의 1/3, 중남미 전체 대외교역량의 50% 차지
- 특히 PA는 앞으로 회원국간 에너지협력 문제도 심층 논의해 나갈 것으로 알려진 바, 우리의 대 중남미 에너지·자원 외교에 있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2003.1.1.일 현재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6%의 단일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수입품의 통관가격(CIF)이다. 칠레는 세계 59개국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실효관세율이 2011년 기준 1% 미만으로 관세장벽은 없다. WTO 양허관세율은 대부분 품목의 경우 25%이다.

수입부가금

▪ 과세표준(CIF 가격과 관세의 합)으로 부과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19%
○ 주세 : 알코올 도수에 따라 15~27%(증류주 경우 27%)
○ 음료세(비알콜성 음료) : 13%
○ 사치세(금, 보석, 상아 등) : 15%

▪ 부가가치세와 다른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 여송연(Cigar) : 공식판매가 52.6%
○ 가공된 담뱃잎 : 공식판매가 59.7%
○ 담배(Cigarette) : 공식판매가 개당 0.0000675 UTM에 1갑당 62.3% 추가
○ 연료세 : 디젤 ㎥ 1.5 UTM, 휘발류 ㎥ 6 UTM
* UTM : 칠레 중앙은행이 과세를 위해 매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칠레페소로 발표하는 수정 화폐단위(2012. 9월 기준 UTM 1 = 39,570 페소, 약 US$ 83.03)

가격밴드제도(Price Band System)

○ 밀, 밀가루, 설탕 등에 대해 수입가격대를 설정하고 법률 제18535호 및 재무부 시행령 제31호에 의해 수입가격이 동 가격대 이하로 낮아질 경우 추가세율을 적용하거나 동 가격대 이상일 경우 할인하는 제도
- 동 제도가 2002.10월 WTO에서 농업협정 위반으로 판정받음에 따라 식용유에 대해서는 2003.8월 철폐하였으며, 나머지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아르헨티나의 제소에 따라 2007.5월 WTO에서 농업협정 위반으로 패소 판정받음에 따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

통관절차상의 장벽

3,000달러 이상 수입품은 세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칠레 세관에서는 통관서류를 잘 갖추기만 하면 통상 48시간 이내에 통관이 가능하여 통관상의 장벽은 사실상 없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특별한 장벽은 없다.

수입규제

칠레는 우리나라처럼 수입규제제도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 등 수입금지 품목이 있고, 일부 품목은 수입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풍양속 저해물(음란서적 및 비디오 등), 독성 산업폐기물, 중고자동차, 중고오토바이 등은 수입이 금지된다. 중고자동차 중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차량은 수입이 가능하다.

무기, 탄약, 화약류, 알코올, 동식물, 비료, 살충제,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방사성 물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사전허가 또는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덤핑 또는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자국 산업 및 고용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상품가격왜곡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에 따라 중앙은행이 최고 24%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부과하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관련 장벽

표준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을 제외하고는 이외 제품에 대한 별도의 표준은 없다.

라벨링

일반 소비자용 수입품에는 원산지를 명기해야 하며, 포장물품에는 품질, 순도, 성분, 정량 및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캔 또는 포장음식물

은 스페인어 라벨로 첨가물 등 주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생산자 또는 수입자명 등을 명기하고, 크기, 중량 등은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인증

칠레에서 전기제품, 난방제품, 의약품, 화장품, 살충제 등은 반드시 전기연료감독원(SEC), 식약청(ISP) 등 관련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그 외의 제품은 별도의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다. 그러나 SEC의 전기안전인증 및 판매처분검사 인증은 우리나라 인증취득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부 확인이 필요하다. 별도의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업자들은 유럽 CE 등의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선호한다.

환경 관련 규제

칠레의 3대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SEA)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감독원은 환경규범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년 10월부터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구, 조선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강화, 산티아고 지역내 중장비의 배출가스 기준을 2011년 4월부터 미국 TIER Ⅱ 기준으로 강화, 제련 및 공단 오염물질 저감정책, 디젤유의 황 함유율 개선, 장작난로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은 2011년부터 EURO Ⅳ 또는 Tier 2 Bon8로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칠레 환경감독원은 2013년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이행수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강화될 추세로 기업들의 사업추진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입된 내용을 준수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칠레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불공정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북부 Iquique 및 남부 Punta Arenas 지역에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자유무역지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에는 수입관세(6%) 및 부가가치세(19%)가 면제되고, 동 지대에서 칠레와 여타지역으로 물품을 반출할 경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칠레의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달국에 등록해야 한다. 칠레정부는 2000.3월부터 정부조달 및 공공계약에 관한 정보시스템인 ChileCompra(www.chilecompras.cl)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기업은 정부조달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여 지사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칠레정부는 2010.5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법률 제20435호를 제정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였음에도 칠레는 2007년 이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가(PWL; Priority Watch List)로 분류되고 있다.

칠레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분야는 제약분야

의 상표 및 임상실험 결과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반 등 콘텐츠의 불법복제이다. 칠레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약 60%, 음반의 약 50% 이상이 불법복제품으로 조사된 바 있다.

칠레 내에서 외국인의 기술이전 로열티에 대해 30%가 과세되고 있다.

신 발명품에 대해서는 20년의 제품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저자 사후 70년까지, 상표권은 10년(무한갱신 가능)간 보호받는다.

서비스 장벽

칠레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WTO에 제출한 양허표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투자 장벽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기본방향

- ○ 모든 경제 및 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전면 개방
- ○ 내외국인 동등 대우
- ○ 정부 간섭 최소화
- ○ 원금 및 과실송금 인정

관련 법규

- ○ 외국환관리규정(제14조)
- ○ 광업활동에 대한 특별세법(법률 제20026호)
  - 칠레정부는 5만톤 이상 광물 생산업체에는 연간 총 판매액의 5~14%, 12,000톤~5만톤 미만 생산업체에는 0.5~4.5%, 12,000만 톤 미만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광업세 법안을 2005.6.15부터 시행 중

외국인투자 관할기관

○ 외국인투자위원회(CIE)
- 외국인 투자허가신청 심의, 승인 업무 총괄

○ 칠레 산업진흥청(CORFO)
- 투자계약 체결 시 각종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 결정

외국인투자절차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투자
- 500만달러 이상의 투자
- 공공부문투자 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
- 대중매체에 대한 투자
- 외국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투자일 경우

○ 투자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투자규모, 투자자본의 형태 및 각종 인센티브, 규제내용 등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 체결

○ 투자 승인 후 3년 이내(광업의 경우는 8~12년)에 자본금 반입 의무
- 사전탐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광업 프로젝트의 경우 자본금 납입기간을 최장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투자우대조치

■ 일반원칙

○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대우이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부여하는 특혜는 없음

■ 투자 타당성 조사 인센티브

○ 칠레정부는 'Todo Chile' 프로그램을 통해 산티아고를 제외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40만 달러 이상 신규 투자(증설투자는 25만 달러 이상)에 대해 투자 타당성 조사 경비를 지원

○ 지원액은 투자액의 2% 이내에 최대 6만 달러로 조사소요비용의 50% 한도

■ 지역별 인센티브

○ 낙후지역인 최북단 XV지역, Tierra del Fuego 등 최남단 제XII 지역 등에 투자시 조세 감면, 보조금, 연구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

■ 고도기술 인센티브

○ 칠레생산진흥청(Corfo)은 ICT 분야, 생명공학, 신소재, 전자공학 등 고도기술 분야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
○ '고도기술 프로그램(Programa de Alta Tecnologia)에 의해 최대 3만 달러 이내로 사전 조사비용의 50%를 지원
○ 주요자산 및 기술 구입 보조금 : 구입금액의 50%까지 외국기업은 최대 200만 달러, 칠레기업은 최대 50만 달러
○ 고용인력 보조금 : 고객센터, 수리센터, 제조, 유통 및 물류 등은 연봉 25% 한도, 최대 US$ 5,000, 정보통신, S/W 개발, 지식센터, 기술개발센터 등은 연봉 50% 한도, 최대 US% 25,000(외국전문가는 연봉 30% 한도)

투자규제조치

■ 투자규제 업종

○ 원유개발 정제 및 판매업: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영석유공사(ENAP)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투자 가능

○ 원자력 및 리튬 관련 광물개발
  - 원자력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
  - 채굴된 자원은 일차적으로 동 위원회에 판매

○ 연안운송업
  - 원칙적으로 국적선에 한정

- 외국인투자기업은 900톤 이상의 화물운송에 참여 가능(단, 운송가격에 기본수입관세 6%를 추가하고 이 가격이 국내업자 응찰가보다 낮은 경우에 수주 가능)

○ 항공업 : 외국인 대표의 취임 불가, 칠레내 본사 설치
○ 방송사업: 외국인 대표의 취임 불가
○ 어업 : 투자가의 출신국가에서 칠레인에게 허용하는 동일한 범위 내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허가
○ 기타 국가안보 관련사업: 전면 금지

■ 대외송금 제한

○ 2000.5월 외국인투자 자본의 1년 이내 회수금지 조항 폐지이후 특별한 외환규제 미시행
○ 외국인투자법(D.L. 600)을 통해 이루어진 외국인투자의 경우 1년 내에는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없음

■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비율

○ 100% 외국인투자 가능

■ 현지인 고용의무

○ 종업원 수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5% 이상의 현지인 고용 의무
○ 특정기술자격 소지자로 객관적 증빙 제출이 가능한 인력은 상기 85%에서 제외됨
※ 2003.7.25일자로 한·칠레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됨.

경쟁정책

독과점금지법을 1973년부터 시행중이며 독과점예방위원회(Preventive Commission)가 협의 및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실행위원회(Resolution Commission)가 제재 및 법적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 관련 애로

칠레정부는 2004.10.20일부터 한국인이 소지한 일반여권에 대해 90일간의 무사증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면제협정을 발효시켰다. 지상사 주재원에 대해서는 최초 입국 시 1년의 임시거주비자 발급해 주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문제

양국 정부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2007.5.3일 공식 서명, 2007.7.2일 정식 발효시켰다.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거주지 주소가 기록된 각종 고지서, 주택 계약서, 명함 등), 한국내 취득한 운전면허증, 여권, 칠레 신분증, 수수료(약 25,000페소)를 가지고 거주지 소속 구청 교통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취득까지 약 2일 소요된다.

한-칠레 주요 통상(마찰) 현안

[통상마찰 현안]

■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방안 협의

○ 칠레 정부는 한-칠레 FTA 협상시 DDA 협상 타결 이후 협상키로 한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을 요구 중

○ 우리나라도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품목인 13년 유예품목 290개, 관세감축 제외품목 96개의 관세 철폐와 전기통신 등 서비스 분야 개방, 원산지규정, 표준 및 인증, 투자 관련 규범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리튬 광산 투자진출 제한

○ 리튬은 최근 국제적으로 차세대 광물로 각광받고 있으나 칠레법상 리튬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 시 칠레 정부의 투자진출 허가가 필요한 전략광물로 분류

○ 광산 개발은 가장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분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기존 기업의 시장 진입 방해로 인해 국내 기업의 투자 진출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

■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 사전획득해도 수입품 전량 건별 판매처분 검사 필요

○ 칠레에서 전기 및 난방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칠레 전기연료관리국(SEC :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검사 인증을 사전에 통과해야 하며, 이후 수입품 건별로 전량 판매처분검사를 받아야 함

○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안전인증 획득만 요구하고 있어 칠레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수입품의 판매처분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증이 필요한 주요 품목은 가전제품, 난로, 온수기, 전선, 전기 콘센트, 스위치, 전기회로, 조명기구, 전구, 가스 및 기타 연료를 사용하는 제품이며, 인증 대상 품목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임

[통상마찰 작용 가능 현안]

■ 에너지효율인증 취득 의무화 확대 추세

○ 에너지효율인증 취득이 이미 의무화된 품목으로는 TV, 블루레이 재생기, DVD 플레이어, 다람쥐통 형태의 삼상 모터, 텅스텐 필라멘트 백열등, 소켓 두 개짜리 형광등, 소켓 한 개짜리 형광등, 내장형 형광등, 전자렌지, 냉장냉동고, 음향기기, 에어컨, 셋톱박스임

○ 2013년 에너지효율인증 취득이 의무화되는 품목으로는 LED등(10.1

부), 텅스텐 할로겐 램프(10.1부), 형광등(12.31부) 등 3개 품목이며, 홈씨어터와 프린터는 2014.4.1부로 동 인증 취득이 의무화되며, 매년 의무화품목이 확대되는 추세임

○ 전기전자 안전인증의 경우 매 수입건별 취득이 필요한 반면, 에너지 효율화 인증은 최초 취득후 매년 갱신이 필요함. 에너지효율인증 취득은 반드시 안전인증 취득이 전제되어야 함

우리기업 진출 애로/건의사항

■ 기술표준과 인증 상호 인정 및 간소화

○ 전자 및 난방제품에 대한 인증 문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인증 서류제출로 대체할 필요

○ 전파, 소방 등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가 없고 저전력 제품인 모니터 TV 및 32인치 이하 소형 TV에 대해서는 규격 인증을 면제할 필요

○ KS 등 우리나라 인증의 상호 인정도 검토

■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 필요

○ 한-칠레 FTA 특혜관세를 받기위해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상업송장(Invoice)을 건별로 모두 제출해야 함에 따라 통관시 일반관세를 선납하고 추후 원본 입수 시 환급신청을 하고 있으나 통상 환급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회사의 자금운영(Cash Flow)에 애로사항이 발생

○ 원산지 증명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로 저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추후 원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 수산물 검역 절차 개선

○ 칠레에서 수산물 수입시 제품통관 후 위생청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소에서 분석한 후 판매유통 가능하다는 판정서(resolucion)가

발급되어야 수입품 판매 가능함에 따라 1개월 동안 냉동보관료를 부담해야 하고 영업기간 손실도 발생

■ 칠레내 주요 에너지.발전 프로젝트 발주·착수 지연

○ 칠레는 만성적인 전력·에너지 부족 및 에너지 고비용으로 인한 경제·산업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에너지·발전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등 환경영향평가(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지연 또는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입찰 등 프로젝트 착수 준비를 위한 초기 투자자본 회수를 어렵게 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진출 노력을 위축시키고 중·장기적인 투자 구상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캐나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캐나다는 대외적으로 FTA확대를 통해 경제협력 대상을 다각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14.9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서명 했으며, EU와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TA)을 최종 타결했다.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TPP)에도 적극적이다.

국내적으로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및 항공우주 등 핵심 제조업 분야에 대한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는 바, 설비 투자에 대한 14억불 규모의 감세 연장과 온타리오 주(州)의 제조업 설비에 9억불 지원, 자동차, 항공우주 분야 R&D 지원을 지속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부자재 및 설비 등 1,8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여 기업의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14년 들어, 미국 등 주변국가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는 등 캐나다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규제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 국내 철강산업의 회복부진 및 경쟁력 약화 등으로 중국산을 중심으로 한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조치 제소가 크게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보호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수입규제 대상 품목이 철강제품 이외에도 변압기 등 일반 소비재 품목까지 확대되는 등 교역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캐나다는 1998년부터 관세율 체제를 대폭 간소화한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2014년 기준 최혜국 관세율은 단순평균 2.48%이고, 공산품에는 평균 2.38%, 농산품에는 평균 3.1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WTO DB 통계) 2000.5월 미국, EU,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확대하였고 2003년부터 최빈국의 경우 사실상 전 품목에 무관세 적용을 하는 등 관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72개국을 기존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74년부터 일반특혜관세 적용혜택을 받아오고 있는데 그 공여기간을 1984년과 1994년에 10년 연장 받았으며 2004년에 다시 10년 연장되어 현재의 일반특혜관세는 2014년까지 적용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일반특혜관세율은 단순평균 1.89%로 최혜국관세율의 단순평균인 2.48%보다 0.59포인트 낮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제품도 상당하다. 다자간협정, 지역협정 및 쌍무협정에 따라 최혜국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공장도가격(ex-factory price)을 기준으로 60% 이상의 부가가치가 일반특혜관세 수혜국에서 발생하고, 직접 캐나다로 선적하였을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면 저율의 관세인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대상품목이 아닌 제품은 최혜국 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수입규제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아동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판권이 캐나다 및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또한,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자간 섬유쿼터 및 WTO 非회원국과의 양자 간 섬유쿼터를 운용하여 왔으나, 다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2005.1월부터 쿼터제를 폐지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캐나다는 GATT 회원국으로 원칙적으로 GATT규정에 의한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미국과 멕시코에 대해서는 여타 국가들과 상이한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캐나다는 '특별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가 현재 규제 중인 반덤핑 조치의 절반 이상은 철강제품에 대한 조치이다. 캐나다는 NAFTA 지역 내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1997년에 체결된 캐나다-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적용배제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2000.3월 특별수입규제법이 개정되었는바, 잠정덤핑 판정 시 종전에는 관세·국세부만이 관여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도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또한, 재심 시에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이외에도 관세·국세부도 덤핑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2004년 이후 정부조직개편으로 관세업무가 신설된 국경서비스청(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덤핑판정업무는 국경서비스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4년 11월 기준 캐나다는 23개국,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단일국가로서 총 18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최대의 수입 규제 대상국이다. 한편, NAFTA가 체결된 미국을 대상으로도 감자, 정제당, 동제관연결구 3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014년 11월 기준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의 제품은 총 7종으로서, 탄소강 용정관, 유입식 변압기, 구조용 강관, 동제 관 연결구, 동관, 열연강판, 콘크리트 철근이다. 어망용 로프, 방수고무화, 포켓식 앨범도 규제를 받아오다가 1997년 이후 해제되었으며, 앨범시트도 2000.8월 반덤핑규제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1998년에는 우리의 경제위기 여파로 對캐나다 철강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스텐레스 봉강이 새로이 반덤핑 판정을 받았으며, 철근도 2000년 초부터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1999년 중후판 및 아연도 강판도 재심결과 반덤핑 조치가 연장되었다. 2001년 들어 열연코일 및 냉연강판에 대한 덤핑제소로 잠정관세가 부과되었으나, 열연코일은 8.17일 냉연강판은 10.9일 각각 무피해 판정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밖에 15년간 장기규제를 받아오던 유정용 강관이 2001.7.4일 종료재심 결과 규제조치가 철회되었다. 2003년과 2004년에 구조용 강관과 스텐레스 강선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었으나 1994년 이후 규제대상이었던 중후판과 아연도 강판은 규제조치가 종료되었다. 2005년 들어 1984년 규제시작 이후 21년 만에 탄소강관이 종료재심을 통해 규제가 해제 되었으며(6.3), 철근(1.11), 스텐레스 봉강(1.18) 또한 규제가 해제되는 등 신규 제소된 사례 없이 모두 3건의 철강관련 규제가 해제되었다. 2009년에는 7.29일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되었다.

2006.6월에는 한국산 및 미국, 중국산 동제 관 연결구류에 대한 덤핑여부 조사가 개시되어 덤핑긍정판정이 내려졌으나, 우리 수출기업 중 가장 큰 수출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9%의 낮은 덤핑관세율을 적용받았다(여타기업들은 37~242%). 한편 2012년 9월 26일에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은 공시를 통해 동제 관 연결구류에 대한 덤핑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밝혔으며 2013년 2월 8일 경에 재조사 결과에서 현재의 반덤핑 규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2년 4월과 5월에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은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와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였다. 2012년 7월과 8월에 발표된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의 예비판정에서 두 품목 모두 덤핑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2012년 10월과 11월에는 두 품목 모두 최종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은 두 품목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입식 변압기의 경우 2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16.9~17.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다른 한국 업체 제품에는 72.7%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더불어 탄소강 용접관의 경우 54.2%의 반덤핑관세율이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2013년 5월에는 동관에 대한 덤핑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8월 예비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11월 최종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어 한국 기업 N사의 제품(N사 제품에는 5.5%)을 제외한 모든 한국산 제품에는 82.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013년 9월에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의 덤핑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1월 예비판정에서 덤핑판정을 한데 이어 2014년 4월 최종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어 4개의 한국업체가 1.9%~20.8%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다른 업체 제품에는 59.7%의 반덤핑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한편, 2014년에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이 한국산 콘크리트 철근과 유정용강관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다. 콘크리트 철근은 6월에 조사를 개시해 9월 예비판정에서 덤핑판정을 하여 3개 업체에 14.8%~29.4%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되고 있으며, 12월에 덤핑 최종판정, 2015년 1월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또한, 국경서비스청은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가 7월 개시하여 12월 예비판정을 할 예정에 있다.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2014년 11월 기준)

	최초규제	현 규제기간
구조용강관	2003.12	2003.12~미정
동제관연결구류	2007.2	2007.2~미정
유입식 변압기	2012.7	2012.7~미정
탄소강 용접관	2012.8	2012.8~미정
동관	2013.8	2013.8~미정
열연강판	2014.1	2014.1~미정
콘크리트 철근	2014.9	2014.9~미정

※ 자료 :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세이프가드

2002.3월 캐나다의 철강업계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따라 우회적으로 철강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 9개 품목군의 수입철강 제품에 대해 조사를 개시, 2002.7.5일 9개 품목 중 5개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고 8.20일 3년간 관세쿼터 조치 결정을 발표하였다. 조치 대상 품목은 냉연강판, 후판, 철근, 일반강관 및 형강 일부이나 열연 강판 등 주력 수출제품이 제외되어 우리 철강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2003.10월 캐나다 내각은 세이프 가드 조치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이프가드 유보는 미 NAFTA 상호주의에 의거 미국을 국제대

상에서 제외할 경우 WTO 규범 위배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2005.1월 캐나다 자전거 생산업계는 중국산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자전거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크다고 CITT에 제소하였으며, CITT는 2.19일자로 조사를 시작하여, 9.1일 수출가격(FOB) 225 캐나다달러(소매가 400달러 상당) 이하이고 바퀴직경 38.1cm(15인치) 이상인 자전거(도색된 자전거 프레임 포함. 조립여부 불문, 접이식 자전거 등 예외품목 있음)를 대상으로 세이프 가드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 자전거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1차년도 30%, 2차년도 25%, 3차년도 20%의 관세를 부과키로 하였으나, NAFTA 지역 및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 WTO 개도국 중 당해품목 수입점유율 3% 미만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규제대상국은 중국,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캐나다 수출물량이 미미하여 동 조치의 적용대상국이 아니다.

이후 중국산 수입품이 각 부문에서 급증함에 따라, 2005~2006년중 중국산 야외바베큐 그릴, 가구, 섬유의류제품 등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발동 신청이 제기되었다. 이중 야외바베큐 그릴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3년간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가구의 경우는 제기대상 품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섬유의류제품의 경우에는 제소업체가 캐나다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기각되었다.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신청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국제무역재판소는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또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입행위에 대해 표준신청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관련 기업들이 참고토록 하였다.

한편, 온타리오주 담배원료판매위원회는 2005.10월 버지니아種 담배원료에 대해 일반 세이프가드를 신청, 같은 해 12월 국제무역재판소의 조사개시결정을 얻었으나, 2006.2월 동 위원회가 신청을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종결처리 된 바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캐나다의 표준설정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등 다양하다.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는 자발적 표준화(Voluntary Standardization)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정기관은 공공기관인 캐나다 표준청(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민간기구인 캐나다 표준협회(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및 캐나다 가스협회(Canadian Gas Association)이다.

이 중 캐나다 표준협회가 가장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이며, 특히 전기제품 표준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미국과는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 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1999.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양국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2005.7월부터 개시된 한-카 FTA 협상진행을 통해 다시 논의된 바 있다.

원산지 표시, 라벨링, 포장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를 하여야 한다. 캐나다 국내 판매제품은 영어 및 프랑스어(bilingual)로 상품명, 순중량, Dealer의 주소 등을 정해진 곳에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벡주는 불어가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방법 등은 반드시 프랑

스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다른 언어 사용 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상품 원산지 표시법이 2009.1.1일부터 발효되어 소비자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생산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Made in Canada'는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용인지 또는 중간도매상용인지에 따라 상이한 포장기준을 가지고 있다. 치약, 스킨 및 크림, 샴푸 등에 대해서는 표준 포장규격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포장지는 가능한 한 재생 가능한 원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킷,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리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는 용기(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

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이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는 캐나다 「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한다.

해산물(Sea Food and Fish)의 경우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해산물 수출 관련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국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에도 위생기준(Health Standard), 등급 등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알레르기 표시 규정 도입

캐나다 보건부는 2008.7월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캐나다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겐인 글루텐(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장제품에 이를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했다.

알레르기 표시 규정이 도입된 이후, 캐나다 보건부 산하의 식품 검역청은 알레르겐 함유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2010~2011년 동안 6차례에 거쳐 한국산 식품이 알레르기 표시 관련 경고 조치를 받거나 리콜을 하게 되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알레르겐은 글루텐과 아황산염 외 땅콩, 아몬드

유사 작물, 깨, 우유, 계랑, 갑각류, 조개류, 콩, 대구, 밀 등이 추가로 있다.

식품영양 표시제 도입 추진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유 영양소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라면·과자류, 포장김치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목재포장 규제 강화

캐나다 식품, 해충, 식물 검시 시관인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이하 CFIA)는 2009.9.1일부터 중국산 목재포장과 관련하여 캐나다 규정을 빈번히 불이행함에 따라, 중국 패키징 회사에서 자체 발급된 열처리 식물위생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목재포장은 단순열처리 증명서가 아닌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vention (IPPC) 마크를 꼭 부착해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13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 하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였으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7%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약속함과 함께 그동안 양국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이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캐나다도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UN Climate Change Conference를 앞두고 자국의 입장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

- 전체배출의 51%를 차지하는 산업계에 대해 강제 감축의무 부여(단, 기준년도는 교토의정서상의 1990년 대신 2006년으로 재설정)
  - · 단위시설마다 2010년까지는 매년 6%씩, 그 이후는 2%씩 감축토록 의무화(단, 신설설비는 청정연료 이용 시 3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향후 2% 감축)
  - · 의무이행 실적 산정은 배출감축을 위한 직접투자, 기후변화기술기금(신설) 출연,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체제(CDM) 참여 등을 다양하게 인정
  - · 기금출연을 통한 이행은 2010~2017년간 인정하며 톤당 15~20달러로 환산
  - · 1992~2006년간 이루어진 기존의 배출감축투자도 15Mt까지 인정
- 운송분야 감축을 위하여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 모든 운송수단에 대한 배출규제 기준(Clean Auto Pact)을 미국과 함께 마련

에너지 효율 규제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43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1.10.21일 개정안은 Electric motors, residential gas bilders 등의 8개 품목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 요구사항(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규정하며, 2012년 4월12일부터 발효하였다. Standby for electronic products; compact audio products등 5개 품목 관련 신규 보고 기준 마련.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2014.6.14.일 발표된 13번째 개정안은 시행 시 Chillers, gas water heaters 등의 15개 품목의 MEPS를 강화할 예정이며 수은등(Mercury vapour lamp ballasts)의 대한 규제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위험폐기물의 수출입 규제

캐나다는 1986.11.8일부터 지정된 위험 폐기물은 바젤협약, OECD 결정 또는 「미-캐나다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협정(Canada-U.S.A. Agreemen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에 따라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관련 물질을 재활용 또는 폐기의 목적으로 수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철 및 슬래그와 같이 국제적으로 위험폐기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의 수출입은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의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규제(Export and Import Hazardous Wastes Regulations) Division B에서 정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환경마크제 실시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CP: Environment Choice Program)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심의절차를 거쳐 '에코 로고(EcoLogo)' 공인마크를 상품 및 서비스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제조, 수입, 소매, 서비스 업체 등 일반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강제적인 규제는 아니나, 환경마크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기업 마케팅 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州, 앨버타州)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종래 각의결정 및 가이드라인 명령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나, 199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이 제정되어 1995.1월부터 동 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 2012(Canadian Environment Assessment Act, 2012)가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을 대체하였으며 평가대상, 유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연방정부가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부가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이다.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건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이 제시될 있다.

평가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로 3가지 유형(스크리닝, 클래스 스크리닝, 포괄적 조사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스크리닝은 주무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 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이 필요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집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 시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조정 시에는 관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자금지원(ecoAUTO Rebate Program)

캐나다 교통부는 2007.3월 에너지 절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연비가 우수한 고효율 자동차의 신규구입 시 최고 2,000 캐나다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친환경자동차 지원프로그램을 발표,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미니밴 등 연료효율이 떨어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4,000 캐나다달러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제도(Green Levy on fuel inefficient cars)도 국세청 주관으로 함께 시행되고 있다. 동 정책은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촉진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사들과의 사전 협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갑자기 시행되었으며, 자금지원의 기준연비에 대한 근거도 미흡하다는 등 비판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산 자동차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소형차(compact car) 부문의 경우, 적용대상 모델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업계 내 여타 브랜드들로부터 불합리한 제도 운용이라는 비난을 산 바 있으며, 2009.3월 이후 폐지되었다.

친환경 주택개조에 정부보조금 지원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공사를 한 주택 소유주에 대해 1회 최대 5000달러, 평생 최대 50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에코에너지 개조지원 정책(eco Energy Retrofit)을 2007.4월부터 도입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의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연방 천연자연부가 정한 규정과 신청절차를 따라야 한다. 2012.03월 폐지, 삭제필요

온타리오주 Green Energy Act

2009.5월, 온타리오주는 획기적인 발전차액지원(Feed in Tariff, 이하 FIT)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처음 3년간 5만여 개 일자리 창출 예상) 목표로 하는 Green Energy Act를 발효하였다. 2012년 4월 온타리오주 정부는 지난 2년간의 FIT 프로그램의 성과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FIT 2.0 지원제도 개정안을 공시하였다. 본 법안의 에너지원별 FIT 2.0 인센티브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원별 FIT 인센티브 스케줄(2012.4.5일자)

Fuel	Project Size Tranche	Original FIT Price (¢/kwh)	New FIT Price (¢/kwh)	% Change from Original FIT Price
Solar Rooftop	≤10 kW	80.2	54.9	-31.5%
	> 10 ≤ 100 kW*	71.3 <250kw	54.8	-23.1%
	> 100 ≤ 500 kW*	63.5 >250 ≤ 500kw	53.9	-15.1%
	>500 kW	53.9	48.7	-9.6%
Solar Groundmount	≤ 10 kW	64.2	44.5	-30.7%
	> 10 kW ≤ 500kW*	44.3	38.8	-12.4%
	> 500 kW ≤ 5 MW *	44.3	35.0	-21.0%
	> 5 MW		34.7	-21.7%
Wind	All sizes	13.5	11.5	-14.8%
Water	≤ 10 MW	13.1	13.1	0.0%
	> 10 MW ≤ 50 MW	12.2	12.2	0.0%
Biomass	≤ 10 MW	13.8	13.8	0.0%
	> 10 MW	13	13	0.0%
Biogas On Farm	≤ 100 kW	19.5	19.5	0.0%
	100 kW ≤ 250 kW	18.5	18.5	0.0%
Biogas	≤ 500 kW	16	16	0.0%
	> 500 kW ≤ 10MW	14.7	14.7	0.0%
	> 10 MW	10.4	10.4	0.0%
Landfill Gas	≤ 10MW	11.1	11.1	0.0%
	> 10 MW	10.3	10.3	0.0%

*New project size.

※ 자료원 : OPA (Ontario Power Authority)

2009.9월에는 Green Energy Act 조항 내 Local Contents 규정을 추가 발표하였다. Local Contents 규정은 풍력과 태양력 발전 프로젝트가 FIT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량의 온타리오산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Local Contents 규정을 두고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너무 강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쪽과,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친환경 제품 제조 시설 유치를 통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며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일본과 EU는 WTO에 온타리오 주정부의 Local Contents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의사를 제기하였고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신하여 분쟁에 나선 캐나다 연방정부는 WTO 분쟁해결 패널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WTO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표와 함께 2014년까지 Local Contents 규정을 수정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 Local Contents 규정을 폐지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1995.6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 주간의 무역장벽 및 상이한 기준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정부간「주간 교역협정(AIT: Agreement on Internal Trade)」을 체결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각 주간에 무역장벽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서부지역에는「서부지역 무역장벽 축소협정(Western Trade Barriers Reduction Agreement: Western Agreement)」

이 있어 서부지역 회사 우대 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서부지역 주들도 AIT 체결 이후 Western Agreement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IT상에는 캐나다 부가가치(Canadian Value added)분에 대한 10% 범위 내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캐나다 제품이나 캐나다 회사로 국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각 주는 동 규정을 적절히 수용하여 상이한 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 온타리오주 : 캐나다 부가가치분에 대한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자격을 캐나다 상품이나 캐나다 회사에 국한시킬 수 있다.
- 퀘벡주 : 퀘벡주 회사 및 캐나다회사 우대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점차 AIT 범위 내에서 캐나다 회사 간 자유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 유일하게 주정부 조달문제를 법규(Purchasing Commission Act)로 제정,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회사에 대해 우대구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사스카츄완주 : 서부지역 회사를 우대하고 있다.
- 매니토바주 : Western Agreement주가 적용되나 캐나다 회사 간 자유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기관(전력회사, Liquor Control Board)의 경우, AIT 규정 내에서 별도의 구매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의 모든 주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정부들이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주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4.9월에 정식 서명한 한-캐나다 FTA 발효 시,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 정부조달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해 질 예정이나, 지방(주)정부

조달 참여는 향후 개정 예정인 WTO 정부조달 협정 체결이후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국내산업 지원 정책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 기금 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지원 동향을 보면,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 주정부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생산하는 캐나다 Bombardier사에 신형 제트기 모델인 C Series 개발 지원 명목으로 350백만 캐나다달러와 118백만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2009년 미국 통상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민간 항공사에 개발 지원 명목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캐나다 연방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부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2009.3월, 캐나다 정부는 G사와 C사에 각각 108과 29억 캐나다달러의 구제 금융을 주식과 채권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후 C사는 2011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양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주식을 점진적으로 다시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2009.6월 캐나다 정부는 펄프 및 제지 산업 보호를 위해 10억 캐나다달러(9.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투자장벽

캐나다의 외국인투자관련 기본법은 「Investment Canada Act」이다. 동법은 외국인이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기업 직접 인수 시, 캐나다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투자를 통한 캐나다기업 인수

투자규모＼투자자	WTO 회원국 기업	비 WTO 회원국 기업
5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	
5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354백만 캐나다달러 미만(2014년)	산업부에 신고 문화유산부에 허가 심사요청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허가 심사요청
354백만 캐나다달러 이상(2014년)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허가심사 요청	

간접투자를 통한 캐나다기업 인수

투자자	WTO회원국기업		비WTO회원국기업	
투자자산 구 성	캐나다자산 규모가 전세계 총자산의 50% 이하인 경우			
투자규모	50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50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50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50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신고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 심사요청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신고	산업부:심사요청 문화유산부: 심사요청
투자자산구성	캐나다자산 규모가 전세계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규모	5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5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신고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 심사요청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신고	산업부:심사요청 문화유산부: 심사요청

※ 자료: 캐나다 산업부(2014년)

다만, 기존 캐나다 기업인수가 아닌 기업신설을 통한 신규투자는 제한이 없이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각 개별법은 문화, 금융, 에너지, 운송, 통신, 어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산업부는 2005.7월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Bill C-59)을 추진, 위성기술, 암호기술, 방위산업 등 안보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내각의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최근 캐나다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하는 형태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적(國籍)기업 감소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국내여론이 확산되자, 캐나다 정부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캐나다 산업부는 2007.7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쟁정책 검토패널'을 가동하면서 외국인투자법도 함께 검토토록 한 바, 2008.6월에 최종 권고안을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한 바 있다.

문화산업

서적 출판 및 배포 : 캐나다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인수 금지(단, 동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며 캐나다인 원매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 및 외국인 신규 투자는 소수지분(minority position)의 공동투자로만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 캐나다 기업 인수는 캐나다에 순이익(Net benefit)이 돌아갈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예: 캐나다 저서 출판 등).

정기간행물 : 캐나다 내에서 정기간행물을 발간·배포하거나 캐나다 광고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사를 신설 또는 인수하는 경우, 이는 캐나다에 순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만 허용된다. 캐나다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에 대한 외국인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캐나다 광고주는 캐나다인 소유지분이 75%가 안 되거나, 캐나다 내용이 85% 이상 되지 않는 간행물에 의한 광고 게재 시 세금감면(Tax Deduction)신청이 불가능했으나, 1999.5월 미국과의 잡지분쟁 타결로 소유자 국적과 관련 없이 최소 80%의 캐나다 내용을 포함하는 잡지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가능해졌다.

TV 및 라디오 방송 : 방송법에 의거 주식소유 및 이사회 구성 모두 캐나다인에 의한 통제가 최소한 80%(모기업의 경우 66.7%)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허가 갱신 포함). 또한 캐나다 방송사업은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에 의하여 규제·감독을 받는다.

영상물 배급 : 캐나다 기존업체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투자는 전매상품(propriety product)의 수입 및 배포에 한해 허용된다. 캐나다 내 외국인 소유업체에 대한 직·간접 인수는 투자자가 캐나다 소득분을 캐나다에 재투자한다는 조건 하에만 허용된다.

기타 분야

운송 : 캐나다 국적기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25%로 제한, 연안 운행은 캐나다 선박만이 할 수 있다.

에너지 및 광업 : 우라늄광산의 경우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캐나다와 EU의 FTA가 잠정 체결되면서 우라늄 산업의 외국인 투자 규제가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점을 감안, 투자 규제를 완화를 촉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 : 1종 전기통신사업자(Type I Carriers: 전송용량 소유 및 운용)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직접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도 외국인이 20% 이내이고 캐나다인에 의하여 실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동 제한은 OECD 국가 내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제한이 캐나다 통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2010.3월 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통신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완화를 공개적으로 시사하기도 하였다.

어업 : 상업용 어업 허가를 갖고 있는 캐나다 회사 지분의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주 및 사스카츄완주는 동 주 이외의 지역 인사·기관에 대해 부동산 판매 시 제한을 두고 있다.

수출의무 비율 및 기술이전 조건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심사대상 투자의 경우에는 '고용, 자원가공, 현지 부품, 수출, 기술개발 및 이전' 등에 관한 투자가의 의향을 검토하고 있다. 1985년 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캐나다가 투자심사에서 투자를 거부한 경우가 없었으나 2008.4월, 미국 방위산업체인 Alliant Techsystems Inc.(ATK)사가 최첨단 위성 기술과 로봇 팔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의 우주항공사인 MacDonald Dettwiler and Associates Ltd.(MDA)사를 13억 캐나다 달러에 인수에 대해 처음으로 불허하였다. 최근 캐나다 기업들의 매각으로 캐나다 내 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인수합병에 개입하여 제동을 건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생산, 투자 및 국산품 사용조건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WTO 및 NAFTA 규정에 따라 1997.12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섬유 및 의류 분야의 국내생산실적 등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블라우스 등 6개 품목에 한하여 2004년까지 실적과 무관하게 관세 경감조치를 하였으며, 자동차 분야의 非 Auto Pact 멤버에게 주어진 실적에 따른 관세경감 조치도 폐지되었다. Auto Pact 멤버(5개사)들에 대해 국내생산 및 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으나, 2001.2월 동 특혜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TV 및 라디오 방송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프로그램 방영 의무가 있다. 모든 방송사는 연간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캐나다 프로그램으로 방송해야 하며, 특히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저녁시간에 국영 CBC는 60% 이상, 상업방송은 50% 이상의 캐나다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지사·사무소 설치에 따른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연방투자법령 및 각 주의 등록 및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외국은행은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1999.6월부터는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세계상 지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타 지역 발생이익을 통하여 상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와 관련 외국의 세법 내용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사가 독립법인이 아닌 이상, 지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채나 의무행위에 대하여는 모기업이 법률상의 책임을 갖는다.

금융상의 제한

배당금, 이자소득, 로열티 등에 대한 외국 송금 시 원천세가 징수되며 별도의 송금세나 송금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다. 다만, OECD 기준인 부채/자본비율(debt/equity)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자금 차입에 관한 규제는 없으나, 소득세법에 따라 이해당사자(Related party: 자본국 또는 제3국의 같은 계열사)로부터의 차입 시 과소자본규제(Thin Capitalization)를 받고 있다. 과소자본규제는 자본금의 2배 이상을 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할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대여보다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세제상의 제한

1978.2월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캐나다 진출 우리기업 및 직원들은 캐나다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으로 연간 6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반면, 캐나다 연금법상 귀국 시 일시금 반환제도가 없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캐 양국 정부 간 사회보

장면제협정이 체결되었다(1999.5.1 발효). 동 협정의 발효로 인해 캐나다에 5년 이내 단기간 파견 또는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캐나다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되게 되었다.

한·캐나다 양국정부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발효(1980.12월)된 이후 변화된 양국의 경제 환경과 세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에 착수, 2006.9월 총 30개 조항 및 의정서로 구성된 개정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은 비준절차 등을 거쳐 동년 12월 발효되었다. 동 협약에서 양국 정부는 상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지국의 과세권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거주자(Non-resident)의 조세회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세법 상, 캐나다 영토에 183일 미만 거주한 개인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도입의 목적은 비거주자(예를 들어 한국인)가 캐나다에 명목적인 회사를 설립하고 배당, 이자 등의 투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거주자를 위한 캐나다의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규제 도입 전에는 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은 투자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으나 규제 도입 후에는 이러한 조세특례를 한쪽 국가에서 배제한 채 자국 세법을 기준으로 과세소득 및 세금징수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정책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8월 경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캐나다의 출판분야는 그동안 미국잡지의 캐나다판(split-run잡지)에 게재된 광고에 대해 8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수입잡지에 대한 우편요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캐나다 잡지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하여 왔는데, 동 방식이 미국의 제소에 의해 WTO협정 위반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split-run잡지에 대한 캐나다기업의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이 다시 반발함에 따라, 1999.5월 미국과의 최종합의하에 첫해 12%, 18개월 후 15%, 36개월 후 18%까지 캐나다 기업의 광고를 허용하였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국제운전면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비싼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장기체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 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양국 간 운전면허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온타리오주(1998.10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2000.9월), 퀘벡주(2000.10월), 앨버타주(2001.1월), 매니토바주(2003.8월), 사스카츄완주(2004.12월),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주와 뉴펀들랜드 라브라도주(2007.11월), 뉴브런즈위크주(2008.2월)에 이어 노바스코시아주(2011.3월)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되어 한국 운전면허를 캐나다 운전면허로 바꾸는 운전면허상호교환이 가능하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퀘백주는 프랑스어권으로 언어, 문화, 관습 등이 여타 주와 상이하다. 퀘백주는 프랑스어만을 공용어로 하고 있어 라벨링, 광고, 상품성분,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캐나다 진출

캐나다 금융산업은 「연방은행법(Bank Act)」에 의해 규제되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여러 면에서 제한하여 왔다. 과거 은행법은 은행을 예금이 가능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이 아닌 Schedule I 은행과 예금이 가능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인 Schedule II 은행으로 구분하며 Schedule I의 경우 어느 투자가도 10% 이상의 지분소유를 할 수 없으며(외국인 지분은 총지분의 25% 이내), 캐나다에서 금융업을 영위코자 하는 외국은행은 반드시 현지법인 형태로 Schedule II 은행으로 설립해야 했다.

그러나 WTO 금융서비스협상 결과에 따라 캐나다는 외국은행도 지점 설치를 허용토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1999.6월부터 시행중이다. 동 개정법에 따라 외국은행은 대출업무만 취급하는 lending branch 혹은 예금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full service branch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Schedule III 은행), 예금업무 취급지점도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되고 있다.

캐나다는 또한 금융서비스 개혁 작업반이 1999.6월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는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을 2001.6월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동 내용은 캐나다 은행을 자본금에 따라 소형은행(10억 캐나다달러 이하), 중형은행(10~50억 캐나다달러), 대형은행(50억 캐나다달러 이상)으로 구분하여,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제한을 철폐하고, 중형은행에 대해서는 65%까지 지분취득을 허용하며,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종전 10% 지분취득 상한선을 20%까지 확대토록 하였다. 또

한 은행합병 심사절차를 규정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캐나다 은행 간 합병에 대비토록 했다.

그 결과, 캐나다는 2014년 기준 28개 국내은행(Domestic Bank), 24개 외국계은행 현지법인(Foreign Bank Subsidiaries), 26개 외국은행 지점(full-service foreign bank branches)과 3개 외국 대출 은행 지점(foreign bank lending branches) 등 총 81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며, 현재 캐나다 금융기관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캐나다 금융기관관리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www.osfi-bsif.gc.ca)이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 단계별 주요은행 현황

구분		개수	주요 은행
국내인가은행 (Schedule Ⅰ)		28	BMO Financial Group, CIBC, National Bank of Canada, Royal Bank of Canada, The Bank of Nova Scotia, TD Bank Group 등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Schedule Ⅱ)		24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한), Shinhan Bank Canada(한), Amex Bank of Canada(미) 등
외국계 은행 지점 (Schedule Ⅲ)	Full Service	26	Bank of America, N.A.(미), The Bank of New York Mellon(미), Barclays Bank PLC(영), Capital One Bank(미), Citibank, N.A.(미) 등
	Lending Service	3	Credit Suisse AG, Merrill Lynch International Bank Limited, Union Bank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외환은행이 1970년에 토론토 사무소를 개설한 후 1981년에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현재 토론토에 본점을 두고 토론토, 밴쿠버 및 캘거리에 모두 9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2013년 기준 총자산 1,312백만 캐나다달러, 당기순이익 11백만 캐나다달러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한편, 신한은행은 2007.12월 캐나다 연방재무부에 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08.8월에 현지법인 설립 인가를 취득, 2009.3월 토론토에서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3년 12월말 현재 3개의 영업점을 두고, 총자산 355백만불 규모로 성장하였다.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의 인구는 470만 명(2013년 기준)이다. 코스타리카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무역자유화와 외국투자유치를 통해 과거 농산물 중심 수출 국가에서 현재는 전자부품, 의료기기 등 첨단제조업 중심수출로 산업구조가 바뀌었다. 특히, 코스타리카는 2007년 이후 ▲양자, 다자간 FTA 체결추진, ▲자유무역지대 법 및 기타 인센티브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기술, 서비스 집약적 경제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2014.5월 출범한 Guillermo Solis 신정부는 대외개방 확대보다는 국내산업 보호 및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 FTA 활용에 중점을 두면서 신규 FTA 체결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코스타리카 경제성장률은 3.5%이며(2011년 4.4%, 2012년 5.1%), 국민당 GDP는 최초로 만불을 돌파하여 10,528불(중미 1위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3년 코스타리카 무역규모는 295억불로 재화수출액은 115억불(세계 90위 규모/전년대비 1.3% 증가)이며 재화수입액은 180억불(세계 83위 규모/전년대비 2.44% 증가) 수준이다. 주요수출품은 마이크로프로세서(20.6%), 의료용기기(9.5%), 바나나(7.2%), 파인애플(7.1%), 커피(2.6%)이며, 주요수입품은 석유(12.3%), 마이크로프로세서(8.4%), 전자 및 인쇄회로(3.8%), 휴대폰(2.1%), 의약품(1.9%), 자동차(1.4%) 등이다. 코스타리카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중미공동관세율을 적용한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서 민주 헌정이 확고히 정착되어 있는 국가로서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으며, 높은 교육 수준(2010년 문맹률 3.9% 및 2014-5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교육시스템부분 세계 21위, 학교관리부분 세계 16위로 두 분야 모두 중남미 1위 기록)

과 우호적 투자환경을 기반으로 높은 FDI를 유치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2013년 27.14억불(주요 투자국은 미국, 멕시코, 스페인 등) 유치했으며, 2014년 상반기 13.57억불의 FDI를 유치(중앙은행자료)하였다. 첨단 제조업, 서비스분야(기술자문센터, 콜센터), 생명공학분야가 주요 FDI 유치를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항만 등 인프라 취약과 정부 관료의 비효율성, 최근 들어 악화된 재정적자 등이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기준 한국-코스타리카 교역 규모는 4.99억불 규모이다(무역협회자료). 이 중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2.32억불로 2012년 대비 31.2%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2.67억불(8.9% 감소)을 기록하였다. 한-코 교역은 2009년 세계경제위기 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3년의 경우 ▲경제성장 둔화(3.5% 기록, 2012년의 경우5.1%), ▲높은 실업률에 따른 민간분야 소비심리 위축, ▲엔화약세에 따른 주재국내 일본 자동차 가격 경쟁력 회복으로 인한 한국자동차 시장점유율 감소, ▲코스타리카 외국투자기업(Intel)의 인쇄회로 수입 감소에 따라 한국의 대 코스타리카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타리카는 우리나라에 컴퓨터부품, 반도체(인텔 등 투자업체가 우리나라기업에 수출), 의료기기, 고철 및 금속스크랩, 커피 등의 농산물을 수출하며,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인쇄회로기판(CPU 제조용 반제품으로 인텔에 수출), 철강, 전자제품을 코스타리카에 수출하고 있다.

2014년 1-8월 기간 중 우리나라 수출액은 1.7억불(작년 동기간 대비 20% 증가), 수입액이 2.03억불(작년 동기간 대비 11% 증가)로 337만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대비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합성수지 및 냉연강판 등의 수출도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11년 자동차에 이어 개별 상품으로는 최초로 1억불 수출을 기록했던 인쇄회로의 경우 주재국내 인텔 반도체 조립공장이

폐쇄된 이후 급감할 것으로 보여 2015년에는 한-코 무역량이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우버스 조립공장과 포스코건설 엔지니어링 센터, 세아상역 방적공장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 환경

코스타리카는 2013년 3.5%의 경제성장률(2010년 5%, 2011년 4.4%, 2012년 5.1%)을 기록하였고, 2013년 국민 1인당 GDP는 10,528불로써 이는 중미 1위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2013년 코스타리카의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주요산업은 제조업(21.2%), 교통/통신(16.5%), 통상/요식/호텔(14.9%), 사회서비스(9.2%), 농수산/임업(8.6%), 기업서비스(6.3%), 금융보험서비스(5.6%), 건설업(4.1%) 등이다.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서비스, 농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 경기호조로 인해 4.2%를 기록하였다. 2014년 코스타리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3.6%(중앙은행), 3.6%(세계은행), 4%(CEPAL) 등이다.

2013년 정부 재정적자는 전체 GDP의 5.4%로, 주재국 중앙은행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재정적자가 2014년 6%, 2015년 6.7%, 2019년에는 8.2%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등급사인 무디스사는 2009년 이후 코스타리카의 평균 재정적자가 전체 GDP의 약 4.5%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4.9월 주재국의 투자등급을 기존 Baa3에서 정크등급(Junk Status)인 Ba1으로 하향조정하였다. 2014년 상반기까지 중앙은행을 포함한 주재국 전체 공공분야 부채는 2013년 약 252억불(전체 GDP의 55.1%)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약 275억불(전체 GDP의 55.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재국 정부는 조세수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세제개혁을 통해 2019년까지 공공부채는 4.6%, 최종적으로 이를 1%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 가지의 세재개혁안을 계획하고 있다. 주재국 정부는 2014.12월 기존의 판매세와 서비스세를 부가가치세(IVA)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니셔티브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015년에는 종합소득세(Renta Globla) 적용 및 면세제도 개혁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재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재국 정부는 지난 9.1일 2014년 대비 19.7%가 증가한 2015년 국가예산안(약 145억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증가하자 9.30일 기존 예산안에서 2.8%(약 4.06억불)를 삭감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예산안은 2014.10월까지 국회 토의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은 2009년 이후 5% 수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유지(2009년:4%, 2010년:5.8%, 2011년:4.7%, 2012년:4.6%, 2013년:3.8%)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주재국 물가상승률은 2009년 이래 최대치인 4.14%를 기록함에 따라, 2014년 연간 인플레이션은 주재국 중앙은행의 목표치(3-5%)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4년 상반기의 경우 국가 통제 분야의 인플레이션이 7.05%를 기록하여 비통제분야(3.32%) 대비 현저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으며, 휘발유와 전력 및 수도 등 주요 공공서비스 물가상승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Solis 정부의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기요금 상승 등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대화가 2014.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내년 4월경에 에너지 국가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재국은 현재 2006년 이래 도입된 환율밴드제(exchange-rate band)를 사용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변동환율제(floating)를 도입할 계획이다. 2013년 콜론/달러 평균 환율은 1달러에 약 499.08콜론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 말부터 미국의 양적팽창 축소에 따른 외화유입 감소와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역내 주요국들의 금융 불안 등을 이유로 주재국 환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현재 콜론-달러 환율

은 1달러에 약 535콜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2007년 이후 적극적인 양자, 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2014.10월 기준) 7개의 다자간 FTA, 6개의 양자 FTA가 발효되어 있다. 현재 코스타리카 대외무역 중 전체 수출의 68%, 수입의 76%가 아래 FTA 체결국과 이뤄지고 있다.

(1) 다자간 FTA

○ 중미통합시장(1963년 발효)
○ 중미-도미니카공화국(2002년 발효)
○ 중미-칠레(2002년 발효)
○ 중미-파나마(2008년 발효)
○ 중미-도미니카공화국-미국(CAFTA-DR)(2009년 발효)
○ 중미-멕시코(2013.7월 발효/1995년 발효된 코-멕시코 양자 FTA 대체
○ 중미-EU(2013.10월 발효)

(2) 양자간 FTA

○ 코-캐나다(2002년 발효)
○ 코-카리브해공동체(2005년 발효)
○ 코-중국(2011년 발효)
○ 코-페루(2013.6월 발효)
○ 코-싱가포르(2013.7월 발효)
○ 코-유럽자유무역연합체(2014.8월 발효)
○ 코-콜롬비아(2013.5월 서명)

코스타리카는 이외에도 호주, 일본,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 등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을 누리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특정적인 외국인투자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 제 19조를 근거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코스타리카는 양자간 투자분야가 명시된 FTA외에도, 13개국과 투자에 관한 양자협정을 맺고 있다(한국과는 2002년 투자보호협정 체결).

산업 분야별 경제활동

코스타리카 농업분야는 지난 2007-2013년간 연간 1%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2013년 0.9%), 2013년 농업활동은 전체 GDP의 8.6% 수준이다. 같은 기간 농수산품 수출은 전체 수출의 23%(농산품:21.2%, 수산물:2.8%)를 차지했으며, 주요수출품으로는 파인애플, 바나나, 커피, 생우, 멜론 등이 있다.

제조업 분야는 2013년 전체 GDP의 21.2%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노동인구의 11.3%가 제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2007년 이래 서비스업의 확장으로 인해 점진적인 산업쇠퇴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2005년 이래 최저치인 3.43억불의 FDI가 유입되었다(2006년:4.39억불, 2007년:6.89억불, 2008년:5.54억불, 2009년:4.07억불, 2010년:9.65억불, 2011년:7.37억불, 2012년:6.34억불). 특히, 2013년 주재국 GDP의 6%, 수출의 20%(총 수출액: 23억불, 총 수입액: 17억불)를 창출한 세계적 반도체 제조 다국적 기업인 인텔이 2014.4월 주재국에 위치한 조립공장 및 제품 실험실을 올해 말까지 완전폐쇄하고 1,500여명의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향후 주재국 수출 및 FDI 유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지대는 전체 제조업 상품수출의 70%를 맡고 있으나, 동지역과 내수경제와의 연계성은 아직 미약한 상태이다.

코스타리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서비스분야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67.1%가 종사하고 있으며, 2013년 55억불의 수출을 이뤄냈다. 동 분야의 수출은 매우 다변화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 지정된 부분보다 더 개방되어 있다. 특히, 코스타리카는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해변과 열대우림이 발달하고, 다양한 동식물 관찰이 가능하여 생태관광(Eco Tourism) 발달되어 있으며, 2013년 외국 관광객 242만명 방문으로 24.8억불의 수입을 창출하였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개요

코스타리카는 자유무역을 대외무역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있어 연료, 알콜, 마약류 등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관세 장벽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 Common Market)의 일원으로, 1963년 중미 5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이 서명한 중미관세코드협정 및 중미관세분류체계(SAC)를 1994년부터 채택하여 시행함에 따라, 중미공동시장 역내 생산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 최고 20%의 역외공동관세를 부과한다. 2013년 기준으로 93.4% 제품에 대한 관세가 단일화되었으나, 현재 자동차, 농산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단일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중미관세분류체계(SAC)는 HS 코드에 의거 총 21개의 관세품목을 설정하고 있으며, 2014년 SAC 관세 범위는 아래와 같다. 품목별 세부 관세는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의 홈페이지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http://www.sieca.int/)

- 품목 1 (生동물 및 동물성생산품): 0-15%
- 품목 2 (채소류 및 식물성생산품): 0-20% 예외: 팥:30%, 쌀 23.7%
- 품목 3 (동식물성유지): 0-15%
- 품목 4 (조제품, 주류 및 담배): 0-15%
  - 예외: 설탕/담배(20%), 와인(30%), 맥주/럼/에틸알코(40%)
- 품목 5 (광물): 0-15%
- 품목 6 (화학공업생산품): 0-15%
- 품목 7 (플라스틱과 고무): 0-15%
- 품목 8 (원피, 가죽, 모피): 0-15%
- 품목 9 (목재 및 조물재료): 0-15%

- 품목 10 (펄프 및 인쇄물): 0-15%
- 품목 11 (섬유, 의류): 0-15%
- 품목 12 (신발, 모자 및 인조제품): 0-15%
- 품목 13 (시멘트, 도자, 유리): 0-15%
- 품목 14 (귀금속): 0-15%
- 품목 15 (철강 및 비금속): 0-15%
- 품목 16 (보일러, 전기기기, TV): 0-15%
- 품목 17 (차량, 선박, 교통): 0-15%
- 품목 18 (광학, 의료, 시계, 악기): 0-15%
- 품목 19 (무기): 15-20%
- 품목 20 (가구 및 완구): 0-15%
- 품목 21 (예술, 골동품): 5-10%

코스타리카는 대부분의 무역파트너국에 최혜국(MFN) 관세를 적용한다. 2013년 최혜국에 적용되는 관세는 평균 5.9%(2012년의 경우 6%)로서 농산품(13%)은 비농산품(4.7%)에 비해 관세가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수입관세평균은 0-15% 수준이나, 닭고기, 육류, 조류, 소시지, 유제품, 감자, 양파, 설탕, 콩 등의 수입관세(35-66%)는 매우 높은 편이다.

FTA 체결국에 적용되는 평균관세는 대부분 매우 낮은 편이다(중미통합시장: 0%, 카리브해공동체: 1%, 미국: 1.3%, 도미니카공화국: 0.8%, 캐나다: 1.3%, 칠레: 1.1%, 중국: 3.9%, 멕시코:0.8% 등).

수입부과금

코스타리카는 정부재정이 매우 취약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입관세(DAI) 이외에 판매세(IGV), 선택소비세(ISC), 긴급세(법령 제 6946호), 등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통관 세금은 높은 편이다.

(1) 모든 제품(일부 농산품, 농업용품, 책 제외)의 수입에는 판매세(IGV, 부가세와 유사) 13%가 부과된다.

(2) 선택소비세(ISC)는 일부 소비재(맥주, 와인, 담배, 페인트,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해 선택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 선택소비세(5~95%) 부과 품목(관련법 Ley 4961(1972.3.10))
    2203, 2204, 2205, 2206, 2208, 2402, 2403, 3208(5%), 3209(5%), 3210(5%), 3211(5%), 3212(5%), 3214(5%), 3305, 3307, 3401, 3402, 4011, 4012, 4013, 8407, 8408, 8415, 8418, 8421, 8450, 8451, 8507, 8509, 8510, 8511, 8516, 8519, 8520, 8521, 8527, 8528, 8702, 8703, 8704, 8706, 8707, 8708, 8711, 8714, 8716, 9504

(3) 긴급세는 법령 6946호에 의해 CIF가격의 1%를 사회보장재정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부과되고 있다. 관세가 0%인 품목의 경우에도 긴급세 1%는 부과된다.
(4) 농촌진흥세(INDER): 주류(8%), 담배(2.5%) 등에 부과된다.
(5) 주류세(IFAM): 증류주, 맥주(10%)에 부과된다.
(6) 음료특별세: 주류, 우유를 제외한 모든 음료에 부과된다.
(7) 유류단일세: 연료(리터당 20-221콜론)에 부과된다.
(8) 담배제품세: 담배, 시가(제품 당 20콜론) 등에 부과된다.

한편, 중고자동차 및 중고부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산정할 때, 추정이익률제도(M/E)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중고 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판매될 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판매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수입업자가 수입 시 관련 판매세를 미리 납부한다는 취지이다.

추정이익률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판매세를 산정함에 있어, 업체가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추정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다.

한편, 코스타리카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상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어, 판매세 13%만 부과되고 있다.

관세 산정 기준

코스타리카의 관세 산정 기준은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 종가세(CIF 기준)를 원칙으로 하여 송장에 의해 산정된다. 단, 송장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처음 수입되는 상품은, 재무부 산하 관세청 사정과에 기준 가격 설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 사정과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세관에 송부, 세관에서 이를 기준 가격으로 정한다. 기준 가격 설정시 제시해야 하는 자료는 수출국의 현지 판매 가격, 가격구성표, 카탈로그 및 수출업자 소개자료, 수입계약서 등이다.

자동차의 경우 모델, 생산년도, 옵션상황에 따라 관세가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선택소비세 30%, 긴급세 1%, 판매세 13%를 지불한다. 자동차 모델 및 생산년도에 따른 구체적인 관세율은 재무부 홈페이지(http://www.hacienda.go.cr/autohacienda/autovalor.aspx)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Black Book(미국의 중고자동차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업송장에 기재된 제품가격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중고차의 경우 승용차는 79%, 승합차는 49%가 Black Book이 산정한 가격에 과세된다.

통관절차

코스타리카 통관절차는 중미관세코드III(CAUCA III)와 일반통관법에 의해 시행된다. 중미통합시장 회원국들은 2008.4월 중미관세코드를 개정(CAUCA IV)하였으며, 코스타리카 의회는 2010년 이를 비준하였다(법령 8881). 그러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관련 이행법령 불충분으로 인해 동 개정코드가 2014.10월 현재 발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코스타리카 일반통관법은 2012년 개정되었으며, 통관 시 E-Seal사용, 자체위약금지불(Self-Assessed Penalities)허용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코스타리카에 수입된 물품은 세관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2012년 통관승인평균시간은 11시간이었다. 모든 수입자들은 통관관리체제를 위한 정부기술데이터베이스(TICA: 2005년 이후 관세청이 운영하는 디지털플랫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면장(Import Permits)은 대외무역 단일창구(VUCE 2.0)를 통해 받아야 한다.

통관은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관수수료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화물가격의 0.8%정도이다. 자유무역지대수입, 수출용제품, In-bound 보관제품, 구급품(비상용품),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상품샘플, 긴급패키지, 우편, 면서점구입상품, 비상업적 물품, 가족/친지를 위한 소포, 국가 혹은 공공기관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의 통관 시 통관사를 고용할 의무는 없다.

창고료는 수입품 반입 15일 이후부터 부과되며, 반입된 지 90일 이내에 수입 물품을 반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품의 법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90일의 기한이 만료되기 며칠 전, 세관은 공문으로 수입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한다.

세관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이 재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부과 없이 재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통관절차가 끝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되어 재수출 시 수입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코스타리카 법령에 따른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관 시 구비서류로는 수입신고서(Pedimento de Importación), 상업송장, 선하증권, 수입허가서(수입 허가 품목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타 증명서(필요한 경우, 예: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의 허가서 필요) 등이 있다.

- 수입 통관 시 제출 의무서류
  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본
  ②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③ 선하증권(B/L)
  ④ 그 외 코스타리카법으로 지정된 요청서류

수입신고서에는 상품 수입 단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신고 단가가 재무부 측 산정 단가보다 낮을 경우 가격인증보고서(Informe de Verificación sobre el Precio)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동 인증보고서는 경제부 공인 사전검사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증보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세관은 자체적인 가격 확인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수입 상품 총액이 천달러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동 인증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수입신고서가 승인 또는 반려되지 않을 경우 제출 다음날부터 10일의 근무일이 경과하면 수입신고가 자동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나,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경제부는 신고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통관 절차
  통관사 선정 → 수입신고서 작성 → 제세금 납부 → 세관의 서류검토 → 화물검사여부 결정 → 화물검사 → 화물 인수

원산지규정

모든 수입 상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미공동시장이나 다른 FTA체결국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받게 된다.

중미공동시장 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 중미원산지규정이 사용되는데,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역내 생산 부가가치가 35% 이상이어야 중미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의 원산지 규정은, 신발, 자동차 등의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금액 기준으로 역내 생산자재가 35% 이상 사용되거나(Build-up방식), 역외생산자재를 뺀 비중이 45% 이상일 때(Build-down방식)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입규제

코스타리카는 제조업이 취약함에 따라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

고, 소규모 판매상까지도 직접 수입을 하고 있을 만큼 자유로워서, 자의든 타의든 코스타리카 수입관리제도의 기조는 수입자유화 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수입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가공음식품, 무기 등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 치안부 등의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고 있다.

- 수입 금지 품목: ① 무기류, 탄약 ② 폐타이어 ③ 화약물질 ④ 마리화나, 모르핀 등 항정신성 약품과 같이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 수입 제한 품목: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 허가를 받도록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으로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수입쿼터

코스타리카는 제조업 취약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코스타리카와 양자·다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긴급재정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의 생산 품목 보호를 위해 이들 수입국에 대해서는 간단한 수입쿼터제를 마련하고 있다.

- 2014년 수입쿼터제 대상 국가 및 쿼터량(일부)
  캐나다 : 밀/호밀가루 15,173.3 TM, 콩 7.516.6 TM, 해바라기/카놀라/겨자/옥수수유 1,556.6 TM, 설탕 4,000 TM
  파나마 : 돼지고기 100 TM, 냉동 멸균 우유 633,817 리터, 팜류 150TM, 토마토 소스 452.5 TM
  미 국 : 감자 12.554 TM, 양파 10.785 TM 돼지고기 7.292 TM, 분유 3.519 TM, 버터 13.323 TM, 치즈 1.639 TM,

아이스크림 13.852 TM, 기타유제품 15.243 TM
도미니카공화국 : 닭고기 665 TM, 가루우유 2,200 TM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코스타리카 국내 생산업체 또는 관련조합은 경제부 산하 불공정무역 관행 규제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부가 직권으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2007-2013년 기간 동안 코스타리카는 미국(페인트제품)과 칠레(폴리프로필렌포장지)상품에 대해 2차례 반덤핑을 적용하였으며, 2013.3월 기준으로 미국 페인트제품에 대한 반덤핑만 유효한 상황이다. 코스타리카가 유일하게 상계관세를 적용하던 콜롬비아산 퍼프페스트리에 사용되는 팜올레인과 마가린에 대한 상계관세가 2009.5월 폐지됨에 따라 현재 코스타리카가 적용하는 상계관세는 없다.

표준, 위생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코스타리카의 경우 휴대폰, 농산품,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을 수입할 때는 전력통신공사,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 관련 부처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2013.5월 기준 코스타리카에는 중미 기술규정(RTCA)을 포함하여 184개의 기술규정이 시행 중이다. 코스타리카는 2007년 이래 70개의 기술규정을 폐지한 반면, 125개의 새로운 기술규정을 도입했다. 대부분의 기술규정은 농약, 연료, 의약품, 섬유, 화장품, 육류. 유제품, 원예, 밀가루, 기름, 곡물, 과일 등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기술규정은 내외국인 차별 없이 적용된다. 미국의 FDA, FCC 및 유럽 공동체 EC 인증이 있을 경우, 사전허가 및 등록이 수월하며, 판매 시 광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코스타리카는 SPS협정을 준수하는 국가이며, 위생 및 식물위생 관리는

식물위생관리법(법령 7664), 동물보건일반법(법령 8495), 보건법(법령 5395)에 의해 관리된다. 식품수입의 경우 선적 시마다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되는 모든 식품이 보건부 식품위생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인간소비 및 산업용으로 사용될 동물 혹은 동물성 부산물 수입은 국립동물보건서비스(SENASA)에 등록되어야 하며, 농림수산부(MAG)가 농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통관허가를 부여한다.

일부수출품(커피,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은 공공위생 목적으로 인해 수출 전 허가가 필요하며, 통나무, 코스타리카 동전, 인간장기, 문화재 등은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커피(40kg 당 f.o.b. 1.5%), 바나나(40파운드 박스당 1달러), 생우(마리당 2불)는 수출세를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법령 제 7472조에 따라 통조림류, 식품, 일부 공산품에 대해 수입자가 제품의 성분, 중량 등에 대해 스페인어로 라벨을 작성하여 부착해야 한다.

코스타리카는 2011년 12월 14일 아포스티유를 발효함으로써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였다. 동 아포스티유 발효 전 많은 외국기업들이 공문서 인증시간과 절차에 따른 불만을 호소해 왔다.

환경관련 규제

코스타리카는 화산, 해변, 하천, 밀림과 다양한 동식물을 바탕으로 Eco-tourism(생태관광)이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원 개발의 경우에도 산림 자원이나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법, 탄수화자원법, 에너지절약규정, 생물다양성법, 수자원법, 토양관리보존법, 환경기구법 등이 있으며, 가입한 국제협약으로는 식물채취거래협약 등이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국립환경기술국(SETENA)이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며, 최근 많은 지방 정부들이 건축허가(Building permit) 발급허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해당기업은 1차적으로 국립환경기술국에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D1(소규모), D2(중·대규모)서류를 제출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B2 범주(低환경영향)에 속할 경우 추가적으로 환경보전진술서(DJCA)만 제출하면 되지만, 만약 프로젝트가 B1범주(환경영향 중간수준)에 속할 경우 앞선 환경보전진술서와 더불어 예비환경관리계획서(P-PGA) 및 환경영향연구(EsIA)도 제출해야 한다.

품목별 장벽

음식물의 수입 및 등록(Decreto No.26725-S)

코스타리카로 수입되는 모든 음식물은 고위험 품목과 저위험 품목으로 분류하며, 분류된 품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고위험 품목(유제품, 일부 수산제품, 육류 등 미생물 및 잔류약품 검사가 필요한 제품): 공인된 전문연구소의 제품특성 분석증명서(일반특성, 화학 특성, 생화학특성 등), 국립 공인 연구소의 화학, 생화학, 성분분석 증명서, 코스타리카 보건국의 식품유통허가서, 원산지에서 판매 및 일반소비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에 사용하는 증명서
- 저위험 품목: 공인된 전문연구소의 제품특성분석증명서(일반특성, 화학특성, 생화학특성 등), 코스타리카 보건국의 식품유통허가서

일단 등록된 제품은 5년간 유효하며, 추후 갱신도 가능하다. 그러나 갱신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등록자만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된 제품은 등록자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도 수입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다른 수입업자는 제품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수입업자등록신청서

를 제출, 해당제품의 수입업자로만 등록하면 되나, 이 경우에도 품목당 100달러 정도의 등록비용은 납부해야 한다.

보건부 홈페이지(www.ministeriodesalud.go.cr)에서는 보건부에 등록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다.코스타리카 보건부는 2014.8.21자로 의약품 등록 중미통합시스템(El reglamento unico para el Registro de Medicamentos)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주재국의 경우 의약관련 제품 등록은, 화장품(1개월), 의약기기(3개월), 의약품(5개월) 등이 소요된다.

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정책

코스타리카 정부는 현재 쌀 가격을 법으로 지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0년 WTO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우루과이, 호주, 캐나다 등 40여개국은 코스타리카에서 최근 몇 년간 이 정책으로 인해 시행된 보조금이 허용치(연간 1,590만 달러)를 계속 초과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코스타리카 정부는 2013.5월 생산성증대를 목적으로 2014.3월 이후 쌀에 대해 적용되어오던 시장 고정요금제(Price fixing)을 철폐하겠다는 법령을 발표하였으나, 국내쌀생산자협회(Conarroz) 및 쌀 생산 농가의 반대에 부딪혀 동 요금제 철폐를 기존 2014.3월에서 1년 연장된 2015.3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코스타리카 농수산업은 평균 9%의 관세보호율(Tariff Protection)을 적용받고 있으나(WTO 최대기준치 14%), 육류, 유제품, 감자, 양파, 설탕, 쌀 등 일부제품은 이보다 더 높은 관세보호율을 적용받는다. 제조업의 경우 평균 6-7%의 관세보호율을 적용받으나, 담배, 통조림 등의 제품에 대한 보호는 강한 편이다.

코스타리카는 수출 및 산업진흥을 위해 1990년 자유무역지대법(법령 7210)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수출지원금 철폐를 골자로 한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ntervailing

Measure) 개정에 따라 2010년 자국의 자유무역지대법(법령 8794)을 개정하였다. 2010년 개정된 자유무역지대법은 기존 수혜기업이 가지고 있던 국내판매제한을 철폐하고, 국내 저개발지역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개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데 초점이 있다. 이와 별개로 코스타리카 정부는 2006.6월 WTO에 기존 자유무역지대법(법령 7210)과 준자유무역지대인 역내가공(Inward Processing)지대 수출에 대한 지원금 유효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WTO는 이를 2007년에 승인하였다. 동 지원금은 WTO의 연장승인이 없는 한 2015년 이후 철폐될 예정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시장 현황

코스타리카는 조달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으며 각 부처와 기관이 예산사정에 맞게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조달법은 정부조달 시장의 균등한 참여기회와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직접참여를 규제하지는 않고 있지는 않으나 계약사항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코스타리카 감사원 지침에 의거, 입찰 발주기관들이 현지에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을 통한 참가를 요구하여 사실상 현지 기업을 입찰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조달시장 개방

미국과의 CAFTA 협상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코스타리카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가 매우 유리해졌다. 미국은 CAFTA 협상을 통해, 입찰시장에서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경쟁, 동등대우 및 차별금지, 투명성, 공개, 효율 등의 원칙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입찰기관의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충분하게(최소 40일 이상

공고) 두어야 하며, 상거래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기 위한 목적의 특정한 규격 설정도 할 수 없다.

CAFTA의 국제입찰 관련규정을 적용받는 입찰 건의 최소금액은 상품 서비스의 경우는 58,000달러(공기업의 경우, 25만 달러 이상), 건설의 경우에는 672만 달러이다.

한편 코스타리카 정부는 조달 행정의 고질적 문제였던 장기 소요 시간 문제와 투명성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반을 둔 전자조달시스템(MER-LINK, www.mer-link.co.cr)을 2010년 8월 오픈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2013.3월 기존의 정부조달시스템을 Mer-Link로 단일화하였다. 2014.5월 신정부 출범이후 정부조달시스템을 Compra Red(칠레기업이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재무부가 주축이 되어 사용)로 단일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Solis 대통령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지식재산권 보호

코스타리카 지식재산권 보호는 1949년부터 법으로 지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국립저작권등록원이 1989년에 설립되어, 상표권 등록 및 저작권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지적재산권국제기구(WIPO) 및 파리협약, 베른협정에 가입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을 쓰고 있으며, 일반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문학, 과학, 법률, 음악, 건축 작품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 등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경우, 코스타리카 불법 복사 컴퓨터소프트웨어 사용률이 2010년 50%로 집계되어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경우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코스타리카는 지난 몇 년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8년 식물변종보호법(Law on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을 제정하고, 2011년 도화결의문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에 대한 프로토콜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CAFTA 협상에 있어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강화기준을 코스타리카에 제시했으며, 이에 코스타리카는 지적재산권 위반 시 최대 형량을 5년으로, 과태료를 기본임금의 500배로 인상했다(법령 제 8039호). 그러나 상기 법령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내 학생들이 비싼 교과서 등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코스타리카 의회는 2012년 6월 법령 제 8039호의 개혁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권한법(Expendiente 제 17.342번)을 통과시켰으나, 이후 친치야 대통령이 동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특허

코스타리카는 1998년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였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법적으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연장불가를 조건으로 20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으며, 멕시코의 특허를 소지한 자는 특허소지자가 특허품 또는 특허공정을 사용한 제품을 수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부여받은 후 3년 이내에 특허를 이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코스타리카 특허시스템은 특허,산업디자인,실용모델에 대한 법령 6867에 의해 관리되며, 동 법은 2008년 3월(법령 8632)과 11월(법령 8686)에 의해 두 차례 개정되었다. 2008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허부여 지연을 방지하고, 특허소지자에 대한 절차상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에 따라 국립등기소(Registry of Industrial Property)에서 특허신청서가 제출된 날짜로부터 5년 이내 특허허가가 나오지 않을 시 동 기간만큼 특허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특허소지자가 기술적 또는 재정적 이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통상산업부는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비독점적인 허가를 발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불해야 할 로열티 및 다른 허가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지정한다.

만약, 의무적인 허가가 부여되고 2년을 경과하고도 특허소지자가 합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으면서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상표

관련법에 의거, 상표는 15년간 등록될 수 있으며 무한정으로 15년씩 연장될 수 있으나, 등록 후 최소 3년 이내 등록된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경제부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 자체를 재검토하게 된다. 상표 등록은 국립등기소에서 관할하며, 5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코스타리카 법령 7978 제 8조(2008년 법령 8632를 통해 개정)는 모든 국내외 상품에 대한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혹은 원산지 명칭(Appellations of origin)을 보호한다.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는 코스타리카산 바나나(Banano de Costa Rica), 코스타리카 커피(Cafe de Costa Rica), 뚜리알바 치즈(Queso Turrialba) 등 세 개의 원산지 명칭이 등록되어 있다.

비디오 및 오디오에 대한 저작권 보호

특별히 비디오 및 오디오, 책 및 기타 지적 또는 예술적인 재산 및 제품,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소유자 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스타리카 국립등록원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상업적으로 이들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소재를 이용하거나 재생산하는 제품은 동 사실을 밝혀야 하며 해당 기업의 사용 승인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투자정책 및 장벽

개요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서 가장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사회 안정, 질 높은 생활여건, 의무교육 실시를 통한 고급인력 보유,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주변시장으로의 접근용이성 등을 내세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현지가공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초기투자 15만 달러 이상과 수출비율 75% 이상 등 적정 요건을 갖출 경우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대법(법령 7200)을 1990년에 제정하여 전통적인 농업 중심 경제에서 제조업 및 산업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2010년 1월 자유무역지대법 개정을 통해 (법령 제8794호) 기존 수출비율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 또한, 수도권지역(GAM) 대비 저개발 주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할 경우, 기존 수도권지역에 비해 우호적인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도 상기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어, 투자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기존 법령 7200의 혜택은 WTO의 연장 승인이 없는 한 2015년 이후 철폐될 예정이다.

코스타리카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528불(2013년)로, 여타 중미국가와는 달리 단순 노동집약산업의 투자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90년대 중반까지 10여개 회사가 활동 중이던 한국의 봉제 투자기업들이 대부분 철수 내지 인근 국가로 이전한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Intel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공장, Protector & Gamble, Abbott 등 다국적 제약업체 생산 공장,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콜센터 등이 코스타리카에 설치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코스타리카는 전문 인력을 이용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비교적 앞선 IT 인프라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260개의 다국적 기업 진출)

코스타리카 정부는 모든 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령이 없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해 자국 기업 투자, 차별적인 인센티브, 제약규정 등을 운영하지 않는다. 공중보건이나 환경보전과 관련된 문제만 없다면 어떤 기술의 도입도 가능하고, 자본투자나 과실송금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고, 다만, 5만 달러가 넘어가는 투자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경쟁정책

코스타리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기본적으로 내국기업과 동등한 자격조건으로 국가경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투자제한에 대한 원칙은 없으며, 코스타리카 헌법 상 일부 국유사업을 제외하고 무역자유를 제한하는 독과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반재화에 대한 물가통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전력생성단가, 대중교통요금, 연료가격 등 일반 공공서비스요금의 경우 공공물가서비스청(ARESEP)에 의해 통제·관리된다. 이러한 코스타리카의 자유무역원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외국인 지분 참여가 제한된 사업 분야가 있으며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독점 부문

통신, 보험, 석유수입의 3개 업종은 국가독점으로 규정되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CA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통신, 보험시장 개방요구를 수용하였으며, 2009.1월 CAFTA의 발효와 함께 동 시장에 대해 점진적으로 민간부문 참여가 가능해져, 현재는 석유수입만 국가독점 부분이다. 국영공사(RECOPE)는 석유를 포함한 탄화수소(Hydrocarbon)의 수입, 정제,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2) 투자제한 부문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전력생산, 관광서비스, 교통운송 부문 등이다.

코스타리카 전력공사(ICE)는 대부분의 국내전력 생성 및 공급을 책임지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전력설비용량은 2,590MW 수준이다. 내·외국기업을 불문하고 민간부문 참여는 총 생산량의 30%로 제한되어 있으며, 전체 자본금의 35%까지 외국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법령 제7200호에 따라 민간기업의 전력 생산을 전체 생산량의 15%까지 허용한다(개별기업 최대 20MW 규모). 또한, 법령 제 7508호에 의거, BOT방식으로 건설 된 전력플랜트의 경우 총 생산량의 15%(최대 50MW)를 추가로 생산가능하다.

관광서비스 부문에서도 국내선 항공사의 경우 외국자본의 참여는 49%까지만 허용되며, 해안선(밀물 기준)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호텔 등 관광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도 외국기업의 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된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사업면허 발급에 있어 외국투자기업보다는 자국 자연인 및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해운운송면허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외국투자기업을 배제하고 있다.

서비스분야 진출 장벽

이전에는 통신, 보험서비스업은 국가의 독점사업으로, 진출이 불가능했으나, CAFTA-DR 관련 이행법안(통신법 제 8642호와 보험시장규제법 제 8653호)의 통과로 시장이 개방되었다. 통신 분야의 경우, 2011년 상반기에 열린 휴대전화 서비스면허권입찰을 통해 America Movil사의 Claro(멕시코)와 Telefonica사의 Movistar(스페인)가 코스타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권(15년 기간 및 추가 10년 연장 가능)을 획득함으로써 통신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시대가 열렸다. CAFTA-DR 체결 후 점진적

으로 개방되어 온 주재국 보험시장의 경우 2007년 4.91억불에서 2013년 9.24억불로 시장규모가 증대되었으며, 이는 2018년까지 전체 GDP의 1%, 2023년까지 1.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9월 CAFTA-DR 이전에 동 분야 독점을 행사했던 주재국 보험공사(INS)의 시장점유율은 87%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사고/보건분야 및 주택분야 등에서 보험공사의 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보험공사의 시장점유율이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이 현지에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진입장벽은 없고, 현지에 법인등록을 하고 적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법인설립, 지사 및 사무소 설치상의 제한

코스타리카의 경우,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이 없고, 외국인 임직원의 영주권을 필요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굳이 지사나 사무소 형태로 진출할 필요성은 없다. 오히려, 지사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코스타리카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합병회사(General Partnerships),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s),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ies)를 설립할 수 있다. 회사설립절차는 총 1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까지 평균 60일이 소요된다.

국산화의무 또는 수출의무 부여

투자진출이 코스타리카 현지시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국산화에 관련된 의무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코스타리카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중미시장을 목표로 하는 임가공 기업들이므로, 만약 코스타리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주변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관련 무역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인정기준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중미공동시장 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 중미원산지규정이 사용되는데,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된 제품은 역내 생산 부가가치가 35% 이상이어야 중미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의 원산지 규정은, 신발, 자동차 등의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금액 기준으로 역내생산자재가 35% 이상 사용되거나(Build-up방식), 역외생산자재를 뺀 비중이 45% 이상일 때(Build-down방식)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임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한 기업이라도 면세로 들여온 원자재를 활용하여 생산된 완제품의 25%까지를 코스타리카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데, 이 경우에는 관련 원부자재에 대한 해당 비율의 수입제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도 여권만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도 없다. 단, 해변의 경우에는 민간인이 구입하는 대신 국가가 민간에 사용권을 일정 기간 임대해 주는 형태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부동산의 거래 조건은 다른 일반 부동산과는 다르고, 구역이나 점유에 있어 규제가 있을 수 있다.

만조선으로부터 200미터 내의 토지가 해상구역의 경계로 설정되며, 원칙적으로 모두 정부의 소유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해안부동산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데, 해안에서 50미터까지는 공공장소로서 그 사용이 크게 제한되며, 나머지 150미터 구역은 지방정부에 의해 특별한 조건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니카라과와 파나마와의 국경 2,000미터 내의 지대에 농업, 상업, 산업, 주택 건설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개발기구(IDA)의 허가가 필요하다.

부동산은 반드시 코스타리카 공공등기소에 판매자로 등록된 변호사나 공증사무소를 통해 발급된 공공 절차를 통해 구입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증사무소는 구매자가 선택하지만, 부동산에 대출이 있거나 모기지로 묶여있으면, 판매자가 공증사무소를 선택하게 된다. 구매와 관련된 비용은 전체 구매비용의 3~4% 정도로, 이 비용에는 법률비용, 세금과 기타 일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상의 제한

코스타리카는 외환거래에 대한 일체의 규제가 없으며, 일반 개인 사업자들의 외화 송금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도 투자이익을 본국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향후 투자를 철수할 때에도 회수된 투자 금액을 전액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5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관리하기 위해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에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 과실송금에 있어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업종별로 5~30%의 세금이 부과된다.

10만 달러 이상을 송금받기 위해서는 자금의 출처를 증빙해야 한다.

세제상의 제한

앞에서도 여러 번 기술하였듯이 코스타리카는 경제활동에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세제상에서도 외국기업을 따로 차별하지는 않는다. 코스타리카는 투자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제정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현지 투자 법인에 면세조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법정세율 및 자유무역지대법 혜택

항목	법정세율	자유무역지대법
사업소득세	30%	초기8년 100% 및 이후 4년 50% 면세. 재투자에 따른 기간연장 가능
수출입관세	제품별 상이	100% 면세
해외송금세	25%	100% 면세
판매세	13%	현지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0% 면세
인지세	1%	100% 면세
재산세	0.25%	10년간 100% 면세
부동상 등기 이전세	1.5%	10년간 100% 면세
특허세	0.3%	10년간 100% 면세
원천과세	최대 25%	100% 면세
이자소득세	8%	100% 면세

현지 투자 법인은 자유무역지대법에 의한 면세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 현지 기업과 동일한 사회보장세 납부의무,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닌다. 현지인 고용 시 고용주는 주재국 사회보장청(CCSS)에 임금의 26.17%를 사회보장세 명목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개별 노동자는 전체 임금의 9.17%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한다.

-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26.17%): 건강보험(9.25%), 연금(4.92%), Popular 은행 및 지역사회개발 은행(0.50%), 직업훈련원(1.5%), 사회복지연구소(IMAS)(0.50%), 가족복지프로그램(ASFA)(5%), 노동훈련기금(3%), 퇴직연금(1.5%)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코스타리카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코스타리카 측의 사정으로 협상이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타리카는 지난 2009.4월부터 OECD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간 호주, 덴마크, 프랑스, 멕시코 등 12개국과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한 결과 2011년 7월 OECD는 코스타리카를 조세피난처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코스타리카는 2012년 3월 중미국가 중 처음으로 OECD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가입하였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일반적으로 상담이나 회의 참석, 전시회, 기술 출장 등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관광비자만으로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광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출국항공권을 소지한 사람은 90일 범위 내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인은 비자 없이 코스타리카에 입국할 수 있다. 한편,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남미국가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는 이들 국가를 거쳐 코스타리카로 입국할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바로 입국할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이 불필요하다.

2011년 5월 코스타리카 정부는 국내에 기 진출했거나 향후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임직원에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2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단기 체류(90일)일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 관광 국가답게, 관광비자라도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는 한국 등 외국의 운전면허증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이다. 장기체류일 경우에는 비자연장을 놓치는 경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해 놓는 것이 좋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유효한 자국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외국인은 도로안전위원회(CONSEVI)에서 코스타리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시에는 신분증명서(여권, 영주권 등), 자국 운전면허증, 의사검진서 및 발급비용 8달러(4,000콜론)가 필요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주재국 금융시장 현황

현지의 주요 은행으로는, 4개 국영은행(Banco Nacional, Banco de Costa Rica, Bancredito, Banco Popular)와 12개의 민간은행(Scotiabank, BAC San Jose, Promerica, HSBC 등)이 있는데, 국영은행은 예금보호가 되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민간은행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예금보호가 되지 않고, 산호세 및 수도권에 점포가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절반 이상의 국민이 국영은행에 예금계좌를 현재 보유하거나 혹은 한 적이 있다. 민간은행의 경우, 단기대출, 부동산대출의 비중이 높고,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 금리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 도입된 것은 2006년 이후로, 계좌 조회, 같은 은행 간 송금, 공과금납부 등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상점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수도권에는 자동인출기(ATM)도 많이 보급되어 있다. 외국인도 여권만 있으며 자유롭게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2012.10월 이후부터는 코스타리카 이민청이 발행한(외교관의 경우 외교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2006~2007년 사이에 금융업 분야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현재 코스타리카에 진출한 외국은행은 Scotiabank(Interfin 인수), HSBC(Banex), Citibank(Banco Uno, Cuscatlan), Banco Promerica, Cathay, Banco General, Banco Improsa, Bansol 이 있으며, 한편 2005년 Banc San Jose은행 지분을 매입하고 2007년 Miravalles 금융그룹을

인수했던 GE Money는 2009년 10월 지점을 닫고 BAC로 서비스를 이전했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장벽

금융업과 관련된 투자제한조항은 없다.

콜롬비아

관세·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

콜롬비아는, 원칙적으로, 1990년대 초 이래 원칙적으로 용도별 5개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그룹별로 아래와 같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 ○ 1그룹(0%)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 ○ 2그룹(5%)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물 및 식물
- ○ 3그룹(10%)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물 및 식물 일부
- ○ 4그룹(15%)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 ○ 5그룹(20%)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상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한편 관세의 종류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으며,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되며 특혜관세의 경우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당사국간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로서, 콜롬비아가 체결(발효)한 주요 경제협정은 아래와 같다.

○ CAN 특혜관세 : 2006.5월 콜롬비아 까르따헤나 협정에 의거한 안데안 공동시장(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회원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에 대한 특혜관세로 궁극적으로 회원국 간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음. 회원국은 제 3국과의 무역협정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음(공동대외관세 비적용). 상당수 품목에 0% 관세율이 적용되나, 국가별, 품목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적용함.

○ ALADI 특혜관세 : 기존의 중남미 자유 무역 연합(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Libre Comercio)을 대체하여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의거 중남미통합연합(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이 창설됨. 설립 목적은 공동 자유무역지대의 창설보다 회원국 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무역을 진흥시킬 수 있는 체제를 제공하는데 있음. 2014년 현재 회원국은 총 13개국임(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쿠바, 파나마).

○ 콜롬비아-Caricom 특혜관세 : 콜롬비아는 ALADI 협정에 의거하여 1994.7.24 카리브공동체(Caricom)와 특혜관세 조약을 체결함. 동 FTA에는 원산지규정, 기술규격, 구매촉진, 무역금융, 서비스무역, 교통,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콜롬비아-Mercosur FTA : 2004년 CAN과 Mercosur 간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동 협정이 2005.1월 발효됨. 콜롬비아는 동 FTA를 통해 수출기획증대와 함께 자본재 및 원자재를 더 경제적인 가격에 확보하여 국가생산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동 협상에는 내국민대우, 비대칭(asymmetry),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됨.

○ 콜롬비아-Triángulo Norte FTA : 콜롬비아는 2006년 중앙아메리카 Triángulo Norte 국가들(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과 FTA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07.8.9 협상이 타결되고 2008.6월 콜 의회에서 비준됨. 동 FTA에는 시장개방,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협력(cooperation), 분쟁조절, 정부조달,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SPS 협정,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 원산지규정, 무역보호규정(trade protection measures) 등이 포함됨.

○ 콜롬비아-칠레 FTA : 2006.11.27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였으며(금융 및 항공 서비스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동 협정은 2009.5.8 발효됨.

○ 콜롬비아-멕시코 FTA :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3국 간 FTA 체결안인 G-3(Grupo de los Tres) FTA는 2006.5월 베네수엘라의 탈퇴에 따라 콜롬비아와 멕시코 양국간 FTA로 변화됨. 2009.8월 양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2011.8월 발효됨. 동 협정에는 기존 관세감세 협약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농산물 및 공산품이 포함됨.

○ 콜롬비아-EFTA FTA : 콜롬비아와 EFTA(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간 FTA는 2008.11.25 서명 후, 2010년 승인되었음. 이후 2011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의 FTA가 먼저 발효되었으며, 2014년 노르웨이와도 발효되었으나, 아이슬란드와의 FTA는 현재까지 발효되지 않았음. 동 협정은 농산물 및 공산품의 무역자유화,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무역원활화, 서비스교역, 인적교류,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투자규정,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콜롬비아-캐나다 FTA : 양국간 FTA는 2008.11월 서명 후, 2011.8월에 비준됨. 양국간 협정에는 무역자유화 이외에 노동 및 환경에 관한 협력이 포함됨.

○ 콜롬비아-미국 FTA :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2003.11 미 상공부 대표의 콜롬비아와 FTA 협상의사 공식 표명이후, 2006.11.22 콜-미 통상교섭협정서(Acuerdo de Promoción Comer cial)·양해각서·부속서류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짐. 이후 2011.10.21 오바마 대통령이 콜-미 FTA이행법안에 서명하였으며, 2012.5.15 발효됨. 콜 측은 동 FTA를 통해 5년 이후 1%의 추가 경제성장하고, 미국의 대콜롬비아

직접투자가 약 19%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콜롬비아-EU FTA : 콜롬비아와 EU간 FTA는 지난 2010.5월 협상 종료 후, 2012.6월 협정서 서명 완료됨. 양측 의회 비준을 마친 후 2013.8.1부터 잠정 적용이 시작되었으나,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서 FTA 잠정 적용을 위헌으로 판결내림에 따라 잠정 적용은 2014.11.8일까지만 유효함. 그러나 콜 헌재에서도 FTA 협상안 자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함에 따라 FTA 발효를 위한 최종 확인 절차만 남음. 콜롬비아 무역투자관광진흥청(Procolombia)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현재 EU에 1,469개의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FTA 협정에는 총 9,745 품목이 포함되었으며 이중 97.2%가 관세 철폐 대상임. 콜 측은 자국의 818개 이상의 품목이 대EU 수출 기회를 확보하여 콜롬비아 국내총생산이 0.46%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 의정서 : 2012.6 칠레에서 태평양동맹 4개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한 태평양동맹 설립 협정서는 2014.6.17 콜롬비아 의회에서 승인받음. 한편, 2014.2.10 회원국간 전체 교역품의 9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하는 의정서를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하였으며, 이후 9월에 콜롬비아 상원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됨.

- 나머지 8%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중단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폐될 예정

○ 한-콜롬비아 FTA : 양국은 2009.12월 협상을 시작한 후 2013.2.21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이후 2014.9.11 비준동의안이 상원 제2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11.24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임.

○ 콜롬비아-코스타리카 FTA : 양국은 2012.7월말 협상을 시작한 후 2013.5.22 협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4.5.5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최종 비준하였으나 콜롬비아에서는 현재 국회의 비준 절차 진행 중에 있음(최근 상원 본회의 통과).

○ 콜롬비아-이스라엘 FTA : 양국은 2012.3월 협상을 시작한 후

2013.9.30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 콜롬비아-파나마 FTA : 양국은 2010.3월 협상을 시작한 후 2014.9.19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비관세장벽

(1) 표준과 규격

콜롬비아 상공부가 표준, 품질, 인증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표준 보증기구인 ICONTEC(El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으로 하여금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국가인증기구인 ONAC(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으로 하여금 국가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Conformuity) 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의 수입만을 허가하고 있으며, 한국상품 규격과의 마찰은 없다.

콜롬비아 INCOTEC이 제정한 각 기술규정(RT: Technical Regulation)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ONAC이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accredited or designated body)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적합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기술규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 위생검역기준(SPS)

2006년 법령 2833에 의해 식품동식물검역규제위원회(Comisión Intersectorial de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가 설립되어 SPS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동 위원회는 콜롬비아 농축산연구소(ICA: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국립식품의약품감독청(INVIMA: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상공감독원(Superindendeneia

de Industria y Comercio), 국가보험공단(Instituto Nacional de Seguros) 등 기관으로 구성된다.

ICA는 동식물 검역 및 건강문제를 담당하며, INVIMA는 식품, 의약품 안전 및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한다.

(3) 바이오디젤

콜롬비아는 유휴토지 활용, 고용창출, 대체에너지개발,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바이오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제정 및 기술을 개발하였다.

2011.12.26 발효된 시행령 4892에 의해 동 시행령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에탄올 연료를 8-10% 혼합하여 사용해야한다. 그리고 2013.1.1부터는 광물에너지부에서 고시하는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수출보조금

콜롬비아는 1994.12.15일 WTO협정을 수락하면서 2003.1.1일부터 수출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2006.12.31일까지 연장 시행한 후 폐지하였다.

수입규제

(1) 세이프가드

○ 진행 절차 : WTO 회원국인 경우, 1998년 제정된 WTO 회원국 간의 섬유, 의류, 농축산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협정을 콜롬비아 국내법으로 제정한 법령 152를 적용함. WTO 비회원국인 경우, 1999년 제정된 법령 1407을 적용하나, 세이프가드 시행을 요청한 측이 요구하는 새로운 관세율이 해당 제품에 대해 현 법령하에서 콜롬비아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관세율 이하일 경우 1407 법령을 WTO 회원국

에도 적용 가능함.

- 법령 1407에 따른 조사절차 : 상공관광부 대외무역국은 조사 요청 접수 후 5일 이내 접수 확인을 통보하고 이를 일간지 게재함. 게재일로부터 10일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상고부는 공고 확인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대외무역관세위원회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함. 동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외무역고위자문회의에 권고안을 전달하며 동 자문회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

○ 문제점 : 법령 1407에 근거한 절차를 따를 경우, 공청회 시행이 생략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한이 10일로 한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더 간략한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 콜롬비아 기업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사에 있어 주로 법령 1407의 적용을 요청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적용사례

- ANDI(콜롬비아 전국경제인연합)에서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대외무역국에 한국산 타이어코드 직물에 대한 현 관세(10%)를 20%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서한을 통해 법령 1407을 적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 바, 현재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를 위한 대외무역 고위자문회의 최종 승인만이 남아 있음.
- ANDI에서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대외무역국에 합성 필라멘트에 대한 현 관세(5~10%)를 15%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서한을 통해 법령 1407을 적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 바, 현재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를 위한 대외무역 고위자문회의 최종 승인만이 남아 있음.

(2) 반덤핑

○ 절차 : 콜롬비아 법령 2550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담당 기관은 상공관광부 산하 대외무역국내 무역관행과임.
  - 법령 2550에 따른 조사절차 : 반덤핑 조사 요청 접수시 담당 기간은 2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20일 연장 가능), 조사 개시 결정시 이를 관보에 게재함. 관보 게재일로부터 7일 이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서명 통보를 실시하며 조사 개시 1개월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됨. 조사 개시 2개월 이내(30일 연장 가능) 예비 판정을 내리며, 이로부터 3개월 이내 무역관행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 위원회의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공부는 최종 결정을 내림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적용사례
  - 콜롬비아 기업에서는 한국산 플라스틱 가소제 및 PVC 필름에 대한 덤핑 여부 조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PVC 필름은 조사 대상 상품과 동종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플라스틱 가소제의 경우 덤핑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덤핑 조치적용에서 배제된 바 있음.

서비스 장벽

○ 시장개방이 비교적 잘 이행된 분야
  -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시장, 회계/감사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및 관광시장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 졌음

○ 시장개장이 지체되고 있는 분야
  - 콜롬비아 법에 따라 내국 외국법무법인만 허용되고 있어서, 외국법무법인은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로서 활동 가능
  - 정보처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commercial presence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GATS 협정 4가지 mode 중 cross-border 서비스

불허

- 외국인이 100% 투자하는 보험회사 설립은 인정하고 있으나, 콜롬비아 내에서 지점의 설치를 금지

○ 외국인이 콜롬비아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요테스트"(Economic Need Test)를 거쳐야 함.

- 또한 회계, 기장(bookkeeping), 건축사,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의료 및 치과진료서비스는 거주자에 한하여 상업적 영업활동을 허용
-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업체에서 일반직의 10%, 전문직의 20% 이상을 외국 국적인으로 충원 불가

금융서비스

콜롬비아는 100% 외국인 출자 보험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보험업체의 국내지점 설치는 불허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해상보험 시장 진입도 불허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외국인 금융기관의 경우, 지사 또는 지점 형태를 통하여 콜롬비아 금융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외국금융기관지사는 자본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관련한 콜롬비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2004.9월 콜롬비아 정부는 국제상업금융기관이 콜롬비아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콜롬비아 내에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Decree 2951).

기간통신서비스

1989년 telelcommunciation 부문에서 정부의 독점이 종식되고 1990년 대통령령 1900을 통하여 전반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되었다. 1994년 SSP (Superintendent's office of Public Services)와 CRT(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Telecommunciations)을 창립한 바, 국내·국제 네트

워크, 시스템, 서비스 등의 콜롬비아 내 설치, 탐사, 사용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 1990은 Telecommunciation 서비스의 유형을 Basic, Broadcast, Telematic, Value added, Ancillary aid, Special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의 최대 진입 장벽은 1) 높은 license fee, 2) 보조금(cross subsidies),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4) 경제적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s test) 등이다.

콜롬비아는 WTO 협상과정에서, 특히, 기간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개방 약속을 하고, 시장개방의 기준이 되는 WTO reference paper를 채택했다.

그러나 상기 협상에서 callback service를 금지하고, fixed and mobile satellite system 서비스를 양허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콜롬비아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economic needs test를 요구하면서도, Economic need test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 중 1) carrier, 2) national and long distance, 3) cellular mobile telephony 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약 70%까지 지분율을 허용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1999년까지 cellular mobile phone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시장을 3등분하여 각 market segmentation 별로 2개씩의 독점사업자를 인정하였다.

2003년 통신시장이 개방되면서 PCS 시장에서의 경쟁체제 도입하고 정부는 2003.10월 Colombia Movil(Tigo)에게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서, 그간 Telefonica(Movistar)와 Comcel이 양분해온 duopoly 체제가 종료 (2011년 시장점유율은 Comcel 65.9%, Movistar 22.4%, Tigo 11.2%, 기타 0.5%)

※ Colombia Movil사는 보고타시와 메데진시가 각각 지배하고 있는 전화통신사인 ETB, EPM과 MILLICOM(룩셈부르크)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

영화 및 방송시장

1995.1월 콜롬비아 정부는 위성텔레비전 방송을 허용하면서, 국내방송시장에서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송비중을 규제하기 시작한다(Television Broadcast Law of 182/95).

동 법은 방송시간대에 따라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송비중을 달리 규제한다.

- 19:00~20:3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70% 이상)
- 10:00~19:0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50%)
- 20:30~자정시간대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5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기준은 모든 제작과정이 콜롬비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출연배우의 90% 이상이 콜롬비아 국적인이어야 한다. 모든 외국영화에는 일정액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징수된 세금은 국산영화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콜롬비아 TV위원회(CNTV)는 2008.8.28일 유럽식 DVN Digital 방송수신을 채택하였으며 향후 2년 내 25%의 콜롬비아 가정이 Digital 방송시청이 가능하고, 10년 내 전국 가정의 93%에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Digital 방송사업은 약 1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1.29일 보고타 일부지역에서 3개의 공공채널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첫 디지털방송이 시작되었으며, 2012년 현재 동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전자상거래

1999.8월 발효된 “Electronic Commerce Law of 527”은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디지털 인증서 발급 등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마련한다.

- 2000.9월 상기 법 시행령 1747호를 공포하고, 디지털 인증서 효력 요건 및 디지털분야 설립법인의 최소자본금 등을 규정
- 2000.5월 콜롬비아와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에 관한 합의문” 서명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 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5년도 1.5억 달러였으나 2008년부터 빠르게 성장하며 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 이르러 1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현재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내 전자상거래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정책적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1) 정보통신기반설비의 확장, 2) 통신서비스의 개선, 3) 신용카드사용의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제도의 개선과 함께 재정투융자를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2014.10.21에는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Ley de Inclusion Finanaciera)을 비준한바 있음. 이 법은 ‘4 por 1000’ 수수료(주재국에서 일부 은행 거래에 대하여 은행에서 부과하는 0.4%의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으며,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신청을 위한 요구 기준이 일반 은행보다 낮은 별도의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함.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약 2천만명의 주재국 국민이 은행 서비스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정부조달

2003.6월 콜롬비아 정부는 Law816호를 공포하면서, 정부조달과정에서

자국업체와 자국산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상기 법령은 정부조달과정에서 콜롬비아업체에게 콜롬비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20%의 보너스점수, 외국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5~15%의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WTO 정부 조달 협정 옵서버 국가이나 당사국은 아니다. 콜롬비아는 정부 조달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멕시코와 안데안 공동체(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에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FTA가 발효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조달사업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가 부여될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규범일반

1. 국내법

헌법 제61조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및 요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재산권(대통령령 2592(2000년)/안데안 결정 486(2000년))
- 저작권(법 23(1982년), 법 44(1993년)
- 식물변종(대통령령 533(1994년))

2. 다자규범

(1) WTO 규범

○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법 170(1994년))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협정(법 456(1979년))

(3) 안데안 규범

안데안 공동시장 과정에서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을 바탕으로 안데안 결정 486(2000년)에 합의하였다.

- 발명특허, 산업디자인, 상표권, 원산지 규정 등
- 내국민, 최혜국 대우 규정

○ 저작권에 관한 안데안 결정 351(1993년)
○ 식물변종 관련 안데안 결정 345(1993년)

(4) 양자협정

○ G-3 FTA 제18장(법 172(1994년) :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3국간)

○ 콜롬비아-미국 FTA
- 지식과 연구 결과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접근 허용
- 협정상 처음으로 생물다양성의 개념을 인정하고 국가의 사전 동의에 의거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유전물질 접근 허용 및 유전자원의 사용에 의한 혜택을 공동체에 균형 있게 배분함을 규정
- 혁신(innovacion)과 기술발전의 증진에 관한 내용을 FTA에 처음으로 규정한바, 이에 따라 양국 간 과기협력의 틀을 마련
- 저작권에 관해서는 콜롬비아 국내법 규범의 본질을 유지하되 인터넷 등 신기술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하고, 사용용도 특허, 치료방법특허, 동·식물 발명 특허 등은 불인정

(5)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기관

○ 저작권청(DNDA: Dirección Nacional de Derecho de Autor)
○ 상공감독원(Superindendeneia de Industria y Comercio)

○ 콜롬비아 농수산연구소(ICA: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특허와 상표

콜롬비아는 특허권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하되, 특허분쟁 야기 시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는 영업비밀(trade secrets), 변종식물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WTO TRIPS 체제에 근접하고 있다. 2002년 콜롬비아 정부는 "비밀 데이터(confidential data)"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Decree 2085)을 발효시켰다. 2002년까지 콜롬비아 정부는 이미 허가를 받은 약품과 "생명공학적으로 동일한(bioequivalent)" 신약의 상업적 시판을 허용하여 왔으나, 상기 법령의 발효로 상업적 시판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03.3월 콜롬비아 농업부는 농화학 제품(Agricultural chemicals)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법령(Decree 502)을 공포한다. 그러나 2003.7월 콜롬비아 정부가 generic agricultural chemicals에 대한 등록 및 통제를 완화시키는 법령을 입법하여, 농업부 법령 제502호의 효력을 반감시켰다.

콜롬비아에서 발명특허로서 흔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치료·수술방법, 발명이 아닌 용도(uses), 새로운 용도(원 특허에서 유래되는 다른 용도), 기능상의 특성(functional characterization) 등이다.

콜롬비아는 Integrated circuits layout-design 도 10년간 보호하고 있는바, 보호요건으로는 독창성(novelty)과 원천성(original)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허법령의 시행역량이 부족하고, 지난 수십 년간 내전으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전통이 결여되어, 밀수와 위조가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

상표등록은 상공감독원(Superindendeneia de Industria y Comercio)에서 접수받고 있다. 등록상표는 콜롬비아에서만 인정되고 안데안 등 지

역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등록은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

1994.1월 안데안 공동시장 저작권보호협정에 가입하였고, 현대적 체계를 갖춘 저작권보호법(Law 44 of 1993)이 발효되어 컴퓨터 software에 대하여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콜롬비아 민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작권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는 베른 협정과 UCC(Universal Copyrights Convention) 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S/W의 경우 정품사용자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백업 본 1개만 복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목적의 복사는 모두 저작권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술작품 및 서적의 경우도 강제사항은 아니나 저작권기구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도

일반적 투자 환경

외국인 투자는 내국민 대우를 받고 있다. 외국인 100% 투자는 국방관련 분야와 유해물질 제조 등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고 있다.

투지유치 제한 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문(콜롬비아 정부가 규정하는 공공이익 부문)

- 방위산업
-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 금융 및 보험
- 자원개발
- TV 중계 등

외국인 투자자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투자금액을 언제든지 재반출해 갈 수 있다(2000년 법 제2080호로 개정).

투자 인센티브

(1)“외국인투자법”기본 원칙

- 내국민 대우 :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보편성 : 콜롬비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투자가 보편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단, 1) 국가안보, 2) 콜롬비아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폐기물 처리사업 등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부분적 제한을 받고 있음.
- 포괄적 허가 : 상기 국가 안보 및 핵폐기물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사전허가(prior approval) 없이 투자활동을 할 수가 있다. 다만, 금융산업, 광업, 증권시장 투자 등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정해진 국내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적정보상 적용 : 1999년 헌법개정 시 “보상 없는 국가수용”을 규정한 제58조 삭제로, 모든 국가 수용 절차에 있어서 적정보상 원칙이 확립됨.
- 2005년 투자자를 위한 법적 안정성 계약제도 도입

(2) 자유무역지대(3가지 유형)

- 콜롬비아 정부는 고용창출,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와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ingle Enterprise Free Trade Zone)를 시행하고 있는 바(법 1004/05, 대통령령 383/207 및 4051/2007),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음.
  - 재화, 서비스에 대한 15% 단일 소득세
  - 해외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면제
  - 해외로부터 구입되는 기초재료, 부품, 최종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외국시장에 대한 상품판매에 대한 부가세 면제
- 해외수출시 콜롬비아가 당사국인 무역협정 혜택 향유
-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가공·제조 시 콜롬비아 원산지 인정 등 (단, 페루는 불인정)

○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지대(FTZ) 밖에 소재하는 신규 기업이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EFTZ)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자유무역지대(FTZ) 체제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유무역지대(FTZ)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콜롬비아 현지법인 또는 외국기업지사, 테크노공원, 항구업체, 건강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며, 재생불가한 자연자원의 탐사·활용·추출 관련 기업, 금융서비스 관련 업체, 국가양허사업, 가정용 유틸리티 관련 업체 등은 제외되는 바, 관련 자격요건은 재화의 제조·생산·가공업자, 서비스제공자, FTZ 운영업자 등에 따라 상이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용창출과 투자금액은 필수 요건임.

※ 콜롬비아 무역투자관광진흥청에 따르면, 2014년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대는 총 99 곳에 이름.

자유무역지대 혜택에 대한 주요 자격요건

사업 분야	최소 투자금액·고용창출 요건
Agribusiness (바이오 연료)	19.6백만 달러/500명(3년 내)
재화	38.1백만 달러/150명 직접 고용(3년 내)
서비스	2.6-11.9 백만 달러/500명, 11.9-24백만 달러/350명, 또는 24백만 달러/150명 이상
건강	총 고용의 50%는 신규고용 나머지 50%는 제3자에 의한 간접고용
항구	39.2백만 달러/20명 신규고용 및 50명 제 3자에 의한 간접 고용
기존 투자	39.백만 달러이상의 기존 투자 보유/ 181.1백만 달러 신규투자

※ 상기 투자금액은 1달러=1,900페소로 산정한 것임.

(3)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콜롬비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1) 손비인정, 2) 조세감면, 3)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Income deductible expenditures(손비인정)
- 국내조세 부담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
- 고정자산의 고속 감가상각 허용
-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제도 허용
- 환경관련 설비투자의 손비 인정

○ Exempt Income(조세감면)
- 해외로부터 기채한 원리금 상환 금액
- 업종별로 상이한 조세 감면 제도 시행

○ Tax Discount(세액 공제)
- 이중과세의 조정 허용
- 조림분야 투자액의 20% 범위 내
- 기초산업 분야 중장비 수입에 따른 부가세

외국인 투자 장애 요인

(1) 국내 치안

2002.8월 Uribe 대통령 취임 이후 치안문제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이루고 있다.

2010.8월 Santos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안개선 노력에 힘입어 2012.9월 Santos 정부는 콜롬비아 최대 반정부 무장 세력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평화협상을 진행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2012.11월 쿠바 아바나에서 평화협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30여 차례의 평화협상을 이행하였다.

(2) 빈번한 투자관련 법령 수정

외국인투자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게릴라문제와 빈번히 개정되는 국내법령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빈번한 법령 개정에 따르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하여, "콜롬비아 내 투자와 신뢰증진법(Law that Promotes Investor's Confidence in Colombia)"를 제정하였다.

○ 이 법의 핵심은 새로이 개정되는 법령이 투자자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분쟁 해결

콜롬비아의 사법제도는 프랑스식을 따르고 있는바, 불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문제는 상공감독원(Superintendent's Office of industry and Commerce)에서 소관하며, 파산·부채조정절차 등은 기업감독원(Superintendent's Office of Companies가 담당하고 있다.

보고타, 메데진 상공회의소는 콜롬비아와 외국인간의 분쟁에 경험 있는 중재인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절차와 요율을 가지고 있다. 중재판정은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콜롬비아는 외국판정의 집행에 관한 UN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상호주의와 아래를 조건으로 외국 판결과 결정을 인정하고 집행한다.

○ 소송 제기 시 콜롬비아 부동산권리와 관계되지 않아야 함.
○ 공공정책 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함.
○ 외국 적용법규에 따라 상소될 수 없는 판결·결정이어야 함.
○ 콜롬비아 법원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어서는 안 됨.

※ 외국인 투자관련 인프라 현황

외국인투자가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1) Bogota, 2) Medellin 지역 외국인 투자 인프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보고타

■ 항만시설
- ○ 수도인 보고타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Buenaventura 항으로서 보고타 서쪽 497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함.
- ○ 카리브 연안쪽 항구로는 1,125킬로미터 떨어진 Cartagena 항, 1,008 킬로미터 떨어진 Barranquilla 항, 965 킬로미터 떨어진 Santa Marta 항 등임.

■ 육상 도로망
- ○ 보고타는 내륙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주요 육상 도로망이 수도를 경유하고 있음.

■ 항공 수송망
- ○ 보고타 시 외곽에 위치한 El Dorado 공항은 콜롬비아의 주요 국제공항으로서 주요 외국도시를 연결하는 정기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음.

(2) 메데인

■ 항만 시설
- ○ 콜롬비아 최대 산업 도시인 Medellin은 보고타에 비해 연안에 보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
- ○ Buenaventura 항은 504킬로미터, Cartagena 항은 632킬로미터, Barranquilla 항은 749킬로미터, Santa Marta 항은 840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

■ 육상 도로망
- ○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Medellin은 주요 육상교통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Buenaventura 항구와는 철도로 직접 연결됨.

■ 항공 수송망
- ○ Medellin 외곽에 Olaya Herrera 공항이 있으며, 수출자유지대가 있는 Rionegro 인근에 Jose Maria Cordoba 공항이 있음.

경쟁국 진출 동향

2002.8월 Uribe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민주안보(Seguridad Democratica) 정책을 추진하면서 치안상황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외국인투자가 급신장하고 있다.

대콜롬비아 외국인투자는 2008년 10,564백만 달러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세계경제 위기 영향으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약 32% 감소한 7,201

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 세계경제 침체의 지속으로 6,915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외국 투자가들의 신뢰, 활발한 FTA 체결 추진, 법적 안정성, 세계 경제의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2011년 14,647백만 달러, 2012년 15,039백만 달러, 2013년 16,198백만 달러로 투자최고액 기록을 연이어 경신하였다.

2010년,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에너지·광물 부문이 총 투자 규모의 상당 부분(49%)을 점유하였으며,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 부분에 대한 투자는 최근 몇 년간 높은 증가 추세를 기록하였다.

○ 콜롬비아는 2013년 1/4분기에 37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기록하였음. 이는 콜롬비아 역사상 가장 많은 1/4분기 투자액임. 이 가운데 44.7%가 에너지·광물 부분에 투자되어 여전히 높은 비율을 기록함.

한편, 2014.11월 현재 콜롬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37곳에 이르러 지난 2년 사이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대콜롬비아 투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나 2007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13년에는 1억 19백만 달러(신고 기준)를 기록하였다.

○ 그간 상품수출 이외의 인프라프로젝트 및 기술서비스 프로젝트 입찰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열세였으나, 최근 진출확대로 향후 입찰수주 및 이로 인한 투자증가가 기대됨.

對콜롬비아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1	2012	2013
석유	4,700	5,471	5,111
광물	2,480	2,474	2,977
금융	1,160	1,077	1,606
제조업	1,214	1,985	2,590
요식업	2,546	1,339	1,136
수송, 창고, 통신	1,760	1,245	1,386
건설	444	401	378
합계	**14,647**	**15,039**	**16,198**

출처: 콜롬비아 중앙은행

對콜롬비아 최근 국별 투자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1	2012	2013
1	미국	2,155	2,475	2,861
2	스위스	994	698	2,083
3	파나마	3,508	2,395	2,054
4	영국	1,408	1,356	1,415
5	스페인	1,164	628	950
6	안길라	482	598	855
7	버뮤다	124	366	846
8	케이맨제도	405	507	607
9	네덜란드	1,071	-1,791	579
10	멕시코	455	849	564
11	프랑스	141	303	521
12	버진아일랜드	-58	486	437
13	칠레	627	3,149	318
14	브라질	217	381	288
15	캐나다	273	291	248
16	일본	40	61	67
17	대한민국	25	43	20
18	중국	23	34	7
Total		**14,647**	**15,039**	**16,198**

※ 석유부문투자액, 이익금 재투자액은 제외
출처: 콜롬비아 중앙은행

노동시장

임금수준

콜롬비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임금지수는 최저임금으로서 2014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616,027페소+교통보조금 72,000페소로 총 688,027페소(약 352달러 = 1,950페소)이다.

직종별, 직위별 임금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월 400달러 수준에서 고용이 가능하나, 전문기술 보유자, 혹

은 직원을 관리하는 책임자급의 경우 부문별로 월 2,000~3,000달러 수준, 그리고 중견기업의 전문 경영인의 경우 월 10,000달러 이상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다.

법정 인건비 구조

기본월급 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으로는,

- ○ 유급휴가 : 매년 working day 15일이 주어지고 연말에 남은 휴가는 직원에게 돈으로 보상.
- ○ 퇴직금 :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눠 한 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 1회 지급.
- ○ 퇴직금 발생이자 : 퇴직금 한달 분에 대한 이자 12%를 퇴직금과 함께 해당연도 12월말까지 지급.
- ○ 상여금 :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한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지급

- ○ 법정 사회보장세
  - 연금 :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6.50%로 본인이 4.125%, 고용주가 각각12.37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또한, 연간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4~15배 사이인 경우 추가로 1%를 연금공단에 의무적으로 기부하게 되어있다. 이때에도 사용자와 본인 부담이 위와 동일.
  - 건강보험 :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2.50%로 본인부담이 4.00%, 사용자가 각각 8.50%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 산재보험 :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며 보험요율은 업종별 요율(보험사고시)에 따라 소득의 0.52222~6.96%사이에서 납부.

- ○ 가족보조기금 : 모든 기업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족보조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월 급여의 9%를 납부

법정 근로시간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근무 시 지급률은 주, 야간, 휴일에 따라 요율이 틀리며 1일 2시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음. 또한 빈번하고 지속적인 연장 근무 시에는 고용주가 사전 또는 사후에 노동부에 연장근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평일 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25% 추가지급
- 평일 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지속 야간근무자 : 시간당 임금 +임금의 35% 추가지급
- 휴일 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작업 교대제도(work shift)
- 고용주와 근로자는 하루 6시간, 주당 3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속적 교대작업(successive work shift)을 허용하는 고용계약 체결 가능

○ 작업시간 선택제도(flexible daytime shift)
- 상기 제도는 주당 48시간을 주당 6일에 걸쳐 최대한 작업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고용주가 1일 최소 4시간 최장 10시간 범위 내에서 주당 48시간의 작업시간을 6일에 걸쳐 배분하면, 초과작업 수당을 지급 불요

노동조합 성향

콜롬비아 헌법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가입 의무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다.

노동조합 최소 구성인원은 25인(기업의 수와는 무관)이며, 노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단위기업의 최소 종업원 수는 5인이다. 노동조합의 형태로, 1) 단위 기업별 노조, 2) 직능별 노조, 3) 산업별 노조가 있다.

자원·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제도

자원현황

○ 콜롬비아는 석유, 가스, 수력자원,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과 페로니켈, 금, 은, 에메랄드 등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광물의 종류
  - · 철광물 : 금, 은, 백금(platinum), 니켈(nickel/Ni), 구리, 철, 망간(manganese/Mn), 납(lead/Pb), 아연(Zinc/Zn), 티타늄(titanium/Ti)
  - · 비철광물 : 석탄(세계 제5위 수출국), 에메랄드, 염류(類), 바다소금, 사력층(砂礫層/gravel), 모래, 찰흙(Clay), 석회암(limestone), 유황(sulfur/S), 중정석(barite), 벤토나이트(Bentonite), 장석(長石), 활석(滑石/Talc), 인산석(phosphoric), 장식용 석재(Ornamental)

석유 확인 매장량·생산량

년도	매장량(백만배럴)	일일평균생산량(만배럴)
2009	1,988	67.1
2010	2,058	78.5
2011	2,259	91.5
2012	2,377	94.4
2013	2,445	100.8

출처: 콜롬비아 석유청(ANH)

가스 확인 매장량·생산량

년도	매장량(십억큐빅피트)	일일평균생산량(억큐빅피트)
2009	8,460	10.1
2010	7,058	10.9
2011	6,630	10.6
2012	7,008	11.5
2013	6,409	11.7

출처: 콜롬비아 석유청(ANH)

2013년 자원현황

항 목	확 인 매 장 량	연 간 생 산 량
석 유	24.45억 배럴	100.8만배럴 (일일평균생산량)
천연가스	6,409십억 큐빅피트	11.7억큐빅피트 (일일평균생산량)
석 탄	6,508백만 톤	6,749만 톤 (2012년)

출처: 콜롬비아 석유청(ANH), 콜롬비아 광물에너지기획청(UMPE)

콜롬비아의 석탄, 석유·가스, 전기, 새로운 에너지지원(바이오 에탄올, 바이오디젤)의 매장량, 생산량 등은 아래와 같다.

○ 석탄 부문
- 석탄 확인매장량은 65억톤, 추정 매장량은 170억톤으로 현행 생산율로 향후 약 100년간 생산 가능
- 카리브해에 인접한 베네수엘라 국경지역인 Guajira 주의 Barrancas와 Cesar주의 Ibirico주는 콜롬비아 석탄 생산의 90% 차지

○ 석유·가스 부문
- 2013년 기준 석유 확인매장량은 24.4억배럴이며, 일일평균생산량은 100.8만배럴임
- 2013년 기준 가스 확인매장량은 6,409십억큐빅피트이며, 일일평균생산량은 11.7억큐빅피트임

○ 전기부문
- 콜롬비아는 물이 풍부하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3개의 큰 산맥으로 인해 수력자원이 풍부함
- 2013년 기준 콜롬비아의 연간 총발전량은 62,197 GWh로 이중 수력발전이 67%, 석탄·가스 등에 의한 화력발전이 27%를 차지하고, 기타는 6%임

○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
- 바이오에너지(에탄올 10% 혼용 가솔린, 바이오디젤 5% 혼용 디젤)
- 2005년에 에탄올을 처음으로 생산한 이래, 바이오에탄올 연간 생산량은 2011년 3.36억리터, 2012년 3.62억리터, 2013년 3.55억리터를 기록
- 바이오디젤의 경우, 2011년 44.3만 톤, 2012년 48.9만톤, 2013년 46.4만톤의 생산량을 기록

국가기관·법규·정책

(1) 광물부문

중남미의 3대 광물자원 보유국으로 최근 수년간 광물관련 입법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률안정법(Ley de Estabilidad Juridica para el Inversionista) 등

○ 광물업무는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가 관장하고 광산법(Codigo de Minas)에 의거 정책을 추진하는 바, 아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 광물청(ANM: Agencia Naional de Minería) : 광물자원현황 전반 및 인허가 담당
- 광물지질국(Servicio Geológico Colombiano, 구 Ingeominas) :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지질조사 담당
-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La Unidad de Planeación Minero Energetica) : 광물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기획 담당
- 광물정보청(SIMCO: Sistema de Información Minero Colombiano) : 광물 정책·현황·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현행 광물법상의 양허계약 관련 주요내용 :
- 광물 양허 독점 계약(탐사·채굴)

- 내외국인 평등 원칙
- 먼저 신청자 우선 권리(primero en el tiempo, primero en derecho) 원칙
- 개천(corrientes), 하상(cauces de aguas) 인 경우 50㎢(5000 ha) 까지 허용
- 여타 지형의 경우 100㎢(10,000ha)까지 허용
- 계약기간은 30년(탐사기간 3년, 건설·시설설치 기간 3년 포함), 1회에 걸쳐 30년까지 연장 가능
- 광권소유자(concesionario)는 계약서에 언급된 광물이외에 합금 등에 대한 탐사권리가 있음.
- 계약서에 로열티(regalias)와 임차료(canon superficiario) 규정
- 지상광물조사는 환경허가 불요
- 광권소유자(concesionario)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로열티(regalias) 및 임차료(canon superficiario)
- 광물부문 제세·부담금

제세·부담금	요율	세부내용
로열티	생산량의 1-12%	금·은: 생산량의 4% (충적토(aluvión)관련 계약은 생산량의 6%) 백금: 생산량의 5% 에메랄드: 생산량의 4% 석탄: 3백만 톤 이상 채굴 경우 생산량의 10% (이하경우 생산량의 5%) 니켈: 총생산량 가치에서 총생산비용의 75%를 제한 값의 12% 기타: 생산량의 1-12% (석회암, 석고, 점토 및 자갈은 1%, 철금속은 5%, 비철금속 3%, 염류 12%, 방사성 10%)
임차료	1일당 「1-3×하루치 최저법정 임금(SMLV)」	탐사단계에서 적용되며, 동 금액은 면적규모에 따라 좌우됨 20㎢ (2,000 Ha)까지는 1일당 1 SMLV 20-50㎢ (2,000-5,000Ha) 의 경우 1일당 2 SMLV 50-100㎢ (5,000-10,000Ha) 의 경우 1일당 3 SMLV ※ 1 SMLV(496,000페소 ÷ 30일)=16,563페소(2009.9월)
추가지불		정부가 투자한 탐사구역 입찰의 경우, 정부에 대한 지불금액은 입찰공고 때 게시됨.

출처: Servicio Geológico Colombiano, UPME

■ 개정 광물법(2010년) 주요 요지

- 「법 010 및 법 042 (2007년)」
  - · 광물법「법 685(2001년)」개혁 목적
  - · 광권계약자는 3년간의 탐사기간 동안 탐사(추가탐사기간 필요시 2년씩 추가하여 총 11년까지 탐사 가능)
  - · 채굴계약은 20년씩 계속 연장 가능
  - · 불법채굴자에 대한 양허문호 기회확대
  - · 탐사작업을 위한 환경허가 획득 의무화
  - · 광물부문 탐사개발 구획이 민간인 소유의 땅의 경우, 지상사용에 관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타협이 안 되는 경우 판사 참여 하에 해결 가능
- 탐사·개발권자는 용익권(servidumbres)을 근거로 권리주장 가능

※ 동 개정 광업법이 광산개발지역 원주민 공동체와의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5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내려짐. 이에 국내법에 따라 헌재 판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 판결을 반영한 광업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였으나, 광물에너지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동 개정법은 2013.5.13자로 자동 폐지되어 2001년 제정된 광업법 685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됨. 이에 따라 광물에너지부는 4개의 법령(decreto)을 발표, 본 광업법 폐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존 광업법을 보완키로 결정함.

(2) 석유부문

2004년까지는 콜롬비아 민간업체의 석유생산은 전체의 40%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부터 석유정책 개혁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탐사·생산(E&P)계약은 2004년부터 석유청(ANH) 주관 하에 공개 입찰(Ronda)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탐사기간 6년
- 평가기간(periodo de evaluacion : 탐사 후 매장량에 관한 상업성 평가) 2년
- 생산기간 24년, 필요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로열티(regalias : 원유생산량의 8-25%)와 광구임차료 등 부담

석유부문 제세·부담금

제세·부담금	요율
로열티	8~25%
광구임차료	100,000Ha까지 18개월 이하 또는 동일할 경우 헥타당 2.29달러 18개월 이상일 경우 헥타당 3.06달러 100,000Ha 추가 때마다 18개월 이하 또는 동일할 경우 헥타당 3.06달러 18개월 이상일 경우 헥타당 4.59달러 연안 외각지역: 헥타당 0.76달러 첫 탐사 기간 12개월 이하에 대해서는 동 수수료 면제
	액체 탄화수소 : 0.1162달러/배럴 천연 가스 : 0.1162달러/1000큐빅 피트
고유가시 부담금	생산량이 5백만 배럴을 초과하고 서부텍사스유(WIT)가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계약자는 석유청(ANH)에 미국석유협회(API) 원유기준 중량에 따라 해당 추가금액을 지불해야 함.
생산량의 일정 비율 지불	계약자는 총 생산량 중 입찰 참여시 합의한 일정 비율을 석유청(ANH)에 지불해야 함.

출처: ANH

(3) 전기부문

「법 142」(1994년)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광물에너지부 산하에 광물에너지기획청(UPME: Unidad de Planeacion Minero Energelia), 전기가스규제위원회(CREG: Comision de Regulacion de Energia y Gas), 공공서비스감독청(SSPD: Superintendencia de Servicios Publicos Domiciliarios) 등이 있다.

발전(generacion)과 판매(comercimilzacion)는 경쟁체제이고 송전(transmision)과 배분(distribusion)은 독점 또는 가격규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한전」이 발전·송전·배분·판매에 모두 관여하고 있으나, 콜롬비아에서는 지형이 넓고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별로 서로 다른 발전, 송전, 배분, 판매업체가 관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전과 배분, 배분과 판매 등을 겸하기도 한다.
- 외국 투자가의 경우, 발전부분 참여는 비교적 용이하나, 송전과 배분에는 이미 송전망 또는 배분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 발전·송전·배분·판매업체(2011년 기준)

- 발전(Generadores) : EPM, Emgesa, Isagen, Epsa, Chivor, Gecelca, Colnversiones 등 53개 업체
- 송전(Transmisores) : ISA, Transelca, EEB 등 11개 업체
- 배분(Distriduidores) : EPM, Codensa, EPSA, Emcali, Electricaribe, ESSA 등 32개 업체
- 판매(Comercializadores) : EPM, Isagen, Codensa, Emcali, Electricaribe, Emgesa, ESSA, Comercializar, Dicel 등 80개 업체

(4)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부문

○ 「법 697(2001년)」은 새로운 재생에너지에 의한 온열기구(calentadores), 바이오가스 창출 태양열판(paneles solares generadores de biogás), 풍력모터(motores eólicos) 등 부문에서 영업이윤세 면제

○ 「법 693(2001년)」, 「법 939(2004년)」에 의거하여,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디젤 개발·사용 증진

투자절차

(1) 광물부문

광물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양허계약(contrato de concesion : 독점형태) 체결이 필요한 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관심지역 선정

- 양허계약서식 작성(위치지도, 기술정보 등 포함)
- 계약·자금조달 등 관련 계약 제안서를 작성하여 광물청(ANM 에 제출
- 제안서가 수락되면 계약 체결
- 광물환경보험료(póliza minero ambiental)(계약기간, 연장기간 이외 추가 3년 동안 유효하여야 함.) 제출 : 보험료는 탐사기간과 건축·시설설치기간에는 연간 투자금액의 5%, 채굴기간에는 연간 생산량(추정치)의 10%에 해당
- 임차료(canon superficiano) 지불
- 작업계획(programa de trabajo y obras : PTO) 및 환경허가요청서(solicitud de licencia ambiental) 제출(환경허가는 건설·시설설치·채굴과정에서 필요하나, 2010년 광물법 개정안 발효 시 탐사과정에서도 필요)
- 작업계획(PTO) 집행 및 채굴시작
- 노동자 사회보장, 광물보건 등 준수 필요

(2) 석유부문

콜롬비아에서의 석유개발은 석유청(ANH) 주관 하에 탐사·생산계약을 체결하면, 특정 구역에서 석유 탐사·생산을 30년간 독점하게 된다.

2004년 이전에는 콜롬비아 전체 석유생산 중 민간기업의 생산은 40%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석유청(ANH)설립이래 민간기업에 의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의 60%를 콜롬비아 정부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석유가격이 높을 경우 75%, 석유가격이 낮을 경우 50%를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입찰 및 협상 조건에 따라 정부 측 몫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2006년 이후 석유정 시추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바, 2007년 70개, 2008년 99개, 2009년 75개, 2010년 112개, 2011년 126개를 시추했다.

- 국영석유회사(Ecopetrol)는 콜롬비아 석유매장량(미확인 매장량 포함)을 470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음.

석유 탐사·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석유청(ANH)과의 탐사·생산(E&P)계약을 체결하여 구획지정(asignacion de áreas)을 받아야 한다.

■ 석유청의 3가지 구획지정 방안
- 직접계약(contratación directo) : 우선 신청자, 우선 배정 원칙
- 공개입찰경쟁을 통한 계약(contratacion por proceso competitivo) : 동일 조건하에 다수의 입찰경쟁을 통하여 선정
- 제안신청(solicitud de ofretas) : 동일한 조건하에 복수의 업체를 초청하여 선정

■ 구획지정을 받는 절차
- 관심구획에 대한 제안서(계약·법률능력, 기술능력, 운영능력, 금융분석 등 포함) 제출
- 석유청(ANH)의 제안서 평가 심사
- 계약체결
- 환경허가 신청(건설·시설설치·탐사단계)
- 건설. 시설설치 작업 집행
- 탐사시작

(3) 전기 부문

■ 전기부문 민간참여
- 발전(generacion) 활동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배분에는 좀 더 제한적 참여 허용, 송전에는 민간참여 제한(「법 142 및 법 143(1994년)」)
- 광물에너지기획청(UPME)은 발전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를 작성·배포

■ 전기발전부문 참여절차(소관기관 : UPME)
-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제출

- 금융·행정 계획 제안
- 환경진단승인 요청
- 토지구입안 통보
- 송전망연결요청서 제출
- 화력발전소의 경우, 에너지(combustible)구입 계획 제출
- 디자인 제출
- 환경허가 신청
- 발전업체는 전기매매등록청(ASIC : Administrador del Sistema de Intercambios Comercicles)에 주요시장 에이전트로 등록

■ 수력발전소 건설 참여
- 콜롬비아 내에는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동 참여를 위해서는 자금 조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4)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부문

■ 바이오 에너지부문
-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디젤 작물을 경작, 생산하는 데에는 계약이나 허가는 별도로 필요 없음.
- 팜 경작의 경우 농림부와 국세청(Dian)에 등록하면 소득세를 면제함.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을 가솔린, 디젤과 섞어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파나마

최근의 파나마 통상환경

2014년 7월 1일 치러진 파나마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파나메니스타당(Partido Panameñista)의 대통령 후보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가 승리하면서 1989년 독재자 노리에가(Noriega) 축출 이후 치러진 대선마다 반복된 여·야 정권교체가 이번에도 재현되었다.

전임 마르띠넬리(Martinelli) 정권이 지난 5년간 파나마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내외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친서민 정부, 깨끗한 정부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바렐라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렐라 대통령과 소속 정당인 파나메니스타당은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도우파 성향이나, 마르띠넬리 정권보다는 다소 소득분배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서 다소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이 가미된 형태의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외통상 분야에서는 바렐라대통령의 중도우파적 성향, 파나마의 지리적 이점을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방경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및 보호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제조업 기반이 기본적으로 빈약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 정권이 서명한 멕시코와의 FTA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취임 이후인 2014.9월 의회에 제출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제도

(1) 대외통상 정책방향

파나마는 1997년 WTO 가입이후 적극적인 대외통상 촉진 및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 WTO 회원국에게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양자 간 무역자유화협정을 체결하여 수출 진흥 및 생산성 있는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적으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2014.9월 현재 파나마는 47개 국가와 무역자유화협정을 체결(발효기준)하고 있다. 먼저, 인근 중미국가인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와 '96.10월부터 파나마-중미 자유무역협정(TLC: Tratado de Libre Comercio) 체결을 추진하여, '01.5월 협정본문(공통규범)에 합의하고, '03-'09년까지 양자 간 시장접근 교섭을 통해 각각의 국가와 상품, 서비스 및 투자분야 양허사항, 원산지규정 등을 담은 양자 프로토콜을 체결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과는 '87년 이후 양자 간 부분특혜무역협정(Acuerdos Preferenciales y de Alcance Parcial)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동 부분특혜무역협정은 멕시코, 콜롬비아 및 쿠바와도 체결하고 있다. '08.8월 칠레와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 역외국가로는 대만,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다. '10년에는 이스라엘과 경제통상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는 '03년 FTA 협상을 개시, 8년만인 '11.10.12에 미국 의회가 협정에 비준하였고, '12.10.31에 발효하였다. 캐나다와의 FTA는 '10.5월 협정에 서명하고, '13.4.1에 발효하였다. 페루와는 페루-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간 FTA 협정형식으로 추진되어, 파나마와의 양자협상은 '11.6월에 완료되었고, '12.5.1에 발효되었다. 한편, 파나마는 수출의 22.5%와 수입의 9.8%를 차지하는 제2교역국인 EU 27개국과 중미-EU 제휴협정

(Acuerdo de Asociación entre Centroamérica y La Unión Europea, ADA)에 '12.6.29 서명하였고, 엘살바도르 국회가 '13.7.3에 중미6개국 중 마지막으로 동 협정 비준절차를 완료함으로서 2013.8.1에 발효되었다. '12.2월 개시, '13.6월 서명된 EFTA FTA는 '14.8월 발효(아이슬란드와는 '14.9월 발효)하였다. 한편, 파나마는 '13.6.21에 SIECA 6번째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파나마는 '95년부터 콜롬비아와 부분특혜무역협정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동 협정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170개 품목에 한정), 실제로도 협정의 활용도가 저조하여 새로이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 '13.6월 타결하였고, '13.9월 서명하여 현재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양측에 민감한 유제품은 FTA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파나마는 태평양 동맹 가입을 위하여 '13.7월 멕시코와 FTA협상을 실시하여 '14.3월 서명을 완료하였고, 현재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파나마 정부는 '14.5월부터 이스라엘과 FTA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파나마 해외 수출시장(총 69개국) 가운데, 상위 25위권 내에 들어가는 국가에 대한 파나마의 수출 비중은 88.2%이고, 이들 25개국 가운데 파나마와 FTA등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파나마의 수출은 전체 수출중 64.2%에 달하고 있다(2013년 기준, 콜론자유무역지대 제외).

FTA 등 무역협정 체결·이행은 파나마 통상산업부가 중심이 되고, 관세청, 식품수입안전청, 농업개발부, 재정경제부 등 유관부처 및 기관이 해당 분야별로 참여하고 있다.

(2) 관세율 체계 및 관세율 수준

파나마는 '96.3월 세계관세기구(WCO)에 가입하고, '98.8월에 HS협약 당사자가 되었다. 하지만, 파나마는 HS협약 가입이전인 1994.7.12일자 행정부령 제21호(Decreto de Gabinete No 21.)로 이미 수입관세 상품분

류 체계를 CCCN에서 HS방식으로 변경하여 199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파나마의 HS코드는 HS협약 분류와 동일하여 총21부, 97류, 1,241개 Partida, 5,019개 Sub-Partida, 8,298개 Inciso로 구성되어 있다.

파나마정부는 WTO 가입직후인 1998.1.1자로 4,69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인하 또는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8.25%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이로써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시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파나마의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ad valorem)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입관세에 부가하여 모든 수입품에는 일종의 판매세인 ITBMS(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s Muebles y Servicios)을 부과한다. 2010.7.1일자로 파나마 정부는 ITBMS 세율을 5%에서 7%로 인상하고, 과세대상 품목도 확대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7%이상의 ITBMS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와 ITBMS이외에 특별소비세(Selective Consumption Tax)가 부과되기도 한다.

파나마의 전체 수입관세품목은 8,711개에 이르고, 무관세인 0%에서 최고 260%까지 30단계의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 95%에 해당하는 품목은 크게 5단계(0%, 3%, 5%, 10% 및 15%)로 구분되는 관세율 내에 들어간다. 각 관세율 단계별 품목 수 및 비중은 아래와 같다.

파나마 관세율 구조

관세율(%)	품목수	비중(%)
0	2,818	32.35
0.6 ~ 2.5	13	0.15
3	564	6.47
4	1	0.01
5	573	6.58
6 ~ 9	269	3.09
10	2,180	25.03
15	2,146	24.64
20 ~ 260	147	1.68

보다 구체적으로, 무관세 품목은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 등이며 농민보호를 위해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화장품, 기념품 등 관광객 대상 판매 품목은 관세율이 5%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5%가 적용된다. 즉, 종전에 5.1~14.9%의 관세율이 적용 되던 공산품은 10% 단일관세로, 종전에 15% 이상 고관세율이 적용되었던 품목들은 15% 단일 관세로 인하 또는 조정되었다. 따라서 파나마는 최소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선박용 디젤유 30%관세 등)를 제외하고는 경제 개방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도에는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對파나마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닭고기, 대부분의 낙농제품은 매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쌀의 경우 관세율이 52%에서 102%까지이고, 설탕은 14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2010년 제정된 Law 8은 기존의 10~15%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폐지하여 무관세화 하였으나, 모든 수입자동차에 대해 7%의 판매세(ITBMS)를 부과하고, 아래와 같이 수입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폐지 이전보다 수입차량에 대한 전체 세율이 더 증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현황

차량(CIF 가격)		종전	Law 8
승용차 (Vehicles)	$8,000 이하	5%	15%
	$8,000-$20,000	5%	18%
	$20,000-$25,000	5%	23%
	$25,000 이상	5%	25%
전기 또는 Hybrid차 (2012년까지)		5%	0%
전기 또는 Hybrid차 (2012년 이후)		5%	5%
상용차 (승객 및 화물)		5%	10%
트랙터		5%	10%
장애인용차		5%	5%

또한, 파나마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차원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해 오던 평균 6.82%의 관세를 철폐(무관세화)하였으나('12.5월 제정 내각명령 No.15), 감소된 세수 충당을 위해 동일 품목에 대해 내국세로 5%의 선택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해당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는 감소하였지만 새로운 내국세 도입으로 관세철폐 효과가 감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3)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

위에서 상세히 언급한 총43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 양허표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수입규제 제도

파나마는 식료품, 의류 및 건축자재 생산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으며 국민보건 및 위생, 미풍양속 보존 및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극히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 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미 달러화를 사용하며 외환통제가 없고 콜론자유무역지역을 기반으로 중계 무역이 발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중남미 여타국가에 비해 수출입, 입국 관련 수속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1) 수입허가

파나마에서는 수입허가가 필요 없다. 다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거절당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시인 '97.7월 제정된 Law 23에 의거, 관세할당허가위원회(농업개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

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돼지고기(20개 품목), 가금류(2개 품목), 우유 및 낙농품(25개 품목), 감자(1개 품목), 콩(1개 품목), 쌀(4개 품목), 옥수수(3개 품목), 토마토 부산물(3개 품목)이다.

(2) 수입금지 품목

파나마 정부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선전물
-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파나마정부만 수입 가능)
-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 내용물과 다른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 도검 및 무기류
- 복권
- 아편 등 마약류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 원주민의 전통의상, 악기, 공예품의 위조품

(3) 수입제한 품목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보건부의 사전 수입 승인 필요)
- ○ 전투용이 아닌 경기용,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와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장비류(법무부 사전수입 승인 필요)
- ○ 다이너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파나마

안전기구인 Oficina de Seguridad의 사전수입승인 필요)

(4) 비관세 장벽

파나마는 농축산물, 식품류, 약품류, 화장품류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관세장벽을 폐지하였다.

대한수입규제 동향

한국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동식물검역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수입관리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인증제도

(1) 농·축산물

농·축산물 수입은 농업개발부(MIDA) 검역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 전 샘플과 원산국의 검역증명서를 제출, 파나마 보건 등록이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 동물 파생 제품 및 하위 제품, 가축용 의약품,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 바이오 제품, 식품의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2) 약품, 식품류 및 화장품류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류는 보건부 의약식품국에 수입을 위한 사전제품 등록이 필요한데, 동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 전 샘플 분석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동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주한 파나마영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관련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이 되며 등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식음료의 경우 별도기구인 파나마식품안전청(AUPSA)을 통해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생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ormular Preparation Method
- The Analysis Method
- Duration of the Products
- The Products Code

○ 한국의 식품의약안전청이 발급하고 주한파나마영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 하에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한국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 제품이 수출만을 위해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샘플 및 기타서류
-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 스페인어로 쓰인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 등록신청 위임장(Power of Attorney)

(3)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은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사전 샘플분석과정 대신에 생산국 관계당국이 발급한 사용, 판매, 유통허가서 제출로 제품 등록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는 농축산개발부의 Departamento de Sanidad Vegetal이며, 1차로 2년간의 잠정 등록 유효기간 부여 후 10년간의 정식 등록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수입물품 도착 후 역시 품질분석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4) 의료기기 인증제도

파나마정부는 의료기기 공공입찰 시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을 요구한다. 인체에 삽입되는 형태의 의료기기의 경우 추가로 보건등록(Registro Sanitario)을 요구하기도 한다. 민간병원의 경우 동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간혹 이에 준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술표준인증을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

요구사항		설명
현지어	국문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신체에 삽입하는 모든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절차
Ficha Tecnica Homologada	기술사양서	-입찰사양 만족여부 심사자료로 활용됨
Catalogo y Literatura Tecnica del Fabricante	제조사의 카탈로그 및 기술문헌	-원본, 공증사본, 전자문서(PDF) 형태 가능
Carta de Compromiso de Fabricante	제조사의 제품보증서	-제품의 안전성, 효능을 입증하고 사고/리콜 발생시 보건당국에 보고할 것임을 약속하는 보증서
Certificado	국제인증서, 판매허가증서	-GMP서류(ISO, EN, QS, TUV등) : 제조방법 및 품질을 보증하는 국제인증 -Certificado de Libre Venta(FDA, CSA, CE등) : 원산지 보건당국이 발행한 판매허가증서
Original del instructivo del dispositivo medico	의료기기 사용설명서	-스페인어 제작 필수
Solicitud / Autorizacion	인증신청서	-보건부(MINSA)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해야 함.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는 경우 위임장(Autorizacion)도 함께 제출해야 함.
기타 Aviso de Operacion, Copia de Registro Publico, Declaracion Jurada		-현지기업이 직접 작성, 제출하는 서류 일체

추가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기기종류에 따라 부여되는 잠재위험등급 별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요구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등급	위험수준	제품예시	요구자료
A	저	각종 수술도구	-제품사진 -제품태그 사본 -QC테스트 결과 -의료장비 샘플
B	중등	바늘/흡입장치	-A등급 요구사항 -살균 및 세척방법
C	중상	호흡기/정형외과 이식물	-B등급 요구사항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원재료에 대한 세부설명 -제3국 판매이력(판매량 포함)
D	고	심혈관계밸브/ 이식용 제세동기	-C등급 요구사항 -위험성 분석결과 -임상실험 관련 세부정보 -안전성 및 효능 관련 임상 전 실험 세부정보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은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기하면 되며,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가정용품 및 음식류는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은 'Panama in Transit'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선적전 검사제도

파나마의 경우 선적전 검사제도가 수출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상품포장

파나마에는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장박스에 명기되어야 한다.

- 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 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 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지식재산권 보호

파나마는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제네바음반보호협약(Geneva Phonograms Convention), 브뤼셀위성관련협약(Brussels Satellite Convention), 국제만국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베른저작권협약(Ber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cy and Artistic Works),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식물다양성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에 가입하고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들이 파나마 정부의 부적절한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 USTR은 1998.4월 Special 301조에 의거 파나마를 기타 감시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미국 USTR은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위조 상품 거래에 문제를 제기하여 파나마 정부 1998.3월 콜론자유무역지대 지식재산권 단속반을 설립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는 1994.8월 발효된 지적 소유권법(Law 15) 및 1996.11월 신공업소유권 보호법(Law 35)이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파나마는 1996년 초에 반독점법을 입법 하여 동법에 의거 독점과 함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심리할 4개 특별법원을 신설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2012년에 있은 미국과의 FTA 발효・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개정 과정에서 크게 확대・강화되었다. 2012.10.5 법 제61호를 통하여 공업소유권보호법을, 2012.10.10 법 제64호를 통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보호되는 지재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집행당

국(통상산업부)의 처벌 및 단속권한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지재권 침해 시 부과되는 벌금도 인상하였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아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제기 시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콜론자유무역지대 지식재산권 단속반도 수시로 위조상표 부착 상품 단속에 나서서 일부 업체가 물품 압수 및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위조상품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관제도

수입자는 반드시 통관사에 의뢰하여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하여 세관총국(Dirección General de Aduana)의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Declaración de Liquidación)'에 기입, 이를 세관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세관 총국은 이를 심사하고 확인 날인해서 통관사에 돌려준다. 수입품이 파나마의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검사원이 승선하여 하역장소 또는 환적 장소를 지정한다.

통관사는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포장명세서, 수입업자 납세 증명서 및 세관 총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을 제출하면 세관원은 동 양식서상의 산정 관세액을 참고로 실제 수입품과 대조하여 실제 관세부과액을 결정, 이를 통관사에 통보한다.

관세 부과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나마 국영은행인 Caja de Ahorro, Banco Nacional de Panama 또는 세관총국 수납계에 관세를 납부하며 '관세 납부 증명서(Boleta de Pago)'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관에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통관한다. 관세 납부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관세 액의 10%가, 10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물품검사 및 (보류) 압류

세관신고서류 작성(통관대행사)시 실제 수입품목과 서류상의 신고품목이 일치하도록 하며, 수입수량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수입품검사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원칙대로 통관절차를 밟고 통관사의 선정에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한편 수입 물품이 도착하여 파나마 세관창고에 입고된 지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5일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창고료가 가산 된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창고료가 수입품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매처분 된다.

수입상이 자가조세창고가 없는 경우 수입품은 파나마 세관창고에 보관되는데, 이 경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며 동 기간 이내에 재수출되지 않거나 창고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수입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품이 도착하면 통관사는 선적서류, 상업송장, 수입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서를 수입품 도착 통보접수 후 세관에 제출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 증권, 상업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의 수입 관세 산정 추정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증권,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준다. 한편 세관이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통관업무 흐름도

수입물품 도착(항구, 공항) → 세관검사원 승선 → 하역 또는 환적 장소 지시 → 세관창고 입고 → 세관원 물품도착 확인 → 수입자에 수입품도착 통보 → 통관사 지정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 및 세관총국에 제출 → 관세총국의 확인날인 후 통관사에 반환 → 관할세관에 수입관련 제서류 제출 → 무작위 추출 수입품 검사 실시(세관원) → 관세산정 및 관세 부과액 결정 및 통보 → 관세 납부 → 관세납부증명서 세관 제출 → 세관창고로부터 수입품 반출

소요기간 및 세관 업무시간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4~5일 정도이다. 세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8:00~16:00(점심시간 12:00~13:00)이다. 한편 관세총국은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8:30~16:30까지 점심시간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일반 수입통관에서는 아무 통관대행사에게나 업무를 맡길 수 있으나, 파나마 국제박람회(EXPOCOMER)의 경우에는 공식통관대행업체인 Auturoy Aurauz, S.A.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다.

통관 구비서류

- ○ 수입신고서(Declaración Jurada)
-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Formulario de Liquidación) : 통관사가 작성, 관세총국에 제출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지에서 B/L 발급 및 선적 후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에 주한 파나마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류가 제출되면 인보이스금액의 1%(최소 10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사 확인료는 단계별로 다르나 인보이스 금액기준으로 100달러 이하이면 무료이고 100,000달러 이상은 75달러이다.

- ○ Invoice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판매자의 주소
  - 파나마내의 바이어와 수탁자
  - 운송선박명, 선적항구, 하역항구, 목적지
  - 선적 마크 및 번호, 포장형태 및 수량, Net Legal 및 Gross 중량
  - 부피, 제품명세, 단위가격 및 총 금액
  - 가격조건인 'CIF PANAMA'인 경우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내용

(2) 선적서류(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 수입업자 납세증명서(Paz y Salvo Certificado)

(4) 수입업자의 체납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관세납부증명서(Boleta de Pago)

(6)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해 산정한 관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명서

기타 통관 시 유의사항

세관신고서류 작성(통관대행사) 시 실제 수입품목과 서류상의 신고품목이 일치하도록 하며, 수입수량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수입품검사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원칙대로 통관절차를 밟고 통관사의 선정에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며 아울러 통관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수입 물품이 도착하여 파나마 세관창고에 입고된 지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5일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창고료가 가산된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창고료가 수입품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매처분 된다. 수입상이 조세 창고가 없는 경우 수입품은 파나마 세관창고에 보관되는데 이 경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며, 동 기간 이내에 재수출되지 않거나 창고료를 지불치 않는 경우는 수입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품이 도착하면 통관사는 선적서류, 상업송장, 수입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서를 수입품 도착 통보접수 후 세관에 제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증권, 상업 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 세관의 수입관세 산정 추정 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 한편, 세관이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통관 관련 단체

○ 파나마 통관대행사 전국연맹
- P.O. Box 5358 Panama 5 Republi of Panama
- Tel 507-393-6080
- Fax 507-393-6090
- Email uncap@uncap.org.pa
- Mr. Eides A. Diaz J. / President

통관대행법인

○ Bullen & Bullen, S.A.
- P.O. Via Fernandez de Cordoba, Plaza Cordoba Seccion B - Nivel1 - Local No. 14, Apto. 1060,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29-7565
- Fax 507-229-1922
- Mrs. Carolina Bullen / General Manager

○ Agentes Aduaneros Autorizados, S.A.
- P.O. Box 2653 Panama 9ª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0-2498
- Fax 507-260-2625
- Mr. Oscar Hernandez / General Manager

○ Servicios Aduaneros Gardellini, S.A.
- P.O. Via Transistmica entrando por la farmacia Arrocha, Edificio Buenaventura, apto. 1B,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391-4535
- Mr. Mario Vergara / General Manager

○ Hugo Arjona y Cia., S.A.
- P.O. Via Ricardo J. Alfaro, Centro Comercial Alambra, Local1, Planta Alta,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0-7557
- Fax 507-260-2986
- Mr. Hugo Arjona / General Manager

○ Arturo Arauz, S.A.
- P.O. Via Espana frente al Piex, Edificio Orion, Piso 1, Oficina1-A,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4-6575 / 264-2210
- Fax 507-263-5989
- Mr. Arturo Arauz / General Manager

* 파나마 박람회(Expocomer) 공식 지정 통관업체

○ De La Rosa y De La Rosa, S.A.
- P.O. Box 2046 Panama 9ª Republic of Panama
- Tel / Fax 279-1183
- Mr. Edgardo De La Rosa / General Manager

○ ASAP PANAMA, S.A.
- P.O. Via. Ricardo J. Alfaro, The Century Tower, Piso 15, Oficina 1506,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391-4535
- Mr. Mario Vergara / General Manager

투자환경 및 투자관련 제도

투자환경

미주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점과 파나마 운하 및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한 세계 유수 다국적 기업이 파나마 지사를 중남미 지역 본부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분야는 금융, 물류기지, 콜센터, 관광 인프라 등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파나마는 중남미의 물류 및 유통 중심지이며 중계무역지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연관산업 투자는 물론 비교적 간단한 조립산업, 포장 및 물류산업 등도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나마는 1999년 말 미국으로부터 파나마운하의 완전 인수를 계기로 운하반환지역에 수출산업 가공단지, 항만시설 및 항구운영, 생태관광산업, 지식의 도시 운영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舊하워드 공군 기지를 개조한 태평양 경제 구역을 지정하고, 하이테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어 과실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설립 등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다.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가 없는 것도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큰 장점이다. 또한, 별도 중앙은행이 없으므로 자본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다. 미국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낮고, 환율 급변동의 위험도 작다. 다만, 최근의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할 경우 법률 제28호에 의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 한다. 조립업의 경우에도 수출을 위한

조립일 경우 역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업, 포장업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 감면의 혜택이 없다. 또 역시 법률 제28호에 의거, 수출 지향적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조세, 수입 관세 등의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세계금융·경제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9%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세에 들어가 2013년에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46억 5,100만불을 기록하여 2013 FDI 유입규모 중미 1위를 기록하였으며, 증가율에서도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2위를 차지하였다. 대파나마 FDI 유입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 FDI 규모가 GDP의 3%인 반면, 파나마의 경우 이 비율이 10%에 이른다. FDI의 대부분은 물류, 수출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었다.

주요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큰 변동이 없다. 영국, 미국, 중국, 스페인, 멕시코 기업과 중남미국가 은행 등이 가장 큰 투자자들이다. 2007년 제정된 다국적기업지원법(Law 41)에 따라 새로운 다국적기업지사설립 형태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기업들은 태평양 경제구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기준 파나마에는 105개의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투자 금액 규모 면에서 상위의 외국기업을 살펴보면 Panama Ports Company(홍콩/항만), Cable & Wireless(영국/인터넷통신), Telefonica Movistar(스페인/무선통신), Cemex(멕시코/시멘트), Ica(멕시코/건설), AES(미국/에너지) 등이 있다.

우리기업 투자동향

파나마에는 총 15개의 지상사가 진출해 있다. 외환은행이 1971년에 파나마 지점을 설치한 이후 진출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1년에

는 현대자동차 파나마 상용차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진출형태로 보면 판매・서비스 또는 생산 법인(삼성전자, LG전자, 외환은행, SK건설 등), 지사/지점(삼성물산, 효성, 현대삼호중공업 등), 사무소(현대자동차-상용부문) 등 다양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많고, 금융 및 보험, 건설 등이 있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의 파나마 내 주요 공공투자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 시공을 위한 기업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파나마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설립이 간편하고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도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파나마에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은 다른 국가에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유치정책 개황 및 주요법규

파나마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다만 파나마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파나마에 투자 진출한 기업이라도 파나마의 조세구역 밖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1998.8월 그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PRO-PANAMA(외교부 자문기구 형태의 투자유치진흥기구)와 통상산업부 산하 무역진흥기관(IPCE: Instituto Panameño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합하여 통상산업부(투자진흥 주무부처)에 대외무역 차관실(VICOMEX: 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을 신설하였다.

현재 파나마정부는 제조업 중 식료품 및 음료수, 운반용구, 자동차부품, 통신 기자재, 목재산업용구, 건축자재, 의약품, 살충제, 농기구,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 금융, 서비

스산업 등의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체결도 체약 상대국으로부터의 투자확대를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한편,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 제54호(1998.7.22 제정)를 공표하여 동법에 정하고 있는 각종 투자분야에 대해 10년간 법적 안정성,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안정성, 관세제도의 안정성, 노동제도의 안정성 등 5가지 카테고리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나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과 상호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투자보장에 관한 법 제54호의 제정으로 파나마에 대한 투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파나마에서 적용되는 각종 법규는 다음과 같다.

(2) 투자관련 주요 법규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법률 54호; 1998.7.22 제정)
-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일반화에 관한 법(법률 28호; 1995.6.20 제정)
- 수출가공단지 조성에 관한 법(법률 25호; 1992.11.30 제정)
- 파나마 운하 개발에 관한 법(법률 21호; 1997.7.2 제정)
- 공정거래 보호에 관한 법(법률 29호; 1996.2.1 제정)
- 상행위 및 산업활동에 관한 법(법률 25호; 1995.8.26 제정)
- 기업법, 은행법, 노동법 등 개별법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법률 41호; 2007.8.24 제정)

(3) 투자관련 제도

파나마정부는 다수의 법적 레짐을 설립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투자우대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콜론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

- 재산세 10년간 면제
- 수출입세, 관세 면제
-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배당에 대해 배당세 면제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 외국기업의 파나마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 소득세 면제, 관리직의 사회보장세 면제 등 세제혜택 및 연장가능한 5년의 장기비자 부여 등

○ 금융업

- 농·목·축업 및 관련 산업분야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림산업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소득세 면제
- 금융기관에 예치된 저축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 수출가공지역 소재 기업

- 법 제25호(1992년 제정)에 의해 원자재 및 공장시설재의 수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모든 직·간접세 면제
- 동 지역소재 기업에 의해 발행된 주식, 채권 등에 의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 수출입업

- 수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수입에 대해 각종 관세 감면 혜택 부여
- 수출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면제

특정 분야

이밖에 파나마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관광산업, 건설업, 광산업 등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 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고로 투자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도박, 수도·전기·전화·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발 분야에 외국인 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한 외국인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현지인 고용 의무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는 없으나, 파나마 노동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10%까지 고용할 수 있고 나머지 90%를 파나마인(파나마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 혹은 10년 이상 파나마에서 거주한 외국인 포함)으로 고용해야 한다. 전문직, 기술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종업원 수의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숙련노동력이 풍부하지 못한 파나마에서 이러한 법정 외국인 고용한도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쉽지 않아 파나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가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국경 및 섬으로부터 10km 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 해변, 강변, 호수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2006년 제정된 Law 2에 따라 섬, 해변 및 정부소유지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0년간 양허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3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관광개발을 위해 섬의 일부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동 지역은 민간인에게 이전 또는 매각이 가능하다. 섬 전체면적의 50%를 넘어서는 안 되는 등 제한조건은 있다.

금융상의 제한

파나마는 과실 송금 및 대외 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 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무역 대금 결제와 관련한 외환 통제도 없다. 배당 소득의 해외 송금 및 투자 원금의 본국 회수에도 아무런 외환 통제가 없다. 또한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상의 문제도 없다. 파나마의 금융시장은 1971년부터 완전 개방되었으며 중남미 제1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기업이 현지 금융을 조달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서비스 장벽

파나마는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분야의 시장개방도가 매우 높고 외국인도 법률상 외국인 소유가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장애 없이 부동산 구입을 비롯, 회사 설립 및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이동전화 부문을 비롯하여 통신, 항만, 도로 등 대부분을 외국 업체에게 민영화한 상태 이다. 교육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대학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의 승인을 얻어 파나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현재 상당수의 외국계 교육기관 분교들이 진출해 있다.

파나마 지역 주요 항구는 대부분 외국기업으로 인해 민영화된 상태이며, 외국 선박의 파나마 국적 등록비가 저렴하고 등록절차도 용이하여 현재 13,000대 이상의 외국 선박이 등록되어 있다. 관광 부문도 제도적 장애 요인은 없으며, 시설자재 관세 면제, 토지 장기 임차 등 관광부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994년도 법률에 의거, 관광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나마 헌법상 소매유통업은 파나마인에게만 허용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 체결로 미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하에서 소매유통업을 허용하였다. 파나마에 3백만 달러 이상 규모로 투자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는 자체 유통망을 통해서만 판매되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투자허가

(1) 투자형태의 결정

파나마에서는 소매업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며 법인설립이 용이한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이 일반적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즉 법인 설립이 용이하며 증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외국인지분이 없는 기 설립된 기업 주식 매입을 통한 투자는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 참여 등 대기업 지분투자를 제외하고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2)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파나마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광산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 심사가 필요한 관계로 투자하려는 업종이 투자금지 업종인지 사전심사 대상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투자금지 또는 사전심사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파나마 정부가 자유무역지대나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외 무역 차관실 생산/투자 진흥국 등을 통해 투자인센티브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지역 및 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파트너의 선정

파나마에서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검토사항
- 재력(현금 동원 능력, 기타 출자 능력)
- 과거의 경력과 현재의 신뢰도
- 합작을 희망하는 실제 의도
- 관계 및 재계에 대한 영향력
-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현 정부와의 관계

파나마는 인구 350만 명의 소규모 국가이며 부의 상속이 상례화한 사회여서 현지 유력인사의 경우에는 인적 사항과 성향 파악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파나마에서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는 유태계, 레바논계, 인도계 및 중국계이며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인 그룹을 형성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파나마에는 투자를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단, 파나마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은 내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법 제25호(1994.8.26)및 행정부령 제35호(1996.5.24)에 의거 상공부의 국내상업총국(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파나마운하 반환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운하반환지역 관리청(ARI)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콜론 자유 무역지대에 기업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콜론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 산업에 투자하거나 파나마정부가 투자업체에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상산업부 대외무역차관실(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의 생산·투자 진흥국에서 투자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 비자문제

파나마는 2008년에 이민법을 개정하여, 이민청을 설립하고 이민 및 비자관련 제도를 상당부분 개선하였다. 하지만 일부 투자목적의 체류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로 등록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1년 이하의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있어서 원활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파나마는 비자기간에 따라 각종 신분증 및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부여(비자기간이 6개월인 경우 운전면허도 6개월)되므로, 단기 비자를 받은 사람은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도 비자만료 시 다시 갱신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비자발급을 위해 변호사 수수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근의 제도 개편 등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이 거의 해소되었다.

한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5년 장기 비자제도와 영주권 신청을 통해 비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다국적기업 주재원(및 가족)들은 파나마 다국적기업 지역 본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Law 41)을 활용하여 5년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다국적기업 주재원(및 가족 포함)은 물론이고 일반 교민의 경우에도 '12.6월부터 경제활동 또는 전문직 종사목적으로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지불 능력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제416호)*이 제정됨으로서 영주권 취득을 통해 비자문

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발급시까지 1년짜리 임시거주허가가 발급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1년이 지나기 전에 영주권이 발급되고 있다.

* 2014.9월 현재 대상국은 총 50개국이다. (2012.6월 최초 제정 당시 한국 포함 24개국)

  - 대상국(알파벳순) :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모나코, 산마리노,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남아프리카, 대한민국, 스웨덴, 스위스, 타이완, 영국(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미국, 우루과이

이상과 같이 한국인의 비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과 결부되어 있던 운전면허증의 잦은 갱신 문제도 해결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파나마와 우리나라 당국이 상호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파나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나아가 (입국후 90일 이내에는) 파나마 면허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단속 등의 상황에서 한국 운전 면허증과 여권을 동시에 제시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파나마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5년 장기비자나 영주권을 획득하더라도 파나마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시에는 시력, 청력 등 간단한 신체검사와 수수료를 지불하면 대체로 신청하는 날 새로운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참고로 파나마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시 반드시 혈액검사(혈액형 타입 및 혈당 수치) 결과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혈당 수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순간적 저혈당 증세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운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쟁법

파나마의 반독점 및 소비자보호법은 1996년에 제정되어 2007년에 Law 45로 일부 개정되었다. 2007년 법개정은 반독점 담당기구인 '반독점 및 소비자보호청'(ACODECO)의 조직구조개편과 법위반에 대한 벌금인상을 통한 제재권한 강화가 주된 내용이었다.

설립 이후 파나마 반독점청은 많지는 않지만 법위반 사례를 법원에 제소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등 재판 진행이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독점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대부분의 과점들이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장벽으로 형성되거나 조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독점청은 법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규제 장벽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부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생산량을 정하기도 한다. 반독점청이 아예 관여할 수 없는 분야도 많다.

조세제도

(1) 세제 개황

파나마의 조세제도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및 관세가 국가 조세 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특별소비세, Franchise Tax, 교육보험세, 재산세, 부동산 양도세, 증여세, 인지세 등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등록세 및 영업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9.11월 파나마 정부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율제도(Flat Tax) 도입을 추진하여 상당부분 세율을 단일화 또는 단순화하였으나, 완전한 의미의 단일세는 도입하지 못했다. 또한 2011년 1월1일부로 법인소득세사전납부제(AMIR, Adelanto Mensual del Impuesto sobre la Renta)를 시행하고 있다.

(2) 국세

○ 법인소득세

2011년부터 대부분(약 95%)의 경제활동분야에서 25% 단일세가 적용되고 있고, 2014년까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25% 단일세가 실현될 예정이다.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정부가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여전히 30% 세율이 적용된다. 형식적으로는 세율이 단순화되었음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예외조항 및 허점(loopholes: 농업분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부(-)의 조세 등)으로 인해 각 산업분야에 따라 세율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법인의 소득 결정시에는 감각 상각이 공제되는데 주요 자산의 감가상각율은 다음과 같다.

- 건물(연 2.5%), 기계설비(연 5~15%), 사무기기·가구(연 7~10%), 도구 및 소규모 장비(연 10~50%)

○ 개인소득세

앞서 언급한 단일세율도입 노력으로 개인소득세는 2010년부터 아래 표와 같이 크게 단순화 되었다(Law 8 of 2010). 연간과세소득이 $11,000이하인 경우는 조세가 면제되어 서민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세기준소득(US$)	세율(%)
0 ~ 11,000	0
11,000 ~ 50,000	15 * $11,000 초과분에 대해 15% 적용
50,000 이상	25 * $5,850 기본세금 + $50,000 초과분에 대해 25% 적용

○ 부가세(ITBMS)

파나마에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판매 시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국영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판매업체는 판매세 징수 및 납부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판매업체의 총 매출액 규모에 따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부가세

를 재정경제부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7%의 판매세가 부과되며, 주류는 10%, 궐연 및 담배는 15%, 호텔, 모텔 및 호스텔 등 숙박시설에는 10%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파나마정부는 잇따른 재정개혁(financial reforms) 조치를 통해 기존 판매세가 면제되는 분야를 축소하여, 국내은행 및 금융서비스 수수료, 상업용 부동산 임대, 유·무선전화, 케이블 TV, 자동차 등에 대해 새로이 7%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품목은 면세되는데 판매세가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 식품 및 의약품 판매
- 재화의 수출 또는 재수출
-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 파나마운하관리위원회에 납품하는 경우
- 1990년 법령 7호에 의한 리스계약

판매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 판매업체는 자신이 받은 판매세에서 지불한 판매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판매세를 재정경제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판매세를 납부하게 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원래 제품 가격이 고시되며 동 가격에 판매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특별소비세

주로 사치품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세이다. 케이블 TV, 보석류, 모터사이클, 요트 등에 10%의 특소세를 부과한다.

○ 영업세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파나마 지역에서 상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유주의 재산가치, 즉,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파나마에서는

영업세를 Franchise Tax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현행 자본금과 전년도 영업수익으로 증액된 순 자본금 증가액을 합산 하여 1%가 부과되는데, 납세 최고 상한선은 2만 달러이며 최저액은 10달러이다.

○ 교육보험세

모든 고용주 및 근로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1.25%를 교육세로 원천 공제하고 근로자 급여의 1.50%를 회사에서 부담하여 2.75%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자영사업자는 연간 수입의 2.75%를 납부한다. 동 세금은 소득세 납부 시 소득공제 대상이며, 고용주는 동 금액을 매월 사회보장세와 함께 사회보장부에 납부한다.

○ 재산세

파나마에 있는 3만 달러 이상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을 상회하는 경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는 4월30일, 8월31일, 12월31일 3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재산세 납세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파나마의 재산세는 3만 달러 이하는 면세되며 3만 달러 이상 5만 달러까지는 1.75%, 5만 달러 이상 7만5천 달러 이하는 1.95%, 7만5천 달러 이상은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 부동산 거래세

파나마에서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정부 과세표준 가격 중 큰 금액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부동산의 과세 표준가격이란 재정경제부 고시가격에 개축한 비용 및 보유연도에 매년 5%의 가치상승분을 더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여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세가 면세된다.

○ 양도세

파마나의 양도세는 4~33.75%의 누진세로 부과되며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관계 및 양도물건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파나마에는 상속세는 없으며 유산 상속 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 물품소비세

의료용 및 재수출용, 향수제조용 등을 제외한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은 내국세가 부과되며 담배에도 소매가의 50%에 상당하는 소비세가 부과된다.

○ 인지세

파나마정부 공식문서는 페이지 당 4달러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인지세가 납부된 문서는 증빙서 및 공증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약속어음, B/L 등 상업용 서류에도 정부의 공식 인증이 필요하다. 인지세는 문건의 표시 가격에 따라 다른데 계약서 및 청구서의 경우 표시가격 100달러 당 10센트로서 인지를 구입하거나 스탬프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스탬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2개월, 3개월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 은행 영업세

국영은행을 제외한 파나마 모든 은행들은 매년 은행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은행 영업세는 일반 상업은행은 2만5천 달러, 역외금융은행은 1만5천 달러, 환전소는 600달러이다.

○ 보험료세

파나마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납입보험료의 2%를 보험료세로 부과하고 있다.

동 2%의 기본 보험료세외에 화재보험, 개인 및 단체 생명보험, 농업 및 가축 관련 보험을 제외하고는 5%의 추가 보험료세가 부과된다. 동 보험료세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부과하여 재정경제부에 납부토록 되어 있다.

지방세

지방정부는 자동차 라이선스, 빌딩 개축, 시유지 및 건물 사용 등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소규모 기업부터 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파나마의 지방세는 사업의 가치 및 영업활동 내용에 따라 20~500달러까지 부과되며 자동차 라이선스세는 차종마다 상이하나 평균 30달러 정도이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파나마는 법정통화로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이며 IMF 제8조 국가로서 무역거래, 자본거래에 있어 외환통제를 하지 않는다. 무역 대금 결제 관련,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투자원금 회수 및 과실송금, 해외자본 도입 및 상환, 이자 지급 등에도 아무런 통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 산업이 발달하는 장점도 있으나, OECD 등 선진국으로부터 인근 콜롬비아 등지의 마약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파나마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도 파나마 소재 은행에서 비거주자 계정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파나마 기업체의 대외투자 통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 유입이나 반출에 대해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조세피난처라는 비난을 듣게 되었고, 급기야 2009.4월 OECD로부터 조세피난처 회색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파나마 정부는 회색국가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12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파나마는 2011.7월에 프랑스와 12번째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상기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파나마는 2013.9월 기준 17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또는 이중 과세방

지협정을 체결하였고, 조세피난처리스트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기명주식 소유자가 주식증서를 당국이 지정한 보관기관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기명주식보관법을 2013.8월 공포하였다.(공포 후 2년 뒤인 2015.8 발효 예정). 즉, 그간 파나마는 주식 보유자가 자신의 성명 등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무기명주식 제도를 운영해 왔고, 이것이 해외 불법 자금세탁에 이용됨으로써 조세피난처로서의 비난을 받아왔는데, 상기 무기명주식보관법 제정으로 동 주식 소유자는 무기명주식 증서를 당국이 지정한 보관기관(은행, 신탁기관, 증권예탁소)에게 예탁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금융당국은 무기명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을 파악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산업분야 현황

물류

(1) 파나마 물류산업의 위상 및 수출입화물 운송수단 이용분포

1) 파나마 물류산업의 위상

○ 파나마는 지정학적 위치와 항만, 공항, 파나마운하 확장, 물류단지, 창고시설, 도로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덕분에 2013.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2014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항만 인프라에서 세계 6위, 수송 인프라 세계 5위, 인프라 전반 세계 37위를 차지하였다.

○ 물류분야가 파나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3.3%에서 2013년 25%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컨테이너항들은 국제 상품이동 및 분산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고, 연간 물동량은 2013년 기준 약 656만 TEU에 이르며, 파나마 컨테이너항은 중남미에서 가장 현대화된 항구이자 지역 최대 물류 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 2013년 기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들(만사니요 국제 터미널,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 크리스토발항)은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가 집계한 중남미 컨테이너 화물물동량 순위에서 브라질 Santos항구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 2016년 파나마 운하 확장부분 개통시, 운하를 통과하는 컨테이너 선박 톤수는 현행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2) 수출입화물 운송수단별 이용분포

○ (수출) 2013.1월-7월 파나마의 수출량은 751,836톤으로, 이용된 운송수단은 해상, 육로, 항공, 철도 순이다.

	해상	육로	항공	철도
이용비율(%)	85.05	13.74	1.19	0.02

○ (수입) 2013.1월-7월 파나마의 수입량은 3,834,560톤으로, 이용된 운송수단은 해상, 육로, 항공 순이다.

	해상	육로	항공	철도
이용비율(%)	70.5	29.2	0.3	0

(2) 해상운송

1) 수출

○ 해상운송은 파나마의 주요 국제 운송 수단으로, 2013.1월-7월 파나마에서 해로를 통하여 수출된 주요 상품(톤 기준) 1위는 바나나(21%)이며, 다음으로는 주철 웨이스트와 스크랩(18%), 기타 펄프재(9%), 신선 파인애플(8%), 기타 목재(7%) 등 이다.

○ 동 기간 해로를 통한 파나마의 주요 수출국(톤 기준)은 인도(18%, 116,216톤), 대만(14%, 87,482톤), 독일(9%, 59,687톤), 네덜란드(9%, 57,210톤), 스웨덴(8%, 51,279톤), 태국(6%, 37,704톤), 미국(6%, 37,259톤), 한국(5%, 37,007톤), 베트남(3%, 18,679톤), 그루지아(3%, 18,679톤), 기타(19%) 순이다.

2) 수입

○ 2013.1월-7월 해상운송수단을 통한 수입물품 순위 상위 5개 품목(톤 기준)은 유연탄(7%), 시멘트 클링커(Clinker)(6%), 철근(6%), 밀 등 기타 곡물(5%), 포틀랜드 시멘트(5%)이다.

○ 동 기간 파나마의 해상운송수단을 통한 주요 수입국은 미국(35%), 콜롬비아(18%), 중국(10%), 스페인(4%), 터키(4%), 멕시코(4%), 아르헨티나(3%), 브라질(2%), 과테말라(1%), 한국(1%), 기타(18%) 순이다.

3) 항구 물동량(파나마운하 통행 포함)

○ 파나마항구시스템(Sistema Portuario Nacional)에 속한 항구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항구와 정부가 운영하는 항구로 구분된다.

- 현재 파나마에는 총 18개의 항구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파나마해운청(AMP) 항구해운부수산업국*이 운영하는 11개 항구는 연안운송(Cabotage)을 담당하고, 나머지 7개 항구는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받은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운송을 담당한다.

  * Dirección General de Puertos e Industrias Marítimas Auxiliares

- 파나마 해로를 통한 대외교역의 100%는 민간이 운영하는 항구를 통해 실시되며, 총 물동량을 기준으로 컨테이너선이 60%이상을 차지한다.
- 항구 물동량 중 98%는 해외수출입, 2%는 연안운송이다.

○ 2013년에는 콜롬비아의 고관세 부과 및 베네수엘라의 외환통제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다.

2013 파나마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TEUS	4,651,925	4,244,739	5,593,172	6,629,943	6,857,724	6,561,396

2013년 주요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항구	물동량(TEUS)	비율(%)
발보아항(Balboa, 태평양)	3,063,579	47
만사니요 국제 터미널(MIT, 대서양)	2,025,904	31
크리스토발항(Cristóbal, 대서양)	721,685	11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CCT, 대서양)	608,471	9
파나마 국제 터미널(PSA, 태평양)	123,808	2

4) 파나마 주요 항구

가. 발보아항(Balboa)

○ 미국 서부해안, 중남미 서부해안,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자리 잡은 발보아항은 파나마시 태평양 해안에 위치하며, 철도, Transísmica 고속도로(Panama-Colòn), Panamericana 고속도로(코스타리카 국경의 Paso Canoa-콜롬비아 국경의 Darien)와 연결되어 있다.

- 동 터미널은 대서양에 위치한 크리스토발항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 Hutchison Port Holding(HPH)그룹의 자회사 Panama Ports Company(PPC)가 2022년*까지 운영한다.

  * 1997년에 항구 운영권을 받았고 2022년 이후 추가로 25년 갱신 가능

- 총면적은 182,000㎡이며, 전체 화물 물동량의 약 30%, 파나마 컨테이너 물동량의 47%를 담당한다.
- 발보아항 근처에서는 선박 수리 조선 단지와 유류 기지, 예선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브라스웰 수리조선소는 파나막스급 선박의 수리가 가능한 드라이 독(Dry Dock)을 갖추고 있다.
- 2012년 수출입화물 가운데 양륙은 57%, 선적은 43%이다.
- 2012년 전체 물동량(TEU)의 92%는 환적, 8%는 파나마의 수출입이다.

나. 만사니요 국제 터미널(Manzanillo Internacional Terminal, MIT)

○ 대서양 파나마운하 입구쪽에 위치하면서 콜론자유무역지대에 접하는 동 터미널은 본래 해군기지였으며, 현재 세계 최대 해운·물류 터미널 기업인 Stevedoring Services of America(SSA Marine)의 자회사 Carrix와 파나마 금융·통신분야 등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Motta y Heilbron家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미국 동부해안, 중남미, 유럽과 연결로에 있는 동 터미널의 면적은 520,000㎡이며, 1995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다.
- 동 터미널은 2012년 컨테이너선 부두 건설, 포스트 파나막스급 크레인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3억불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 2012년 수출입화물 가운데 선적은 51%, 양륙은 49%이다.
- 2012년 전체 물동량(TEU)의 84%는 환적, 파나마의 수출입은 16%이다.

다.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Colon Container Terminal, CCT)

○ 콜론주 대서양 해안에 위치하며, 파나마와 카리브해, 북미, 남미의 동부 해안을 연결한다.

- 총 면적 370,000㎡의 동 터미널은 Evergreen 그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동 터미널은 컨테이너, 벌크선, 로로선(Roll-on/roll-off)*에 대한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

  *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수송하는 화물선
- 2012년 수출입화물 가운데 80%가 선적, 20%가 양륙이다.
- 2012년 전체 물동량(TEU) 중 환적은 69%, 파나마의 수출입은 21%, 콜론자유무역지대 운송은 10%이다.

라. 크리스토발항(Cristóbal)

○ 파나마운하의 대서양쪽 입구이자 콜론시 남동쪽 Bahía de Limón에 위치하는 동 항구는 약 150년 전 파나마 철도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부 및 건축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건설되었고 1997년부터는 발보아 항을 운영중인 Panama Ports Company(PPC)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마. PSA 파나마국제터미널(PSA Panama International Terminal)

○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Port of Singapore Authority)가 운영하는 동 항구는 태평양 쪽 舊 Rodman 해군기지에 위치하며, 2010년에 가동을 시작(파나마 운하 확장공사를 위한 자재 공급)하였고 2012년부터 컨테이너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육로운송

○ 파나마 공공사업부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 도로인프라의 총 연장은 14,391km이며, 주요고속도로는 다음과 같다.

- Panamericana : Paso Canoa(코스타리카 국경)-Darien(콜롬비아 국경)
- Carretera Central : Divisa-Pedasí
- Transistmica : Panama-Colòn

○ (수출) 2013.1-7월 육로를 통한 총 수출량은 102,679톤이며, 수출된 주요제품은 팜유 등 원유, 바나나, 멜론종자 등 종자, 화학비료(질소, 인, 칼륨), 파인애플이며 동 기간 주요 수출국은 코스타리카(33%), 니카라과(8%), 미국(7%), 과테말라, 페루, 엘살바도르(3%)이다.

○ (수입) 2013.1-7월 육로를 통한 총 수입량은 1,118,325톤이며, 육로를 통해 수입된 주요제품은 경유, 제트연료유, 부탄가스, 옥탄가 87-91 가솔린, 옥탄가 91 초과 가솔린이며, 주요 수입국은 코스타리카(16.8%), 미국(9.5%), 콜론자유무역지대(3.5%), 엘살바도르(1.8%)이다.

(4) 항공운송

1) 수출 및 수입

○ (수출) 2013.1-7월 항공운송을 통한 수출량은 8,897톤이며, 1위는 연어류 등 생선(간, 알 제외)이며 다음은 대구과, 가자미과, 송어류 순이다. 동 기간 파나마 주요 수출국은 미국(89.7%), 과테말라(2.3%), 인도(1.7%), 콜롬비아(1.2%), 푸에르토리코(0.75)이다.

○ (수입) 2013.1-7월 항공운송을 통한 수입량은 11,017톤이며, 수입품 상위 5가지 품목은 의약품, 폐유, 향수 및 화장품, 기계부품, 잡지 및 일간지이며, 주요수입국은 미국(33%), 콜롬비아(19%), 멕시코(10%), 과테말라, 스페인(4%)이다.

○ (토쿠멘국제공항) 동 공항은 파나마의 항공운송을 통한 교역의 100%를 담당하며, 화물전용터미널(720헥타르)을 갖추고 있다.

2) 항공산업 현황

가. 항공산업 규모 : 2011년 기준 파나마 GDP의 4.1%(12억 7,900만 달러)를 차지한다.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Oxford Economics에 의뢰, 2013.4월 발표

나. 공항 현황: 총 55개(국제공항 5개)

○ 국제공항: 파나마시 2개(토쿠멘, 하워드), 보까스 델 또로 2개, 치리끼 1개이다.

○ Tocumen 공항이 가장 대표적 국제공항이며, COPA항공사의 허브공항이다.

다. 국제운송 화물·여객 통계

○ Tocumen 공항 이용 여객수

- 연도별 : 6.9백만('12), 5.8백만('11), 5.0백만('10)

- 지역별('12년) : 남미(43%), 북미(30%), 카리브(12.3%), 중미(10.8%), 유럽(3.6%)
- 항공사별('12년) : COPA(64.8%), 콜롬비아 Aero Republica(11.6%), American Airlines(3.9%), United Airlines(3.6%), 콜롬비아 Avianca(3.1%), KLM(2.1%) 등

○ Tocumen 공항 화물운송 통계
- 연도별 : 11.6만톤('12), 11만톤('11), 9.8만톤('10)
- 지역별('12년) : 남미(36.2%), 북미(34.9%), 중미(17.7%), 유럽(8.9%), 카리브(2.3%)
- 국가별('12년) : 미국(29.3%), 콜롬비아(27.6%), 과테말라(8.9%), 베네수엘라(8.8%), 코스타리카(8.6%), 네덜란드(5.1%), 에콰도르(2.4%), 스페인(1.8%) 등

라. Tocumen 공항 및 COPA 항공의 연결성

○ Tocumen 공항의 연결성: 직항 연결 63곳, 경유 통한 연결 825곳

○ COPA 직항 도시 : 미주 28개국 74개 도시
(COPA 항공 자회사인 COPA AIRLINES COLOMBIA社의 운항 노선 포함)

지역		취항 도시
북미	캐나다	Toronto
	미국	Atlanta, Boston, Chicago, Dallas, Denver, Houston, Las Vegas, Los Angeles, Miami, Newark, New York, Orlando, Philadelphia, San Francisco, Seattle, Tampa, Washington Dulles
중미	멕시코	México city, Cancún, Guadalajara, Monterrey
	과테말라	Guatemala, 코스타리카: Liberia, San José
	니카라과	Managua
	온두라스	San Pedro Sula, Tegucigalpa
	엘살바도르	San Salvador

지역		취항 도시
카리브	안티야스 제도	Curazao
	안티야스 제도	St Maarten
	자메이카	Kingston, Montego Bay
	쿠바	La Habana
	바베이도스	Nassau
	도미니카	Santiago de los Caballeros, Santo Domingo, Punta Cana
	아이티	Puerto Príncipe
	푸에르토리코	San Juan
남미	아루바	Aruba
	에콰도르	Guayaquil, Quito
	파라과이	Asunción
	콜롬비아	Barranquilla Bogotá, Bucaramanga, Cali, Cartagena, Cúcuta, Leticia, Medellín, San Andrés Isla, Pereira, Santa Marta
	브라질	Brasilia Manaus, Porto Alegre, Recife, Río de Janeiro, Sao Paulo, Belo Horizonte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Córdoba
	베네수엘라	Caracas, Maracaibo, Valencia
	페루	Iquitos, Lima
	우루과이	Montevideo
	칠레	Santiago de Chile
	볼리비아	Santa Cruz
	트리니다드토바고	Puerto España

(5) 파나마운하

1) 운하 통행 물동량

○ 2013년 파나마운하 물동량은 총 3억 2천만톤(통행료는 18억 4,600만불)으로, 주요 통행 선박은 컨테이너선(1억2천만톤), 드라이벌크선(7,300만톤), 유조선(5,300만톤), 자동차운반선(3,700만톤), 냉장선(1,000만톤)이다.

○ 2013년 기준 파나마운하를 통한 주요 통행루트는 미국 동부해안-동아시아(35%)*로서 미국에서 아시아로 주로 이동하는 상품은 옥수

수, 콩 등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상품은 철, 페트로리움 코크(Petroleum Coke)*이다.

*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최종 부산물

2) 운하 확장공사

○ 총사업비 52억 5천만 불의 파나마운하 확장공사는 32억불 규모의 제3수문 2기 신규건설 공사(태평양, 대서양 입구 각1기)를 비롯하여 제3수문 진입수로 준설, 현 수로 확장 등의 개별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 길이423m. 폭55m, 깊이18.3m의 제3수문이 새로 가동되면 12,000TEU급의 Post Panamax컨테이너선이 운하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 당초 확장공사는 파나마운하 개통 100주년인 2014년에 준공예정이었으나, 그 시기가 2016년 초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 파나마운하 확장 공사 구성사업

○ 파나마운하 확장공사는 2007.9월 개시되어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쪽 제3수문 진입수로 준설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갑문 설치 등의 나머지 공사는 진행중이다.

- 컨소시엄 GUPC가 2009.7월 낙찰받은 제3수문 2기 신규 건설 및 부대사업 공사(총32억원)*는 전체 프로젝트 가운데 최대 규모의 핵심 사업이다.

* 수문 1기마다 챔버 3개, 수문 8개, 수문에 대한 다중화(Redundancy) 시스템설계・건설 포함

(6) 특수경제구역

○ 파나마는 다양한 사업 활동 장려 및 국제교역, 제조생산, 서비스업 발달을 위해 내・외국인 투자자들이 세제, 이민, 근로상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특수 구역을 설치하였다.

- 콜론자유무역지대(Zona Libre de Colón)는 대서양쪽에 위치하여 아시아, 유럽, 북중남미, 카리브에서 운송되어 온 상품을 대량으로 관세 없이 재유통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동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주로 의약품, 섬유, 제조품, 기계, 전자기기 등이 취급된다.
- 12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파나마태평양지역(Área Panamá Pacífico)은 태평양 쪽 舊 미군기지에 위치하고, 첨단기술제조업, 물류서비스, 비전통 상업 및 서비스업 유치에 특화되어있으며 동 지역 내에 친환경 주거단지도 마련되어 있다.
- 지식도시(Ciudad del Saber)는 과학, 학술, 기술, 상업 활동을 장려하고, 창업문화 및 혁신적인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현재 동 경제구역에는 국제기구 사무소, IT기업, 비정부기구, 학술연구기관 등 총 175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금융

(1) 파나마 금융시장의 특징

○ 파나마는 제조업 부문이 매우 취약하나, 서비스업은 GDP의 70%를 차지할 만큼 발달되어 있으며, 금융업은 물류・창고업 등과 함께 파나마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서비스업 가운데 하나로서 금융 분야는 2013년 GDP의 7.6%를 차지한다.

○ 현재 파나마에는 총 93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고 총 자산은 약 979억 불에 이르며, 중앙은행이 없어 전적으로 시장에 의해 금융자원이 관

리된다.

- 파나마 은행들은 수출입・기업 금융, 은행간 거래에 특화 되어 있으며, 은행 자산의 72%가 미주・카리브, 유럽, 아시아계 외국 은행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다.
- 파나마에서는 파나마운하, 세계 2위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인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한 국제 거래가 활발하며, 특히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설립법 발효 후 많은 다국적기업 기업 본사가 파나마에 진출*하여 은행분야는 계속 성장할 분야로 전망된다.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설립에 관한 법률 제41호('07.8.24.제정)는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교육세 등 각종 납세의무 면제 및 SEM 체류비자 제공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며, 동 법이 적용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106개의 (SEM)가 파나마에 진출

○ 파나마는 1904년부터 달러리제이션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국제 달러화 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 파나마 금융분야는 외국에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유연한 조세체계*, 고객의 기밀 유지,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을 장점으로 하여 해마다 성장해 나가고 있다.

* 파나마에서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파나마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파나마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나, 파나마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상기 장점으로 인하여, 파나마는 중남미 지역 금융 중심지로 커 나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돈세탁 역시 용이하다는 평가가 있어 2009.4월 OECD에 의해 조세피난처 회색국가군으로 분류된 바 있다.

- 조세피난처 규제를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파나마는 상기 회색국가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각국과 조세정

보교환협정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결과 2011.7월에 프랑스와 12번째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상기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 파나마는 금융건전성 강화 등 필요한 규제조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기명 주식 소유자가 주식증서를 당국이 지정한 보관기관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기명주식보관법을 2013.8월 공포하였다. (공포 후 2년 뒤인 2015.8 발효 예정)

※ 그간 파나마는 주식 보유자가 자신의 성명 등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무기명주식 제도를 운영해 왔고, 이것이 해외 불법 자금세탁에 이용됨으로써 조세피난처로서의 비난을 받아왔는데, 상기 무기명주식보관법 제정으로 동 주식 소유자는 무기명주식 증서를 당국이 지정한 보관기관(은행, 신탁기관, 증권예탁소)에게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금융당국은 무기명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됨.

(2) 은행업 라이센스 및 국제은행센터(Centro Bancario Internacional, CBI)

○ 파나마에는 은행업 관련 3가지 라이센스가 존재한다.

- 일반 라이센스(Licencia General)는 파나마 국내 및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국내외 은행에 부여되고, 국제 라이센스(Licencia Internacional)는 오직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은행에 부여되며, 대표 라이센스(Licencia de representación)는 외국은행이 실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파나마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 현재 파나마에는 일반 라이센스 은행 50개, 국제 라이센스 은행 29개, 대표 라이센스 은행 14개가 영업중이다.

지역	은행 수
북미	7
카리브	2
파나마	22
남미	42
유럽	14
아시아・중동	6

- 파나마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일반 라이센스 보유)을 비롯하여 Banistmo*, 시티 은행, BBVA, Scotiabank 등이 진출하여 영업중이다.

  * 2013년 콜롬비아 Bancolombia은행이 HSBC 파나마 지점을 인수

○ 상기 라이센스를 지니고 파나마에서 활동하는 모든 은행을 가리켜 파나마 국제은행센터(Centro Bancario Internacional, CBI)*라고 통칭한다.

* 파나마국제은행센터(CBI)란 은행들로 이루어진 협회가 아니라, '파나마 은행업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나마의 국영・민간 은행들이 가입한 대표적인 단체는 파나마은행협회(Asociación Bancaria de Panamá)

※ 한편, 파나마에서는 각종 은행 관련 통계에서 국가은행시스템(Sistema Bancario Nacional, SB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일반 라이센스 은행(50개)과 파나마 국립은행인 파나마은행(Banco Nacional de Panamá, 중앙은행은 아님)과 저축 기금(Caja de Ahorros) 및 중남미수출입은행(BLADEX)이 포함된 개념

- 파나마 국제은행센터(CBI)는 1970년 은행법에 의하여 창설되었고 이를 규제하는 기관으로 국가은행위원회(Comisión Bancario Nacional)가 설립되었으며, 동 기관은 1998년 현재의 은행감독청(Superintendencia de Bancos)이 되어 파나마 은행을 규율한다.

(3) 파나마 은행업계 관련 최근 통계

○ 파나마 은행업계는 세계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본규모를 계속 확대해오고 있다.

- 2013년 국제은행센터 자본은 979억 2,800만 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9.1% 성장하였으며, 예금도 전년대비 9.5% 증가한 701억 4,900만불을 기록하였다.

파나마 국제은행센터 자본 규모

(단위 : 백만불)

연도	2010	2011	2012	2013
자본	708.91	816.75	897.71	979.28

○ 2013년 파나마 국제은행센터 자산수익률(ROAA)은 1.47%, 자기자본 수익률(ROAE)은 13.80%를 기록하였다.

(단위 : %)

연도	2010	2011	2012	2013
ROAA	1.71	1.76	1.81	1.47
ROAE	13.65	14.10	15.56	13.80

○ 파나마 국제은행센터의 수익원(2012년 기준)은 대출(58%), 예금(0.91%), 투자(8%), 기타수입(34%)이다.

○ 2012년 기준 총 대출액 560억 2,500만불의 대출 대상은 파나마(58%), 남미(24%), 중미(11%), 카리브(2%), 유럽(2%), 기타(25%)이다.

○ 2012년 기준 총 예금액 640억 900만불의 예금 주체는 파나마(59%), 남미(17%), 중미(9%), 카리브(8%), 북미(5%), 유럽(1%), 기타(1%)이다.

통신

(1) 파나마 ICT(정보통신기술)시장 개황

▪ 파나마 ICT시장 통계

	년도			
	2011	2012	2013(e)	2018(f)
이동통신 가입자(천명)	7,281	7,267	7,340	8,076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명)	194.7	191.1	189.9	193.5
3G 서비스 가입자(천명)	514	622	765	2,119
유선라인가입자(천명)	543	538	532	532
100명당 유선라인 가입자(명)	14.5	14.2	13.8	12.7
광대역통신망 가입자(명)	263	286	302	387
100명당 광대역통신망 가입자(명)	7.0	7.5	7.8	9.3

자료원 : BMI ('14.1월 자료)
(e) 추정치, (f) 전망치

(2) 파나마 통신시장 약사

○ 파나마에서 통신서비스가 민영화된 시점은 1997년으로, 영국 Cable & Wireless(CWP)사가 당시 파나마 국영통신공사(INTEL)로부터 유선통신 사업권을 인수하였다.

※ 파나마 정부는 49%의 주식을 경매입찰을 통해 매각하였고 CWP사*가 $652 백만불에 낙찰

* CWP사 지분보유 현황 : 정부 49%, CW 49%, 우리사주 2%

○ CWP가 1998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3년까지 유선통신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 보유하였다.

○ 미국의 Bellsouth사가 1996년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업허가를 취득하였고, 2004년 스페인 Telefonica(Movistar)에 매각되었다.

○ 2009년 자메이카의 Digicel(아일랜드계 기업)과 멕시코의 America Movil(Claro)이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하였다. (20년의 영업허가 취득)

(3)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 현황

1) 파나마 주요 이동 통신사별 시장 점유율

2013년 6월 기준

통신사	시장점유율		비 고
	2010	2013. 6월	
Cable & Wireless Panama (CWP)	54%	25%	영국 기업 (파나마 정부 지분 49% 보유)
Telefonica Moviles Panama (Movistar)	30%	36%	스페인 기업
Digicel	16%	22%	자메이카 기업
America Movil (Claro)	0.7%	17%	멕시코 기업

자료원: 경제 주간지 Martes Financiero

2) 이동통신 시장현황

○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통계상 보급률이 200%를 넘는 수준이지만, 사용자 1명이 복수의 번호를 (2~3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활동(inactive) 가입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 사전 지불(Prepaid) 사용자와 사후 지불(Postpaid) 사용자 비율은 약 9 대 1로 사전 지불 방식의 가입자 수가 절대적이다.

○ 2011년 번호이동제*가 도입된 이후로 CWP사는 큰 타격을 입었었다.

* 번호이동제(Mobile number portability, MNP)를 통해 소비자들은 같은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통신사 변경 가능

(4) 브로드밴드(Broadband) 인터넷 분야

○ 파나마 정부혁신청(AIG)은 '2013-2022 국가 광대역 인터넷 사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브로드밴드 가입자수를 현재 100명당 8명에서 47명, 인터넷 이용자수는 현재 100명당 41명에서 8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에 따르면, 파나마 인터넷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11년부터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추정)
수	37.5	38.2	40.9	41.8	41.5

○ 인터넷 접속방식은 CABLE MODEM(53% 비중, Cable Onda사 서비스 제공), ADSL(40% 비중, CWP사 서비스 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5) 최근 통신사업자 동향(투자계획 등)

○ Claro사에서 2013-2014 기간 동안 무선통신망 확대를 위해 $150백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며, 동사는 2008년 사업허가 취득 이후 무선통신망 인프라에 $6억불 이상 투자해왔다.

○ 아울러, Movistar에서도 향후 US$ 15백만을 투자하여 중미 광통신망을 구축하여, 초당 속도 10 gigabits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파라과이

파라과이는 남미 심장부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비옥하고 저렴한 토지, 자연재해 없는 온화한 기후환경, 풍부한 전력자원, 평평한 국토 등 농업·축산분야에 있어서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파라과이는 전통적 농업국가로 주요 기간산업은 농업 및 축산 등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산업기반은 아직 미미한 국가이다. 그럼에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남미 심장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 산업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작은 내수시장, 만연한 부정부패, 산업기반 미비, 숙련된 인적자원 부족 등은 산업발전 및 외자유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파라과이 수출은 2013년 203백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74.5백만달러로 양국 간 교역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 정회원국으로 역외지역 일반 수입대상국에 대해 적용하는 일반관세 외에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WTO 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가이다.

설탕, 원유 등 특정 품목을 제외, 최고 20%의 일반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남미공동시장 대외공동관세가 적용되는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평균 20%의 대외공동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에는 상호 민감한 일부 품목을 제외, 무관세로 통관제도를 공유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산업기반이 미미하여 기본적으로 수입자유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내·외국인 공히 수출입업자 등록자이면 법인이나 개인 자격으로 자유로이 수입활동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

수입품목에 따른 관세율 이외, CIF 기준으로 세관감정세(Servicio de Valoración Aduanera), 부가가치세(Impuesto al Valor Agregado), INDI(국립토착민기구 보조세), 통관서류 영사확인 수수료(Arancel Consular) 등이 수입부과금명목으로 부과된다.

음료, 원유, 담배, 생수, 향수 등 특소세 적용품목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를 부과하고 있다.

※ 주요 상품 특소세율

- 담배 12%, 위스키 10%, 휘발유 34%, 디젤유 14.3%,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상품 1% 등

통관절차상의 장벽

파라과이는 수입상품의 검역, 검사 및 통관절차에 있어 WTO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특별한 통관규정은 없다.

단, 파라과이 정부가 공인하는 통관사를 통해서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이고 낙후된 행정으로 인해 통관시일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업체에게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으며 WTO 등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원산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 및 언더밸류 통관 방지를 위해 설탕, 시멘트, 육류, 밀가루, 마테차, 위생용품, 대두, 의류, 닭고기, PVC 케이블 등에 특별수입자 등록 제도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파라과이는 특정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유해물질 등 일부 규제품목들을 제외한 일반 수입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입량 제한 등의 특별한 규제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근 파라과이 관세청은 브라질과의 국경무역 활성화를 위해 전자제품, 화장품, 향수 등 66종 품목에 대해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라과이는 대부분의 소비재와 산업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 반덤핑법 또는 상계관세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의류, 시멘트 등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특정 상품의 경우,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국가 수입산에 대해서 높은 관세나 특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표준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검사

파라과이는 기술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및 ISO 표준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립기술표준원(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Normalización y Metrología)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기 및 기술표준, 도량형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라벨링

파라과이 산업통상부가 상표, 특허 등 제반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내외 상품에 모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식품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중량, 유효기간 등의 상품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상품정보 표기는 반드시 스페인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파라과이는 생태계, 수질, 공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재조림 조성지, 농장, 목장 등 포함)에 대해 환경청(SEAM)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령 293/93).

품목별 장벽

파라과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품은 자동차 및 부품, IT 및 가전제품,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의료기기 등 공업상품으로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여타 국가 수입품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변 경제대국인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산 공업상품들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 통상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파라과이 시장에 수입되고 있고, 특히 중국산 상품들이 저가공세로 파라과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 상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파라과이 시장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기술력 및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어 의료기기, IT상품 등 첨단제품 및 자동차, 건설장비 등의 수출전망은 밝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파라과이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수출지향형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각종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업체들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를 통해 투자계획서를 승인받으면 파라과이 정부가 투자사업 형태에 따라, 60/90호 수출진흥법, 마낄라 보세가공무역법(Ley de Maquila),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제도 등을 통해 부여하는 각종 면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라과이 정부조달시장관련 일반적 특징

파라과이는 법률(Ley 2,051/03, Ley 3,439/07, Decreto 21909/03, Decreto 5174/05)을 통해 중앙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의 물품(방산장비 포함) 구매조달 및 프로젝트 입찰 등을 재무부 산하 조달청(Dirección Nacional

de Contrataciones Publicas)의 감독과 통제 하에 각 기관책임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 조달청은 공공계약통합시스템(SICP, Sistema Intergrado de Contrataciones Públicas)을 운영(www.contrataciones.gov.py) 하여 모든 입찰 정보는 해당기관 및 조달청의 홈페이지에 등재를 의무화하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공개토록 의무화

- 입찰 발주 기관과 참가자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조달청에서 관여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조달 계약 방식은 국내·국제공개입찰(Licitación Pública Nacional e Internacional, 최저임금 일급 10,000배 이상 금액), 가격경쟁입찰(Licitacón por Concurso de Ofertas, 최저임금 일급 2,000~10,000배 이상 금액), 수의계약(Contratación Directa, 최저임금 일급 2,000배 이하 금액) 방식 등이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국제입찰은 국제금융기관(특히, IDB 및 CAF)의 차관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해당 원조기관과 파라과이 수원기관 및 재경부 간에 조율된 입찰 규정에 따라 입찰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최근에는 도로 정비 등 인프라사업 위주

파라과이는 우리 EDCF 차관과 같이 '구속성(tied up)'이 있는 차관 공여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은 편이며, 해외 차관으로 시행되는 모든 정부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여·야 정치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 특히, 파라과이 내에서 가장 많은 국제입찰사업을 발주하는 건설교통부(MOPC) 및 국영전력공사(ANDE)는 각기 최근 추진 중인 신규 도로망 구축사업, 송·배전망 확충 사업 등을 가급적 PPP 형태로 추진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외국인업체 입찰 참여제한

파라과이 정부조달법은 모든 조달 참가 업체에 대해 모두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산품 진흥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국산품에 대해서 최대 10%까지 정도의 가격 가산점을 부과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기업이 파라과이 현지법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입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현지 대리점 또는 법인을 통해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파라과이 정부조달 시장 진출시 참고사항

국제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찰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찰안내 자료도 모두 스페인어로만 작성되어 있어 언어장벽으로 인해 우리 업체들의 입찰 참가에 애로사항이 산재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입찰 서류제출상의 사소한 오류(서류제출 양식, 서류작성 양식 등)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자격미달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사관, KOTRA 등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라과이는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분야 정보수집, 향후 하도급 업체 협력체계 마련 등을 위해서는 현지 유수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파라과이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및 WIPO 주관하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베른협약, 파리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 등) 비준국가이다.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업무는 산업통상부내 지식재산권담당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관련 법 제도(상표권 관련법령 1294/98, 특허권 관련법령 2630/00, 산업도안 및 모델 868/81, 저작권 1328/98)를 정비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여전히 저가 복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단속하는 법적 집행능력도 약해 불법 복제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타국으로부터 수입된 불법 복제물이 파라과이로 수입되었다가 주변국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 지식재산권 보호 단속 업무는 검찰청 지식재산권 담당 특별검사 및 통상산업부 산하 지식재산권 단속 특별부서(Unidad Tecnica Especializada)에서 담당

- 파라과이 Ciudad del Este는 불법 복제품을 주변국으로 유통시키고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
  - 전자제품, CDs/DVDs, 의류, 명품 악세서리, 신발 등을 수입해오거나 현지에서 제조하여 주변국으로 재수출

미국 USTR은 파라과이를 불법복제 우선관리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1988.11월에는 파라과이-미국 간에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파라과이를 미국의 통상법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서비스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는 데는 특별한 장벽은 없으나 파라과이(내륙국가)강을 운항하는 바지선은 파라과이 국적선(내국인 참여지분을 50% 요구)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통신분야에서 유선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영통신회사(COPACO)가 독점하고 있으나 무선통신분야는 완전 개방(내국인 참여지분을 50% 요구)되어 있다.

한편,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데도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외국계 업체를 차별대우하는 경우는 없다.

- 여타 전문 직종은 아순시온 국립대학에서 취득학위에 대한 자격심사 및 인증을 받아, 해당 협회 등록과 승인 절차를 밟도록 요구
- 교육 분야는 외국인도 학교를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학교장은 파라과이인으로 제한

파라과이 정부는 국가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근 전력송전망, 주요 고속도로 및 아순시온 공항 운영사업을 BOT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송전망 운영 문제에 관해서는 파라과이전력공사(ANDE)가 독점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이후부터는 Mercosur 역내에 서비스 부문을 완전히 개방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역내 전문직(법률가,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은 각 협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투자환경

내·외국인 투자자 등등 대우 원칙

파라과이는 내·외국인 투자(광산, 농·목축업, 통신, 전력 등)에 대해 매우 개방되어 있어 형식적인 제한은 없으며,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법령 117/91에 의거)를 보장하고 있다.

- 외국인도 자연인(Persona Física) 또는 법인(Persona Jurídica) 명의로 특별한 제한 없이 투자 가능
- 단, 부동산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도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으나, 2005년도 이후부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의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인들에 한하여, 자국과 인접한 국경지대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

각종 세제 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 및 경제 개방 지향

파라과이의 경제자유지수는 조사대상 183개 국가 중 2010년 81위에서 2013년에는 89위로,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4위로, 기타 중남미국가에 비해 경제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는 기타 중남미 국가들 대비 조세부담율이 적은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GDP 대비 조세부담율, 법인세율 및 부가가치세가 타 중남미국가와 비교 시 매우 낮다.

- 조세부담율은 14.5%(브라질 29%, 아르헨티나 21%)
- 법인세율은 10%(브라질 34%, 칠레 17%)
- 부가가치세 10%(브라질 최고 25%, 아르헨티나 21%, 칠레 19%)

그간 의회의 반대로 시행이 지연되어 오던 개인소득세 도입 법안이 의회 승인을 거쳐 2013.7.23 공포되어 8.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소득세 납세 대상은 2013년도 기준 연간 179백만 과라니(약 41,000달러

상당)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이다. 파라과이 정부는 2013년부터 동 소득세 납세 기준 상향선을 점진적으로 낮춰 나감으로써 조세 수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양호한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제공

투자촉진법(60/90)에 따라 자본재(기계 및 장치) 수입관세 0%, 자본재 부가가치세 0%, 최소 500만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 10년간 각종 세금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미국 Heritage Foundation 2014 세계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전세계에서 78위로 '다소 자유롭다는(moderately free)' 평가를 받고 있다.

- 우루과이 38위, 브라질 114위, 아르헨티나 166위

국산화 의무 부가 및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파라과이는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으며, 파라과이산 완제품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아 여타 Mercosur 회원국에 무관세 수출할 수 있도록 60:40 역내산 비율을 충족시키길 권장하고 있다.

법인·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법인·지사·사무소 설립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행정절차도 간소하며 투자 대비 특정인원의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도 없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이 없으면 주주는 될 수 있으나 경영진이 될 수는 없으며, 대표이사는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법인·지사·사무소 설립은 공증인(Escribano Público)을 통하거나 또는 산업통상부 창업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 SUAE)을 이용하여 모든 수속을 한곳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자세사항은 후반부 창업절차통합시스템 내용 참고).

일부 서류는 우리 정부의 확인과 주한파라과이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상의 제한, 세제상 제한 및 투자 유치 인센티브

파라과이는 금융 및 환율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과실 송금관련, 송금 및 재투자를 제한하는 조치 등은 없다.

환율은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나,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중앙은행이 환율시장에 개입한다.

파라과이 금융기관은 외국인의 경우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에 한하여 외환구좌를 개설해주며, 1만달러 이상을 예탁할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본국 및 제 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역시 특별한 규제를 두지는 않는다.

- 단, 본사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할 시에는 다소 고율의 세금 부과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데는 시중 이자율이 높고 은행권이 대체로 단기 대출만 허용하고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조금은 전무하다.

파라과이는 Mercosur 국가 중 조세부담이 가장 적은 국가로 투자업체들에 대한 특별한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오히려 투자 장려를 위해서 60/90호 투자진흥법령에 의한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10년간 회사설립 및 등록비, 회사채 발행 및 양도 시 소요되는 각종 제세를 면제해주며, 투자 계획서상에 포함된 자본재, 중간재등 원자재 수입 시에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5백만달러 이상 투자 시에는 배당소득 및 이익금에 대한 해외 송금액에 대해 추가로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 단, 5백만달러 이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배당금 및 이익금의 송금 시 15% 세금 부과

파라과이 정부는 투자 유치, 수출증진 및 고용창출을 위해 보세가공무역제도 '마낄라 제도(www.maquila.gov.py, Régimen de Maquila, 법령 1067/ 97)'를 200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 마낄라 제도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파라과이 전국 어디서나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자재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수출시 전체 매출액의 1% 상당액만 징수하는 수출 촉진·장려제도이다.

2014년 기준, 67개의 마낄라 기업이 활동 중이며, 7,736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2014년 1~7월 마킬라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53% 상승한 1억 3,460만 불을 기록하였다.

파라과이는 자동차, 트랙터, 기타 육상 운송기구 조립 및 부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조립제도(Régimen Automotor Nacional)를 운영하고 있고, 동 제도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원자재는 면세 조치(CIF 기준 5,000달러 이상)를 취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운영

파라과이는 Ciudad del Este에 2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 Zona Franca Global del Paraguay
- Zona Franca Internacional

또한, 내륙 국가인 파라과이는 주변국 해안 항구에 자유무역지대와 물류보관창고를 갖고 있어 물품 입고, 보관, 매각, 환적 등이 가능하다.

- 아르헨티나(Buenos Aires, Rosario), 브라질(Paranagua, Santos, Rio

Grande do Sul), 칠레(Antofagasta, Mejillones), 우루과이(Montevidio, Nueva Palmira)에 자유무역지대 및 물류보관창고를 운영

- 최근 대만정부와 상호 물류보관창고 개설에 합의

법인설립 설립 시 창업절차통합시스템(SUAE) 운영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는 투자분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형태에 따라 법이 정한 기본적인 구비조건만 갖추면 외국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 법인·지사·사무소 설립은 공증인(Escribano Público)을 통하거나 또는 산업통상부 창업 절차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 SUAE) 이용 가능

단, 현지에 연고(영주권 소지 등)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귀화자 또는 영주권자를 주주로 영입해야 한다. 설립절차 및 비용은 법인의 형태, 설립자본 규모 등에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제반 절차는 간소한 편이다.

특히, 파라과이 정부는 사업자등록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법인등록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창업절차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s, SUAE)' 제도를 마련, 2007년부터 시행 중인바, 비자 업무, 세금 납부 등을 포함하여 단시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동 제도를 활용하면, 법인설립부터 회사개업까지 보통 3달이 걸리던 소요시간을 15일로 단축 가능
- 동 절차에 대한 매뉴얼은 해당 웹사이트(www.suae.gov.py) 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증인을 통해 설립절차를 진행할 경우, 회사정관을 작성하고, 변호사

를 통해 해당 법률기관에 법인등록절차를 밟는다. 해당 법률기관으로부터 정관이 승인되면, 대법원 산하 문서등록청(Dirección General de Registro Público)에 동 정관을 등록함으로서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 정관 작성부터 법인설립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1-2달이며, 공증인 수임료(설립자본에 따라 0.75~2%를 지불토록 법으로 규정) 및 법인등록 관련 일련의 소액 세금만 지불

법인설립 완료 후 사업 활동 개시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재무부와 법인 소재지 관할시청에 사업자 등록증(Patente Comercial)을 신청해야 한다.

- 현지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도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파라과이 내 소재지가 있어야 함.

그러나 투자자가 각 부처를 직접 상대해야하는 경우 발생시, 행정서비스망 낙후 및 관료주의로 인해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고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어려운 편이다.

- 파라과이는 UN 부패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서명국이나, OECD 뇌물수수금지협약(Covention on Combation Bribery)에는 미 가입

외국인 투자 동향(2013년)

파라과이 중앙은행(BCP)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라과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누계는 총 4,928백만달러이며, 외국인의 2013년 대 파라과이 투자는 전년(469백만달러)보다 다소 감소한 325백만달러를 기록했다. 투자국별로는, 브라질이 최대 투자국으로서 2013년 108백만달러를 투자했다.

파라과이는 아래 국가들과 양자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Argentina, Brazil, France, South Africa, Taiwan, United kingdom,

Urguay, Austria, Benelux, Costa Rica, Ecuador, El Salvador, Germany, Hungary, Korea, Netherlands, Peru, USA, Rumania, Spain, Switzerland, Venezuela

파라과이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정식 회원국이므로 만약 외국 투자자와 파라과이 정부간 분쟁 발생 시에는 국제적 분쟁조정 요구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장애 요인: 부정부패, 치안 악화, 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법치주의 부재

파라과이 내수 시장 협소, 밀수 성행, 숙련된 노동력 부족, 인프라 취약 등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법부 개혁이 미진하여 법치주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의 관료주의적 업무처리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인구

파라과이 통계청 2012년도 자료에 따르면, 파라과이 총인구 660만 명 중 노동 인구는 64.3%에 해당하는 약 324만 명으로서 그 중 34.8%는 자영업, 6.3%는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공무원 9.2%, 사기업 35.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노동인구의 27.2%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2차 산업에 16.1%, 3차 산업에 56.7% 종사

최저임금

파라과이 헌법 및 노동법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내·외국인,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최저임금은 1,824,055과라니(약 390달러, 2014.95월 기준)로 책정되어 있으나, 노동인구의 41.7%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사기업 종사자의 49.4%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근로시간

노동법이 정한 근로시간은 주 48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초과 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 주간노동자: 일급+일급의 50%
- 야간노동자: 일급+일급의 30%
- 공휴일 노동: 일급+일급의 100%

고용계약조건

고용계약을 체결 시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해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허용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수습기간
  - 숙련직 또는 견습노동자: 60일
  - 비숙련직 또는 가사노동자: 30일

고용자 해고 시에는 근속 연한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하며, 1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에 대해서는 연 15일치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근연한에 따라 퇴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해고통지 기간
  - 1년 이상 상근자: 30일전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45일전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60일전
  - 10년 이상 상근자: 90일전

사전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처리되는 경우, 상근연한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 보상금 지불금액
- 1년 이상 상근자: 30일치 일급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45일치 일급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60일치 일급
- 10년 이상 상근자: 90일치 일급

고용주는 1년 이상 근속한 정식 고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이외 매년 12.31일 이전까지 1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상여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당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1년 근무 이상 근로자는 매년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아래와 같다.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공휴일을 제외한 18일
- 10년 이상 상근자: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 출산휴가는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90일까지 부여

사회보장제도

파라과이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주가 국가의료보험 및 연금 보장기관인 사회보장청(IPS)에 의무적으로 고용자들을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비율로 고용자 임금의 25.5%의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 명목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 고용주·고용자간 보험료 납부 부담비율
- 고용주: 고용자 월 임금의 16.5%
- 고용자: 월 임금의 9%

그러나 실제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총 노동 인구 324만 명의 18%(약 63만 명)에 불과한 바, 공공기관, 규모 있는 민간기업들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서는 대체로 사회보장법령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파라과이 근로자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

여를 수령하고 있어 사회보장기구 보험료 지불을 꺼려하고 있고 정부의 보건의료 및 연금체제에 대해 큰 신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정책

파라과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과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은 철근회사, 시멘트 공장, 유선통신회사, 정유회사, 전력회사(송배전) 등으로 노조의 압력으로 인해 민영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생산성과 채산성 악화로 인한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이들 회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하지만, 송전선 운영부문, 정유부문 및 인터넷 해외접속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외국인 투자는 환영).

- 파라과이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Itaipú 수력발전소의 경우, 생산전력의 45% 정도를 브라질에 헐값에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력공사의 투자 미비로 인한 송배전설비 부족으로 정전이 빈번히 발생, 산업 발전에 크게 지장 초래
- 철근 및 시멘트 회사의 경우 역시, 원자재는 풍부한 편이나 생산설비 노후 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자재 품귀 현상이 빈번히 발생

기타 장벽

입국사증

파라과이는 2006.4월부터 우리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들에게도 관광목적에 한하여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3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방문목적에 따라 관광 또는 상용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현지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단, 파라과이 영사관측이 비자신청자들에게 대해 은행계좌 내역서, 갑근세 납부증명서, 소득증명서, 왕복 항공권 등 과다한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문으로 된 구비서류들은 스페인어로 공증번역까지 요구하는 등 제반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비자발급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다.

영주권

파라과이에는 장기체류 비자제도가 없으므로, 상사주재 등 장기간 파견업무 수행 시에는 현지에서 임시거주권(Carnet de Admisión Temporaria) 또는 영주권(Carnet de Admisión Permanente)을 취득하여야 한다.

영주권 관련 업무는 파라과이 내무부 산하 이민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ones)에서 관장하고 있다.

- 주요 구비서류: 여권 및 파라과이 입국사증 사본, 신원증명, 건강증명, 호적초본, 출생 증명, 혼인증명 등
- 예치금: 이민청에서 지정한 파라과이 국내 금융기관(국립진흥은행: Banco Nacional de Fomento)에 3개월간 미화 5천달러를 예치

구비서류 제출 시 90일기간의 접수증(Contraseña)을 발급하며, 90일 이후까지 발급이 안 되었을 경우 이민청을 방문해 접수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도장을 받아야 한다.

예치금은 영주권 취득 후 환불

- 예치한 금액은 영주권 취득 후 환불을 받는다.

특히 상사 주재원이나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별도로 이민청을 방문하지 않고 앞에서 설명한 산업통상부의 '창업절차통합시스템(SUAE)'을 이용할 수 있다. SUAE 사무실을 방문하면, SUAE에 파견된 이민청 직원을 통해 영주권 신청부터 회사 등록까지 필요한 절차를 한 번에 협의 및 처리가 가능하다.

※ 창업절차통합시스템(SUAE) 사무실 정보
(아순시온시청 부근 위치)
- 주소: Cap. Villamayor c/Del Puerto(al costado de la Municipalidad de Asuncion)
- 전화: 595-21)525-885, 513-537
- 홈페이지: http://www.suae.gov.py
- 근무시간: 월~금, 07:00~13:00

운전면허

파라과이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절차를 거쳐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되나 입국일자부터 90일간 운전이 가능하며 운행 시 여권과 국제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내무부 산하 이민청에서 발급하는 영주권(Carnet de Adminisión Permanente) 및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주민증록증(Cédula de Identidad)을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는 소재지 관할지역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파라과이 주민등록증 사본, 혈액검사서, 시력·청력검사서를 주요 구비서류로 제출한다.

외국인의 경우 초기 신청 시에는 본국 운전면허 기 소지자라 하여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양국 간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페루

주요 거시경제 지표

구분	지표	단위	2014				
국가 일반	인구	(명)	30,475,144				
	면적	㎢	1,258,000				
	한반도 대비면적	배	6				
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기준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8.5	6.5	6.0	5.8	4.8
	1인당 GDP	US $	5,196	5,614	6,069	6,797	6,674
	명목 GDP	백만솔	434,738	486,545	526,286	558,056	134,169(1분기)
	정부부채/GDP	%	23.3	21.2	19.8	19.2	18.3(3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	%	2.08	4.74	2.65	2.86	3.45
	민간소비증가율	%	6.0	6.4	5.8	5.2	5.1
	실업률	%	9.6	9.1	8.3	7.4	5.9
대외 경제	수출실적	US $ 백만	35,422	46,268	46,367	42,177	-
	수입실적	US $ 백만	29,976	36,967	41,135	42,217	-
	무역수지	US $ 백만	5,446	9,302	5,232	-40	- 674
	민간투자증가율	%	22.1	11.4	13.6	3.9	24.4
	외국인투자금액 (당해분)	US $ 백만	8,189	8,119	12,297	10,037	2,402
	총외채	US $ 백만	43,674	47,977	58,830	60,329	60,632
	외환보유고	US $ 백만	44,105	48,816	63,991	65,663	65,992
	이자율	%	3.0	4.25	4.25	4.00	3.4
	환율	US $	2.808	2.696	2.550	2.803	2.785

자료: 페루 중앙은행, 세계경제은행

수입 제도

수입 제도 개관

페루는 후지모리 前정부가집권한 1990년 7월 이후 수입 금지 및 규제조치 전면 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허가서 발급절차 폐지 등 시장 개방, 수입 자유화 정책을 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6년 제2차 알란 가르시아 前정부가 들어서도 유지했다.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제1차 집권 때인 1980년대 후반 많은 수입 규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2006년 재집권한 후 2011년 7월 28일 퇴임할 때까지 개방 및 수입자유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수입관세율을 3가지로 단순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2007년 10월 15일 9, 17, 20 %로 대규모 개편하였고 2010년 말에 다시 여러 품목에 걸쳐 관세를 인하했다.

이러한 관세 인하 기조는 2011년 8월 당선된 우말라 대통령의 現정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세 인하의 결과, 2014년 현재 수입관세율은 0%, 6%, 11% 등 3가지로 유지되고 있다.

페루는 안데스 회원국 생산 제품 수입에 한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수입규제 차원이 아닌 역내 생산품 수입에 대하여 특혜관세(무관세)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수입 금지 품목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동일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다.

-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 해외에서 제조된 음료 및 주류 중 삐스코(Pisco, 페루 전통주)라는 제품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단어가 들어간 제품

○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화학원료
○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 세화
○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수입 규제 품목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제한이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	수입 시 요구 조건
식음료 제품(화장품 포함)	수입 시 위생청 사전 허가 필요
무선통신 장비	수입 시 교통 통신부 사전 허가 필요
지도 및 지형 연구 관련 자료	수입 시 외무부의 허가 필요
전쟁물자가 아닌 민수용 무기 및 탄약, 폭발물	수입 시 내무부 허가 필요
해산물 및 어패류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
농약 및 유사 제품	수입 시 신고 필요
수의학과관련된 의약품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 필요
종자, 동식물 및 축산물	수입 시 수출국 발행 검역 증명서 필요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수입 시 농업부 발행 허가서 필요
일반 의약품 및 특정 상표 의약품	o 수입시 보건부 등록 번호 및 신청일자 o 수입물품 포장별 내용물 및 유효기간 o 수입업체회사명 및 납세번호 신고 필요 o 세계보건기구 품질보증협정에 가입한 수출국 관련 기관의 의약품 증명서와 해당 물품이 자유 상거래 대상 품목이라는 수출국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

기타 수입제한 법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견본(샘플)을 수입할 경우

- 상품 또는 제조품 견본 수입은 상업적 또는 非상업적 가치를 가진 것에 한하며 오직 제품 확인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당사자 간에 매매가 없는 경우, 견본품은 非상업적성격을 가진다.
- 천 달러 이하의 선물과 이천 달러 이하의 非상업적 견본 수입 시, 간이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FOB 가격으로 이천 달러 이상의 견본 수입 시, 단일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쿼터

전체 품목별 수입쿼터는 페루관세청 홈페이지(http://www.sunat.gob.pe)에서 세관업무(Operatividad Aduanera)를 클릭한 후 잔여 할당량(Saldo Contingentes Arancelari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관세 장벽

반덤핑은 저가 수입상품의 범람으로 인해, 페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2004년 한국산 직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규제가 있었으나, 2005년 규제가 종료되었으며, 2014년 현재까지 덤핑 제소된 품목 중에 한국 제품은 없다. 페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재경부(MEF) 장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최종 조사결과는 재경부 차관에 의해 판정되며, 관보에 게재된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관의 제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을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의 수입 물량 및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상업의 생산

량, 설비 가동률,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요구된다.

동 위원회는 제소 품목의 자료를 수집하여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핑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 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한다. 제소품목의 국별 수입물량추이 등 기초자료를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 이후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하며 조사 개시 후, 덤핑 및 보조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혐의 판정 시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참고사항

산업용자본재를 수입할 때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입하는 수입가격 조작 사례가 있어 세관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재활용, 중고 기계류나 운송 장비를 수입할 때 특히 가격조작이 많은 편이며 특히 미국, 유럽 기계 수입 시 심지어 구입가격의 50%로 신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태리산 중고 직물 생산기계 수입가격도 50% 이상 조작사례가 있었다.

중국산 5개 의류 수입에 반덤핑 규제 실시(2013년 12월)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공정경쟁 국립연구소(INDECOPI)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페루에 덤핑가격으로 수입된 중국산 5개 의류에 대해서 반덤핑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동 위원회는 15개 중국산 의류 제품에 대해 덤핑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5개 의류에만 반덤핑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5개 품목은 폴로셔츠, 와이셔츠, 바지, 속옷, 양말 및 유사제품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의하면, 덤핑(Dumping)은 수출국 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국에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페루와 중국은 WTO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국이 덤핑가격으로 수출

할 경우 반덤핑을 시행할 수 있다.

2009년과 2011년 사이 페루산 의류제품의 시장참여율이 18.7% 감소했으며, 그 결과 재고율도 32.3% 증가했다. 2011년에 3600만 의류 제품에 대한 국내수요가 있었지만 페루산 의류제품은 국내수요의 2%만 차지했다. 중국산 제품의 경우 2009년 1억 1900만 제품에서 2011년에 1억 8700만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2009년 66%에서 2011년 71%로 5%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의류 제품을 시장가격보다 37~38% 저렴하게 페루에 수출했다.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반덤핑 결정으로 중국이 와이셔츠(6.73 달러), 양말 및 유사 제품(1.24 달러), 바지(15.98 달러), 폴로셔츠(4.33 달러), 속옷(1.59 달러) 제품을 각 괄호 안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출할 경우 반덤핑 상품으로 규정한다. 덤핑 상품으로 규정될 경우 와이셔츠, 양말 및 유사 제품, 폴로셔츠, 속옷제품에 대해서 각 제품당 0.14~1.00달러의 추가세가 붙으며, 바지의 경우 3.73달러의 추가세가 적용된다.

페루 관세 제도

개요

페루의 관세제도는 안데스 공동체 회원국 명명법(Nomenclatura Común de los Países Miembros de la Comunidad Andina, NANDINA)에 기초, 이외 추가적 세부사항을 골자로 만들어졌으며 페루 관세청 SUNAT에서 관세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관세율 종류, 관세 및 비관세

1997~2013년 관세제도 주요 변화 추이

페루는 1997년 4월 14일부터 종전의 15%, 20% 2단계 관세율 체제를

12%와 20% 관세율 체제로 변경하여 시행했으며 2001년도 들어 공업용 원부자재류 1,936개 품목(HS 6-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4%로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2년도 들어서는 일부 산업용 기계류 및 공업용 원자재 일부의 관세를 12%에서 7%로 인하 적용해 왔다.

이러한 관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다 2005년 10월 14일부터 일부 소비재, 중간재, 기계류를 포함한 총 458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하였고 특별소비세(Sobretasa)도 폐지하였다. 이후 2012년 1월부터 발효된 법령(238-2011-EF) 조치로 총 604개 품목이 새로운 관세를 적용 받게 되었으며 기준 품목 수(7554)를 기준으로 약 56% 정도가 0%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고, 34% 정도가 6% 관세를, 10%가 11%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세율 0% 적용의 4,224개 품목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소비재가 465개 품목, 원자재 및 중간재가 2,113개 품목, 자본재(기계, 수송장비 등) 및 건축자재가 1,646개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국내 생산 활동 장려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공산품 가격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죽, 원사, 면 등의 섬유 부문에 대한 관세는 9%에서 6%로 인하되었으며 셔츠, 정장, 폴로셔츠, 수영복, 속옷, 신발 등에 대한 관세 또한 17%에서 11%로 인하되었다. 페루 평균 관세는 2010년 5%에서 2011년 3.2%로 하향 조정되었고 이 수치는 2014년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개방정책 기조 유지 위한 지속된 관세율 인하

페루 정부는 2012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법령(238-2011-EF)을 통해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발표하고 바로 시행하였는데 관세 인하 후 페루 수입관세율 구조와 관세 구조는 아래와 같다.

페루수입 관세율 구조

관세율 (종가세+추가관세)	품목 수		2013년 수입액(CIF US$ 천)	
	품목 수	비중(%)	금액	비중(%)
0	4,224	55.9%	31,772.5	73.3
6	2,538	33.6%	9,741.1	22.5
11	792	10.5%	1,835.6	4.2
계	7,554	100.0%	43,349.2	100.0
명목평균관세율(%)			3.2	
관세율 평균편차(%)			3.8	
실효 관세율(%)			1.2	
가중평균수입 관세율(%)			1.8	

자료: 페루재정경제부, 페루 관세청

다. 한국 및 인접 국가간 관세제도

한국-페루 간 관세 제도

시장 개방 정책 유지에 따른 지속적인 관세인하 조치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띠는 산업계·생산업계는 앞으로 페루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제조업이 더욱 약해질 것이며 고용 촉진도 둔화될 것이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 업계·상업계 및 페루 경제부는 소비자 효용이 증대되고 무엇보다도 산업 기반이 되는 기계 플랜트 및 원 부자재 수입이 더욱 촉진되어 그 비용도 줄어들어 오히려 페루 의 산업 경쟁력 및 생산성은 장기적으로 강해진 것으로 생각하는 등 산업별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종품목인 가전제품, 기계류, 운송기기류 등은 FTA 발효와 더불어 지속된 페루의 관세인하 정책으로 관세 혜택을 입으며 對페루 수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2011년 8월 한-페루 FTA 발효 이후 관세혜택을 입은 자동차, 컬러TV 등의 수출이 크게 신장되는 등 다수의 품목에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양국간 관세율은 품목 수를 기준으로 페루의 즉시 철폐 비율이 67.9%, 조기(5년 내)철폐 비율이 81.3%, 10년 내 철폐 98.9%이며, 양허 제외는 0.1%로 99.9% 품목의 관세가 모두 철폐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즉시 84.5%, 조기 철폐 91.5%, 10년 내 97.4%, 양허 제외 0.9%로 99.1%의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반면 교역액 기준으로는 페루의 경우 즉시 74.2%, 조기 철폐 88.6%, 10년 내 철폐 비율이 100.0%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즉시 94.2%, 조기 철폐 96.2%, 10년 내 철폐 비율이 100%이다.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 간 관세제도

페루는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 간 무관세교역 및 5, 10, 15, 20% 4단계 대외 공동관세를 시행 중에 있으나 페루는 안데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용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안데안 역외 공동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외 페루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과 양자간 무역 협상을 통해 별도의 특별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페루는 양측 상품의 태평양 및 대서양 경제권 진출 교두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칠레 등의 국가들과도 양자 간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은 2007년 12월 14일 미 상원을 통과하여 2009년 발효했다. 페루는 개별회원국과 부분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동 협정 내 품목에 대해 무관세 교역을 시행하고 있다.

- 볼리비아: 전 품목에 대해 무관세교역
- 에콰도르: 약5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교역
- 베네수엘라 및 콜롬비아: 약 8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교역

중남미 통합 연합(LAIA) 간 관세제도

한편, 중남미 11개국이 참가한 중남미 통합 연합(LAIA) 회원국에 대해 개별 회원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존 관세율에서 20~100%포인트 인하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 수입물품의 수량, 품질, 형태 및 용도 등에 대해 허위신고 시: 0.1UIT
- 통관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해 모든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FOB가격을 부정확 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액과 실제 가액간 관세차액의 5배
-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액과 실제 가액간 관세차액의 2배

관세 책정 및 부과과정 참고사항

페루의 관세평가는 기본적으로 수출국에서 행해진 선적 전 검사서에 나타난 가격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5,000달러 미만의 수입의 경우, 선적 전 검사가 면제되며 이 경우 상업송장 등 수입서류와 관세청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관세평가제도를 토대로 적정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자동차 등 일부 고가제품 및 가격 파악이 용이한 제품의 경우, 각 모델별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수출국 검사기관의 확인서와 자체 보유 과세기준을 병행, 기준가격을 산정 하고 있다.

관세부과 기준가는 CIF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선임, 보험료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제비용 즉, 커미션,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의 통관 시 전 품목에 대하여 18%의 부가 가치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부과 기준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편의상 부가가치세 18%로 표현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부가가치세는 16%이며, 나머지 2%는 지방 정부 재정 목적의 지방세이다. 페루의 가공수출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지불하고 완제품 수출 시 이를 환급 받는 관세환급절차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2가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선 재수출을 전제로 1년 한도 내(동일 기간 1회 연장 가능) 일시 반입한 경우, 관세부과가 잠정 연기되며, 재수출 시 관세 납부 의무가 말소된다. 동 제도는 보세가공을 위한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수입 시 적용되고 있다. 이 법령이 부여하는 기한 내 보세반입물품이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 물품을 몰수

하며 또한 보세물품의 사전신고 없이 제3자에 양도하였을 경우 관세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수출을 전제로 수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된 수입물품 구매자가 이를 이용, 물품을 생산 수출하였을 경우 관세 환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현금이 아닌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로 환불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수출업자는 여타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동 유가증권으로 지불할 수 있다.

○ 관세 환급 제출서류
- 관세환급요청서, 관세환급대상 원자재 수입신고서 사본, 수출신고서 사본
- 기 수입된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인보이스 사본
- 관세 환급을 수출 다음날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보증서 첨부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WTO, RTA, FTA/기타 협정가입 및 체결현황

▪ 페루의 무역협정체결 요약표

	대상국(지역) 또는 기구명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1	세계무역기구(WTO)	-	가입	- 1995년 1월 1일
2	안데스공동체 (Comunidad Andina- CAN)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창설 협정	발효	- 1969년 카르타헤나 협정으로 탄생 - 1993년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의 대외공동관세 적용으로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 설립 - 페루는 이 자유무역협정에 1997년에 가입하고 2005년에 안데스동맹 회원국에 대해 일반관세 철폐 완료

	대상국(지역) 또는 기구명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3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09년 3월
4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09년 8월
5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09년 2월
6	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09년 8월
7	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0년 3월
8	태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1년 12월 31일
9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0.02.28 브뤼셀에서 협상 - 2011.3.23 계약 법적 검토 완료 - 2012.6.26 협정 체결 - 2013.3.1 발표
10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스타인, 노르웨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스위스, 리히스텐스타인에 대해서 발효(2011.6.1) - 아이슬란드 발효(2011.10.1) - 노르웨이 발효(2012.6.1)
11	일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1년 5월 31일 체결 - 2012년 3월 1일 발효
12	한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0년 8월 30일 협상 타결 - 2011년 3월 21일 체결 - 2011년 8월 1일 발효
13	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1년 5월 26일 협정 체결 - 2013년 6월 1일 발효
14	파나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1년 5월 26일 협정 체결 - 2012년 3월 9일 발효
15	베네수엘라	부분적 무역협정	발효	- 2012년 1월 7일 협정 체결 - 2013년 8월 1일 발효
16	과테말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진행중	- 2011년 12월 6일 체결 - 발효 진행 중
17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중	- 2010.11.8 협상 개시
18	터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중	- 2013.10.21 협상 개시

자료: 통상관광부(MINCETUR)

무역 보완 협정 체결 내용 등

	대상국 또는 대상지역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1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경제보완협정 제58호(ACE 58)	발효	- 2003년 8월 체결 - 2006년 1월 발효
2	멕시코	경제보완협정 (ACE 8)	발효	- 1987년 멕시코와 페루 間 관세인하 실시 - 2000년 2월 협정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2000년 8월 발효 - 2006년 상품을 추가해 경제보완협정 제8호 출범 - 2011년 4월 6일 서명 - 2012년 2월 1일 발효
3	쿠바	경제보완협정 (AAP.CE. 50)	발효	- 2001년

자료: 통상관광부(MINCETUR)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일반 통관절차 개요

페루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통제, 화물의 양하, 포장의 개방 등에 관한 책임은 페루 세관의 배타적인 권한이며 다른 어떤 당국도 동일한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는다.

페루정부는 통관 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절차 마련, 법령 공표, 위원회 설치 등 통관환경 개선을 포함한 무역 원활화를 위해 통관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2013년 현재 SIGAD이라 불리는 통환 자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적하목록, 수입신고, 특급탁송, 출항신고서, 통합세금납부, 디지털화, 인적자원개발, 서비스 향상 등이 가능해졌다.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 참고 1: 수입 검사 제외 물품
- 기부 및 원호물품, 외교관의 최초 이사 물품, 관세 구역에 일시 예치 품목, 재수출을 위한 일시 반입 원자재

○ 참고 2: 수입 검사 표본추출 대상
- CALLAO 세관: 1일 접수된 선적 전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5%, 검사 증명서 미 첨부 신고서 및 통관사를 통하지 않은 신고서의 30%

○ 지방 세관
- 1일 접수가 5건 이상일 경우 접수건의 50%(최소 5건), 접수 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 100%

○ TACNA 세관
-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30%, 미 첨부 신고서의 100% 납세고지서를 전산 출력하고 이에 검사 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발송, 신청인은 3일 이내에 금융 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세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수입 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청인은 검사관과 함께 세관 물품 창고에서 실물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관은 우선 서류의 하자 여부 및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전 검사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동 검사 확인서와 실제 물품을 비교하여 관세 산정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검사 확인서가 없는 경우 세관 별 세관 자체 보유 관세 평가 가격과 물품을 비교 검사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하여 수입물품 출고처로 이송하며, 수입검사 제외물품은 동 과정을 생략하고 출고처로 이송한다. 이후 통관신청자는 관세납부 필증을 지참, 출고처에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물품도착 통지를 받고,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세금고지서를 수행하는 데 24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관세는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입검사 대상품목은 1~2일 간의 검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수속 완료 후 물품 반출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세관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1주일 내외이며 세관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00~12:30, 14:00~16:00 이다. 수입통관 시 통관사 및 하주, 수취인 등이 통관권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수입신고의 57%는 5일, 16%는 5.6일, 13%는 7.2일, 나머지는 9일 이상의 통관 소요시간이 걸린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시 수입 물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서와 기타 서류 혹은 신고서와 실제품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 부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수량 및 품질, 상품종류에 차이가 있을 경우
  - 0.1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 관세부과 단위로서 1UIT=S/3,000(US$ 900 상당)로 책정된 벌금이 부과된다.

○ 전체 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불성실 신고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 탈세기도 금액의 5배 벌금이 부과된다.

○ 원산지를 안데안 국가 등 관세면제 지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관세 포탈(포탈)을 기도한 경우
  - 정상 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 지방 세관이 부여한 봉인물 또는 기타 안전장치를 파손했을 경우
  - FOB기준에 따른 화물가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벌금형에 처한 업체는 페루의 외국 무역업자 등록부상에 등록이 취소 또는 정지되기도 한다.

통관절차 순서

세관에 수입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Declaracion Unica de Aduana)를 제출하면 세관창구에서 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서류가 GED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류접수증명(BED: Boleta de Entrega de Documentos)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신청자에 교부한다.

세관에서는 접수서류를 신청인별로 구분하여 신청인이 전문 통관사가 아닌 경우 1차 서류 검사반의 점검을 통해 전산 처리 반에 전달한다. 이후 전산 처리 반에서는 받은 자료를 전산상에 입력하게 되는데 우선 서류내용의 하자 여부를 점검하며 만약 하자 발견 시 신청인에 반송되어 익일 다시 접수하도록 조치한다.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뒤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에 전자 전송되며 수입 신고서에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SIGAD시스템의 정보 기입란에 목적지(Destinacion)라고 표시된 네모에 10자리 수입신고 코드를 입력하면 화물도착 유형별로 기입된다.

통관 시 품목 설명, 분류, 원산지, 수량이 표기된 (인보이스 류) 문서로만 검사되나 무작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 오픈 작업을 시행할 물품을 선별한다. 초록색과 노란색이 나올 시 그대로 진행되나 빨간색이 나올 경우 총 물품의 20%까지 검열을 받게 된다. 만약 이 20%의 화물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전체 화물을 열어볼 수 있다.

동시에 부과대상 관세산정,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표본 추출한 후, 각 서류를 중앙은행, 관세 수납처 등 관련기관에 이송한다. 수입신고서의 전산처리 이후,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며, 검사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동 사실을 세금고지서에 표기하여 통보한다.

페루 관세청(SUNAT)의 통관자동관리시스템상에 적하목록 번호를 입력할 시 선하증권(B/L)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수입 시 요구되는 제출 서류는 수입 신고서,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하여 다수가 있으며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명	필수 여부	원어명(스페인어)
1. 수입 신고서	필수	Declaración Unica de Importación
2. 선적 증명서	필수	Conocimiento de Embarque
3. 상업 송장	필수	Factura Comercial
4. 검사 및 감독 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필수	Certificado de Inspección o Supervisión
5. 원산지 증명서	안데안 회원국 및 LAIA회원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할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품목에 포함 될 시 요구	Certificado de Origen
6. 보험 증권	필수	Póliza de Seguro
7. 세금 납부 영수증	필수	Recibo de Pago de Impuestos
8. 검역 증명서	동식물의 경우	Certificado de Inspección
9. 품질증명서	의약품의 경우	Certificado de Calidad

페루 무역항 및 공항개황

(1) 공항

페루의 국제공항으로서는 리마 소재의 Jorge Chavez 공항과, 칠레와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Tacna 공항, 그리고 관광지이면서 볼리비아 방향 항공편의 국제공항으로 사용 되는 Cusco 공항이 있다. 이 중 Tacna 공항은 인근국의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Jorge Chavez의 경우, 확장을 위해 국제 컨소시움과의 양허 협상에서 2001년도부터 독일의 프랑크후르트 공항 관리공단과 활주로를 2개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30년 간의 양허(Concession) 협정을 체결하고 내부 보수공사 등을 완성한 바 있으며 남미지역 주요 공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항구

페루의 대표적 국제항구는 카야오(Callao) 항구로 Callao는 리마 시와 광역시 형태를 형성하고 있으며 리마 시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Callao 항구는 현재 페루에서 가장 큰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국제 항구로 한국에서 선편으로 수출 시 보통 카야오 항으로 도착하게 된다.

이 외에 페루 남부에서는 위치한 자유무역지대와 연계한 Matarani, Ilo, Tacna 항이 대표적이며 북쪽으로는 Paita, Chimbote 항을 국제항구로 손꼽을 수 있다.

운송비용

■ 페루 무역 순위 분야 비교

구분	페루	중남미 평균	OECD 평균	칠레	멕시코	한국
수출필요서류	**5**	5.9	4	5	4	3
수출소요기간(일)	**12**	17.6	10.9	15	11	8
수출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890**	1363.2	1,073.1	980	1,450	670
수입필요서류	**7**	6.7	4.5	5	4	3
수입소요시간(일)	**17**	20.1	10.1	12	11	7
수입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1,010**	1,682.2	1,106.4	930	1,740	695

자료: World Bank

주요인증제도

개요

INDECOPI는 페루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품질 규격 표준 승인 기관으로 이 기관에 속한 ICONTEC 연구소에서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준을 국제 규격 품질경영시스템 ISO에서 지정한 'ISO 9100'를 기

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리마시의 대표 항구와 공항인 까야오(Callao) 항과 호르헤 차베스(Jorge Chavez)공항에서도 또한 같은 인증서에 기초하여 이에 준하는 수출입인증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INDECOPI는 이 외에도 신기술 등록, 특허, 상표 등록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을 위한 서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모든 경제 활동 분야의 페루 기술표준을 관리하고 승인하고 있으며 '무역 장벽 및 법령 1030(Decreto Legislativo Nº 1030)'에 따라 약 4천 여 개의 승인 규정을 보유 중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들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및 검사제도

(1) 강제인증

1) 생산부(PRODUCE) 인증

생산부 산하 시험/인증 관리기관은 4개 나뉘며 수산물의 경우 법2859에 기준하여 보건국(DIGESA)가 아닌 생산기술연구소(Instituto Tecnologico de la Produccion)발급 인증을 필요로 한다. 하위 제품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시 해당기관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 농림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 광산물: 금속광물, 광물성 원료
- 화학공업제품: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화장품), 정밀화학제품(의약품)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 섬유제품
- 생활용품
- 철강금속제품: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 기계류: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항공기 및 부품
- 전자전기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전기기, 전선

2) SENASA 인증

생산부 소속 농업위생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aria) 발급 인증은 SENASA로 통칭하며세부 종류는 농업/축산업용 원료 및 동생물/식물 검역으로 총 4가지가 존재한다. 비료를 포함한 농업용 원료는 법령 D.S. 016-2000-AG; R.J. 119-2002-AG-SENASA에 근거하며, 사료와 같은 축산업용 원료는 Nº053-85(1985년)과 Nº0026-95(1995년) 제정된 두개의 법령이 1998년 D.S. 015-98-AG 으로 통합되었다.

동생물 검역관련법은 R.D. 12-2007-AG-SENASA-DSA; D.S. 051-2000-AG, 식물 검역의 경우 해충 도입, 확산을 방지하고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Nº 032-2003-AG이 2000년에 제정되었다. 대상 품목으로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동물용 사료,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유기제품, 식물성 기름, 통조림, 파스타, 야채, 향미료, 과일/건과일 및 살아있는 동생물이 있다.

3) DICSAMEC 인증

반정부 조직(테러리스트), 범죄 예방관련무기 및 특정용도 탄약의 판매, 소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대법원 법령 Nº 007-2000-IN에 근거한다. 대상 품목으로는 호신, 스포츠, 사냥 등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는 무기류가 포함되며 무기 반입 시 관련 인증 소지가 필수적이다.

4) 보건부 인증

보건부(DIGEMID) 인증은 국내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1997년 보건일반법 N°26842가 제정되었으며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장난감, 문구용품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N°28376이 제정되었다. 모든 관련제품 수입 및 유통은 반드시 DIGEMID과 DIGESA 인증을 필요로 한다. DIGEMID 인증은 제약, 화장품, 위생제품, 의료장비, 의료/제약시설 등의 수입 및 도입을 위해 필요로 하며 해당 인증은 주기적인 감사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5) 교통통신부 인증

최고시행령 N°013-93 TCC와 각료결의N°204-2009-MTC/03에 근거하며 통신장비 표준화관련 인증, 6개월 미만의 임시 반입(샘플, 전시회 진열용도, 테스트용등) 허가와 무기한 반입허가 인증으로 나누는 필수 인증이며 인증 대상으로는 휴대폰, 통신장비, 라디오, 무선마이크, 레이더 등 통신관련 장비전반이 있다.

6) 외교부 인증

페루의 국경관련 표기 문자, 페루 지도 포함 인쇄물 통제목적으로 1993년 법령 Nº 26219 제정되었으며 지도, 도면 등이 포함된 출판물, 인쇄물 전반이 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7) 에너지광업부 인증

방사선 사용제품 전반 수입 및 유통 필수 인증이며 대상품목은 X-ray 등 방사선사용 전 품목 해당된다.

8) 통상관광부 인증

카지노기계 등 사행성 기기의 경우 통상관광부 발급 인증이 필요하다.

(2) 임의인증

1) 국제 수출입통합관리체제(ICS)

INDECOPI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입 시 기본적으로 제품이 갖추어야 할 페루 품질 기술 규정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전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두었으며 이는 국제 수출입통합관리체제(ICS)를 따라 권장하고 있다.

2) 상세 정보

주소 : http://www.indecopi.gob.pe/0/home_normalizacion.aspx?PFL=6
페루 기술 규정 포털

페루 통상관광부(MINCETUR)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MYPE

Competitiva 프로젝트'를 통해 동 기관의 협력을 받아 페루 기술규정 포털 및 규정들을 (El portal de Reglamentos Tecnicos Peuanos)을 제정했으며 포털을 통해 페루 기술 규정사항들을 공개하고 있다.

주소 :http://www.mincetur.gob.pe/newweb/Default.aspx?tabid=3135

정부조달관련

페루는 WTO 정부조달 협정(GPA) 비회원국으로 자금 조달 시장이 개방적이지는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1998년도 신 정부조달 법령(Ley No 26850)을 제정했고 조달 절차 과정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투명성 확보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조달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기관인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CONSUCODE: Consejo Superior de Contratos y Adquisiciones del Estado)를 설립한 바 있다. 페루 정부의 자금 조달 방법은 '직접구매', '소량 직접구매', '공개경쟁입찰(건설 및 상품조달)', '지명공개경쟁입찰(서비스 및 자문용역)'으로 분류되며 그 중 페루정부는 자금부족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조달을 요구하는 입찰을 선호하여 시행하고 있고 인프라 입찰 시에도 개발 운영권이양 입찰로 추진하고 있다.

페루의 모든 정부 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은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하고 페루주요 국제입찰 발주기관은 대통령궁, 에너지 광업부, 보건부, 수도공사(SEDAPAL) 등이 있다.

조달시행기관

- 국가기관: 중앙정부 각 부처, 중앙정부 산하 독립기관, 지방정부, 지방정부, 국가개발업체 등
- 국영기업: 설립 시 주식회사로 구성된 국영기업, 설립 후 주식회사로 재구성된 공공기관

○ 공기업(반관반민): 특정기업의 자본이나 경영에 국가에서 대 지분을 출자한 기업

조달관련 법령 및 관행

(1) 조달법령

○ 페루 상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사항
- 헌법 76조, 정부예산법 No 27209(Ley del Presupuesto del Sector Público, 99.12.3), 공공부문 예산법 No 27212(Ley del Presupuesto del Sector Público)에 명시
- 현행, 페루 조달법(Ley No. 26850: Ley de Contrataciones y Adquisiciones del Estado)은 대통령령No.039-98-PCM에 의해서 승인되어 98.9.29 이후 발효 중

(2) 조달관행

페루 조달시장은 기계류, 수송기기, 화학 및 철강제품 등과 같은 자본재 조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 주요 국제 입찰 시행 시에 공급자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 등에서도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시 공개입찰 발주가 잦은 편이다.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공사 참여 업체가 공사를 마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양허 받아 운영한 후 정부에 동 운영권을 반납하는 입찰 방식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조달 방법: RNP(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 제도

페루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전산화 및 투명화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28일부터 페루 정부기관에 서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내외기업은 사전에 페루조달청(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OSCE)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벤더 등록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벤더등록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조달 시에 단순히 시장에서 즉흥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증된 제품(검증된 회사) 만을 구매하여 잘못된 공급자 선정으로 인한 향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만 검증절차(Evaluation)를 통해 정부의 정식 벤더로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도 발주처가 돼 벤더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관례적인 통념상 벤더에도 발주처에 일정유효기간 동안 등록을 하고 또 갱신을 해야 하는 "기관벤더"와 특정 프로젝트에 한해서 벤더로 등록하는 일시적인 개념의 "프로젝트 벤더"가 있다.

RNP(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페루 조달청이 도입한 소액입찰에 대한 전자입찰제도(홈페이지: http://www.seace.gob.pe)와 함께 정부조달시장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페루 정부조달 참여희망 외국기업은 모두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을 위해서는 페루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세번호(RUC No.)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 에이전트나 지사,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페루 내 지사나 법인이 있어 납세번호(RUC No.)를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은 이들을 통해 직접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기업은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개인 또는 법인)를 선정해 이들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RNP제도 등록 자격 요건

RNP제도 등록 자격 요건은 자연인/법인에 따라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입찰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품질 및 가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납기일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내외국인 업체 관계없음)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계약 체결일 전월까지 세금 미 납부했거나 페루 정부조달에 낙찰되었으나 해당 의무를 미 이행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 등, 기타 특기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도 한다.

○ 자연인
- 당국과 계약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성인이어야 한다.
- 사법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효력 있는 사업자등록번호(RU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법인
- 기업으로서 합법적이어야 한다.
- 페루 상업등기청(SUNARP)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효력 있는 사업자등록번호(RU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등록 양식에 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를 언급해야 한다.

주요 조달 방법(입찰)의 비용 및 지불방법

모든 입찰 참가인(업체)는 입찰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입찰등록비는 입찰공고 다음날부터 입찰서류 제출 마감 하루 전까지 구입이 가능하며, 입찰설명서 가격은 각 입찰시행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입찰설명서 복사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입찰 등록 갱신의 경우, 입찰 효력 만기일 60일 전에 갱신 가능하다.

○ 입찰등록비
- 자연인 입찰등록비: 최소S/.약 달러), UIT의 4.41%
- 법인 입찰등록비: 최소S/.약 달러), UIT의 8.83%
- 연매출 13UIT 이하 공급자: 최소 S/.약 달러), UIT의 0.96%

입찰등록비는 상업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지불 가능한 상업 은행 리

스트는 아래와 같다.

○ 입찰등록비 지불 가능 상업은행
- 페루 중앙은행(Banco de Crédito del Perú)
- 스코티아 은행(Scotiabank)
- 콘티넨탈 은행(Banco Continental)
- 국민은행(Banco de la Nación)

주요 조달 방법(입찰)의 절차

(1) RNP제도에 등록

RN등록은 페루 투자청 홈페이지(http://portal.osce.gob.pe/osce)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 내 오른쪽 상단 'RNP'배너를 클릭하면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방법은 조달 희망 분야가 '상품 및 서비스'인지 '건설 집행 및 자문'인지에 따라 상이하다. 지침에 따라 진행하면 벤더 등록 및 갱신 과정은 '자동 승인'으로 진행된다.

조달 희망 분야별 RNP 등록 방법 상세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상품 및 서비스' RNP 등록 방법
- http://www.rnp.gob.pe/docs/guiarapida_insc_bys_2011.zip

○ '건설 집행 및 자문' RNP 등록 방법
- http://www.rnp.gob.pe/docs/guiarapida_insc_eyc_2010.zip

(2) 유효한 입찰정보 찾기

주요 입찰정보는 전자입찰제도SEACE(Sistema Electrónico de Contrataciones del Estado)의 홈페이지(www.seace.gob.pe)에서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상단 카테고리 중 '3. 선발 과정(Procesos de Selección)'을 클릭한 후, '거래 기회(Oportunidad de Negocio)'을 클릭한다. '검색창(Buscador de Procesos de Selección)'을 통해 '기관 또는

기업명', '절차과정 목적', '조달 목적(건설,서비스,재화 등 선택 가능)', '조달 방법(입찰, 선발 경연 등 선택 가능)' 등을 검색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아이템'을 함께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절차 과정 참가

○ 인터넷을 통한 절차

① 전자입찰제도 SEACE 홈페이지(www.seace.gob.pe)에 접속
②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등록 회원 접근(Acceso Usuarios Registrados)' 클릭
③ 홈페이지 내 상단 카테고리 중 '3. 선발 과정(Procesos de Selección)' 클릭 후, '거래 기회(Oportunidad de Negocio)' 클릭
④ '검색창(Buscador de Procesos de Selección)'을 통해 유효한 조달 정보 검색
⑤ 결과 내 관심 조달 정보 '상세사항(Detalles)' 클릭 후, '전자조달과정 등록(Inscribirme en Proceso Electrónico)' 선택
⑥ 입찰 등록한 기업들 리스트 확인 및 'Ingresar Propuesta'클릭하여 입찰가 제시
⑦ 평가를 거친 후 입찰자(Buena Pro) 선정

○ 일반 입찰 절차

① 기본자격요건 충족 확인
② 절차과정(입찰) 참가자로서 등록
③ 입찰 기준 상담 및 관찰
④ 입찰 기준 상향 조절 가능
⑤ 입찰 기준 결정 후, 특별위원회 기준 통합
⑥ 입찰 기준 통합 후, 참가자 제시
⑦ 모든 제시 후 특별위원회 평가 실시
⑧ 평가 후, 특별위원회 입찰자(Buena Pro) 결정

(4) 계약 서명

계약 서명을 위해서는 입찰 자격요건과 조달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조달제약요인(진출 애로사항)

입찰설명서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있고, 페루 영사관 공증을 획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일정규모의 정부구매는 대부분 공급자 파이낸싱 조달입찰로 시행하고 공급자가 장기 조달을 요구한다.

주재국내 업체들과 합작투자 형식으로 진출하여 투자리스크를 줄이면서 사업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자동차,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섬유 등)을 제외하고는 주재국 시장 내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인 바, 지속적으로 스페인어로 제작된 상품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야 될 필요성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가격요인이 낙찰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바,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개요

페루는 그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할만한 여력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등한시해 왔으나, 지적재산권 협약에 가입하면서 해적물 및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추세이다.

이에 지적소유권 보호법도 강화되었으며, 위조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도 정부차원에서 있으나 아직 법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위법자 처벌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경우 아직 페루를 저작권, 지적소유권 보호 요주의 국가명단에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법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중의 관심도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책을 원본으로 사서 보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며 유명한 외국 서적을 100% 복사하거나 시중에 떠도는 해적판 복제서적을 싼 값으로 사 보는 경우가 99%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2011년 컴퓨터 이용자의 78%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품을 사용 했다고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손해 금액은 2억 9백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상표 소유권 침해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 한 예로, 한국의 A社가 등산장비를 수출하려고 등록 절차를 밟는 도중 그 상표가 이미 페루에 등록되어 있어 수출에 난항을 겪은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후 마치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페루로 수입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직물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많다. 주로 칠레의 Iquique 자유무역지역을 통하거나 페루 내의 Tacna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또한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에서 발표한 2013년 재산권지수(IPRI)에서도 페루의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재산권지수는 법률 및 정치 환경, 물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의 세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당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

- 법률 및 정치 환경: 사법권의 독립성, 법률규범, 정치적 안정도, 부패방지
- 물적재산권: 물적재산권 보호, 재산 등록의 수월성, 금융 대출의 용이성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보호, 저작권 보호

2013년 재산권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131개국) 중에서 87위이며 중남미 및 카리브해 23개국 중에서는 13위에 해당된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보호대상 및 보호제도

페루의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기관인 INDECOPI는 1992년에 창립되었으며 현지 시장 진흥과 소비자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페루 경제 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을 보호한다. 또한 페루 법령 제1033호에 따르면 INDECOPI는 페루 내각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국내 공법(公法)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기능적, 기술적, 경제적, 예산 및 행정적 자치권을 행사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INDECOPI 내에 지식재산 관련 부서는 총 3개로 구성되며 부서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저작권부’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로 새 저작권 등록과 기 등록된 저작권의 무효 및 취소,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소송 등을 해결한다.
- ‘발명품 및 신기술부’는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산업디자인, 보안인증, 토착민의 집단 지식,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 식물의 새로운 품종개량 인증, 외국 기술 계약 등에 대한 권리의 등록 및 수정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또한 기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위반 및 무효 소송을 담당한다.
- ‘식별기호부’는 상표 또는 서비스마크, 상품명, 상업용 슬로건, 증명표장, 상표 인증, 원산지 명칭 등의 등록 수속을 담당하는 부서로 등록 요청에 대해 거절, 취소, 무효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이 3개 부서는 지식재산권의 소송 및 비소송과 관련하여 제1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은 제1심 종국 판결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2심 및 최종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신정보

(1) 불법 소프트웨어 증가

현재 페루에 수입되는 공 CD는 연간 3000만개 수준으로, 페루 인구가 3000만 명에도 못 미친다는 점과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그 수가 과도하게 많은 편이다. 주로 대만(68%), 한국(23%), 중국(7.9%) 등에서 수입되는 이런 공CD들은 바로 불법복제와 직결되고 있다.

원판과 불법복제판 가격비교

소프트웨어 종류	원 판	불법복제판
Compact Disc	$20.00	$1.00
DVD	$25.00	$1.00

탈세 및 불법품 근절 위원회(Lucha contra los Delitos Aduaneros y la Pirateria del Produce)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4월 기준 불법 복사품 및 그의 밀매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8억 누에보솔에 이르렀으며 매년 불법 소프트웨어의 유통으로 인한 손해액이 1억 달러씩 증가하고 있는 등 그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페루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복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한 예로 페루로 수입되는 모든 공 CD에 대한 부가세 선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관세청에서는 페루로 수입되는 모든 공CD에 대해서 부가세 10센트를 선급으로 징수하고 DVD에 대해서는 20센트를 선급 받는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외에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성과는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전국산업협회(Sociedad Nacional de Industria) 밀수근절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이미 80% 이상의 점포들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으로 금지한다고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하며 정부가 물리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페루의 불법복제 시장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문제해결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만약 정부에서 불법복제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월 약 300달러 월급을 받는 서민들의 경우 CD 원판을 구매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페루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계층의 기반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해서이다.

최근 들어 불법 CD뿐만 아니라 가짜 의류, 장난감에서부터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건강과 직결되는 담배, 음료수, 생수등도 가짜 제품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현재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나, 실행 시기는 미지수이다.

(2) 페루인 특허출원 신청 2013년 197건으로 2012년 대비 16% 증가

INDECOPI '발명품 및 신기술부'가 발행하는 월간지 자료에 따르면 현지인이 출원 신청한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 수가 2013년 197건(발명특허 73건, 신용신안특허 124건)에 달하며 이는 2012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이다.

페루인의 최근 20년간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 출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990-2002년 사이 연평균 72건, 2003-2011년 사이 연평균 98건, 2012-2013년 사이 연평균 183건 신청하였다.

2013년 페루 내 국적별발명특허 출원 신청의 경우 미국이 371건으로 전체의 약 29%에 해당하며 그 외 독일(143건) 및 스위스(110건) 등이 대표적이고 한국의 경우 22건 신청하였다.

2013년 페루 내 국적별 실용신안특허 출원 신청의 경우 페루가 전체의 89%에 해당하며 그 외 멕시코(4건), 칠레·콜롬비아·스페인(3건) 등이 있고 한국의 신청건수는 없다.

(3) 페루 내 특허 문화 진흥을 위한 INDECOPI 프로그램

○ '신속 특허(Patente Rápida) 프로그램'
  -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 출원 신청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

로 특허 신청을 위한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일반 특허출원 소요기간보다 단기간에 특허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기존의 발명특허 등록소요기간은 평균 50개월이나 이 프로그램 이용 시 평균 26개월 내에 해결되며 실용신안특허는 평균 20개월에서 평균 12개월로 기간이 줄어든다.
- 이 프로그램의 올해 서류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다.

○ '발명자의 목요일(Jueves del Inventor) 프로그램'

- 페루 내 특허 문화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격주마다 INDECOPI 강당에서 개최되는 무료 강연 행사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시스템의 여러 측면과 주제를 대상으로 개념, 정보, 경향 등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한다.

○ '페루 발명대회'

- 1996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대회의 주목적은 페루 내 특허시스템 사용을 통해 페루인들의 창조력, 독창성 및 발명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이를 포상하기 위함이다.
- 이 대회는 2013년까지 총 12회 개최되었으며 대회를 통해 총 1,500건 이상의 발명품이 등록되었음.

투자 환경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 우대 정책

페루는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동등대우, 외국인 재산권 보호, 투자이윤 및 원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을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원칙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기본 원칙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이 있다.
- 외국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 WTO 규정에 의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한다거나 생산성 요건 충족 요구를 할 수 없다.

○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본권
- 내국인에 비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상업과 산업, 수출과 수입의 자유
-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 또는 배당금을 자유로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자유
- 외환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권리
- 이미 투입한 자본을 본국으로 반환할 수 있는 권리(주식 양도, 자본 감축, 자본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때)
-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무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
- 기술 계약과 로열티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자유
- 투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험계약을 외국에서 체결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투자를 위해 국가와 법적 안정성 보장 협정을 체결할 권리

○ 투자 외국인 기업의 준수사항(4개)
- 광업과 석유산업 제외분야 투자기업으로 2년 안에 최소 US$500만을 투자하는 경우
- 광업과 석유 산업 투자업체로서 2년 안에 US$1,000만 투자하는 경우
- 민영화 참가사로서,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 주식 매입이 이루어

지는 경우
- 페루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 수혜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 수용기업 충족 조건
- 회사 주주 중 한 사람이 해당 안정성 보장 협정을 맺어야 한다.
- 조세 납부 안정성 신청의 경우 새로운 투자 금액이 기존 자본금 또는 자본 준비금의 50% 이상 되어야 하며 투자금은 회사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 민영화의 경우 회사 주식 50% 이상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페루 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의 수혜자여야 한다.
- 법적 안정성 보장협정의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10년
  × 권리 양허의 경우, 유효 기간은 권리 양허 유효기간까지 지속
- 분쟁 해결: 법적 안정성 보장협정과 관련된 문제는 중재재판소에서 해결한다.

○ 외국인투자 우대 정책
- 비차별 대우: 내외국인 투자가 모두에게 동등한 법적 대우를 부여한다.
- 대부분의 산업분야를 외국인투자에 개방
  ×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의 부동산 취득, 무기 및 폭발물 산업 투자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며 공중파 라디오 및 TV 방송, 항공산업에의 투자에는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되 내국인의 지분이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 자유로운 자본 송금, 사유재산권, 국내외 자금 조달 관련 신용 접근 자유 보장
- 다양한 투자협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및 다자간투자보장기구 회원국, OECD투자위원회 가입

○ 법적 안정성(judicial stability) 보장 협정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들이 투자한 회사와 법 계약 성질을 띤 협정을 체결하며 이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계약 부분을 적용한다.

-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 국내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 외국 투자가의 자유로운 외환 소지, 이윤, 이익배당금, 로열티를 해외 송금
-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수용하는 회사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노동법 안정성
  -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수출 장려 제도 안정성
  - × 협정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자격
  - × 투자자와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내기업 모두 협정 체결 가능
  - × 새로운 회사 설립 또는 기존 회사 증자 형태나 관계없음
  - × 민영화나 정부양도 개발권 참여회사 또는 이 과정과 관계있는 회사
  - ×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서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회사만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가능

○ 페루정부는 외국인투자와 관련, 다음의 법적 안정성 관련 사항을 보장한다.

투자가	현지 설립회사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의 안정성 - 이윤 세 및 이윤배당의 안정성 -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을 사용해 투자할 권리의 안정성 - 외환 거래의 자유 - 투자에서 나오는 이윤, 로열티의 자유로운 송금 권리	- 노동계약 제도의 안정성 - 수출촉진 제도의 안정성 - 이윤 세 제도의 안정성

제한분야 및 금지분야

페루는 일부 산업부문을 예외로 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개방되어 있다. 그 예로 '91. 11.13일부 공포된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기본법" 이라고도 불리는 법률 D.L.757호를 들 수 있는데 내외국을 불문하고 자연인 및 법인의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동법 제 1조)

그러나 투자분야에 따라 일부를 제한 또는 금지하며 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 국민보건위생에 이해를 야기 하는 산업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법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 용역 및 경비 회사 설립 시 내무부 관련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 회사설립 시 관광자원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 운송업 관련 회사설립 시 교통통신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 시키는 경우는 국경 50km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취득이 금지되어 있다.

투자가능분야

투자 가능 분야는 공공질서 유지, 국가안전에 관련된 극소수 분야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 개방 상태로 투자에 있어 제한이 없다. 내국인 소유 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매입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내국인과 똑같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경으로부터 50km 내의 지역에서는 광산, 땅, 숲, 물, 연료, 에너지원 등을 소유하지 못한다. 단, 공공의 필요로 예외를 둘 경우 국무회의 승인 법령으로 예외 인정한다.

정부 간 협정 수혜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와 대등한 요구 조건

적용한다. 기업은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계획 실행할 권리 보유한다. 위생, 공업 안전, 환경 보호, 보건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 그 외에 생산 방법, 생산 지수 등을 규정하거나 특정한 원자재나 생산 기술 과정을 금지 또는 강요하는 것, 회사 활동에 간섭하는 법 모두 폐지한다. 외국 투자가는 법이 허용하는 어떤 형태의 회사이든 자유롭게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

- 자본금 투자(직접 투자)
- 합작투자(Joint-venture)
- 페루 영토 내의 소유물, 동산
- 유가증권의 투자
- 무형의 기술 제공
- 페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투자